

최종보고서

원양산업의 총조사를 위한 기초조사

2011. 2.

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부경대학교 · 디오피니언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원양산업의 총조사를 위한 기초조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 학 소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총괄책임자 : 홍 현 표

연구진 : 장 홍 석, 김 봉 태, 김 수 진, 마 창 모,
이 승 진, 강 주 리

연구감리 : 신 영 태

공동연구기관 부경대학교

책임자 : 노 맹 석

연구진 : 서 정 욱, 박 지 은

공동연구기관 디오피니언

책임자 : 안 부 근

연구진 : 서 영 희, 이 윤 정, 이 철 수, 김 영 준

자문위원 : 동의대학교 김 규 곤

통계청 김 서 영

한국원양산업협회 송 기 선

목 차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와 조사 대상	5
2. 연구의 방법	6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와 주요 연구내용	8
1. 연구의 추진체계와 추진전략	8
2. 주요 연구 내용	9
제2장 원양산업 통계 및 제도 현황	13
제1절 원양산업 통계 및 제도 문제점	13
1. 원양산업 통계 실태	13
2. 문제점	17
제2절 원양산업 통계제도 현황 및 문제점	19
1. 원양산업 통계제도 현황	19
2. 문제점	29
제3절 국가승인통계 운영현황	33
1. 현황	33
2. 「원양산업 총조사」 작성시 고려사항	36
제3장 원양산업 총조사의 방향	43
제1절 기본방향	43
1. 총조사 사업의 배경 및 목적	43
2. 총조사 사업의 기본방향	43
제2절 조사개요	44

제3절 모집단 및 표본의 선정	47
1. 모집단의 구분	47
2. 표본의 선정	47
3. 원양어업(단독, 합작) 선사의 표본 선정	48
4. 원양어업관련사업의 모집단 및 표본의 선정	51
5. 최종 표본수	53
제4절 조사표의 작성	54
1. 조사표의 작성절차	54
2. 조사표의 유형	54
3. 조사표 작성시 표준분류 체계	55
4. 경영현황 작성	56
5. 생산 및 판매현황 작성	57
제5절 조사표 설계	59
1. 원양어업(합작 포함) 조사표	59
2. 원양어업관련사업	69
제4장 원양사업체 현장조사 결과	77
제1절 현장조사 개요	77
1. 현장조사의 목적	77
2. 현장조사의 시행 방법	77
3. 현장조사의 규모	79
제2절 현장조사의 절차 및 요령	80
1. 조사준비	80
2. 조사자료 수집	81
3. 조사자료 검수 및 집계	82
제3절 단계별 애로사항	84
1. 조사준비 단계	84
2. 조사표 배부 및 회수 단계	85
3. 조사 단계	85
제4절 설문조사	87
1. 조사 개요	87

2. 조사 결과	87
제5장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결과	99
제1절 원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99
1. 원양산업 사업체별 생산 및 경영현황	99
2. 원양산업 사업체 보유 어선별 생산 및 경영현황	137
제2절 해외합작어업 조사결과	146
1. 해외합작어업 사업체별 생산 및 경영현황	146
2.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보유 어선별 생산 및 경영현황	171
제3절 원양어업관련 사업체 조사결과	176
1. 해외 양식업체의 생산 및 경영현황	176
2. 해외 제조업체의 생산 및 경영현황	178
3. 수출입 및 도소매 사업체의 생산 및 경영현황	181
제6장 원양산업 총조사 실시방안	185
제1절 개요	185
제2절 원양산업 총조사 세부절차	186
제3절 실시방안	188
1. 통계의 명칭종류·산업분류	188
2. 통계 작성의 목적	191
3. 조사 대상 및 조사 항목	192
4. 통계 작성의 기준시점, 작성 주기 및 작성 기간	194
5. 통계작성의 방법 및 분류	196
6. 통계작성기관 및 자료수집 체계	197
제4절 제도개선 방향	198
1. 개요	198
2. 원양총조사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199
3. 원양산업의 범위 확대 고려	203
4. 원양산업 기초통계 확보 시스템 보완	203
제5절 응답률 제고 방안	205
1. 응답률 현황	205

2. 응답률 제고 방안	206
제7장 결 론	211
제1절 요약	211
제2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13
참 고 문 헌	217
부록 1. 설문조사표(기초조사)	219
부록 2. 수정 설문조사표	233
부록 3. 조사지침서	243
부록 4. 조사대상 사업체 현황표	289
부록 5.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작성 서류	327

표 목차

<표 1-1> 본 연구의 조사 대상	6
<표 2-1> 어업생산동향조사 조사연혁	13
<표 2-2> 어업생산동향조사 조사 개요	14
<표 2-3> 어업생산동향조사 용어해설	15
<표 2-4> 수산물가공업통계의 조사 개요	16
<표 2-5> 수산물가공업통계의 조사 개요	17
<표 2-6> 원양산업발전법의 구성	20
<표 2-7>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확인서 내용	23
<표 2-8> 원양산업 관련법 상의 통계 구축 메커니즘	32
<표 2-9> 통계작성 기관별 국가승인 통계 현황	33
<표 2-10>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 사항	34
<표 2-11>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35
<표 2-12>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 사항	37
<표 2-13> 원양산업 총조사를 위한 조사표 설계, 조사방법, 조사원 교육	38
<표 2-14> 원양산업총조사 표본추출 방법	39
<표 3-1> 원양산업 총조사의 조사개요	46
<표 3-2> 모집단의 구분	47
<표 3-3> 원양산업의 부문별 표본현황	48
<표 3-4> 원양어업(단독) 선사의 표본어선 선정	49
<표 3-5> 원양어업(합작) 선사의 톤급별 표본어선수	50
<표 3-6> 원양어업(합작) 선사의 표본대상 선박	50
<표 3-7> 원양어업관련사업의 대상 요건	52
<표 3-8> 원양어업관련사업 업종별 표본	52
<표 3-9> 원양산업체 예비조사의 최종 표본수	53
<표 3-10> 원양산업통계 조사표의 유형	55
<표 3-11> 원양총조사 조사표의 표준 분류체계	56
<표 3-12> 원양총조사 조사표의 경영현황 작성	57
<표 3-13> 원양총조사 조사표의 생산 및 판매현황	58
<표 3-14> 기업의 창설연월 판단기준	60
<표 3-15> 단독사업체 여부의 판단기준	61

<표 3-16> 종사자의 판단기준	63
<표 3-17> 원양어업 조사표의 유형자산의 내용	64
<표 3-18> 원양어업 조사표의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내용	65
<표 3-19> 원양어업의 업종별 부호	67
<표 3-20> 조업수역 및 해구번호	67
<표 3-21> 원양어업 조사표의 연간 어로원가 내용	68
<표 3-22> 원양어업관련사업 양식어업 조사표의 연간 양식원가 내용	70
<표 4-1> 원양산업 총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개요	77
<표 4-2> 조사진행 흐름도	78
<표 4-3> 원양산업 부문별 현장조사 규모	79
<표 4-4> 조사 상세진행절차 및 일정	83
<표 4-5> 원양산업 총조사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대상	87
<표 4-6> 원양산업체에 대한 생산 및 경영통계 조사 필요성	88
<표 4-7> 원양총조사의 활용도	88
<표 4-8> 원양어업(단독)의 주요 대분류 항목별 설문 필요성	89
<표 4-9> 원양어업(합작)의 주요 대분류 항목별 설문 필요성	90
<표 4-10>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주요 대분류 항목별 설문 필요성	91
<표 4-11> 해외한인업체의 주요 항목별 설문 필요성	92
<표 4-12> 원양어업(단독) 선사에 대한 세분류 항목별 조사 필요성	93
<표 4-13> 원양어업(합작) 선사에 대한 세분류 항목별 조사 필요성	93
<표 4-14> 원양어업관련사업체에 대한 세분류 항목별 조사 필요성	94
<표 5-1> 조사응답 원양산업 사업체 일반 현황	99
<표 5-2> 창설년도별 조사응답 원양산업 사업체 현황	101
<표 5-3> 소재지별 조사응답 원양산업 사업체 현황	101
<표 5-4> 보유척수별 조사응답 원양산업 사업체 현황	102
<표 5-5> 보유어선 총 어선별 조사응답 원양산업 사업체 현황	103
<표 5-6> 사업체별 통계치 산출 방식	104
<표 5-7> 원양산업 사업체 2009년도 총 생산량 총계 추정치 비교	107
<표 5-8>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의 요약 및 표본오차 - 보유어선 척수별 집계 - ·	108
<표 5-9>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내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 ·····	109
<표 5-10>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외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 ·····	110
<표 5-11>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사업체 전체 종사자 - ·····	111
<표 5-12>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내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연간 급여액 - ···	112
<표 5-13>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외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연간 급여액 - ···	112

<표 5-14>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사업체 전체 종사자 연간 급여액 -	113
<표 5-15>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연간 총 생산량 -	114
<표 5-16>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연간 총 생산금액 -	114
<표 5-17>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토지 -	115
<표 5-18>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건물 -	116
<표 5-19>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기계장치 -	116
<표 5-20>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어망·어구 -	117
<표 5-21>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어선 -	118
<표 5-22>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기타 -	118
<표 5-23>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합계 -	119
<표 5-24>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보유척수별 유형자산 항목별 비중 -	120
<표 5-25>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보유어선 총 톤수별 유형자산 항목별 비중 -	120
<표 5-26>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원재료비 -	121
<표 5-27>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연료비 -	122
<표 5-28>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전력비 -	122
<표 5-29>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용수비 -	123
<표 5-30>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외주가공비 -	124
<표 5-31>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인건비 -	124
<표 5-32>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수선비(수리유지비) -	125
<표 5-33>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감가상각비 -	126
<표 5-34>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임차료(부지·건물·토지) -	126
<표 5-35>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세금과 공과 -	127
<표 5-36>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대손상각비 -	128
<표 5-37>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광고선전비 -	128
<표 5-38>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운반·하역·보관비 -	129
<표 5-39>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기타(보험료, 접대비 등) -	130
<표 5-40>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및 판관비 총계 -	130
<표 5-41>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보유척수별 제조원가 및 판관비 항목별 비중 -	131
<표 5-42>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보유척수별 제조원가 및 판관비 항목별 비중 -	132
<표 5-43>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자산총계 -	133
<표 5-44>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자본금 -	133
<표 5-45>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자본잉여금 -	134
<표 5-46>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연간매출액(재고 제외) -	135
<표 5-47>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원양어업 분야 매출액 -	135
<표 5-48>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부가가치 -	136
<표 5-49> 조사응답 원양어선의 일반 현황	137

<표 5-50> 업종별 톤수별 조사응답 원양산업 어선 현황	139
<표 5-51> 업종별 조업해역별 조사응답 원양산업 어선 현황	139
<표 5-52> 응답 어선의 업종별 연간 출어비 항목별 평균	141
<표 5-53> 응답 어선의 업종별 연간 출어비 항목별 구성비	142
<표 5-54> 응답 어선의 톤수별 연간 출어비 항목별 평균	143
<표 5-55> 응답 어선의 톤수별 연간 출어비 항목별 구성비	143
<표 5-56> 응답 어선의 업종별 연간 임금 및 관리비 항목별 평균	144
<표 5-57> 응답 어선의 업종별 연간 임금 및 관리비 항목별 구성비	144
<표 5-58> 응답 어선의 톤수별 연간 임금 및 관리비 항목별 평균	145
<표 5-59> 응답 어선의 톤수별 연간 임금 및 관리비 항목별 구성비	145
<표 5-60> 조사응답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일반 현황	147
<표 5-61> 진출연도별 조사응답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현황	147
<표 5-62> 내국인 투자비율별 조사응답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현황	148
<표 5-63> 보유척수별 조사응답 원양산업 사업체 현황	148
<표 5-64> 보유척수별 조사응답 원양산업 사업체 현황	149
<표 5-65> 해외합작어업 사업체별 통계치 산출 방식	149
<표 5-66> 원양산업 합작 사업체 조사결과의 요약 및 표본오차 - 보유어선 척수별 집계 -	151
<표 5-67>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내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	152
<표 5-68>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외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	153
<표 5-69>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내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연간 급여액 -	153
<표 5-70>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외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연간 급여액 -	154
<표 5-71>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연간 총 생산량 -	155
<표 5-72>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연간 총 생산금액 -	155
<표 5-73>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토지 -	156
<표 5-74>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건물 -	156
<표 5-75>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기계장치 -	157
<표 5-76>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어망·어구 -	157
<표 5-77>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어선 -	158
<표 5-78>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기타 -	158
<표 5-79>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합계 -	159
<표 5-80>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항목별 비중 -	159
<표 5-81>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원재료비 -	160
<표 5-82>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연료비 -	160

<표 5-83>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전력비 -	161
<표 5-84>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용수비 -	161
<표 5-85>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외주가공비 -	162
<표 5-86>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인건비 -	162
<표 5-87>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수선비(수리유지비) - ...	163
<표 5-88>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감가상각비 -	163
<표 5-89>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임차료(부자건물토지) - ...	164
<표 5-90>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세금과 공과 -	164
<표 5-91>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대손상각비 -	165
<표 5-92>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광고선전비 -	165
<표 5-93>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운반·하역·보관비 -	166
<표 5-94>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기타(보험료, 접대비 등) -	166
<표 5-95>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및 판관비 총계 -	167
<표 5-96>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보유척수별 제조원가 및 판관비 항목별 비중-	168
<표 5-97>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보유어선 총 톤수별 제조원가 및 판관비 항목별 비중-	168
<표 5-98>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연간매출액(재고 제외) -	169
<표 5-99>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원양어업 분야 매출액 -	170
<표 5-100>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부가가치 -	170
<표 5-101>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일반현황 -	171
<표 5-102> 응답 해외합작 어선의 톤수별 연간 출어비 항목별 평균	172
<표 5-103> 응답 해외합작 어선의 톤수별 연간 출어비 항목별 구성비	173
<표 5-104> 응답 해외합작 어선의 톤수별 연간 임금 및 관리비 항목별 평균	173
<표 5-105> 응답 해외합작 어선의 톤수별 연간 임금 및 관리비 항목별 구성비	174
<표 5-106> 응답 해외합작 어선의 톤수별 어종별 생산량 및 구성비	174
<표 5-107> 응답 해외합작 어선의 톤수별 어종별 판매금액 및 구성비	175
<표 5-108> 응답 해외양식 업체의 현황	176
<표 5-109> 응답 해외양식 업체의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의 평균	176
<표 5-110> 응답 해외양식 업체의 유형자산의 평균	177
<표 5-111> 응답 해외양식 업체의 제조원가 및 판관비의 평균	177
<표 5-112> 응답 해외양식 업체의 매출액 및 생산량, 생산금액의 평균	177
<표 5-113> 응답 해외양식 업체의 양식원가 항목별 평균 및 구성비	178
<표 5-114> 응답 해외양식 업체의 생산 및 판매현황 평균	178
<표 5-115> 응답 해외제조 사업체의 현황	179
<표 5-116> 응답 해외제조 사업체의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의 평균	179

<표 5-117> 응답 해외제조 사업체의 유형자산의 평균	179
<표 5-118> 응답 해외제조 사업체의 제조원가 및 판매비의 평균	180
<표 5-119> 응답 해외제조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 및 생산량과 생산금액의 평균	180
<표 5-120> 응답 수출입 및 도소매 사업체의 현황	181
<표 5-121> 응답 수출입 및 도소매 사업체의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의 평균	181
<표 5-122> 응답 수출입 및 도소매 사업체의 유형자산의 평균	182
<표 5-123> 응답 수출입 및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의 평균	182
<표 5-124> 응답 해외제조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 및 생산량과 생산금액의 평균	182
<표 6-1> 원양산업 총조사의 국가승인 요건 개요	185
<표 6-2> 원양산업총조사 대상 업종의 산업분류	189
<표 6-3> 원양산업 총조사 통계의 구성	191
<표 6-4> 원양산업 총조사의 통계작성 목적	192
<표 6-5> 원양산업 총조사의 조사대상	193
<표 6-6> 국가 승인통계의 통계작성 주기	194
<표 6-7> 통계청 통계 이외의 통계 작성 주기	195
<표 6-8> 원양총조사 조사 대상별 조사주기	196
<표 6-9> 원양산업 총조사제도의 개선방향	198
<표 6-10> 지정통계 지정요건	199
<표 6-11> 통계작성의 승인사항	200
<표 6-12> 원양통계 조사내용	205
<표 6-13> 원양어업(단독)의 설문조사 항목별 응답률	206
<표 6-14> 원양어업(합작)의 설문조사 항목별 응답률	206

그림 목차

<그림 1-1> 본연구의 조사 방법	7
<그림 1-2> 본 연구의 추진체계	8
<그림 2-1> 통계청 통계작성 승인 절차	36
<그림 3-1> 국가승인통계의 필수 항목 여부	44
<그림 3-2> 조사표의 작성절차	54
<그림 3-3> 원양어업 조사표의 인적사항	59
<그림 3-4> 합작어업의 인적사항	60
<그림 3-5> 원양어업 조사표의 조직형태	61
<그림 3-6> 원양어업 조사표의 종사자 수 및 연간급여액	62
<그림 3-7> 원양어업 조사표의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	63
<그림 3-8> 원양어업 조사표의 어선원 현황	64
<그림 3-9> 원양어업 조사표의 매출액 현황	66
<그림 3-10> 원양어업 조사표의 보유어선 현황	66
<그림 3-11> 원양어업 조사표의 출어별 선원승선 현황	67
<그림 3-12> 원양어업 조사표의 생산 및 판매현황	69
<그림 3-13> 원양어업관련사업 양식어업 조사표의 양식장 현황	70
<그림 3-14> 원양어업관련사업 양식어업 조사표의 생산 및 판매현황	71
<그림 3-15> 원양어업관련사업 수산물 가공업 조사표의 가공공장 현황	72
<그림 3-16> 원양어업관련사업 수산물 가공업 조사표의 생산 및 판매현황	72
<그림 3-17> 원양어업관련사업 수출입/도소매 조사표의 원료구매 및 수입현황	73
<그림 3-18> 원양어업관련사업 수출입/도소매 조사표의 판매 및 수출현황	74
<그림 6-1> 원양산업 총조사 세부절차	186
<그림 6-2> 원양산업 총조사 통계조사의 방법	196
<그림 6-3> 원양산업 총조사 자료수집 체계	19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와 주요 연구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원양업계의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원양어업의 자생력 배양과 함께, 글로벌화를 통한 적극적인 산업화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08년 「원양산업발전법」 제정¹⁾을 통해 기존의 원양어업을 원양산업으로 격상시켜 여건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1차 산업으로서의 ‘어업’에 대한 경영마인드와 정책적 기조에서 벗어나서 ‘산업’으로서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새로 거듭나는 ‘원양산업’에 대한 개념 확립과 그 행태적 특성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원양업계도 갈수록 개방화되고 글로벌화되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기존의 경영관행과 조업 전략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과학적인 상황 인식하에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새로운 법에 따라 기존의 원양어업과 함께 원양관련사업 등을 포함하는 원양산업의 새로운 범주를 파악하여, 이들 관련 범주의 업종들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갈수록 글로벌화하는 업계의 총체적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에 원양산업의 범주별 현황, 생산량, 종사자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들 통계적 특성을 매년 공개하여 업계 스스로의 행태적 특징을 파악하는 한편, 이를 통해 경영전략과 정책 방안등을 개선하는 피이드백 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선진적 산업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원양산업과 관련하여 매년 「생산통계」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경영관련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원양산업의 발전과 글로벌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통계」를 뛰어넘어, 산

1) 기존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상의 해외 수산자원 확보 분야를 이관하여 2007년 8월 4일 독립법으로 제정, 2008년 2월 4일 동법 시행.

업 전체적인 비용과 수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경영통계」의 확보가 시급하다. 이처럼 생산 및 경영통계 등 공식적인 기초자료가 구축되면, 해당 분야의 경제주체는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 경영전략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또한 정부도 급격한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합리적 정책 마련 시 매우 유용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업계 질서를 확보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와 같은 연구 필요성으로 인해 본 연구는 새로운 법에 따라 정의되는 원양산업 내 업종별로 생산 및 경영활동에 관한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도입되는 원양산업 총조사 본사업의 추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원양산업 총조사시스템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자(해외합작어업자 포함) 및 원양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각 통계분야별 세부 항목에 대한 시험조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별로 생산 및 경영 통계의 도입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이미 「원양산업발전법」의 시행(2008년 2월)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원양어업 관련 사업을 포함하는 ‘원양산업’으로 산업의 외연이 법적 정의상 확대되었다. 그러나 현행 통계는 여전히 기존의 ‘원양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통계」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산업구조와 틀에 알맞은 통계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원양어업 통계는 「어업생산동향」 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해외에서의 양식, 가공, 유통 등의 ‘원양어업관련사업’ 등 새로운 「원양산업발전법」상의 업종에 대한 통계조사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기존의 ‘원양어업’ 사업자는 인허가를 기준으로 통계조사 대상이 확정되어 있다. 그러나 ‘원양어업관련사업’은 관련 법규에 의하면 해당 사업자가 전세계적으로 분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단에 관한 개괄적 정보조차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모집단 자체에 대한 시험적 조사사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와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상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현실적 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범위와 조사대상을 국한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원양산업자’를 대상으로 총조사를 통해 유용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분야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즉

- 현행 원양통계의 실태와 이와 관련된 제도적 현황,
- 그리고 이에 따른 통계조사 사업의 시험적 실시 및 그 결과 제시
- 향후 본사업시 총조사 실시 방안, 그리고
-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주요 연구 범위로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해외합작어업자(원양어업자의 해외파트너), 그리고 원양어업관련사업자를 시험조사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원양어업자와 해외합작어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동법 제6조)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원양어업관련사업자는 현행법상 신고사항(동법 제23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고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무작위 조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 동법 제23조의 정의상 미신고 원양어업관련사업자도 ‘원양산업자’(동법 제2조 4항)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세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수산자원 개발 권리의 획득을 위해 단독 혹은 합작으로 출자하는 수산기업을 조사 대상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이와 함께 연안국 현지 교민이 영위하는 수산관련사업자(어업, 양식, 유통, 판매, 가공, 운반, 보관 등) 등도 잠정적인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만 현지교민등의 협력 사업자는 본 연구의 본 대상이 아니며, 원양산업의 외연적 확대와 글로벌화를 위한 지역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적 자료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부수적 연구로서 활용할 계획이다.

〈표 1-1〉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구분		업종 분류	국적 및 투자방법
원양 산업자	원양어업자 (허가)	원양어업자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해외합작어업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50% 이상, 단 허가권자는 49% 이상)
	원양어업 관련사업자 (신고)	운반·보관·배송·포장 등 물류사업	대한민국 국민이 수산자원 개발 권리 취득을 위한 출자금, 기술용역, 용자 등(단독 혹은 합작)
		수산가공업 (국내 혹은 해외)	
유통·판매사업			
		양식 및 부대사업	
협력 사업자		어업, 양식, 유통, 판매, 가공, 운반, 보관 등	현지교민 출자(외국 국적)

2. 연구의 방법

기존의 연구중 원양산업 총조사 등 통계조사 사업과 관련된 연구나 그 통계적 의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전혀 없다. 다만 원양산업과 관련된 일부 연구²⁾에서 원양어업이 원양산업으로 확대 정의된 이후 해외에서의 수산업 투자 실태 및 투자 방향 등을 도출하기 위해 수산부문 해외투자에 대한 통계조사 및 투자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다. 그밖에도 원양산업 이외의 수산부문에 대한 통계관련 연구³⁾는 다수 시도된 바 있으며, 대부분 수산분야의 통계체계가 미흡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원양산업 분야에서 처음 시도되는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즉 원양어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해, 원양어업에 대한 생산량, 종사자수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해서는 모집단 자체가 정의할 수 없으므로 단계적인 입수 자료를 기준으로 모집단을 추정하는 표본 조사 방법을 시도하였다. 즉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양식 등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내 출처조사 및 해외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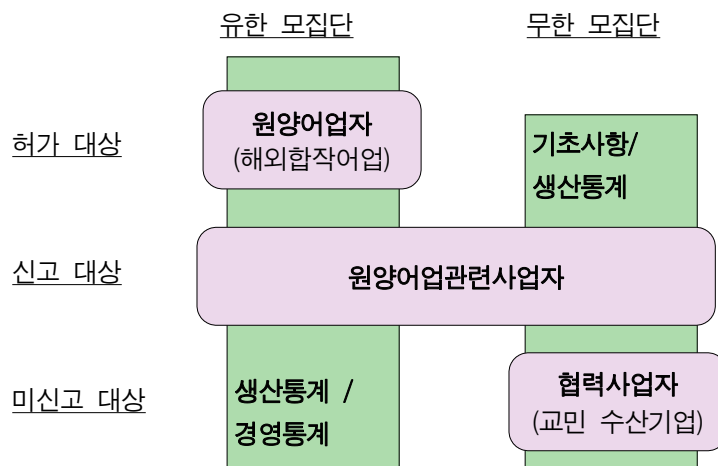
2) 농림수산식품부, “해외어항개발을 중심으로 한 해외수산투자 활성화 방안(2010)”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분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2009)” 등이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추계를 위한 수산 관련 산업 통계지표 개발 연구(2007)” ;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 통계체계 개선방안 연구(2005)”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기초통계량 실제검증조사 및 어업총조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05)” ; 농림수산식품부, “어가경제통계 개선에 관한 연구(2003)”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통계 개선에 관한 연구(2003)” 등이 있다.

지 자료 조사 등을 거쳐 시험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원양어업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는 지속적으로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해외 합작어업에 대한 시험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원양어업자의 합작 회사를 대상으로 생산량, 종사자수 및 경영실태 등의 시험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조사 내용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생산통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는 한편, 시험 조사에서 향후 물리적으로 지속적인 통계 조사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경영통계 조사도 실시하도록 제시하였다. 실제로 원양어업자 및 해외합작어업자등의 허가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 시험조사에서 생산통계 및 경영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총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원양어업관련사업자와 같은 신고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생산통계 조사에 치중하여 시험조사를 실시하되, 해외 진출기업으로서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2항의 기초 사항 4) 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그림 1-1〉 본연구의 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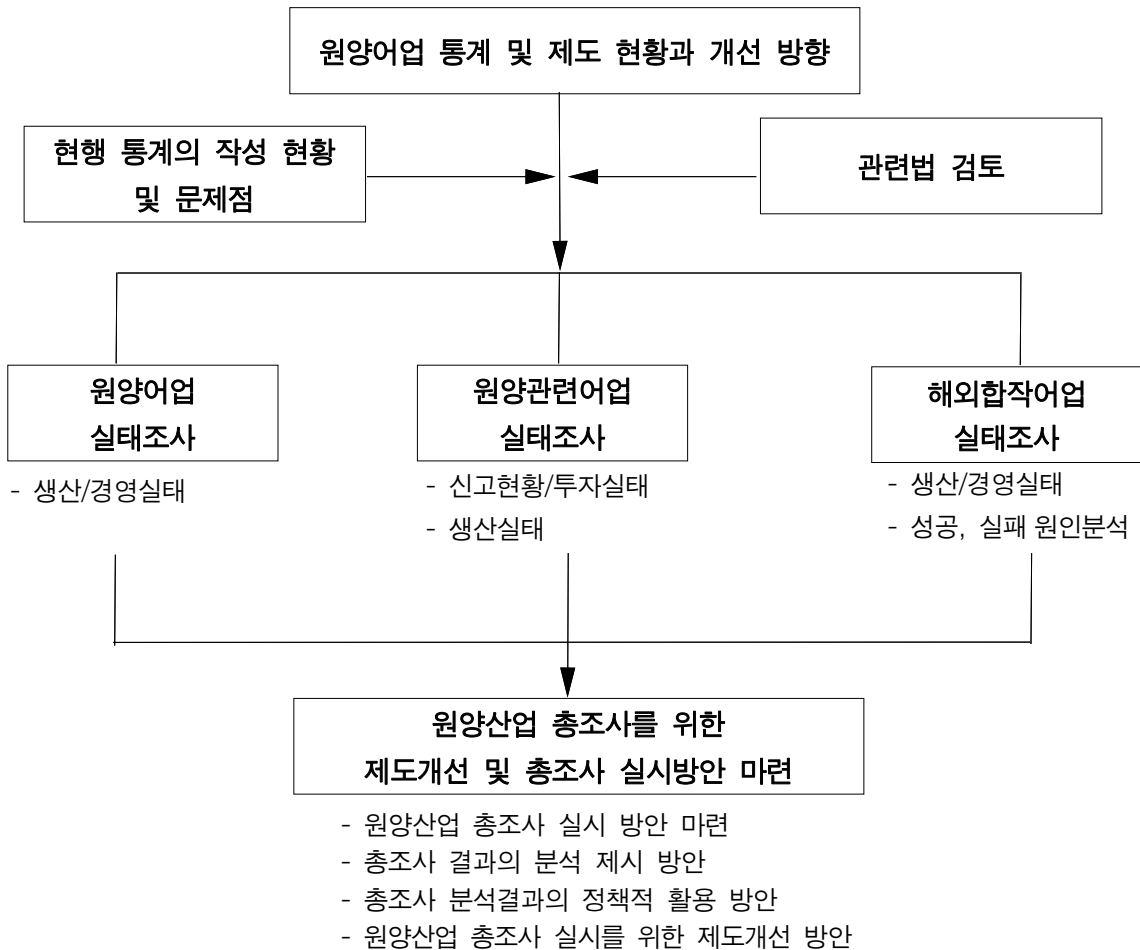
4)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종류와 방법, 투자규모 및 투자비용, 원양어업관련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합작대상국 또는 투자대상국 등의 사항”(원양산업발전법 제11조 2항)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와 주요 연구내용

1. 연구의 추진체계와 추진전략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와 전략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각 연구분야별로 전문적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공동연구 및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구하였다.

〈그림 1-2〉 본 연구의 추진체계



본 연구는 원양산업의 통계 틀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조사이므로 우리나라 원양어업 관련 연구 및 정책 등에 강점이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통계분야의 이론과 추

정 등의 장점이 있는 부경대학교, 그리고 실제 업체별 면접 실사가 가능한 디오피니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공동연구 체계를 구성하여 원양어업 통계와 제도의 현황 분석, 각 분야별 조사계획 및 실태조사의 실시, 조사결과 분석 및 본조사 사업방안 제시 등의 역할에 따라 연구를 분담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2. 주요 연구 내용

이와 같은 연구 추진체계와 전략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연구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즉 제 1장에서는 본 시험조사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등을 기술한 서론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 2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원양산업 총조사 및 제도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현행 원양어업 통계의 작성 현황 및 문제점, 원양산업 관련법상 통계관련 사항의 검토 결과 및 시사점 등이 수록되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원양산업 총조사조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이번 시험조사 사업의 기본 방향과 조사 개요, 그리고 조사표 작성시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실제 시험조사에 사용된 「조사표」의 설계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본 통계 시험조사 사업의 실시 현황과 실시과정에서 발견되는 의견수렴 결과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실제 현장에서 통계 시험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번 시험조사 사업의 조사결과를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총조사 실시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이번 시험조사사업의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총조사 실시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가승인통계의 요건도 살펴봄으로써 향후 원양산업 총조사의 제도적 정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끝으로 제 7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 원양산업 통계 및 제도 현황

제1절 원양산업 통계 및 제도 문제점

제2절 원양산업 통계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국가승인통계 운영현황

제2장 원양산업 통계 및 제도 현황

제1절 원양산업 통계 및 제도 문제점

1. 원양산업 통계 실태

원양어업 관련 국가승인통계는 어업생산동향조사, 수산물가공업통계, 수출입수산물검사통계 등 3종이 있다. 이들 통계도 기존 통계의 제공 범위가 ‘원양어업’에 국한되어 제공 범위도 제한적이다.

1) 어업생산동향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의 조사연혁을 살펴보면, 최초 농림부 수산국에서 행정통계로 조사를 시작하여, 1998년 해양수산부에서 통계청 농수산통계과로 이관했다. 그 뒤 2003년에는 통계청에서 해양수산부 어업기술인력과로 이관하였고, 2003년 정부지정통계 제 12322호로 변경되었으며, 2008년 이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통계청 농어업생산통계과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2-1〉 어업생산동향조사 조사연혁

구분	조사연혁
어업생산 동향조사	- 1948년 농림부 수산국에서 행정통계로 조사시작 - 1978년 수산청에서 농림수산부 농수산통계관실로 이관 - 1996년 농림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전산통계담당관실로 이관 - 1998년 해양수산부에서 통계청 농수산통계과로 이관('98. 7. 1) - 2003년 통계청에서 해양수산부 어업기술인력과로 이관('03. 1. 1) - 2003년 정부지정통계 제12322호로 변경 - 2008년 해양수산부에서 통계청 농어업생산통계과로 이관('08. 3. 3)

어업생산동향조사의 조사목적은 매월 연근해 해역과 내수면 및 원양해역에서 포획·채취 또는 양식 활동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생산변동을 파악하여 수산물의 수급정책, 한·일, 한·중 어업협정, 수산자원 회복사업, 원양산업 육성 등 수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수산관련 연구기관·단체 등의 연구 분석 및 평가 자료로 활

용하도록 제공하는데 있다. 어업생산동향조사의 조사대상은 연근해어업,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 원양어업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내수면 양식어업, 소수어가 참여 해면 양식어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해면어업과 내수면 어로어업은 표본조사를 한다. 조사기간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1~15일까지 15일간 조사를 하며, 어법별, 품종별, 판매형태별 생산량 및 생산금액에 대해서 조사한다.

〈표 2-2〉 어업생산동향조사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통계명칭	○ 어업생산동향조사
조사목적	○ 매월 연근해해역과 내수면 및 원양해역에서 포획·채취 또는 양식 활동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생산변동을 파악하여 수산물의 수급 정책, 한·일, 한·중 어업협정, 수산자원 회복사업, 원양산업 육성 등 수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수산관련 연구기관·단체 등의 연구 분석 및 평가 자료로 활용 제공
조사대상	○ 연·근해어업,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 원양어업
조사방법	○ 전수 : 내수면 양식어업, 소수어가 참여 해면 양식어업 ○ 표본 : 해면어업, 내수면 어로어업 ※ 행정자료 활용 : 수협 위탁판매량, 원양산업 어획실적
조사기간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1~15일(15일간)
조사항목	○ 어법별, 품종별, 판매형태별 생산량 및 생산금액
조사체계	○ 조사대상처(어가 및 사업체)⇒ 조사 공무원(지방통계청) ⇒ 집계 분석(본청) ○ 조사원이 표본어가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회수하고 양식표본 및 전수조사 대상어가는 방문 청취조사 또는 전자조사(CATI) 실시

어업생산동향조사에서는 어업생산, 생산금액, 일반해면(연근해)어업,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 원양어업에 대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원양어업에 대해서는 원양산업법에 의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아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2-3〉 어업생산동향조사 용어해설

구분	내용
어업생산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수확한 생증량을 말함 ※ 수산동식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껍질을 포함한 양
생산금액	생산된 수산동식물을 판매하였거나 판매 추정가격으로 환산한 총액
일반해면(연근해)어업	해수면(바다)에서 어류, 패류, 해조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천해양식어업	해수면(바다)이나 육상에서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어업
내수면어업	하천, 호수, 저수지, 댐 등에서 어·패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하거나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민물을 이용하여 어·패류 등을 기르는 어업
원양어업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아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

2) 수산물가공업통계

수산물가공업통계는 1952년에 최초로 작성된 이후 지정·보고통계로서 1971년에 승인되었다. 조사대상이 되는 대상객체는 사업체(수산물 제조공장)이고, 조사범위는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모든 제품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이다. 조사단위는 수산물 제조공장이 된다. 작성기간은 매월 1일~ 말일까지로 하고, 작성방법은 업체로부터 보고 또는 면접조사를 한다. 이때 연근해제품과 원양제품의 조사체계에 차이가 있다. 연근해제품은 시군에서 시도로, 시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하는 체계이지만, 원양제품의 경우에는 한국원양어업협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되는 체계이다. 간행물 형태로 공표하고, 공표범위는 지역적으로 시·도별로 공표내용은 품종별, 제품별 생산량 및 생산금액을 포함한다. 공표주기는 1년이며, 보고서 항목은 수산가공품 90종의 생산량 및 금액, Kg당 가격, 원료량 등이다.

〈표 2-4〉 수산물가공업통계의 조사 개요

구 분	내용
통계명칭	수산물 가공업통계
통계종류	지정·보고통계
법적근거	승인번호 : 제12304호(1971년 12월 30일)
조사대상	대상객체 : 사업체(수산물 제조공장) 조사범위 :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모든 제 품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 조사단위 : 수산물 제조공장
작성기간	작성대상반기 1일~말일
작성방법	업체로부터 보고 또는 면접조사
조사체계	연근해제품: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제품: 한국원양어업협회 → 농림수산식품부
주요연혁	1971년 12월 30일 : 통계작성 승인 1995년 12월 : 조사명칭, 주기 및 조사항목 변경
계속여부	여부
작성지역	전국
공표방법	간행물
공표범위	지역: 시도별 내용: 품종별, 제품별 생산량 및 생산금액 등
공표주기	1년
보고서항목	수산가공품(90종)의 생산량 및 금액, kg당 가격, 원료량 등

3) 수출입수산물검사검역통계

수출입수산물검사검역통계는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동향을 통계화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4년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2007년에 통계청 승인을 받은 통계이다. 조사대상은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 실적이며, 조사범위는 민원신청에 의한 검사집행이며, 조사단위는 민원신청에 의한 검사집행 실적이다. 이 통계는 보고통계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13개 지원의 검사신청서에 의한 검사·검역 집행실적을 작성한 결과이다. 작성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13개 지원의 검사신청서에 의한 검사검역집행실적을 작성한 결과이다. 조사체계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13개 지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보고한다. 공표는 수산물 검사검역연보와 농림수산통계연보를 통해하며, 공표범위는 수출검사실적(국가별,

품종별), 수입검사실적(국가별, 품종별), 수출검역실적(국가별, 품종별, 용도별), 수입 검역실적(국가별, 품종별, 용도별)을 포함한다.

〈표 2-5〉 수산물가공업통계의 조사 개요

구분	내용
통계명칭	수출입수산물검사검역통계
통계종류	일반통계
법적근거	승인번호 제12332호(승인일자 2007년 12월 4일)
조사목적	수출입수산물 검사검역통향을 통계화하여 관련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조사대상	대상객체 : 기타(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 실적) 조사범위 : 민원신청에 의한 검사집행 조사단위 : 민원신청에 의한 검사집행 실적
작성주기	매년
작성방법	보고통계/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13개 지원의 검사신청서에 의한 검사검역집행실적을 작성한 결과
조사체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13개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주요연혁	2007년 : 통계작성 승인(제12332호) 2008년 : 2007년 수출입수산물검사통계 작성 보고
계속여부	계속
작성지역	전국
공표방법	간행물(수산물검사검역연보, 농림수산통계연보)
공표범위	수출검사실적(국가별, 품종별), 수입검사실적(국가별, 품종별) 수출검역실적(국가별, 품종별, 용도별), 수입검역실적(국가별, 품종별, 용도별)
공표주기	매년

2. 문제점

현행 원양어업 통계와 관련이 있는 승인통계는 어업생산동향조사, 수산물가공업통계, 수출입수산물검사검역통계 3가지가 있다. 각 통계는 원양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가 아니다. 따라서 각 통계의 일부분으로서 원양어업이 조사 대상이 되므로 원양산업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각 통계의 부문별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어업생산동향조사는 생산해역 구분이 너무 광역적이다. 원양어업 조업지역의 해구별로 생산실적이 없이는 특정 해구의 자

원감소, 조업어장에서의 철수 등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둘째, 국내반입, 수출 등 판매경로 자료가 없다. 이로 인해 자원확보 전략 또는 수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이 어렵다. 셋째, 해외양식에 대한 통계가 없다. 최근 한국인이 동남아, 아프리카 등에 대한 양식어업 투자가 이미 일어났거나 계획 중인 경우가 많아 해외진출 양식어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수산물가공업통계에도 어업생산동향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법별·해역별 원료수급에 대한 데이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선상 가공만 포함시키고 해외 수산물가공을 제외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입수산물검사통계는 원양어업에 대해 따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공되더라도 공식 수출입통계와 수치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행 발간되고 있는 한국원양산업협회가 제공하는 어선, 선원, 생산, 수출, 어가(魚價) 등에 대한 원양산업 총조사인 ‘원양산업통계연보’가 있으나 비승인통계로서 통계로서의 품질 및 신뢰도 저하의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원양산업통계의 조사, 관리 및 분석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부족의 문제로 인해 원양산업의 통계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원양산업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신뢰성 높은 국가승인통계화가 필요하다.

제2절 원양산업 통계제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원양산업발전법을 비롯해, 어선법, 선원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관세법 등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들 법령 테두리 내에서 원양산업 관련 통계제도가 어떤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1. 원양산업 통계제도 현황

1) 원양산업발전법

우리나라 원양산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은 원양산업발전법이며, 기존에 다른 여러 법에 산재해 있던 원양관련 법제도를 한 데로 묶은 법이라는 측면에서 원양산업총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표 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양산업의 정의,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과 원양어업 허가 및 국제협력, 원양산업 육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그런데 원양산업발전법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원양산업발전법에는 구체적인 원양산업 총조사 구축 혹은 총조사와 관련한 명시적 법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이 법에서 ‘통계’라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13조가 유일한데, 이 조문 역시 내용상으로 원양산업 총조사 구축과는 다소 관련성이 적다. 제13조에서는 원양어업자가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경우에는 IUU 활동 금지 및 통계 서류의 성실한 작성·제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만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6〉 원양산업발전법의 구성

구분		조항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원양산업 지속가능 발전 및 책임어업 경영, 해외 수산자원 안정적 확보 등을 통한 국민경제 이바지
		제2조	원양산업의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제4조	원양산업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원양산업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제6조~제12조	원양어업 허가 및 신고, 제한사항, 결격사유, 유효기간, 허가취소 등
		제13조	원양어업자 준수사항
		제14조~제15조	항만국검색,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조업실적 등의 보고
		제17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등
	제2절 국제협력·연구개발	제18조	국제수산협력사업 촉진 및 지원
		제19조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제20조~제22조	기타 원양산업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 관련 사항
	제3절 원양산업 육성	제23조~제28조	원양산업 육성 관련 사항
	제4장 보칙		제29조~제32조
제5장 벌칙		제33조~제36조	벌칙조항 등에 관한 사항

다만 통계라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원양산업과 관련한 통계정보를 일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선 원양산업 총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원양산업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법 제2조는 원양산업을 원양어업과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외국인과의 합작기준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은 다음과 같이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양산업의 정의(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제3조)〉

- 원양어업 :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합작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
 - * 합작조건 : (i)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 (ii)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서 대한민국 납입 자본금 또는 보유 의결권이 50%를 초과한 경우에 한함(단, 원양어업 허가권자의 경우에는 49% 이상인 경우로 함)
- 원양어업관련사업 :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한 수산동식물과 해외에서 다음 방법으로 투자해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양식포함)
 - * 투자방법 :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혹은 합작으로 (i) 수산자원 개발권을 취득해 시설이나 자금 투자를 한 경우, (ii) 수산자원 개발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수산자원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용자하는 방법

따라서 원양산업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단독으로 수산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사업부터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이나 자금용자를 제공하고 받은 원양어획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까지 매우 다양한 사업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원양어획물을 활용하거나 해외 수산자원 개발권 취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업만이 원양산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원양어업과 관련해 사전허가제와 조업실적 보고의무 규정을 됴으로써 국내 법인인 원양어업자에 대한 기본현황, 원양어업에 활용되는 어선정보 및 조업활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정보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제6조제1항은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모든 어선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허가신청 시에 어선명, 어업방법, 조업구역, 어장 및 주어종 등 매우 다양한 세부 사항을 기입한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사업계획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박등기부 등본 등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세부사항에 대한 사전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제2조).

무엇보다도 법 제16조는 이 같은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어획실적·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조항에 근거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훈령)’을 제정해 원양어업 조업실적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조업상황, 어획실적 및 어체 측정 상황을 각 어업별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양어업 보고서는 어로장을 포함한 선장이 항차별로 조업일마다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제4조),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보고서를 수과원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이때 허가받은 어선이 국내기지식 어선인 경우에는 매항차 종료후 30일 이내, 해외기지식 어선인 경우에는 매항차 종료후 6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국내항에 양륙할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양륙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양어획물의 국내 반입량 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행정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이 요령에 따라, (i)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과 제17조 규정에 의해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어선이 해외어장에서 어획한 것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어획물과 (ii) 이들 어선이 어획한 어획물을 해외어장이나 외국항에서 운반선 혹은 항공기로 국내에 반입하는 어획물로서, 선상에서 가공된 제품을 포함한 모든 원양어획물은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의 대상이 된다(요령 제2조). 단, 원양모선식 어업허가 어선이 외국의 어선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어업사업에 의한 어획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요령 제3조).

어획물 반입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입항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및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반입량, 어획증명서 등이며, <표 2-7>과 같이 조업선별로 비교적 상세한 반입신고서가 작성된다.

〈표 2-7〉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확인서 내용

구분	내용
조업선 현황	선명, 톤수, 업종, 조업구역, 허가번호, 허가기간
운송수단	선명·항공편명, 국적, 톤수, 전적장소, 전적일시 등
반입사항	반입일, 반입장소, 반입 후 보관장소, 어종, 반입형태, 반입량(M·T)

이 같은 규정 및 요령에 근거해, 국내법인인 원양어업 허가 어선의 조업현황, 어선별·어종별 어획량 및 양륙량, 원양어획물의 판매량 및 판매금액, 국내 반입현황 등의 파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이 같은 법률은 원양어업 허가권자의 조업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셋째, 이 법은 외국인과 합작으로 설립되는 해외 현지법인 원양어업권자에 대해서도 신고규정을 둬으로써 일부 통계정보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즉, 법 제6조제2항은 외국인과 합작해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시에도 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박등기부 등본을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신청 때와는 달리, 사업계획서에 현지법인 현황, 어선확보 방법, 어선명세, 어업방법, 조업구역, 주어장 및 어종 등 다양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5조). 이를 통해 허가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신고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국내의 허가절차에 준하는 해외현지 원양어업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파악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6조는 국내 법인으로서 제6조에 의거해 원양어업 허가를 득한 경우(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원양어업에 대한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해 조업실적 보고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과 합작해 원양어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조업실적 보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제25조에 의거한 국내 반입시의 양륙량 보고 의무 역시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합작법인으로서 원양어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업실적 및 국내반입에 대한 상세 정보 획득이 불가능하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해외현지법인의 경우에도 본사와의 접촉 등을 통해 원양어업 정보가 일부 파악되고는 있지만, 법 규정 자체는 아직까지 국내 원양어업자에 대해서만 조업실적에 대한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원양어업관련사업자의 경우에도 신고제를 통해 일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합작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근거 자료, 정관 등을 첨부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0조). 또한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종류 및 방법,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계약대상, 합작대상국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11조제2항).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신고 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2조). 따라서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정보의 파악이 가능하다.

다섯째, 원양산업발전법 제19조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원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각종 통계의 확보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5조는 원양산업협회가 원양산업 총조사의 작성 및 관리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원양산업발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통계 구축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다. 한편으로는 원양어업 업종별 허가 및 어선별 통계, 생산량, 어획량, 양륙량, 판매량 및 판매금액 등 생산관련 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행 시스템을 통해 확보 가능한 정보는 다소 제한적이다. 예컨대, 현지해외법인으로서 원양어업 및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획득 체계가 미비하고, 특히 현재법인 혹은 해외법인을 막론하고 경영과 관련한 통계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다.

2)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은 수산물의 안정성 강화 및 수산가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법 제1조). 이 법에 따르면, 수산물은 이식용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수산동식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연근해 수산물뿐만 아니라 원양수산물까지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산가공업이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유지·가죽제조 등의 가공을 하는 사업을 지칭한다(제2조).

현재 이 법은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 제도를 통해 연근해 및 원양어획물에 대한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법인인 수산물가공업에 대해 등록 및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산물가공업 희망자는 일정 양식을 갖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거나 지자체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9조). 다만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이하 ‘선상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6조). 등록 신청 시에는 선박등록필증, 어업허가증 사본,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냉동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등을 구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37조). 그러므로 이 법률에 기초하여 국내 법인으로서 선상수산물가공업에 사용되는 선박현황, 시설 등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통해 통계 파악이 가능하다.

이 같은 등록제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은 원양산업 총조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허점을 안고 있다. 즉,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우리나라 어선에서 이루어지는 선상수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등록제를 통하여 설비 명세 등과 같은 일부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가공량, 판매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의 수산가공업에 대해서만 등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합작 원양어업자와 같이 ‘신고’제가 적용되는 원양어선에서 수산가공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보구축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어선법

어선법은 어선의 건조·등록·설비·검사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어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어선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매우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제2조). 따라서 동 법에 의해 원양어업 및 원양어업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어선도 관리되고 있다.

물론 이 법의 경우에도 통계 혹은 총조사 등과 관련한 분명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어선 건조 등에 대한 허가제와 어선등록제, 어선검사제 등을 통해 원양어선 및 연근해어선에 대한 관리와 함께 기초적인 어선 통계 및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먼저,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시험 및 조사 등에 종사하는 어선을 새로이 건조 혹은 개조하거나 또는 이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의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8조). 특히 원양산업발전법에 제2조제2호에 근거해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과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4조). 그리고 허가 신청자 혹은 변경허가 신청자는 각각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 허가사항은 어선 소유주, 선적항, 어업의 종류, 주요 치수, 총톤수, 추진기관 및 그 밖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이다.

어선 허가제와 함께 또 다른 어선관리 수단의 하나는 어선등록제인데, 어선의 소유자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소유자는 주 입출항 항구의 시·군·구청장에게 어선등록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법 제13조). 그러므로 그 대상자는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이상 기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 등과 함께 어선등록신청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21조). 그리고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선원법

선원법은 선원의 직무, 근로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서(제1조), 이 법은 어선법과 선박법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 대한민국 국적을 전제로 한 용선선박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또한 선원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선박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자로서, 선장/해원 및 예비원을 모두 지칭한다(법 제3조).

법 제43조는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 작성하여, 승선 전 혹은 승선을 위한 출국 전에 해양수산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소유자는 선박별로 승무원 명부를 작성하여 선박과 육상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원의 승하선 교대 사실 및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선원의 승무원명부에 대하여 해양수산관청의 공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44조). 그리고 공인을 받은 때에는 승선 혹은 하선하는 선원의 선원수첩 또는 선원보증서를 승무원명부와 함께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공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원법을 통해 원양선박에 대한 선박별, 해역별 선원 현황 및 임금체계에 대한 기본 정보 파악이 용이해진다.

5) 관세법

관세부과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관세법은 수산물을 비롯한 모든 재화의 수출입 관련 규정을 포괄하는 법안이다.

특히 관세법 제241조는 물품의 수출입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기타 시행령으로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관세법에 따라 영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양산업과 관련해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i)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의 경우(법 제93조제5호), (ii) 국적선이 외국선박과 협력해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 협상에 의해 해외수역에서 해당 외국의 국적을 가진 어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한 경우(법 제93조제6호), (iii)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가 외국과 합작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인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생산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아울러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관세부과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서, 수입신고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 제241조에 의거한 신고규정에 따라 이들 원양어획물에 대해서도 수입신고는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적선선에 의해 어획된 원양어획물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와는 별도로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행정규칙)을 두어 이에 대한 반입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체계 하에서 원양산 수산물의 수입현황이 일부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원양산을 별도로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6.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7.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8.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⑤법 제9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해당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원양어업방법을 말한다.

⑥법 제93조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어업을 경영하고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

⑦법 제93조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또는 요건에 따라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장한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4819호의 골판지 어상자를 말한다.

6) 기타

이 외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양어업 경영자금 운영요령(행정규칙)을 마련해, 원양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자금의 총규모, 운용 기본방향, 대출방법 및 조건 등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해 원양산업협회장 및 수협중앙회장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이 시달되면, 원양산업협회장은 어업별, 업종별 자금의 소요액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협중앙회장에게는 대출대상자별 월별 소요액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수협중앙회장은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자금의 배정 및 대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협중앙회장은 이 요령에 의해 자금이 실질적으로 배정되면, 이 사실을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금의 대출 상황 등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도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2. 문제점

원양산업과 관련한 통계 혹은 기초자료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법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원양산업의 법적 근간을 이루는 원양산업발전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원양산업에 대한 기초통계 확보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명시적 법조항이 부재하다. 아울러 원양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조항 또한 전혀 없다. 따라서 원양산업에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통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과 법체계 도입이 요구된다.

둘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양산업발전법에서는 원양산업을 원양어획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의 현 수산물로 수산사업을 하는 경우는 배제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즉,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양산업의 형태를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자면, 다음의 경우가 원양산업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i) 우리나라 국민이 단독으로 해외에서 수산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경우, (ii) 외국과 합작을 했으나 우리나라 법인체로서 해외에서 수산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경우, (iii) 의결권의 50% 이상을 우리나라 국민이 갖는 외국합작 현지법인으로서 해외에서 수산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경우, (iv) 우리나라 국민이 단독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하는 경우, (v) 우리나라 국민이 단독으로 해외 수산자원 개발권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기술용역 등을 제공해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하는 경우, (vi) 외국과 합작을 했으나 우리나라 법인체로서 원양어업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하는 경우, (vii) 외국과 합작을 했으나 우리나라 법인체로서 단독으로 해외 수산자원 개발권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기술용역 등을 제공해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하는 경우, (viii) 의결권의 50% 이상을 우리나라 국민이 갖는 외국합작 현지법인으로서 단독으로 해외 수산자원 개발권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기술용역 등을 제공해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결론적으로 원양어획물 포획과 채취, 원양어획물을 반드시 이용하거나 해외 수산자원 개발권 취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업만이 원양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i) 우리나라 국민이나 교민(외국 국적자)이 해외 혹은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해 현지 수산물로 수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혹은 (ii) 우리나라 교민이 단독으로 원양어업이나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은 실제로 이루어지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원양산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행위가 존재하게 된다.

셋째, 각기 다른 법령에 기초해 원양산업과 관련한 허가, 신고, 등록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통계구축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예컨대, 단독 원양어업에 대한 허가와 합작 원양어업자에 대한 신고,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한 신고는 원양산업발전법에 기초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적선에서 이루어지는 선상수상가공업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등록제로,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법에 의한 허가제로 관리되는 형태이다. 이처럼 원양산업과 관련한 제도적 관리가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관리상의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이 같은 공백은 결국 통계정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종합적인 원양산업 총조사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같은 현행 법체계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원양산업 관련 행위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먼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원양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하며, 조업실적 보고 의무와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의무 등이 주어진다. 그러나 같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르는 합작 원양어업자의 경우에는 신고로 허가를 대신하며, 조업실적 보고나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합작 원양어업자에 대한 정보 획득을 어렵게 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또한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해 국내에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이루어지는 선상수상가공업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역시 합작 원양어업 신고를 한 어업자가 행하는 수산가공업에 대해서는 관리 공백이 생긴다.

넷째, 반대로 동일한 사업행위를 각기 다른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데에 중복 규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례로 원양산업발전법 상에서 단독 혹은 합작 형태의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수산물품질관리법 상에서도 원양어업 허가어선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물에 대한 냉동 혹은 냉장업에 대해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원양어업 허가를 득한 어선에

서 이루어지는 냉동 및 냉장업에 대해서는 원양산업발전법 상의 신고제와 수산물품질관리법 상의 등록제가 동시에 적용될 소지가 있다. 물론 통계 구축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중복적 규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원양산업과 관련한 법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원양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원양산업은 원양어업과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원양어업관련사업이란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양산업 총조사 역시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한 통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양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한 신고제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선상수산물가공업에 대한 등록제를 제외하면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한 통계 구축 기반은 거의 전무하다.

여섯째, 원양어업이 원양산업으로 그 외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생산통계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한 통계 확보도 중요하다. 그러나 <표 2-8>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갖추어진 틀에서는 원양어업 생산, 어선, 선원 등 생산과 관련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원양어업 경영자금 운영요령에 근거해, 원양어업에 대한 경영자금 대출 및 전대 현황이 일부 파악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원양선사의 어업경영과 관련된 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전조치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현행 제도상으로 허가받은 원양어업자의 실적 보고 기한이 매우 길어, 필요한 때에 원양어업 조업실적 통계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에서는 원양어업의 실적 보고서를 매항차 종료후 30일(국내 기지식 어선)과 60일(해외 기지식 어선)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원양어업의 항차는 어업별로 매우 상이하다. 예컨대, 원양어업의 한 축을 이루는 원양연승의 경우에 1항차가 매우 길다. 따라서 원양 연승어업의 경우에는 조업실적 통계의 신속한 확보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표 2-8〉 원양산업 관련법 상의 통계 구축 메커니즘

구분	통계관련 조항 유무	기초현황 관련 수단 유무	확보가능 자료	비고
원양산업발전법 (관련 요령 포함)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어업 허가 • 조업실적 보고 • 원양어획물 반입 신고 (단독 원양어업자에 한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허가 : 어업형태, 허가어선 현황 • 생산실적 : 조업선현황, 어선별 조업현황, 어선별·어종별 어획량, • 기타 : 양륙량, 반입량, 반입형태, 판매현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통계사업 : 원양산업협회 - 원양산업종합 정보 시스템구축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어업 신고 (합작 원양어업자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신고 : 현지 법인 현황, 어업형태, 허가어선 현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고 : 사업종류, 투자규모, 투자비율, 계약대상, 합작국 등 	
수산물품질관리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상)수산가공업 등록제(농수산부 장관) (단독 원양어업자에 한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업 어선 기본현황 • 가공설비 현황 등 	
어선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건·개조 허가제 • 어선등록제(어선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소유주, 선적항, 어업종류, 주요 치수, 총톤수, 추진기관 등 	
선원법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근로계약 • 선원승선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별 어선원 승하선 관련 기본 현황 	
관세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 및 수입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합작기업에 의해 생산된 원양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원양산 구분이 불가

제3절 국가승인통계 운영현황

1. 현황

2011년 1월 1일 현재 통계법 제18조(또는 20조)에 의거 승인받은 통계는 총 836종으로서 지정통계 90종, 일반통계 746종이다. 통계의 작성형태별로는 보면, 조사통계는 335종, 보고통계는 443종, 가공통계는 58종이다. 작성기관을 정부기관과 지정기관으로 구분하여 볼 때 정부기관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690종(통계청은 52종)이며, 지정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146종이다.

통계 작성기관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기관의 작성기관수는 298개이고, 지정기관인 금융기관, 공사·공단, 연구기관, 협회·단체, 기타기관 등 77개 기관에서 146개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이중 실제조사를 하는 조사통계는 335종이고, 산하기관의 보고를 토대로 작성하는 가공통계는 443종, 조사통계 또는 가공통계를 재가공하는 보고통계는 58종이다.

〈표 2-9〉 통계작성 기관별 국가승인 통계 현황

(단위: 기관, 종)

기관구분	작성기관수	작성통계수	통계종류별		작성형태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정부기관	298	690	74	616	243	402	45
- 중앙행정기관	38	321	58	263	157	142	22
통계청	1	52	41	11	42	2	8
이외기관	37	269	17	252	115	140	14
- 지방자치단체	260	369	16	353	86	260	23
지정기관	77	146(148)	16(17)	130(131)	92(93)	41(42)	13
금융기관	8	24(25)	7(8)	17	12(13)	6	6
공사·공단	23	42	3	39	18	22	2
연구기관	16	23	2	21	18	3	2
협회·단체	24	38	4	34	32	4	2
기타기관	6	19	-	19	12	6	1
계	375	836	90	746	335	443	58

주: ()는 복수기관 공동통계가 포함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이와같은 국가승인통계를 규정하는 것이 「통계법」이며, 구체적으로는 「통계법」제 18조(통계작성의 승인)와 제21조(통계작성의 권고)에 따른다.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제1항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만약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통계청장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다음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첫째,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둘째,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 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표 2-10〉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 사항

구분	항목
통계법시행령 제24조 (통계작성의 승인 신청 및 승인)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목적 5. 통계작성의 대상/ 6. 통계작성의 주기 7. 통계작성의 방법

국가통계의 승인신청 및 승인에 대해서는 「통계법시행령」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규정에 따른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통계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에는 ① 통계의 명칭, ②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③ 통계작성승인번호, ④ 통계작성의 목적, ⑤ 통계작성의 대상, ⑥ 통계작성의 주기, ⑦ 통계작성의 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계작성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통계법시행령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항목을 준비해야 한다. 승인을 받기 위한 항목은 ① 통계의 명칭 및 종류, ② 통계의 작성 목적, ③ 통계작성의 사항, ④ 통계작성의 대상, ⑤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및 주기(단,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을 적는다), ⑥ 통계작성의 방법, ⑦ 자료수집 체계, ⑧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통계법 제22조에 다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⑨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등이다. 여기서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서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표 2-11〉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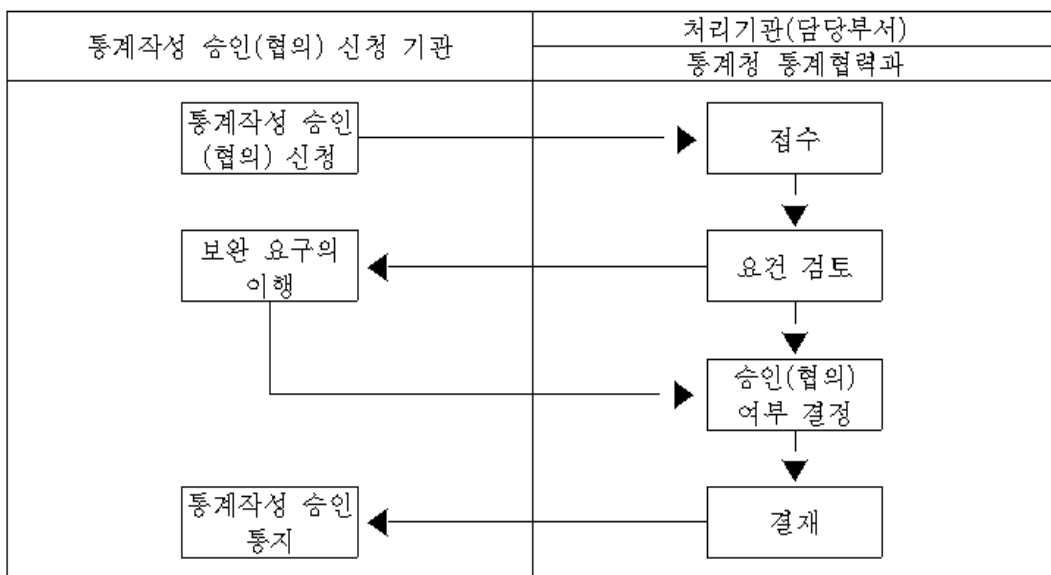
구 분	항 목
통계법시행령 제25조 (통계작성의 승인사항)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2. 통계의 작성 목적 3. 통계작성의 사항(단,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 4. 통계작성의 대상(단,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 5.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및 주기. 다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을 적는다. 6. 통계작성의 방법 7. 자료수집 체계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9.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2. 「원양산업 총조사」 작성시 고려사항

가. 국가통계 승인 절차

농림수산식품부가 국가통계 작성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원양산업 총조사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통계청 통계협력과에 제출된 서류를 통계청에서 요건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완 요구를 하게 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사항을 보완하여 통계청에 제출하면 통계청에서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에 통계청은 농림수산식품부에 통계작성 승인을 통지하게 된다.

〈그림 2-1〉 통계청 통계작성 승인 절차



나. 국가통계 승인을 받기 위한 원양산업 총조사의 주요 검토사항

원양산업총조사는 궁극적으로 국가승인통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제시된 국가승인통계 요건들 중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단계적으로 충족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통계청의 주요 요건 검토사항으로는 최우선적으로 통계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조사를 통한 예산 낭비 가능성을 타진하고, 중복성 문제가 없는 경우 통계작성을 위한 몇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지를 타진하여 통상적으로 승인 통지를 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조사와의 중복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득시킬 필요

가 있다. 또한 「원양산업 총조사」가 국가통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이 되는 개체인 조사단위와 표본으로 추출되는 추출단위,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모집단, 실제로 조사가 가능한 조사모집단, 추출단위가 나열된 리스트, 시간적·공간적 조사범위, 조사지역 등이 명확해야 한다. 「원양산업 총조사」의 조사단위는 경영통계 조사의 경우는 사업체 단위이고, 생산통계 조사시는 생산현장이 되는 원양어선의 단위이다. 목표 모집단은 원양어업, 원양합작어업이 되며, 조사대상 모집단은 원양어업 68개사, 원양합작어업 17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표 2-12〉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 사항

구 분	내 용	원양산업총조사
조사단위, 추출단위	조사대상이 되는 개체, 표본으로 추출되는 단위	경영: 사업체 단위 생산: 원양어선, 수산물 가공공장, 양식장
목표모집단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모집단	원양어업, 원양합작어업, 원양어업관련사업 (운반업, 제조업, 양식업, 수출입/도소매업, 기타)
조사모집단, 표본추출틀	실제로 조사가 가능한 모집단 추출단위가 나열된 리스트	원양어업 : 68개사(321척) 원양합작어업 : 17개사(27 척)
조사범위	시간적 범위 장소적 범위	1월 1일 ~ 12월 31일 조업수역, 해외진출지역
조사지역	-	사업체가 위치한 장소

다만 현재까지 수집된 51개의 원양어업관련사업 표본과 그밖의 현지 교민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국가승인통계 요건에 미흡하므로 여기서는 제외시키도록 한다⁵⁾. 조사 범위는 시간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장소적 범위는 해외조업수역, 해외진출지역으로 한다. 조사지역은 사업체가 위치한 장소로 한다.

또한 「원양산업 총조사」가 국가통계 승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질 조사내용이 수록된 조사표를 마련하고, 실제 조사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 대

5) 이들 조사단위는 소재지와 국적이 해외의 외국 국적이므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통계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조사에 응하더라도 조사 가능한 항목이 제한적이고, 회계제도와 회사법 등이 상이하여 애초부터 비교가능성이 매우 낮다. 더구나 실제 현장 조사가 가능하더라도 개별 표본에 따라 조사가 가능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원양어업관련사업 등은 우리나라의 국가승인통계 대상에서는 제외할 수 밖에 없다.

처할 수 있도록 『조사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⁶⁾. 또한 조사표 수집방법을 포함한 조사방법을 명시하고, 조사원 교육 및 조사일정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표 2-13〉 원양산업 총조사를 위한 조사표 설계, 조사방법, 조사원 교육

구분	내용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	실질 조사내용 수록	조사표 마련 예비조사를 통한 수정 보완
조사지침서	실제 조사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 수록	조사표상 용어 설명 조사표 작성방안 마련 응답거부시 대처방안 등 초안 마련
조사방법	조사표 수집 방법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 면접 자기식 조사를 원칙 우편조사를 병행
조사원교육	-	예비조사시 시행
조사일정	조사일, 조사표 회수일, 응답거부, 추가조사기간	사업체 총조사(6월~10월)에 맞게 시행 전년도 경영 및 생산현황 조사이기 때문에 6월이 적합하며, 원양업체가 밀집된 서울시와 부산시의 협조를 통한 조사 필요

원양산업 총조사의 승인을 위해 1차 예비조사를 위한 조사표를 마련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 하였다. 그리고 조사원이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표상 용어를 설명하고, 조사표 작성방안, 응답거부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조사표 수집방법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하는 자기식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조사의 경우에는 우편조사 및 팩스조사를 병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원양산업 총조사는 경영조사이고, 전년도 경영 및 생산현황 조사이기 때문에 6월이 적합하며, 원양산업체가 밀집된 서울시와 부산시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한다.

이와 함께 국가통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원양산업 총조사의 표본추출 방법이 명확해야 한다. 따라서 원양어업과 원양합작어업의 사업체 조사는 전수를 원칙으로 하고, 원양어선은 사업체별, 업종별, 톤급별로 표본을 할당하여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외에도 오류발생 처리방안, 이상치·결측치 처리방안, 추정방법 등에 대해서도 예비조사 결과를 근거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원양산업 총조사』가

6) 이에 대해서는 [부록 2]를 참조하라.

제반 요건을 구비하더라도 그 표본이 규모가 작거나 지역적으로 편중되면 별도의 국가통계로서 승인요건⁷⁾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표 2-14〉 원양산업총조사 표본추출 방법

구 분	표본추출 방법
원양어업, 원양합작어업	사업체: 전수 원양어선: 사업체별, 업종별, 톤수별 할당추출

7) 통계법 제17조 1항에서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지정통계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장 원양산업 총조사의 방향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조사개요

제3절 모집단 및 표본의 선정

제4절 조사표의 작성

제5절 조사표 설계

제3장 원양산업 총조사의 방향

제1절 기본방향

1. 총조사 사업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세계적인 자원감소 및 이에 따른 규제로 해외어장이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도 정체되고 있어 근본대책을 세우기 위한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원양어업관련사업 등 ‘원양산업화’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시점이 되었으며, 원양산업자의 업종별 실제 분포를 반영하여 원양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정비 방향의 도출이 필요하다. 원양산업자의 입장에서 합리적 경영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산업통계자료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원양산업 정책지원을 위해 정부에 기초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

2. 총조사 사업의 기본방향

원양산업 총조사 사업의 기본방향을 다음의 4가지로 한다. 첫째, 현행법의 범주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제시한다. 둘째, 현실적 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양산업의 현실을 반영하는 산업통계를 작성한다. 셋째, 원양산업의 정책을 지원하는 총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국가승인통계의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조사개요

원양총조사는 궁극적으로 국가승인통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4월 현재 국가승인통계는 858종에 달하고 있다. 국가승인통계는 조사통계, 가공통계, 보고통계로 나누어지며 원양총조사에 해당하는 실제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조사통계는 총 348종이 있으며, 산하기관의 보고를 토대로 작성되는 가공통계는 총 454종이 있고, 조사통계 및 가공통계를 재가공하는 보고통계는 총 56종이다.

국가승인통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사개요는 다음의 <그림 3-2>와 같다. 우선 조사개요와 관련하여서는 통계명, 통계종류, 법적근거, 조사목적, 조사주기가 명시되어야 한다. 조사대상에 있어서는 대상객체, 조사범위, 조사단위,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체계, 적용분류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기간 및 시점, 조사실시기간, 실제 준비조사기간, 주요 연혁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사방법론에 따라서 면접형태, 조사표형태, 질문의 형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표본설계 항목으로는 모집단, 추출틀, 추출단위, 층화, 표본추출법, 표본규모, 표본오차, 표본관리, 조사구 관리, 표본 관리, 표본 교체, 비표본오차 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 3-1> 국가승인통계의 필수 항목 여부

항목명	필수 여부	항목명	필수 여부	항목명	필수 여부	항목명	필수 여부	항목명	필수 여부
1 조사개요		2 조사 방법론		2-3-2 작업처리 순서		2-8 저수편제		5 용어 해설	○
1-1 통계명	○	2-1 조사표 설계		2-3-3 소요장비		2-8-1 저수분류	○	6 관련문서	
1-2 통계종류	○	2-1-1 면접 형태	○	2-3-4 부호목록		2-8-2 저수계산(산식)	○	7 품질	
1-3 법적근거	○	2-1-2 조사표 형태	○	2-3-5 자료일력 방법		2-8-3 기준년도	○	7-1 무응답률	
1-4 조사목적	○	2-1-3 질문의 형태	○	2-3-6 집계방법		2-8-4 가중치	○	7-2 MSE	
1-5 조사주기	○	2-1-4 조사표 사전 시험		2-3-7 내검 및 오류정정		2-8-5 편제방법	○	8 예산 인력 교육 홍보	
1-6 조사대상		2-1-5 조사표 개편 확정일		2-3-8 승수 적용		2-8-6 대표품목	○	8-1 관련 예산	
1-6-1 대상객체	○	2-2 표본설계		2-4 Imputation		2-8-7 기준물량(가격)	○	8-2 인력	
1-6-2 조사범위	○	2-2-1 모집단	○	2-4-1 사용한 방법		2-8-8 과거저수와의 접속		8-3 교육	
1-6-3 조사단위	○	2-2-2 추출틀	○	2-4-2 Imputation 내용		2-9 조사구 설정		8-4 홍보	
1-6-4 조사지역	○	2-2-3 추출단위	○	2-5 추정		3 자료제공		9 기타	
1-7 조사방법	○	2-2-4 층화	○	2-5-1 추정 기법	○	3-1 공표방법	○	9-1 이용시 유의점	○
1-8 조사체계	○	2-2-5 표본추출법	○	2-5-2 조정기법		3-2 공표범위	○	9-2 연락처	○
1-9 적용분류	○	2-2-6 표본규모	○	2-5-3 분산추정기법		3-3 공표주기	○		
1-10 조사기간		2-2-7 표본오차	○	2-6 비밀보호방법		3-4 간행물명	○		
1-10-1 조사대상기간/시점	○	2-2-8 표본관리	○	2-6-1 마이크로 데이터 처리		3-5 자료검색	○		
1-10-2 조사실시기간	○	2-2-8-1 조사구 관리	○	2-6-2 집계표 데이터 처리		3-5-1 보도자료	○		
1-10-3 실제 조사기준시점		2-2-8-2 표본 관리	○	2-6-3 관련 근거		3-5-3 KOSIS	○		
1-10-4 실제 준비대상기간		2-2-8-3 표본 교체	○	2-7 시계열 조정 방법		3-5-4 그래프			
1-10-5 실제 준비조사기간	○	2-2-8-4 비표본오차 관리	○	2-7-1 달력효과조정		4 조사표			
1-10-6 실제 조사실시기간		2-3 자료처리 방법		2-7-2 벤치마킹		4-1 조사표 항목	○		
1-11 주요 연혁	○	2-3-1 자료처리 단계별 소요인력		2-7-3 계절 조정		4-2 조사표 이미지			

국가승인통계의 필수 조사항목에 따라서 “원양총조사”의 조사개요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우선 통계명은 “원양산업 총조사”로 하고, 통계종류는 지정·일반 중 일반으로, 조사·가공·보고 중 조사로 한다. 법적근거로는 승인번호와 승인일자를 취득해야 하므로 통계청 승인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목적은 원양산업 경영 및 생산실태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 및 원양산업 활동을 위한 기초정보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주기는 1~3년으로 한다.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대상객체는 사업체 단위로 원양어업(합작어업), 원양어업관련사업으로 하고, 조사범위는 시간적으로 2009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이며, 장소적으로는 사업체 소재지이다. 조사단위는 조사표가 작성되는 단위로 사업체이며, 조사지역은 국내/해외 사업체 소재지가 된다.

조사방법은 원양어업(단독, 합작) 사업체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어선별 생산통계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실제 조사시에는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대 1일 대인면접을 통한 자계식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원양어업관련사업체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우편을 통한 자계식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체계는 조사담당자가 조사를 실시하여 KMI에 취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통계청에 제출하는 체계를 갖는다. 동 조사에 적용된 표준분류는 전국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어업총조사, 원양산업통계 연보이다.

마지막으로 조사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조사시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조사실시기간은 타 사업체 조사의 사례를 감안할 때 6월~10월까지로 하고, 6월에 조사하는 안이 적정하다. 실제 준비조사기간은 조사표를 각 사업체에 배부하고 설명하는 기간으로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한다. 그리고 주요 연혁은 통계청 승인 일시와 조사기간 등을 명시한다.

〈표 3-1〉 원양산업 총조사의 조사개요

항목명	내용	통계설명(案)
1 조사개요		
1-1 통계명		원양산업 총조사
1-2 통계종류	지정·일반, 조사·가공·보고	일반, 조사
1-3 법적근거	승인번호, 승인일자	통계청 승인 필수
1-4 조사목적	조사의 필요성 및 활용처	원양산업 경영 및 생산실태 통계 작성 1)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 2) 원양산업 활동을 위한 기초정보
1-5 조사주기	연·분기·월·부정기 등	1년~3년
1-6 조사대상		
- 대상객체	개인·사업체·가구·기타	사업체 단위 : 원양어업, 원양합작어업, 원양어업 관련사업
- 조사범위	개념적, 시간적, 장소적 범위	개념적 : 대상객체 참조 시간적 : 2009.01.01~12.31 장소적 : 사업체 소재지
- 조사단위	조사표가 작성되는 단위 예) 가구, 사업체	사업체
- 조사지역	전국·시도·시군구·읍면동 ·기타	국내/해외 사업체 소재지
1-7 조사방법	전수/표본, 자계식/타계식, 배포 조사/우편조사/집합조사/면접조사/ 전화조사/인터넷조사	1) 원양어업(단독, 합작) 사업체 : 전수 (단, 어선 별 생산통계 : 표본),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 지를 이용한 1:1 대인면접을 통한 자계식 조사 2) 해외진출 사업체 : 표본, 우편을 통한 자계식 조사
1-8 조사체계	예)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 → 통계청	조사담당자 → KMI → 농림수산식품부 → 통계청
1-9 적용분류	조사에 사용된 표준분류 등	전국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어업총조사, 원양산업 통계연보
1-10 조사기간		
- 조사대상기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대상기간 예) 매년 12월말 기준 또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간	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시점 : 12월31일 기준
- 조사실시기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실시기간 예) 익년 3월	참조) 사업체 조사 : 6월~10월(6월 조사(案)이 적정)
- 실제 준비조사 기간	구체적 준비조사 기간 예) 2004.10.30~10.31	조사표를 각 사업체에 배부 및 설명. 5월 1일~5월 31일
- 주요 연혁	주요 작성 및 변경 연혁	통계청 승인 일시, 조사기간 등

제3절 모집단 및 표본의 선정

1. 모집단의 구분

원양산업체의 모집단은 대한민국 국적여부를 1차적으로 고려하고, 사업목적에 따라서 해외수산자원개발에 기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법적 개념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및 일정 요건의 합작사업만을 원양산업체로 분류되며, 여기에는 원양어업자, 합작어업자, 해외양식업자, 해외수산가공·유통업자 등이 포함된다.

〈표 3-2〉 모집단의 구분

사업목적	국적	대한민국·합작)	현지국적 및 기타합작(소액투자)
해외수산자원 개발 기여(국익)		- 원양어업자 - 합작어업자	- 현지교민 사업자
개별경영 기여 (사익)		- 해외양식업자 - 해외수산가공·유통업자 등	- 현지교민 사업자

주 1: 해외합작(49% 이상), 기타(50% 초과)

2. 표본의 선정

원양산업의 부분별 표본은 원양어업 단독회사와 합작회사,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원양어업의 단독회사의 경우에는 표본을 원양산업협회 등록회원사 70개사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하였고, 합작회사의 경우에는 원양산업정책과에 신고한 업체인 19개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원양어업관련사업은 전세계에 있는 원양어업과 관련된 회사들로 국적, 지분구조, 시행령상의 투자, 기술이전을 통한 자원이용의 요건을 충족한 회사들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양산업발전법의 제정 이후 이러한 요건을 갖춘 회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표본을 선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원양산업발전법상의 원양어업관련사업체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외화유출 신고 후 진출한 회사들을 1차적 대상으로 정하고 대상회사의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따라서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 전화조사를 1차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이들 회사들에 대해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번호부재와 도산 등의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해 기재

부의 해외진출 업체 리스트, 코트라가 현지 공관을 이용해 작성한 해외진출 기업 리스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작성하고 있는 현지 교민들에 대한 기업진출 리스트 등 3가지 리스트를 제공받아서 확인된 119개사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관련사업자 여부의 확인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8개 원양산업체 중에서 도산 및 휴업/연락불가인 회사 72개사를 제외하고 136개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표 3-3〉 원양산업의 부문별 표본현황

구 분	원양어업	해외합작어업	원양관련사업	합계
조사대상	70	19	119	208
최종 표본	68	17	51	136
응답완료	65	17	13	95
응답유보 및 거절	3	0	37	40
도산 및 휴업/연락불가	2	2	68	72

3. 원양어업(단독, 합작) 선사의 표본 선정

원양산업체 중에서 원양어업회사는 원양어업 단독회사와 합작회사로 구분하였다. 원양어업 단독회사의 경우에는 70개사 중에서 2개사가 휴업 또는 도산하여 68개사가 최종 표본에 포함되었다. 이들 68개사는 총 321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업체 조사인 원양어업단독사의 최종표본은 68개사로 하였다. 그러나 68개사의 총 척수인 321척에 대해 전수 조사 방침을 정했으나, 업체 전수조사 이외에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경영조사에 대한 예비조사 과정에서 업계에서 설문조사의 어려움을 제기하여 보유 어선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하였다.

원양어업(단독) 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선에 대한 표본추출 방법은 업종별·톤수별로 구분하고, 모집단의 척수를 고려하였다. 우선 업종별로는 꽁치붕수망, 대서양트롤, 모선식외줄낚시, 북양트롤, 오징어꽁치겸업, 오징어채낚기, 인도양트롤, 저연승, 참치선망, 참치연승, 태평양트롤, 통발저연승으로 업종을 구분하였다. 톤수는 최소 199톤 미만, 200톤~499톤, 500톤~1599톤, 1600톤~2999톤, 3000톤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대상 표본어선의 선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사업체에 1척씩 할당하여 모든 사업체의 조사시에 최소 1척의 어선이 표본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업종

및 톤수 그룹을 고려하여 할당하였다. 마지막으로 10척 이상 초과시 마다 1척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동원수산(17척), 사조오양(12척), 신라교역(17척), 아그네스수산(14척)에 대해서는 각각 2척을, 동원산업(38척), 인성실업(12척)은 각각 3척을, 마지막으로 사조산업은 40척을 보유하고 있어 업종별·톤급을 고려하여 4척을 표본으로 하였다.

〈표 3-4〉 원양어업(단독) 선사의 표본어선 선정

업종	톤수	모집단수	표본수
꽁치붕수망	200~499	1	1
대서양트롤	~199	4	1
	200~499	40	11
	500~1599	1	1
	1600~2999	1	1
	3000~	2	1
	결측	3	0
모선식외줄낙시	200~499	6	2
	500~1599	1	1
북양트롤	200~499	2	2
	1600~2999	1	1
	3000~	2	2
오징어꽁치겸업	200~499	13	8
	500~1599	5	2
	결측	1	0
오징어채낙기	200~499	15	4
	500~1599	5	3
	결측	1	0
인도양트롤	200~499	4	2
	500~1599	2	1
저연승	200~499	3	1
참치선망	~199	1	1
	500~1599	25	3
	1600~2999	3	1
	결측	1	0
참치연승	200~499	142	15
	결측	2	0
태평양트롤	~199	7	4
	200~499	10	5
	500~1599	6	3
	결측	2	0
통발저연승겸업	200~499	5	2
	500~1599	3	2
	결측	1	0
합 계		321	81

원양어업(합작) 선사의 어선을 톤급별로 구분하면, 500~1599톤이 8척, 1600~2999톤이 2척, 3000톤 이상이 10척이며, 결측 7척을 포함하여 총 27척의 어선이 있다. 이중 표본 어선수는 500~1599톤에서 5척, 1600~2999톤에서 2척, 3000톤 이상에서 7척으로 하였다.

〈표 3-5〉 원양어업(합작) 선사의 톤급별 표본어선수

톤급별 그룹	어선수	표본어선수
500~1599	8	5
1600~2999	2	2
3000~	10	7
결측	7	4
합계	27	18

따라서 합작회사는 17개사가 원양정책과에 신고한 회사들로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체 조사는 전수조사로 하되 총 20척(7척 결측 제외) 중 각 회사별로 1척이 표본에 포함되도록 하고, 톤급별 그룹을 토대로 표본어선수를 할당하였다.

〈표 3-6〉 원양어업(합작) 선사의 표본대상 선박

업체명	보유어선수	표본대상선박	톤수
사조대림	1	MYS YEKATERINY	1,457
사조산업	2	YANTAR-1	2,146
사조오양	1	ZALIV ZABYAKA	4,986
(주)동남	4	yugo vostock	3,099
		yugo vostock3	708
신라교역	2	PROLIV LONGA	2,208
인성실업	1	MASTER	3,514
조나단피셔리	1	BEREZINA	4,407
명성피셔리	1	mys rubicon	1,457
한성기업	2	PROLIV STARKA	3,918
극동수산	1	oriental discoverer	4,407
성경수산	2	CAROLINA-33	979
청빙수산	1	MIKHAIL STARITSYN	795
상일교역	1	BAZHENOVSK	4,457
코엑심	1	선박명없음	
참한수산	1	outlaw V	
에이스수산	2	ANEXL	
원경수산	3	MAR DE ROSS	

4. 원양어업관련사업의 모집단 및 표본의 선정

가. 선정기준

‘원양어업관련사업’의 법적 범위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3호 “원양어업관련사업”이란 ①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②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따라서 ‘원양어업관련사업(자)’의 법적 기준을 적용하면, ‘원양어업관련사업(자)’는 국적여부, 해외수산자원개발 기여 등의 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국적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사업에 투자한 지배주주의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둘째, 해외수산자원 개발 기여를 기준으로 보면, 원양어업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이용하거나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이용하여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동 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의 합작으로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시설이나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수산자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용자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원양산업발전법의 기준으로는 ‘원양어업관련사업(자)’의 선정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세 가지 정도의 추가적인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원양어업관련사업(자)’의 지분구조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단독 사업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과의 합작인 경우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법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합작기준을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50% 초과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체 내에서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매출액 기준으로 30% 이상이 원양어업관련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을 일반적으로 주된 산업 활동, 부차적 산업 활동 및 보조적 활동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산업 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주된 산업 활동이란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가 가장

큰 활동을 말하며 부차적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 이외의 재화생산 및 서비스제공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원양어업관련사업(자)’는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한국 기업과의 거래실적이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표 3-7> 원양어업관련사업의 대상 요건

업종	법적 요건	조작적 요건
원양어업관련사업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3호 동법 시행령 제2조 3호	- 합작기준 50% 초과 - 업체의 매출액 기준 30% 이상이 원양어업관련사업과 연관 - 한국과의 거래실적

나. 선정결과

원양어업관련사업자는 법적 범위인 가공, 양식, 유통·판매, 운반업 4개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업체들에 대한 리스트는 기재부의 해외진출기업리스트와 코트라외의 해외진출기업리스트, 대한상공회의소의 각 나라에 만들어진 지소에서 제작된 해외진출기업리스트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확인 작업을 통해 선정된 업체들을 업종별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해외진출 가공업체는 37개사, 양식업체는 2개사, 수출입/도소매 업체는 9개사, 원양수산물을 운반하는 운반업체는 3개사로 나타났다. 최종 원양어업관련사업자는 총 51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양산업의 외연확대를 위해서는 ‘원양어업관련사업’에 수산물 운반·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원양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보완하는 대리점, 어분 및 사료 제조업, 어망·어구 제조업 등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표 3-8> 원양어업관련사업 업종별 표본

구 분	원양어업관련사업자				합계
	가공	양식	수출입/도소매	운반	
업체 수	37	2	9	3	51

5. 최종 표본수

원양산업체 예비조사의 최종 표본수는 원양어업 단독 업체 68개사(전수) 및 81척(표본), 합작 업체 17개사(전수) 및 18척(표본), 원양어업관련사업자 51개사(표본)를 포함하여 136개사가 대상이 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상에 포함은 되지 않으나 해외수산업의 네트워크 구축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미신고·미허가 원양어업과 해외교민사업자에 대해서는 표본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인적사항 및 수산물 생산량 정도의 기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표 3-9〉 원양산업체 예비조사의 최종 표본수

구 분	원양어업		원양어업관련사업자					표본 합계	해외교민사업자			
	단독 업체	합작 업체	가공	양식	수출입/ 도소매	운반	합계		자원개발 기여 ¹⁾	개별경영 기여 ²⁾		
											(척수)	(척수)
표본수	68	(81)	17	(18)	37	2	9	3	51	136	2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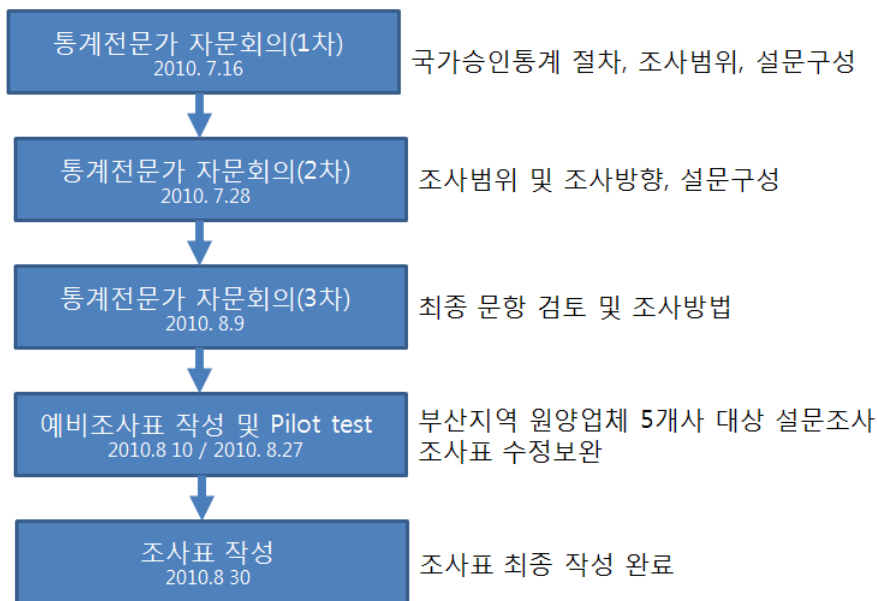
- 주 1: 미신고·미허가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농림수산물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교민사업자가 해외에서 현지 허가를 통해 조업하는 회사들로 원양산업발전법 상의 대상은 아님
 2: 해외교민사업자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교민들의 수산업 관련 업체들로 원양산업발전법상의 대상은 아님

제4절 조사표의 작성

1. 조사표의 작성절차

원양산업총조사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해 통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3차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1차 자문회의에서는 국가승인통계 절차, 조사범위, 설문구성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2차 자문회의에서는 조사범위 및 조사방향, 설문구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자문회의에서는 최종 문항을 검토하고 조사방법에 대해서 확정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조사표를 작성하고 부산지역 원양업체 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표를 수정·보완한뒤, 조사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였다.

〈그림 3-2〉 조사표의 작성절차



2. 조사표의 유형

원양산업총조사의 조사표는 조사대상 표본의 모집단 그룹에 따라서 「조사표」를 유형화하여 작성하였다. 작성된 조사표의 유형은 원양어업조사표, 합작어업조사표, 해외양식업조사표, 해외수산제조업조사표, 해외유통업조사표로 총5가지 형태로 작성하였다.

〈표 3-10〉 원양산업통계 조사표의 유형

구분	표본의 모집단 그룹	주요 조사 항목			비고
		일반 사항	생산 현황	경영 현황	
원양어업 조사표	원양어업	- 창설현황, 소재지, 조직 - 원양어선(톤수, 진수일, 업종)	- 연간 매출액 -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 - 어선원 현황	- 제조원가 - 판매비/관리비 - 연간어로원가	사업체별 선박별
합작어업 조사표	합작어업	- 진출국가, 진출년월, 투자금액 및 비중	- 연간 매출액 -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 - 어선원 현황	- 제조원가 - 판매비/관리비 - 연간어로원가	사업체별 선박별
해외양식업조사표	원양어업 관련 사업	- 진출국가, 진출년월, 투자금액 및 비중, 양식장 면적	- 연간 매출액 - 연간 생산현황 - 종사자수	- 제조원가 - 판매비/관리비 - 연간양식원가	사업체별
해외수산제조업 조사표		- 진출국가, 진출년월, 투자금액 및 비중, 제조공장 면적	- 연간 매출액 - 연간 생산현황 - 종사자수	- 제조원가 - 판매비/관리비 - 연간제조원가	사업체별
해외유통업 조사표		- 진출국가, 진출년월, 투자금액 및 비중, 취급 제품 현황	- 연간 매출액 - 연간 거래량 - 종사자수	- 원료구매/수입 - 제품판매/수출	사업체별

3. 조사표 작성시 표준분류 체계

원양총조사 조사표의 표준 분류체계는 어업총조사, 원양산업 총조사연보를 참조하여 <표 3-10>과 같이 작성하였다.

첫째, 원양어업은 11개 업종(참치연승, 저연승, 참치선망, 원양봉수망, 북양트롤, 해외트롤, 새우트롤, 오징어채낚기, 원양외줄낚시, 모선식외줄낚시, 기타)으로 구분하고, 조업수역 및 해구는 18개(대서양(북서부, 북동부, 중서부, 중동부, 동북부, 서남부, 동남부), 남빙양(서부, 중부, 동부), 인도양(서부, 동부), 태평양(북서부, 중북부, 중서부, 중동부, 서남부, 동남부))로 구분하였다. 원양수산물은 64개(어류 55개(가오리류~기타어류), 갑각류 4개(게류~), 연체동물 5개(갑오징어~)) 품종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양식업은 9개(가두리식, 축제식, 수조식, 연승식, 투석식, 살포식, 지주식, 부류식, 기타) 양식방법으로 분류하고, 양식수산물은 42개(어류 16개(광어~), 갑각류 2개(대하, 기타갑각류), 패류 10개(굴류~), 기타수산동물 3개(멍게, 미더덕, 기타 수산동물), 해조류 7개(김~), 종묘생산 4개) 품종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제조업과 기타 수출입 및 도소매업의 제품은 14개(소건품, 연건품, 자건품, 염장품, 염신품, 통조림, 냉동품, 해조제품, 한천, 연제품, 조미가공품, 어유분, 수산피혁품,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원양수산물 64개, 양식 수산물은 42개로 분류하였다.

〈표 3-11〉 원양총조사 조사표의 표준 분류체계

구분	분류체계	분류 수	내용
원양어업 (단독 및 합작)	업종	11개	참치연승, 저연승, 참치선망, 원양봉수망, 북양트롤, 해외트롤, 새우트롤, 오징어채낚기, 원양외줄낚시, 모선식외줄낚시, 기타
	조업수역 및 해구	18개	대서양(북서부, 북동부, 중서부, 중동부, 동북부, 서남부, 동남부), 남빙양(서부, 중부, 동부), 인도양(서부, 동부), 태평양(북서부, 중북부, 중서부, 중동부, 서남부, 동남부)
	원양 수산물	64개	어류 55개(가오리류~기타어류), 갑각류 4개(계류~), 연체동물 5개(갑오징어~)
양식	양식방법	9개	가두리식, 축제식, 수조식, 연승식, 투석식, 살포식, 지주식, 부류식, 기타
	양식 수산물	42개	어류 16개(광어~), 갑각류 2개(대하, 기타갑각류), 패류 10개(굴류~), 기타수산동물 3개(멍게, 미더덕, 기타 수산동물), 해조류 7개(김~), 종묘생산 4개
제조, 기타 수출입 /도소매	제품분류	14개	소건품, 연건품, 자건품, 염장품, 염신품, 통조림, 냉동품, 해조제품, 한천, 연제품, 조미가공품, 어유분, 수산피혁품, 기타
	원양 수산물	64개	어류 55개(가오리류~기타어류), 갑각류 4개(계류~), 연체동물 5개(갑오징어~)
	양식 수산물	42개	어류 16개(광어~), 갑각류 2개(대하, 기타갑각류), 패류 10개(굴류~), 기타수산동물 3개(멍게, 미더덕, 기타 수산동물), 해조류 7개(김~), 종묘생산 4개

4. 경영현황 작성

원양총조사 조사표의 경영현황(유형자산, 제조원가 및 판관비)에 대한 항목은 전국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를 참고하였고, 이를 토대로 원양어업의 특징이 있는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추가하였으며, GDP 추계에서 부가가치가 도출 가능하도록 항목을 구성하였다.

첫째, 원양어업(합작 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유형자산에서 어망·어구, 어선을 추가하였으며, 업계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건설 중인 자산 항목을 제외시켰다. 제조원가와 관련해서는 어선어업에서 원료비, 인건비, 수선비 등의 비중이 높으므로 별도의 항목으로 두었고, 인건비에는 급여, 퇴직금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시켰다.

둘째, 원양어업관련사업은 어선어업보다는 제조업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광업·제조업 조사의 유형자산 항목과 제조원가 및 판관비 항목을 차용하였다.

〈표 3-12〉 원양총조사 조사표의 경영현황 작성

구분	유형자산	제조원가 및 판관비
원양어업 (단독 및 합작) : 어선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어망·어구, 어선(감가상각된 장부가액), 기타(차량·공구·가구·비품)	원(부·보조)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수도비),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인건비(급여, 퇴직금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수선비(수리유지비), 감가상각비, 임차료(부지·건물·기계), 세금과 공과, 대손상각비, 광고선전비, 운반·하역·보관비, 기타(보험료, 접대비 등)
원양어업 관련사업 (양식, 제조, 기타 수출입 /도소매)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차량운반구, 기타(차량·공구·가구·비품), 건설중인 자산	원(부·보조)재료비, 전력비·가스수도비(연료비, 유류비 포함),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인건비(급여, 퇴직금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수선비(수리유지비), 감가상각비, 임차료(부지·건물·기계), 세금과 공과, 대손상각비, 광고선전비, 운반·하역·보관비, 기타(보험료, 접대비 등)
광업·제조업 조사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차량운반구, 기타(차량·공구·가구·비품), 건설중인 자산	원(부·보조)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수도비),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수선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부지·건물·기계), 세금과 공과, 대손상각비, 광고선전비, 운반·하역·보관비, 기타(급여, 감가상각, 보험료, 접대비)

5. 생산 및 판매현황 작성

원양총조사의 생산 및 판매현황에 대한 조사표의 내용은 크게 원양어업(합작포함), 원양어업관련사업(양식업, 제조업, 기타 수출입 및 도소매)로 구분하여 <표 3-5>와 같이 작성하였다.

첫째, 원양어업(합작포함)은 출어별 선원승선 현황, 연간 어로원가, 생산 및 판매현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출어별 선원승선 현황은 해구번호, 출어횟수, 실조업일

수, 조업국, 기타, 내국인/외국인 승선 현황(항해사, 기관사, 부원 구분)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연간 어로원가는 출어비(어구비, 유류비, 입어료, 이료비, 운반비, 소모품비, 주부식비, 수리비, 항만비, 기타), 임금 및 관리비(선원임금,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기타)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산 및 판매현황은 어획품종 번호, 해구번호, 생산량(톤), 국가별 판매현황, 판매금액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원양어업관련사업의 경우에 양식업은 연간 양식원가 산출을 위해 사료비, 치어/치패 구입비, 전기비(유류비), 운반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생산 및 판매현황의 파악을 위해 양식품종 번호, 양식방법 번호, 생산량(톤), 국가별 판매현황, 판매금액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제조업은 생산 및 판매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품목 번호, 수산물 주/부재료, 생산량(톤), 국가별 판매현황, 판매금액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수출입 및 도소매의 원료구매 및 수입현황에 대해서는 구매 및 수입품목 번호, 수산물 재료 부호, 국가별 수입현황, 구매금액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제품판매 및 수출현황에 대해서는 판매 및 수출품목 번호, 수산물 재료 부호, 국가별 현지 판매 및 수출량, 판매금액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 3-13〉 원양총조사 조사표의 생산 및 판매현황

구분	세분류	내용	
원양어업 (단독 및 합작)	출어별 선원승선 현황	해구번호, 출어횟수, 실조업일수, 조업국, 기타, 내국인/외국인 승선 현황(항해사, 기관사, 부원 구분)	
	연간 어로원가	출어비(어구비, 유류비, 입어료, 이료비, 운반비, 소모품비, 주부식비, 수리비, 항만비, 기타) 임금 및 관리비(선원임금,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기타)	
	생산 및 판매현황	어획품종 번호, 해구번호, 생산량(톤), 국가별 판매현황, 판매금액	
원양 어업 관련 사업	양식	연간 양식원가	사료비, 치어/치패 구입비, 전기비(유류비), 운반비, 기타
		생산 및 판매현황	양식품종 번호, 양식방법 번호, 생산량(톤), 국가별 판매현황, 판매금액
	제조	생산 및 판매현황	제품품목 번호, 수산물 주/부재료, 생산량(톤), 국가별 판매현황, 판매 금액
	기타 수출 입/도 소매	원료구매 및 수입현황	구매 및 수입품목 번호, 수산물 재료 부호, 국가별 수입현황, 구매금액
제품판매 및 수출현황		판매 및 수출품목 번호, 수산물 재료부호, 국가별 현지 판매 및 수출 량, 판매금액	

제5절 조사표 설계

1. 원양어업(합작 포함) 조사표

1) 총괄

① 인적사항

원양어업 조사표의 인적사항은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로 구성된다. 사업체명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이름을 기입하고, 이름은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는 대표자 이름을 기입하도록 한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해당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번호를 기입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리를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를 기입한다. 대표자명은 1명만 기입하고, 남녀를 구분하도록 한다.

〈그림 3-3〉 원양어업 조사표의 인적사항

1. 사업체명			2. 사업자 등록번호	□□□ - □□ - □□□□□□	
3. 대표자명	① 남 ② 여		4. 창설연월	□□□□년 □□월	
5. 소재지	(광역)시·도	구	리	번지	호 동 반
	읍·면(법정)동		동	총	호
	빌딩·시장·상가				

창설연월은 현행 사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연월을 기입하고, 창설연월 변경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의 <표 3-6>을 따른다. 창설연월 변경한 때를 기입하는 경우에는 주요업종(산업대분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을 경우(개인회사→법인회사),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이다. 법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와 상속으로 인해 개입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지만 창설연월을 변경하지 않는다. 소재지의 기입은 법정동명과 번지 호수까지 기입하고, 아파트식 공장, 빌딩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동과 호까지 정확하게 기입한다.

〈표 3-14〉 기업의 창설연월 판단기준

구분	내용
창설연월 변경한 때를 기입	① 주요업종(산업대분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조직형태가 변경 되었을 경우(예: 개인사업체⇒회사법인) ③ 대표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지만 창설연월을 변경하지 않음	① 법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② 상속으로 인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합작어업의 경우에는 단독어업의 설문 문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사업체명은 실제 해외에 진출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이름을 기입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하여 진출국가를 명시하고, 해당국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도록 한다. 또한 소재지는 진출한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주소를 영문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모기업은 합작을 통해 진출한 사업체의 국내 모기업 정식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모기업 주소는 모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국내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입하게 한다. 또한 투자금액은 합작시 모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달러로 기입하고, 투자비율은 합작시 투자금액 중 내국인 및 외국인 비율을 %로 기입하고 합계는 100%가 되도록 한다.

〈그림 3-4〉 합작어업의 인적사항

1. 사업체명	국문 :	2. 사업자 등록번호	진출국가 :
	영문 :		해당국 사업자 등록번호 :
3. 대표자명	① 남 ② 여		4. 창설연월
□□□□년 □□월			
5. 소재지 (주소)			
6. 모 기업	모기업명 :		
	모기업 주소 :		
7. 투자금액 (\$)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동
8. 투자비율	내국인		외국인
	%		%

② 조직형태

원양어업의 조직형태는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 이외의 법인으로 구분한다. 개인사업체는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도 포함

한다. 회사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조직체이고, 회사 이외의 법인은 상법의 민법에 의한 재단·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을 말한다. 재무제표의 작성여부는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만 기입하도록 하고, 법인등록번호는 조직형태가 회사법인, 회사 이외의 법인인 사업체만 기입하도록 한다. 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 등기소에 처음 등록할 당시 법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번호를 기입하고 조직형태가 변경되면 법인등록번호도 변한다.

<그림 3-5> 원양어업 조사표의 조직형태

6. 조직형태	① 개인사업체 : 재무제표 작성여부 ① 작성 ② 미작성	구 분	법인등록번호									
	② 회사법인		① 단독사업체	구분	조	전역	해역	심역	역	전산	해역	
	③ 회사이외법인		② 본사, 본점 등	자산총계								
			③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 : 본사소재지 _____ 시도 _____ 구군	자본금								
			자본잉여금									

조직형태가 회사법인과 회사 이외의 법인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단독 사업체 여부를 <표 3-7>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독사업체는 다른 장소에 본사(점) 또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없이 한 장소에 하나의 사업체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본사 및 본점 등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영 하에 있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공장 등을 1개 이상 거느리며 사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체가 해당된다. 공장, 지사(점), 영업소는 동일 경영을 총괄하는 본사 등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본사 등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있는 사업체가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를 시도, 구군 단위까지 기입하도록 한다.

<표 3-15> 단독사업체 여부의 판단기준

구분	내용
① 단독사업체	- 다른 장소에 본사(점) 또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없이 한 장소에 하나의 사업체만 있는 경우
② 본사, 본점 등	- 동일한 경영 하에 있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공장 등을 1개 이상 거느리며 사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체
③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	- 동일 경영을 총괄하는 본사 등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본사 등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있는 사업체 - 이 경우 본사소재지를 시도, 구군 단위까지 기입

자산과 자본에 대한 항목은 사업체가 ‘단독사업체’이거나 ‘본사, 본점 등’인 경우만 기입하도록 하고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 자본금(출자금)과 자본잉여금을 각각 기입하도록 한다.

③ 종사자 수 및 연간급여액

원양어업 조사표의 종사자 수 및 연근급여액 관련 조사 내용에서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는 어선원과 어선관리 관련 업무의 종사자 수를 기재하며, 사업체 내의 유통업이나 가공업 등 원양어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 기재함. 기재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또한 사업체 전체 종사자는 조사대상 기업이 원양어업 이외에 유통업, 가공업 등을 경영하는 경우에 회사의 종업원을 모두 합산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대규모 그룹의 경우에는 그룹 전체 종사자를 기입한다.

<그림 3-6> 원양어업 조사표의 종사자 수 및 연간급여액

7. 종사자수 및 연 급 액			종사자 수(2009년 12월 31일 기준)			연간급여액(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남	여	계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어선원 및 어선관리 관련 종사자 기재)	내국인	① 상용근로자(선원 포함)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③ 기타종사자										
		소계 (①+②+③)										
	외국인(선원 포함)											
사업체(그룹) 전체 종사자 (문류, 유통, 가공 등 모두 포함)												

내국인의 근로자 구분에 대해서는 <표 3-8>에 따른다. 상용근로자는 한국국적이며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선원을 포함)를 말하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한국국적이며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이다. 마지막으로 기타종사자는 한국국적이며 기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음.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이외의 국적이며 육상근로자 및 선원을 포함하여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표 3-16〉 종사자의 판단기준

구 분		내 용
내국인	① 상용근로자	한국국적이며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선원을 포함)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한국국적이며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③ 기타종사자	한국국적이며 기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음.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경우 등)
외국인	한국 이외의 국적이며 육상근로자 및 선원을 포함하여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기재	

연간급여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연간 급여액을 합계하여 기입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또한 연간급여액은 퇴직금,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이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은 포함하며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액이다. 만약 2008년 이전의 체불급여를 2009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2009년 중에 지불해야 할 급여액을 지불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액은 포함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종사자는 별도 구분 없이 총합계만을 기입하도록 한다.

④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

원양어업 조사표의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과 관련한 기준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의 보유 어선 척수를 기입하고, 2009년 12월 31일 기준의 보유 어선 총톤수를 기입한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총 생산량을 M/T 단위로 기입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총 생산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입한다.

〈그림 3-7〉 원양어업 조사표의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

8.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	어선척수(2009년 12월 31일 기준)		연간생산량(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어선 총 척수	보유 어선 총 톤수	연간 총 생산량	연간 총 생산금액
	척	G/T	M/T	백만원

⑤ 어선원 현황

원양어업 조사표의 어선원 현황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을 구분하여 기입하고,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부원 등 지급별 총 승선원수와 1인당 월평균임금(단위: 천원)을 기입한다.

〈그림 3-8〉 원양어업 조사표의 어선원 현황

9. 어 선 원 현 황	(2009년 12월 31일 기준)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부원																																								
		선장	1항사	2항사	3항사	기관장	1기사	2기사	3기사		갑판부	기관부	조리부																																						
		내국인 선원 승선원	총 승선원수														월평균임금 (천원)												외국인 선원 승선원	총 승선원수													월평균임금 (천원)								
	월평균임금 (천원)												외국인 선원 승선원	총 승선원수													월평균임금 (천원)																								
외국인 선원 승선원	총 승선원수													월평균임금 (천원)																																					
	월평균임금 (천원)																																																		

⑥ 유형자산

원양어업 조사표의 유형자산은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및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을 말한다. 유형자산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활동과 관련있는 자산만을 기입하고, 동일 기업내 타 사업체의 유형자산은 포함하지 않고 임차사용 자산은 미포함한다. 재무상태를 참조하여 작성시 해당 사업체 부분만큼 분리하여 기입하도록 하며, 원양어업 사업체와 합작어업 사업체가 동시운영되는 경우, 조사표 종류에 따라 분리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작성시에는 해당업체의 “유형자산명세서”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표 3-17〉 원양어업 조사표의 유형자산의 내용

구 분	내 용
①토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와 운동장, 기숙사, 사택 등의 대지
②건물	공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 및 승강기·냉방·통풍장치 등 이들의 부속시설
③기계장치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 각종 기계류 및 기계장치 부설 설치물, 시설장치, 요(窯), 로(爐) 등 포함
④어망·어구	원양어선의 조업에 사용되는 전체 어구와 어망
⑤어선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어선의 장부가격(감가상각된 가격 반영)
⑥기타(차량·공구·가구, 비품 등)	1년 이상 내구성이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 등으로 ①~⑤까지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유형자산을 포함함

⑦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원양어업 조사표에서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는 총 14개 항목(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인건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대손상각비, 광고선전비, 운반·하역·보관비,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총 14개 항목에 대한 설명은 <표 3-10>과 같다.

<표 3-18> 원양어업 조사표의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내용

구분	내용
① 원(부·보조·포장)재료비	-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주요재료, 보조재료, 부속품 등의 사용 금액 - 당해연도 제품생산에 실제로 투입된 원재료비만 기입하며, 구입한 원재료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나 연말재고액이 포함되지 않음(미사용분 제외)
② 연료비	- 가열료(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발전용 등으로 사용한 석탄류, 유류 등 모든 연료비 금액
③ 전력비	- 구입 사용한 전력요금
④ 용수비(수도비)	- 생산에 사용된 것은 물론 사무실용, 종사자의 음료용 등을 포함한 모든 용수의 요금
⑤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 제품생산을 위해 타 사업체(수탁사업체)와 가사노동자에게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여 가공시키고 반제품, 부분품 또는 완제품형태로 그것을 인수할 경우 외주작업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
⑥ 인건비	-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작성 - 복리후생비 : 종사자의 복지 및 후생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 (구내식당 운영보조비, 치료보조비, 장학금, 경조비, 체육행사비, 복리후생시설, 직원 신체검사비, 피복비 등) - 퇴직금 및 퇴직급여 : 장부기장 사업체에서는 당해연도 퇴직급여를 기입하며 미기장 사업체는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을 기입
⑦ 수선비(수리유지비)	- 건물 또는 기계장치의 현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선한 비용 지출을 기입
⑧ 감가상각비	-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의 대상임(예외: 토지,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⑨ 임차료(부지·건물·기계장비 등)	-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을 임차한 경우에 연간 지급되는 임차료
⑩ 세금과 공과(내국소비세 제외)	- 세금과공과란 영업과 관계되는 조세 및 공과금으로 세금은 사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등의 세부담액(개인사업체의 소득세, 법인세는 세금과공과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과금은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과 같이 영업과 관계되는 공공적 지출로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⑪ 대손상각비	-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구분	내용
⑫ 광고선전비	- 기업이 상품, 제품, 용역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선전효과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
⑬ 운반·하역·보관비	- 운반비 : 물자를 물류거점관 및 소비자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 하역비 : 물자의 운송과 보관활동에 있어서 동일 시설 내에서 물자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 보관비 : 물자를 창고(물류센터)등에 보관하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⑭ 기타(보험료, 접대비 등)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중 “①원재료비~⑬운반·하역·보관비” 외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비의 합계

⑧ 매출액

원양어업 조사표에서 재고를 제외한 연간매출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으로 하고 총출하액 중 재고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한다. 또한 원양어업 분야 매출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 중에서 원양어업과 관련된 매출액만 기입하도록 한다.

〈그림 3-9〉 원양어업 조사표의 매출액 현황

12. 연 간 매 출 액 (재고제외)	연간매출액(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기준)							13. 원양어업 분야 매 출 액	원양어업분야 매출(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기준)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2) 보유 원양어선별 생산 및 경영현황

① 보유어선 현황

원양어업 조사표의 보유어선 현황은 현재 보유 중인 선명과 톤수, 진수년월을 기입한다.

〈그림 3-10〉 원양어업 조사표의 보유어선 현황

1. 보 유 어 선 현 황	선 명	톤 수 (G/T)	천	백	십	일	단위미만	진수년월	()년()월()일
								업 종	(예: 광치면등어면 101)

원양어업의 업종은 11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업종별 부호 코드를 확인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표 3-19〉 원양어업의 업종별 부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참치연승	101	원양붕수망	104	새우트롤	107	모선식의줄납시	110
저연승	102	북양트롤	105	오징어채납기	108	기타	111
참치선망	103	해외트롤	106	원양의줄납시	109		

② 출어별 선원승선 현황

원양어업 조사표의 출어별 승선원 현황은 해구번호, 출어횟수, 실조업일수, 조업국, 기지, 승선원수 및 임금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1〉 원양어업 조사표의 출어별 선원승선 현황

2. 출어별 승선원 현황	해구번호		출어횟수	실조업일수			조업국			기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기원사			동신사	부원			
		선장	1합사	2합사	3합사	기원장	1기사	2기사	3기사	갑판부	기원부	조리부
내국인 선원 승선원 현황	승선원수											
	월평균임금 (\$)											
외국인 선원 승선원 현황	승선원수											
	월평균임금 (\$)											

해구번호는 조사대상 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조업수역을 확인하여 해구번호를 <표 3-12>를 참조하여 기입한다.

〈표 3-20〉 조업수역 및 해구번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대서양	북서부	21	대서양	동남부	47	태평양	북서부	61
	북동부	27		서부	58		중북부	67
	중서부	31	남빙양	중부	88		중서부	71
	중동부	34		동부	48		중동부	77
	동북부	37	인도양	서부	51		서남부	81
	서남부	41		동부	57		동남부	87

출어횟수는 어로작업을 위하여 근거지항을 출항한 후 귀항한 회수를 기입하고, 실조업일수는 출어 후 어장까지의 항해일수, 탐어, 집어 및 어로일수 등을 합한 귀항일까지의 일수로서 연간 총일수를 기입한다. 기지는 출어해서 귀항하는 기지를 기입한다. 승선원수 및 임금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어선에 승선한 내국인, 외국인 선원을 구분하여 기입하고, 직급별(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부원) 승선원수와 월평균임금을 천원 단위로 기입한다.

③ 연간 어로원가

원양어업 조사표의 해당 연간 어로원가는 크게 출어비와 임금 및 관리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출어비는 어구비, 유류비, 입어료, 이료비, 운반비, 소모품비, 주부식비, 수리비, 항만비, 기타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금 및 관리비는 선원임금,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기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의 내용은 <표 3-13>과 같다.

<표 3-21> 원양어업 조사표의 연간 어로원가 내용

구분	항목	내 용
출어비	어구비	조사대상 어선의 어구의 신규구입, 망지, 로프, 부자, 침자, 보망사, 꼴탈 등 어구소모품 구입비
	유류비	조사대상 어선이 증유, 경유, B/A유, 윤활유 등 어선 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 취사 및 난방용 유류나 가스구입비
	입어료	조사대상 어선이 조업국에 입어를 위해 지불하는 금액으로 작성하는 보유선박 한 척에 대한 입어료만 계산하여 기입(여러 척이 공동의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는 경우 척수로 입어료를 나누어 계산)
	이료비	조사대상 어선이 수산물 어획을 위해 사용하는 미끼 구입 비용
	운반비	조사대상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을 양륙하기 위해 사용되는 총 운반 비용
	소모품비	전구, 청소용구, 못, 식도 등 선박 소모품, 장갑, 휴지 등 선원소모품, 어구비, 수리비, 주부식비에 포함되지 않은 제물품 구입비
	주부식비	쌀, 쇠고기, 김치, 양채, 조미료, 식수 등을 포함한 주부식 구입비
	수리비	선체, 기관, 선박기기 관리 및 수리를 위한 부품 및 재료구입비, 선체수선 임부입, 상가비, 기관수리비 등 외부 수리대금
	항만비	기지의 어항이용료 등
	기타	출어비 중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비용(저장대, 용기대, 후생비 등 포함) ※ 저장대는 조사대상 어선이 연간 사용하는 얼음, 소금 구입대금 및 냉동 및 냉장료임 ※ 후생비는 선원주대, 치료비 및 약품대, 담배대 등 선원 후생관련 비용
임금 및 관리비	선원임금	고정급, 깃가림액, 상여금, 퇴직금, 특별수당 등 선원에게 지급한 임금
	조세공과	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어선 입출항수수속비, 조합비 등 공과금
	감가상각비	어선에 대한 감가상각비만 기입
	기타	임금 및 관리비에서 선원임금, 조세공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공제로 및 보험료, 판매비 등을 기입

④ 생산 및 판매현황

원양어업 조사표의 생산 및 판매현황에서 어획품종 및 해구번호를 확인해서 기입하고 각 어획품종 당 생산량과 판매금액을 기입한다. 만약 어획품종이 7종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량이 많은 어획품종 순으로 6종까지 생산량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한 후, 나머지 어획품종은 ‘기타어획 종’ 란에 생산량과 판매량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판매량은 국내판매량과 해외판매량을 나누어서 기입하고, 국가명과 국가당 판매량을 기입하여 국내판매와 해외판매를 합산한 값이 생산량과 일치하도록 하고, 해외판매국가 3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판매량이 많은 국가 순으로 2개국까지 국가명과 판매량을 기재한 후, 나머지 국가는 ‘기타국가’란에 판매량만 합산하여 기재한다. 이때 각 국가별 판매량을 합산한 값이 ‘해외판매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그림 3-12〉 원양어업 조사표의 생산 및 판매현황

어획품종 번호	해구번호	생산량(톤)	국내 판매 (톤)	판매현황						판매금액(원)									
				해외판매						천원	백원	십원	원	천원	백원				
				해외판매 합계(톤)	국가1		국가2		기타국가										
					국가명	판매량(톤)	국가명	판매량(톤)								판매량(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어획 품종																			
합계																			

* 어획품종이 7종 이상인 경우, 생산량이 많은 어획품종 순으로 6종까지 생산량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하고, 나머지 어획품종은 '⑦ 기타 어획 품종'에 생산량과 판매량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해외판매 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판매량이 많은 국가순으로 2개국까지 국가명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하고 나머지 국가는 '기타국가'란에 판매량만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2. 원양어업관련사업

1) 양식업

① 양식장 현황

원양어업관련사업 조사표의 양식어업 양식장 현황에는 양식장 면적, 양식장 종사자, 월평균 임금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양식장 면적은 현재 양식품종

을 생산 및 출하하고 있는 조사대상 양식장의 면적을 ha 단위로 기재하도록 한다. 양식어업 종사자는 조사대상 양식장에서 양식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를 합산한 후, 한국국정과 현지인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마지막으로 월평균임금은 조사대상 양식장에서 양식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을 합산한 후, 한국국적과 현지인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여기서 월평균임금은 고정급, 상여금, 퇴직금, 특별수당 등을 포함하여 종사자에게 지급한 임금이며, 임금의 단위는 달러로 한다.

<그림 3-13> 원양어업관련사업 양식어업 조사표의 양식장 현황

1) 양식장용 면적	양식장 면적 (ha)	전	의	심	밀	단위미만	양식 종사자 및 월평균 임금액	한국 국적 종사자(Korean)		현지인 종사자(Domestic)	
								종사자수	월평균임금(\$)	종사자수	월평균임금(\$)

② 연간 양식원가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연간 양식원가는 사료비, 치어/치패 구입비, 전기비(유류비), 운반비, 기타 등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의 내용은 <표 3-14>와 같다.

<표 3-22> 원양어업관련사업 양식어업 조사표의 연간 양식원가 내용

항목	내용
사료비	조사대상 양식장에서 양식을 위해 사용하는 사료 구입 비용
치어/치패 구입비	조사대상 양식장에서 양식을 위해 사용하는 치어/치패 구입 비용
전기비(유류비)	조사대상 양식장이 양식장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전기료, 증유, 경유, B/A유, 운할 유 등의 유류구입비, 취사 및 난방용 유류나 가스구입비
운반비	조사대상 양식장으로 치어/치패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과 출하한 수산물을 양륙하기 위해 사용되는 총 운반 비용
기타	양식 관련하여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비용(저장대, 용기대, 후생비 등 포함) ※ 저장대는 조사대상 양식장에서 수산물 운반을 위해 사용하는 얼음, 소금 구입대금 및 냉동 및 냉장료임 ※ 후생비는 치료비 및 약품대, 담배대 등 양식업 종사자의 후생관련 비용

③ 생산 및 판매현황

원양어업관련사업 조사표의 양식어업 생산 및 판매현황에서는 양식품종이 7종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량이 많은 양식품종 순으로 6종까지 생산량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

한 후, 나머지 양식품종은 ‘기타 양식 품종’란에 생산량과 판매량을 합산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현지 판매량과 해외 판매량을 나누어서 기입하고, 국가명과 국가당 판매량을 기입한다. 여기서 현지판매는 양식장이 소재한 국가 내에서 판매하는 것이며, 해외판매는 양식장이 소재한 국가를 제외한 국가(한국 포함)이다. 따라서 현지판매와 해외판매를 합산한 값이 생산량과 일치해야 하고, 해외판매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판매량이 많은 국가 순으로 2개국까지 국가명과 판매량을 기재한 후, 나머지 국가는 ‘기타국가’란에 판매량만 합산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이때 국가별 판매량을 합산한 값이 ‘해외판매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그림 3-14〉 원양어업관련사업 양식어업 조사표의 생산 및 판매현황

양식품종 번호	양식방법 번호	생산량 (톤)	판매현황						판매금액(\$)										
			현지 판매량 (톤)	해외판매					역	천만	의만	십만	만	천동					
				해외판매 합계 (톤)	국가		국가								기타국가				
					국가명	판매량(톤)	국가명	판매량(톤)								판매금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양식 품종																			
합계																			

2) 수산물 가공업

① 가공공장 현황

원양어업관련사업 수산물 가공업 조사표의 가공공장 현황에서 공장면적은 현재 제조품종을 생산 및 출하하고 있는, 조사 대상 공장의 면적을 m² 단위로 기재하고, 제조 종사자는 조사대상 공장에서 제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를 합산한 후, 한국국정과 현지인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마지막으로 월평균임금은 조사대상 공장에서 제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을 합산한 후, 한국국적과 현지인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이는 고정급, 상여금, 퇴직금, 퇴별수당 등을 포함하여 종사자에게 지급한 임금이며, 임금의 단위는 달러로 한다.

〈그림 3-15〉 원양어업관련사업 수산물 가공업 조사표의 가공공장 현황

13. 제조공장 현	공장 면적 (㎡)	심안	안	천	회	심	밀	제조 조사자 및 원장 급이름	한국 국외 동시제(Koread)		현지인 동시제(Domestic)	
									동시제수	월평균입금액(\$)	동시제수	월평균입금액(\$)

② 생산 및 판매현황

원양어업관련사업 수산물 가공업 조사표의 생산 및 판매현황 항목은 제조품목 및 투입재료를 확인해서, 각 제조품목 당 생산량과 판매량을 기입하도록 한다. 제조품목이 7종 이상인 경우, 생산량이 많은 제조품목 순으로 6종까지 생산량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한 후, 나머지 제조품목은 ‘기타 제조 품목’란에 생산량과 판매량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제조품목의 ‘투입재료’를 작성할 때 원양수산물과 양식수산물을 구분해야 하며, 부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에는 함량이 높은 부재료 1종만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판매량은 현지판매량과 해외판매량을 나누어서 기입하고, 국가명과 국가당 판매량을 기입하도록 한다. 현지판매는 제조공장이 소재한 국가 내에서 판매하는 것이며, 해외판매는 제조공장이 소재한 국가를 제외한 국가(한국 포함)이다. 따라서 현지판매와 해외판매를 합산한 값이 생산량과 일치해야 하고, 해외판매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판매량이 많은 국가 순으로 2개국까지 국가명과 판매량을 기재한 후, 나머지 국가는 ‘기타국가’란에 판매량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이때 각 국가별 판매량을 합산한 값이 ‘해외판매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그림 3-16〉 원양어업관련사업 수산물 가공업 조사표의 생산 및 판매현황

14. 생산 및 판매현황	* 제조품목이 7종 이상인 경우, 생산량이 많은 제조품목 순으로 6종까지 생산량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하고, 나머지 제조품목은 ㉞ 기타 제조 품목에 생산량과 판매량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제조품목의 부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 함량이 높은 부재료 1종만 기재합니다. * 해외판매국가(제조공장이 소재한 현지국가를 제외한 국가, 한국 포함)가 3개국 이상인 경우, 판매량이 많은 국가순으로 2개국까지 국가명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하고 나머지 국가는 '기타국가'란에 판매량만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생산 및 판매현황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하한 경우입니다.																
	제조품목 부호	투입재료		수산물 생산량 (톤)	현지 판매량 (톤)	판매현황			판매금액(\$)								
		수산물 주재료 부호	수산물 부재료 부호			해외판매			역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천		
						국가 합계 (톤)	국가 별 판매량(톤)	국가 별 판매량(톤)								기타국가 판매량(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제조 품목																	
합계																	

3) 수출입/도소매

① 원료구매 및 수입현황

원양어업관련사업 수출입/도소매 조사표의 원료구매 및 수입현황 항목에서 원료 구매 및 수입품목과 수산물 주재료를 확인해서 기입한다. 원료 구매 및 수입품목이 4종 이상인 경우, 취급량이 많은 품목 순으로 3종까지 현지구매 및 수입현황을 기재하고 나머지 품목은 ‘기타 품목’란에 합산하여 기재한다. ‘수산물 주재료’를 작성할 때 원양수산물과 양식수산물을 구분해야 하며, 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 함량이 높은 재료 1종만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각 품목별로 현지구매현황과 수입현황을 나누어서 기재한다. 현지구매는 조사대상 수출입/도소매 업체가 소재한 국가외의 국가(한국 포함)에서 업체가 소재한 현지로 원료를 수입하는 것이며, 국가명과 국가당 수입량을 나누어서 기입한다. 수입 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량이 많은 국가순으로 2개국까지 국가명과 수입량을 기재하고 나머지 국가는 ‘기타국가’란에 수입량만 합산하여 기재한다. 이때 각 국가별 수입량을 합산한 값이 ‘수입현황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그림 3-17〉 원양어업관련사업 수출입/도소매 조사표의 원료구매 및 수입현황

14. 원료 현지구매 및 수입현황	현지구매 및 수입품목 부호	수산물 주재료 부호	현지구매 현황						수입현황										
			현지 구매량 합계(톤)	구매금액(\$)					수입량 합계(톤)	수입량과 수입국가									
				액	천	백	십	만		국가		국가		기타국가					
										천	백	천	백	천	백				
①																			
②																			
③																			
④ 기타 품목																			
합계																			

② 제품 현지판매 및 수출현황

원양어업관련사업 수출입/도소매 조사표의 제품 현지판매 및 수출현황 항목에서는 현지판매 및 수출품목과 수산물 주재료를 확인해서 기입하도록 한다. 현지판매 및 수출품목이 4종 이상인 경우, 취급량이 많은 품목 순으로 3종까지 현지판매 및 수출현황을 기재하고 나머지 품목은 ‘기타 품목’란에 합산하여 기재한다. ‘수산물 주재료’를 작성할 때 원양수산물과 양식수산물을 구분해야 하며, 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 함량이 높은 재료 1종만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각 품목별로 현지판매현황과 수출현황을 나누어서 기재한다. 현지판매는 조사대상 수출입 및 도소매 업체가 소재한 국가 내에서 수산물 제품을 판매한 것이며, 판매량은 톤 단위로, 판매금액은 달러 단위로 작성한다. 수출은 조사대상 수출입/도소매 업체가 소재한 국가 외의 국가(한국 포함)에서 업체가 소재한 현지로 수산물 제품을 수입한 것이며, 국가명과 국가당 수입량을 나누어 기입한다. 수출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수출량이 많은 국가순으로 2개국까지 국가명과 수출량을 기지하고, 나머지 국가는 ‘기타국가’란에 수출량만 합산하여 기재한다. 이때 각 국가별 수출량을 합산한 값이 ‘수출현황 합계’와 일치하도록 한다.

〈그림 3-18〉 원양어업관련사업 수출입/도소매 조사표의 판매 및 수출현황

15. 제 품 현지판매 및 수출현황	현지판매 및 수출품목 부호	수산물 주지료 부호	현지판매 현황						수출현황											
			현지 판매량 합계(톤)	판매금액(\$)					수출량 합계(톤)	수출량과 수출국가			기타국가 수출량(톤)	수출금액(\$)						
				그	천만	외만	십만	만		천	국가			기타국가	그	천만	외만	십만	천	천
											국가명	수출량(톤)								
①																				
②																				
③																				
④ 기타 품목																				
	합계																			

제4장 원양사업체 현장조사 결과

제1절 현장조사 개요

제2절 현장조사의 절차 및 요령

제3절 단계별 애로사항

제4절 설문조사

제4장 원양사업체 현장조사 결과

제1절 현장조사 개요

1. 현장조사의 목적

현장조사는 본 원양산업 총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계구성 항목의 실제 값을 실제로 현장에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울러 본 현장조사는 원양산업 총조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 수집 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 설계 및 조사절차 등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함께 파악하도록 하였다.

2. 현장조사의 시행 방법

원양산업 총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는 조사대상업체 명부를 확보하는 문제로 인해 2회에 걸쳐 나누어 진행하였다. 1차 현장조사에서는 원양어업과 해외합작어업 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2차 현장조사에서는 기존에 진행하던 조사대상업체 리스트에 원양관련사업 업체명부를 119개를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1〉 원양산업 총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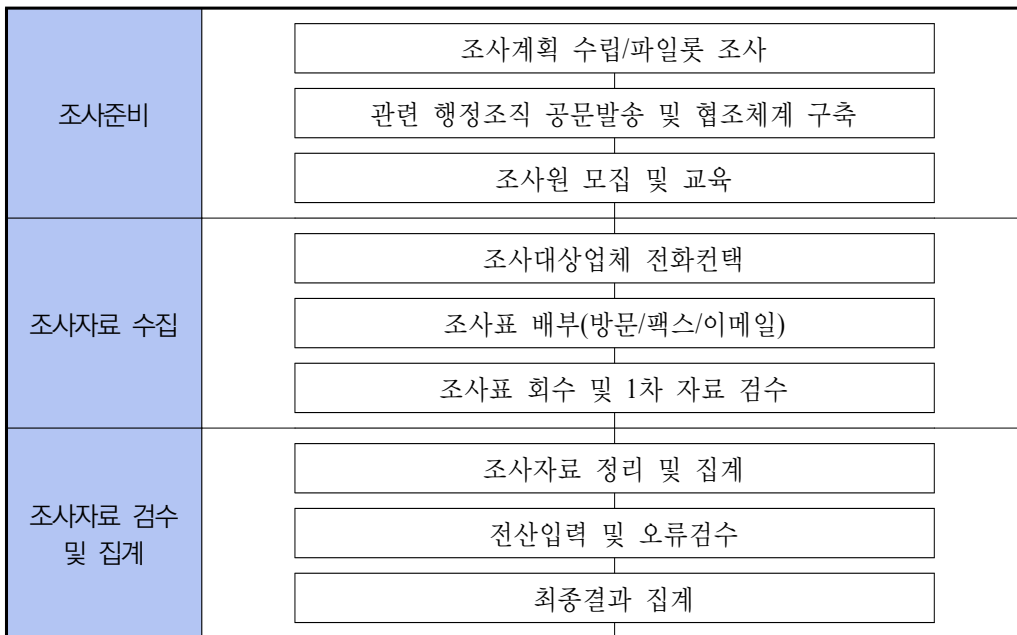
	1차 조사	2차 조사
조사대상	원양어업, 해외합작어업 종사업체	원양관련사업 종사업체
조사대상업체 리스트 표본수	89	119
표본추출	전수조사	
조사방법	조사대상업체의 대표자/임원급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전화컨택 후 방문/이메일/팩스 조사 방법을 병행함	
실사기간	9월 8일~12월 14일	10월 18일~12월 14일

그리고 이렇게 실시된 2차례의 현장조사시 각 조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하였다. 즉 1단계의 조사준비, 2단계의 조사자료 수집, 3단계의 조사

자료 검수 및 집계 과정을 거쳐 각각 진행하였다. 우선 1단계는 조사준비 단계에서는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부산과 서울에 위치한 원양산업체를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정책을 통해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를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기업체 조사에 적합한 수준의 조사원을 모집하고 2차에 걸친 교육을 실시하였다.

2단계는 조사자료 수집단계에서는 조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전화컨택을 시도하였으며, 조사표를 방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배부한 뒤 조사표를 회수하고 1차 자료 검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3단계는 조사자료 검수 및 집계 단계로 조사 자료를 정리하고 집계한 뒤 전산입력 이후 오류를 검수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오류검사의 정확성을 위해 부경대학교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당 업체에 전화해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 최종 결과를 집계하였다.

〈표 4-2〉 조사진행 흐름도



3. 현장조사의 규모

이와 같이 실시된 현장조사는 총 208개 업체에 대해서 진행되었다. 이중 원양어업 70개 업체, 해외합작어업 19개 업체, 원양관련사업 1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원양어업 70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2010년에 도산한 것으로 밝혀져 원양어업 경영체의 모집단은 2010년 기준으로 68개가 되었으며, 해외합작어업은 2개 업체가 휴업을 하여 17개 업체가 모집단으로 확정되었다. 원양어업관련사업자는 119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러나 표본으로 확보한 리스트에서 도산 또는 철수한 업체를 제외한 실제 원양어업관련사업자는 51개사에 불과하였으며, 이중 13개 업체가 응답하였다. 원양어업관련사업자 중 운반업을 하는 사업자는 동원산업이 투자한 시랜드 트레이딩 서비스 코퍼레이션과 지성해운, 영덕해운 등이 있었으나 설문조사 결과 이들 회사들은 주로 원양수산물만 운반하는 회사들이 아닌 일반운송회사들로 설문을 받기가 힘들었다.

〈표 4-3〉 원양산업 부문별 현장조사 규모

구 분	원양어업	해외합작어업	원양관련사업	합계
조사대상	70	19	119	208
최종 표본	68	17	51	136
응답완료	65	17	13	95
응답유보 및 거절	3	0	37	40
도산 및 휴업/연락불가	2	2	68	72

제2절 현장조사의 절차 및 요령

본 현장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현장조사의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조사 지침을 사전에 준비하여 진행하였다.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2]의 「조사지침서」를 참고하라.

1. 조사준비

1) 조사계획 수립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항목을 점검하고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조사대상 업체를 확정하고, 업체명, 업체연락처, 원양산업 종사 분야 등의 기초정보를 수록한 조사대상업체 리스트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조사전체의 일정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다. 조사대상 업체의 소재지와 특성에 따라 조사방법을 다양하게 고려하였으며, 조사표본수와 일정에 따라 조사원 투입/배치를 계획하였다. 조사원 교육자료와 조사지침서를 작성하고 조사에 필요한 준비물(조사대상사업체 명부, 협조공문, 답례품, 조사원 신분증 등)을 준비하였다.

2) 관련행정조직 공문발송 및 협조체계 구축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최소한 실사 2~3일 전에는 조사대상업체에서 조사안내공문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했다.

3)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조사대상업체가 서울, 부산 2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슈퍼바이저를 지역별로 1명씩, 총 2명을 선발하여 지역별로 조사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슈퍼바이저 선발시 업체조사, 수산물 수출입업체조사 등 유사조사 경험여부를 주요하게 고려하였다. 조사원은 사업체 조사 유경험자 중 서울, 부산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였다.

슈퍼바이저 교육을 우선 실시하였고, 이후 조사원 교육에 슈퍼바이저가 참가하도록 하여 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조사원 교육은 지역별로 일괄적으로 실시하였

고, 조사 중 신규 총원 인원에 대해서는 수시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사원의 능력 및 조사결과의 신뢰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조사원 교육시 조사지침서를 통해 조사대상업체 명부 활용법, 조사표 배부요령 등의 조사요령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2. 조사자료 수집

1) 조사대상업체 전화컨택

조사대상 업체에 전화연결시 조사에 대해 안내한 후 응답자 선정, 조사가능 시간과 조사방법(방문/팩스/이메일)에 대해 협의하였다. 전화컨택 중 조사대상 업체에서 휴업/폐업, 업종전환 등의 변동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하였다.

조사대상 업체별로 응답거절과 상관없이 최소 3회 이상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며, 최종 3회 이상 거절한 경우에는 응답자를 대체하거나 조사방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재접촉을 시도하였다.

2) 조사표 배부(방문/팩스/이메일)

조사표 배부 방식은 방문, 팩스, 이메일 방식을 병행하였다. 업체가 국내에 소재한 경우 주로 방문을 통해, 국외에 소재한 경우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조사표를 배부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국내에 소재한 업체 중 응답자가 별도로 요구한 경우에는 팩스/이메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외 소재업체 중 일부는 연구원 출장시 조사표를 배부하고 추후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방문조사 : 업체에 방문하여 응답자에게 업체특성(사업체 분류, 진출국가, 투자법인 수 등)에 맞춰 조사표를 직접 배부하고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다.
- 팩스/이메일 조사 : 팩스번호/이메일로 업체특성에 맞춰 조사표와 조사응답요령 요약을 송부한 후, 응답자에게 전화를 통해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과 조사표 회수일을 전달하며 조사협조를 요청하였다.
- 조사표 배부 이후 응답거절시 응답자를 대체하거나 조사방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업체에 조사협조를 재요청하였다.

- 조사 진행시 조사진행율, 조사원 투입사항 등을 관리하고 조사관련 질문 및 민원 등에 대처하였다.

3) 조사표 회수 및 1차 자료 검수

조사표 회수일자를 조사표 배부 기준 3~5일 이후로 정하여 조사표 회수의 효율성과 응답자 답변의 충실성을 높였다. 조사표 회수시 전화로 조사표 작성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표 회수를 시도하였다. 이때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회수일자를 2~3일 정도 연장하고 응답을 다시 요청하였다. 조사표 회수할 때 현장에서 바로 검토하여 내용이 부실한 부분, 기입이 누락되거나 에러가 난 부분에 대해 점검하여 보완하였다. 사례품을 증명하고 검증을 위해 전화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 후 조사를 종료하였다.

3. 조사자료 검수 및 집계

1) 조사자료 정리 및 집계

각 지역의 슈퍼바이저는 완료된 조사표와 조사대상 명부를 상호대조하여, 조사대상기업체에서 응답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다. 조사원이 현장에서 1차 검수한 조사표 전체에 대해 각 지역의 슈퍼바이저가 2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화검증을 통해 오류가 발견된 경우 조사표를 수정작성할 수 있도록 업체에 재요청하였으며,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원이 회수한 조사표 전체를 다시 검증하였다.

2) 전산입력 및 오류검수

전화검증이 완료된 조사표는 입력과정에서 논리적 에러를 검증하였다. 입력시 에러가 발생한 조사표는 전화확인 작업을 거치거나 업체에 재조사하도록 하였다. 자료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으로 데이터클리닝 작업을 시행하였다.

3) 최종결과 집계

마지막으로 기존 조사자료나 타업체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결과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표 4-4〉 조사 상세진행절차 및 일정

단계별 조사진행 절차		일정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조사 준비	예비조사	■																	
	1차 본조사 준비 - 조사표 검토 - 조사업체명부 확정 - 조사지침서 등 조사 준비물 준비	■	■																
	2차 본조사 준비 - 조사표 검토 - 조사업체명부 확정 - 조사지침서 등 조사 준비물 준비								■	■									
	조사원 모집/교육		■	■															
	조사협조공문발송				■														
조사 자료 수집	1차 본조사 실시 - 전화컨택 - 조사표 배부				■			■	■	■	■	■	■	■	■	■	■	■	■
	2차 본조사 실시 - 전화컨택 - 조사표 배부											■	■	■	■	■	■	■	■
	조사표 회수 및 1차 자료 검수							■	■	■	■	■	■	■	■	■	■	■	■
검수/ 집계	조사표 재검수 및 전산입력												■	■				■	■

제3절 단계별 애로사항

1. 조사준비 단계

원양산업통계 기초조사 시작 시점에 한국원양산업협회, 농림수산식품부, 코트라, 기획재정부를 통해 조사리스트를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조사준비 단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조사대상업체 명부에서 폐업 및 업종변경, 결번/오번이 다수 발견되면서 조사일정에 차질이 있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업체의 사업체 분류, 진출국가, 투자법인수, 대표연락처 등의 업체정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본조사를 시작할 때는 관계기관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업체에 대한 최신정보를 수집하여 업체 DB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초조사 시작시점이 하반기에 시작되어 경영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중 하반기는 각 사업체가 일정이 바쁠 때이며 담당자가 장기출장인 경우도 다수 있었다. 또한 본 시범조사 중에는 장기간의 추석연휴가 있어 조사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 오는 상황도 일부 발생하였다. 따라서 사업체의 일정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5~6월경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조사협조를 원활하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업체의 회계결산이 마무리되는 시기인 5월로 조사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유형자산,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응답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초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조사에 대한 원양산업 사업체의 인식도 및 호응이 낮아,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간과 비용에 비해 조사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에 대한 업체의 인식도 및 호응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사전홍보 시행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조사응답에 대해 정책적 수혜를 주는 방식, 원양산업계 내의 자체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식, 농림수산부와 원양어업협회 등에서 직접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 등을 통해 조사협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체 조사에 있어 전수조사를 고집하기보다, 대표샘플 업체의 응답 성공률이 일정 이상 될 경우 조사를 마무리하는 방식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표 배부 및 회수 단계

원양산업통계 기초조사에서 조사표 배부 및 회수단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사시의 유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내소재 업체가 조사대상인 1차 조사에서는 방문조사를 주로 시행하였으며, 조사대상 중 국외소재 업체의 비중이 높았던 2차 조사에서는 팩스와 이메일 조사를 주로 시행하였다. 이때 방문조사를 병행한 1차 조사에서 응답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지역의 방문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해외지역 조사를 위해 현지 원양산업 종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현지 명예수산물 등을 조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경영현황과 생산현황을 동시에 조사하기 때문에 각 분야를 관리하는 다른 부서를 동시에 접촉해야 한다는 애로사항과 생산현황을 관리하는 합작어업 사업체와 원양어업관련사업체의 경영현황을 관리하는 모기업을 동시에 접촉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사업체에 전화로 접촉할 때 사업체 현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책임지고 응답해줄 수 있는 응답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와같은 조사시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조사대상 업체에서 응답자를 선정할 때, 임원이나 부서장급 이상과 접촉하여 추천받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원양어업 및 합작어업 사업체에서 ‘보유 원양어선별 생산현황’ 조사시 보유 어선 정보가 있는 업체에서는 생산현황을 조사해야 하는 선박을 지정해서 조사하였다. 그러나 보유어선 정보가 없는 업체의 경우 2009년 출어선박 중 1척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생산현황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조사 단계

원양산업통계조사 기초조사에서 조사단계에서의 애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표에서 유형자산,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연간 어로원가, 판매금액에서 조사업체에서는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공란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경영정보를 별도로 찾아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조사거부를 하는 업체도 있었다. 따라서 꼭 필요한 항목 이외의 항목은 필요성을 재고하여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사단위와 관련하여 유형자산과 제조원가에서는 백만원, 어로원가에서는 천원 단위로 다르게 되어 있어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업체에서는 경영현황을 달러로 관리하는 한편 조사응답은 원화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동일 조사표 내에서는 조사단위를 통일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표 내에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예. 1\$=1,100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항목 중 연간급여액/월평균임금에서 세전/세후, 퇴직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것, 직급별 월평균임금에서 1인당 월평균임금인지 해당직급 월평균임금인지, 유형자산과 제조원가에서의 기준 등에 대해 문의가 있었다. 업체특성에 따른 조사 관련 질문 및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질문지 배부시 조사항목을 간략하게 설명한 1페이지로 된 설명용지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원양산업 총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범위에 대하여 원양산업 관련 전문가인 교수·연구원, 공무원, 관련업계 등 4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1년 1월 17일부터 1월 21일 까지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5〉 원양산업 총조사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대상

구 분	교수·연구원	공무원	관련업계	합계
대상자	12	10	23	45

2. 조사 결과

1) 원양산업 총조사의 필요성

원양사업체에 대한 생산 및 경영통계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5점 척도 설문에서 4.3점 이상으로 나타나 대체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계와 공무원에 비해 원양산업 관련업계의 경우에는 4.09점으로 원양사업체의 생산 및 경영통계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적인 조사대상자인 관련업계가 설문조사의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경영상의 영업기밀이 조사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6〉 원양산업체에 대한 생산 및 경영통계 조사 필요성

구 분		전 체	응답자소속		
			교수·연구원	공무원	관련 업계
사례수	응답자의 수	(45)	(12)	(10)	(23)
필요 없는 편	명	(2)	(1)	(0)	(1)
	%	4.4	8.3	0.0	4.3
보통	명	(8)	(0)	(2)	(6)
	%	17.8	0.0	20.0	26.1
조금 필요	명	(9)	(2)	(1)	(6)
	%	20.0	16.7	10.0	26.1
매우 필요	명	(26)	(9)	(7)	(10)
	%	57.8	75.0	70.0	43.5
▶평균:5점◀		4.31	4.58	4.50	4.09
▶평균:100점◀		82.78	89.58	87.50	77.17

2) 원양산업 총조사의 활용도

원양산업체에 대한 생산 및 경영통계 조사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4.02점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각 응답자 그룹은 조사의 필요성에 비해 활용도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원양총조사 이후의 정책활용도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관련업계에서 활용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원양총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업계를 중심으로 조사의 활용도에 대해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7〉 원양총조사의 활용도

구 분		전 체	응답자소속		
			교수·연구원	공무원	관련 업계
사례수	응답자의 수	(45)	(12)	(10)	(23)
매우 낮음	명	(1)	(0)	(0)	(1)
	%	2.2	0.0	0.0	4.3
조금 낮음	명	(4)	(1)	(0)	(3)
	%	8.9	8.3	0.0	13.0
보통	명	(10)	(2)	(2)	(6)
	%	22.2	16.7	20.0	26.1
조금 높음	명	(8)	(1)	(2)	(5)
	%	17.8	8.3	20.0	21.7
매우 높음	명	(22)	(8)	(6)	(8)
	%	48.9	66.7	60.0	34.8
▶평균:5점◀		4.02	4.33	4.40	3.70
▶평균:100점◀		75.56	83.33	85.00	67.39

3) 원양어업(단독)의 주요 대분류 항목별 설문 필요성

원양어업(단독)의 설문조사 항목 중 사업체 일반현황, 생산통계, 경영통계에 대한 설문 필요성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체 일반 현황과 생산통계에 대해서는 95.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경영통계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경우 필요하다는 의견은 52.2%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의 47.8%보다는 많았지만 원양산업 관련업계의 절반은 경영통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원양어업(단독)의 주요 대분류 항목별 설문 필요성

구 분			응답자소속				
			교수 및 연구원	공무원	관련 업계	합계	
원양 어업 (단독)	사업체일 반현황	필요	명	(12)	(10)	(21)	(43)
			%	100.0	100.0	91.3	95.6
		불필요	명	(0)	(0)	(2)	(2)
			%	0.0	0.0	8.7	4.4
		무응답	명	(0)	(0)	(0)	(0)
			%	0.0	0.0	0.0	0.0
	소계	명	(12)	(10)	(23)	(45)	
		%	100.0	100.0	100.0	100.0	
	생산통계	필요	명	(12)	(10)	(21)	(43)
			%	100.0	100.0	91.3	95.6
		불필요	명	(0)	(0)	(2)	(2)
			%	0.0	0.0	8.7	4.4
무응답		명	(0)	(0)	(0)	(0)	
		%	0.0	0.0	0.0	0.0	
소계	명	(12)	(10)	(23)	(45)		
	%	100.0	100.0	100.0	100.0		
경영통계	필요	명	(11)	(10)	(12)	(33)	
		%	91.7	100.0	52.2	73.3	
	불필요	명	(1)	(0)	(11)	(12)	
		%	8.3	0.0	47.8	26.7	
	무응답	명	(0)	(0)	(0)	(0)	
		%	0.0	0.0	0.0	0.0	
소계	명	(12)	(10)	(23)	(45)		
	%	100.0	100.0	100.0	100.0		

원양어업(합작)의 설문조사 항목 중 사업체 일반현황, 생산통계, 경영통계에 대한 설문 필요성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체 일반 현황과 생산통계에 대해서는 93.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경영통계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경우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52.2%로 필요하다는 의견의 47.8%보다는 많았다. 이는 합작어

업이 외국과의 합작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외국 국적의 회사로 조사 필요성과 실제 조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표 4-9〉 원양어업(합작)의 주요 대분류 항목별 설문 필요성

구 분			응답자소속				
			교수 및 연구원	공무원	관련 업계	합계	
원양어업 (합작)	사업체 일반현황	필요	명	(11)	(10)	(21)	(42)
			%	91.7	100.0	91.3	93.3
		불필요	명	(1)	(0)	(2)	(3)
			%	8.3	0.0	8.7	6.7
	무응답	명	(0)	(0)	(0)	(0)	
		%	0.0	0.0	0.0	0.0	
	소계	명	(12)	(10)	(23)	(45)	
		%	100.0	100.0	100.0	100.0	
	생산통계	필요	명	(12)	(10)	(20)	(42)
			%	100.0	100.0	87.0	93.3
		불필요	명	(0)	(0)	(3)	(3)
			%	0.0	0.0	13.0	6.7
무응답	명	(0)	(0)	(0)	(0)		
	%	0.0	0.0	0.0	0.0		
소계	명	(12)	(10)	(23)	(45)		
	%	100.0	100.0	100.0	100.0		
경영통계	필요	명	(10)	(9)	(11)	(30)	
		%	83.3	90.0	47.8	66.7	
	불필요	명	(2)	(1)	(12)	(15)	
		%	16.7	10.0	52.2	33.3	
무응답	명	(0)	(0)	(0)	(0)		
	%	0.0	0.0	0.0	0.0		
소계	명	(12)	(10)	(23)	(45)		
	%	100.0	100.0	100.0	100.0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설문조사 항목 중 사업체 일반현황, 생산통계, 경영통계에 대한 설문 필요성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체 일반 현황과 생산통계에 대해서는 각각 91.1%, 82.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경영통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51.1%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의 48.9%보다는 많았다. 이는 원양산업 중 원양어업 단독과 합작어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다 확장된 범주인 원양어업관련사업체의 경영조사는 현 상황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0〉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주요 대분류 항목별 설문 필요성

구 분			응답자소속				
			교수 및 연구원	공무원	관련 업계	합계	
원양어 업관련 사업	사업체일 반현황	필요	명	(11)	(9)	(21)	(41)
			%	91.7	90.0	91.3	91.1
		불필요	명	(1)	(1)	(2)	(4)
			%	8.3	10.0	8.7	8.9
	무응답	명	(0)	(0)	(0)	(0)	
		%	0.0	0.0	0.0	0.0	
	소계	명	(12)	(10)	(23)	(45)	
		%	100.0	100.0	100.0	100.0	
	생산통계	필요	명	(10)	(8)	(19)	(37)
			%	83.3	80.0	82.6	82.2
		불필요	명	(2)	(2)	(4)	(8)
			%	16.7	20.0	17.4	17.8
무응답	명	(0)	(0)	(0)	(0)		
	%	0.0	0.0	0.0	0.0		
소계	명	(12)	(10)	(23)	(45)		
	%	100.0	100.0	100.0	100.0		
경영통계	필요	명	(8)	(7)	(8)	(23)	
		%	66.7	70.0	34.8	51.1	
	불필요	명	(4)	(3)	(15)	(22)	
		%	33.3	30.0	65.2	48.9	
무응답	명	(0)	(0)	(0)	(0)		
	%	0.0	0.0	0.0	0.0		
소계	명	(12)	(10)	(23)	(45)		
	%	100.0	100.0	100.0	100.0		

원양산업발전법상으로 원양산업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해외의 주요 한인업체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외한인업체의 일반현황, 생산통계에 대해서 각각 66.7%와 62.2%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영통계에 대해서는 66.7%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양사업체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지만, 사업체 현황과 생산현황에 대해서 일정수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산부문의 해외 네트워크 확장 차원에서 사업체 현황과 생산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11〉 해외한인업체의 주요 항목별 설문 필요성

구 분			응답자소속				
			교수 및 연구원	공무원	관련 업계	합계	
해외한 인업체	사업체일 반현황	필요	명	(8)	(7)	(15)	(30)
			%	66.7	70.0	65.2	66.7
		불필요	명	(4)	(3)	(8)	(15)
			%	33.3	30.0	34.8	33.3
	무응답	명	(0)	(0)	(0)	(0)	
		%	0.0	0.0	0.0	0.0	
	소계	명	(12)	(10)	(23)	(45)	
		%	100.0	100.0	100.0	100.0	
	생산통계	필요	명	(8)	(7)	(13)	(28)
			%	66.7	70.0	56.5	62.2
		불필요	명	(4)	(3)	(10)	(17)
			%	33.3	30.0	43.5	37.8
무응답	명	(0)	(0)	(0)	(0)		
	%	0.0	0.0	0.0	0.0		
소계	명	(12)	(10)	(23)	(45)		
	%	100.0	100.0	100.0	100.0		
경영통계	필요	명	(5)	(6)	(4)	(15)	
		%	41.7	60.0	17.4	33.3	
	불필요	명	(7)	(4)	(19)	(30)	
		%	58.3	40.0	82.6	66.7	
무응답	명	(0)	(0)	(0)	(0)		
	%	0.0	0.0	0.0	0.0		
소계	명	(12)	(10)	(23)	(45)		
	%	100.0	100.0	100.0	100.0		

4) 원양산업체의 세분류 항목별 조사 필요성

원양어업(단독) 선사의 세분류 항목별 조사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 어선원 현황, 연간 매출액, 보유선명, 톤수, 진수년월, 업종, 출어별 승선원 현황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유형자산,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57.8%, 64.4%에 그쳤다. 이는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영업기밀에 속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기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본조사 실시에는 조사기피 부분에 대한 항목의 처리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2〉 원양어업(단독) 선사에 대한 세분류 항목별 조사 필요성

구 분	필요(%)	불필요(%)
1.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73.3	26.7
2.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	93.3	6.7
3. 어선원현황	82.2	17.8
4. 유형자산	57.8	42.2
5.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64.4	35.6
6. 연간 매출액	82.2	17.8
7. 보유선명, 톤수, 진수년월, 업종	95.6	4.4
8. 출어별 선원승선 현황	82.2	17.8
9. 승선원수 및 월평균임금	80.0	20.0
10. 연간 어로원가	71.1	28.9
11. 생산 및 판매현황	77.8	22.2

원양어업(합작) 선사의 세분류 항목별 조사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 어선원 현황, 연간 매출액, 보유선명, 톤수, 진수년월, 업종, 출어별 승선원 현황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유형자산,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연간어로원가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53.3%, 60.0%, 64.4%에 그쳤다. 이는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영업기밀에 속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기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외국 국적의 합작기업의 영업기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사의 어려움과 통계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필요성이 원양어업 단독선사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조사 실시에는 원양어업 합작선사에 대한 기피 항목에 대한 처리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3〉 원양어업(합작) 선사에 대한 세분류 항목별 조사 필요성

구 분	필요(%)	불필요(%)
1.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73.3	26.7
2.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	91.1	8.9
3. 어선원현황	82.2	17.8
4. 유형자산	53.3	46.7
5.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60.0	40.0
6. 연간 매출액	80.0	20.0
7. 보유선명, 톤수, 진수년월, 업종	95.6	4.4
8. 출어별 선원승선 현황	80.0	20.0
9. 승선원수 및 월평균임금	73.3	26.7
10. 연간 어로원가	64.4	35.6
11. 생산 및 판매현황	77.8	22.2

원양어업관련사업체(가공, 양식, 수출입/도소매) 선사의 세분류 항목별 조사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 해외가공업체의 경우에는 총투자금액, 투자비율,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공장현황, 생산 및 판매현황 등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형자산과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 중 추가설문으로 공장의 생산능력, 품목별 1일 최대 생산량과 수출, 생산회사와의 관계(투자지분 등), 해당국 제조업자와의 경쟁력 정도에 대한 설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양식업체의 대해서도 가공업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생산 및 판매현황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 양식어업의 생산, 판매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가적인 항목으로 양식방법과 외국양식업자와의 경쟁력 등에 대한 설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해외 수출입·도소매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과 제품판매 및 수출현황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지만 유형자산,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추가설문으로 진출국가에서의 유통망과 주된 소비층에 대한 대략적인 시장분석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원양어업관련사업체에 대한 세분류 항목별 조사 필요성

구 분		필요	불필요
원양어업관련사업 (가공)	1. 총투자금액	75.6	24.4
	2. 투자비율	77.8	22.2
	3.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68.9	31.1
	4. 유형자산	57.8	42.2
	5.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60.0	40.0
	6. 제조공장현황	73.3	26.7
	7. 생산 및 판매현황	77.8	22.2
원양어업관련사업 (양식)	1. 총투자금액	75.6	24.4
	2. 투자비율	77.8	22.2
	3.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68.9	31.1
	4. 유형자산	55.6	44.4
	5.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60.0	40.0
	6. 양식장현황	77.8	22.2
	7. 연간 양식원가	62.2	37.8
	8. 생산 및 판매현황	82.2	17.8

	구 분	필요	불필요
원양어업관련사업 (수출입/도소매)	1. 총투자금액	75.6	24.4
	2. 투자비율	75.6	24.4
	3.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66.7	33.3
	4. 유형자산	53.3	46.7
	5.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60.0	40.0
	6. 연간매출액	84.4	15.6
	7. 원료구입 및 수입현황	66.7	33.3
	8. 제품판매 및 수출현황	80.0	20.0

제5장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결과

제1절 원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제2절 해외합작어업 조사결과

제3절 원양어업관련 사업체 조사결과

제5장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결과

제1절 원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1. 원양산업 사업체별 생산 및 경영현황

1) 일반사항

원양산업 사업체별 생산 및 경영현황은 조사시점에 원양협회에 등록된 총 70개 조사대상 사업체 중 2개 사업체가 휴업, 폐업 상태로 총 6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에서 휴폐업 업체는 엘림수산(폐업)과 보양사(휴업)이다.

조사대상 68개 업체의 업체명, 창설년도, 소재지, 조직형태, 보유어선 총 척수, 보유어선 총톤수는 다음의 <표 5-1>과 같다. 단, 보유어선 총 척수, 보유어선 총 톤수는 원양협회 자료를 참조로 하였다.

<표 5-1> 조사응답 원양산업 사업체 일반 현황

사업체명	창설년도	소재지	조직형태	보유어선 척수	보유어선 총톤수 (G/T)
경양수산	2006	부산	회사법인	3	1,224
경태	-	부산	회사법인	3	1,275
그랜드수산	2004	부산	회사법인	6	2,329
극동수산	1994	서울	회사법인	1	5,210
금명수산	2004	부산	회사법인	1	341
금용수산	1997	부산	회사법인	1	160
금웅수산	1990	부산	회사법인	5	1,926
금평수산	1994	부산	회사법인	3	1,443
남북수산	1962	부산	회사법인	1	5,549
대룡수산	1994	서울	회사법인	3	828
대성수산	2005	부산	회사법인	5	1,946
대양수산	2007	부산	회사법인	3	1,151
대해수산	1992	부산	회사법인	9	3,773
대현수산	-	서울	회사법인	6	1,800
덕우수산	1981	서울	회사법인	1	489
덕진통산	2006	부산	회사법인	1	330
동남	1977	부산	회사법인	3	821
동방수산	-	부산	회사법인	2	791
동부수산	2002	부산	회사법인	2	304
동양수산	1970	부산	회사법인	2	470
동원산업	1969	서울	회사법인	38	30,491

동원수산	1970	서울	회사법인	17	8,257
동희산업	1989	부산	개인사업체	1	64
라사교역	2000	부산	회사법인	5	2,143
봉강산업	1996	부산	회사법인	2	320
부강인터내셔널	2006	부산	회사법인	2	930
사조대림	1964	서울	회사법인	8	3,368
사조산업	1971	서울	회사법인	40	18,323
사조씨에스	1980	서울	회사법인	5	2,314
사조오양	1969	서울	회사법인	12	7,194
삼영수산	1993	부산	회사법인	2	1,115
상지수산	1995	부산	회사법인	1	450
서경	1993	부산	회사법인	6	2,050
서동인터내셔널	1999	서울	회사법인	1	391
서림수산	1997	부산	회사법인	1	434
서해수산	2003	부산	회사법인	1	348
선민수산	2000	부산	회사법인	4	1,796
선우실업	2002	경기	회사법인	3	1,478
선해수산	-	부산	회사법인	2	904
성경수산	1989	서울	회사법인	1	482
소진해운	1993	부산	회사법인	1	378
신라교역	1967	서울	회사법인	17	10,948
신지수산	2006	부산	회사법인	1	360
아그네스 수산	-	서울	회사법인	14	6,768
에스엔에이치	2002	부산	회사법인	1	497
에스티디수산	2008	부산	회사법인	2	766
예람교역	2005	부산	회사법인	1	495
웨스트베이어업	2007	부산	회사법인	3	1,175
유신수산	2006	부산	회사법인	1	332
유앤씨	2007	부산	회사법인	1	349
인성식품	-	서울	회사법인	2	968
인성실업	1986	서울	회사법인	12	11,432
인터불고	1986	서울	회사법인	10	2,343
인터투나	2004	부산	회사법인	2	730
주암산업	2001	부산	회사법인	1	265
지오엠	2009	부산	회사법인	1	232
창진교역	1992	부산	회사법인	3	1,022
코삭교역	1987	부산	회사법인	3	839
탐수산	2007	부산	회사법인	1	532
태영교역	2007	부산	회사법인	1	422
태진수산	2010	부산	회사법인	2	1,879
태흥피쉬어리	2002	부산	회사법인	1	240
통영산업	1991	부산	회사법인	4	1,502
풍림수산	1992	부산	회사법인	6	2,302
한성기업	1963	부산	회사법인	7	6,182
해나	1996	부산	회사법인	2	515
해인수산	2008	부산	회사법인	2	1,324
해정	2008	부산	회사법인	3	1,202

전체 응답 사업체 중 72.5%가 1990년 이후에 창설되었으며, 특히 2005년도 이후에 창설된 사업체도 27.4%로 나타났다.(<표 5-2> 참조)

<표 5-2> 창설년도별 조사응답 원양산업 사업체 현황

창설년도	사업체 수	비율
1962~1969	6	9.7%
1970~1979	4	6.5%
1980~1989	7	11.3%
1990~1999	17	27.4%
2000~2004	11	17.7%
2005~	17	27.4%
응답업체 합계	62	100.0%
결측	6	-

조직형태별로는 동희산업만 개인사업체이고 나머지 67개 업체는 회사법인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사업체인 동희산업의 보유어선 총톤수가 64톤으로 가장 작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재지 시도별로는 부산 50개 업체, 서울 17개 업체, 경기 1개 사업체로 73.5%의 사업체가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3> 참조)

<표 5-3> 소재지별 조사응답 원양산업 사업체 현황

소재지	사업체 수	비율
부산	50	73.5%
서울	17	25.0%
경기	1	1.5%
응답업체 합계	68	100.0%

사업체당 보유척수 별로는 1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수는 23개, 2~5척은 30개, 6~9척은 7개, 10~19척은 7개, 20척 이상은 2개로 나타났다(<표 5-4> 참조). 이 중에서 68개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총 어선 수는 318척으로 사업체당 평균은 4.67척이며, 사업체당 1척~40척 사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선을 20척

이상 보유한 사업체 현황은 총 40척을 보유한 사조산업과 총 38척을 보유한 동원산업으로 다른 사업체와 확연히 구별되어 따로 분류하였다.

〈표 5-4〉 보유척수별 조사응답 원양산업 사업체 현황

보유척수	사업체 수	비율
1척	23	33.8%
2~5척	30	44.1%
6~9척	7	10.3%
10~19척	6	8.8%
20척 이상	2	2.9%
사업체 합계	68	100.0%

사업체당 보유어선 총 톤수(단위 G/T) 별로는 499톤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수는 23개, 500~1,599톤은 22개, 1,600~2,999톤은 11개, 3,000~9,999톤은 8개, 10,000톤 이상은 4개로 나타났다(<표 5-5> 참조).

총 318척 중 톤수가 결측인 경우는 8개 사업체 11척이며, 모두 3척 이상 보유한 사업체이다. 따라서 사업체당 보유어선 총 톤수를 산출할 때 이러한 결측치(missing value)를 보정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체별로 관측된 어선별 톤수를 활용하여 결측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별로 평균대치법(mean imputation)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A사는 총 3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톤수는 2척만 보고되어 423톤, 393톤으로 나타났고, 관측된 2개 어선을 활용하여 A사 보유어선의 평균은 408톤(=(423+393)/2)이며, A사 보유어선 총 톤수는 1,224톤(=3척×408톤)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68개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어선의 총 톤수는 171,011톤으로 사업체당 평균은 2,515톤이며, 사업체당 64~30,491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을 20척 이상 보유한 업체 현황은 총 40척을 보유한 사조산업과 총 38척을 보유한 동원산업으로 다른 업체와 확연히 구별되어 따로 분류하였다.

〈표 5-5〉 보유어선 총 어선별 조사응답 원양산업 사업체 현황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비율
~499	23	33.8%
500~1,599	22	32.4%
1,600~2,999	11	16.2%
3,000~9,999	8	11.8%
10,000~	4	5.9%
사업체 합계	68	100.0%

2) 조사결과에 대한 사업체별 통계치 산출 방식

본 조사결과 생산 및 경영현황을 질문하는 조사항목별로 무응답 사업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총계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응답을 보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였다.

사업체 규모별로 생산 및 경영현황에 대한 확연한 구분이 발생하므로 보유어선의 척수별, 총 톤수를 각 5개의 그룹에 따라 사업체를 구분하고 위 두 가지 분류기준에 따라 총계를 추정하였다. 이런 경우에 총계를 추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를 위해 <표 5-6>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형태의 표로 정리를 하였다. 다음은 총계의 추정 방식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① 보유어선 척수 그룹별 응답사업체 수 B1~B5, 보유어선 총 톤수 그룹별로 응답 사업체 수 G1~G5를 구한다. 이때, 보유어선 척수별 총 응답 사업체 수 B6은 B1~B5의 합계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 총 응답 사업체 수 G6은 G1~G5의 합계가 된다.

② 보유어선 척수 그룹별 평균 통계치 D1~D5, 보유어선 총 톤수 그룹별 평균 통계치 I1~I5를 산출한다.

③ 보유어선 척수 그룹별 총계는 $E_i = D_i \times A_i$ ($i=1, \dots, 5$)로, 보유어선 총 톤수 그룹별 총계는 $J_i = I_i \times F_i$ ($i=1, \dots, 5$)로 추정한다.

④ 보유어선 척수 방법에 의한 총계 추정치는 $E_6 = E_1 + E_2 + E_3 + E_4 + E_5$ 가 되며, 보유어선 총 톤수 방법에 의한 총계 추정치는 $J_6 = J_1 + J_2 + J_3 + J_4 + J_5$ 이다.

⑤ 사업체 전체 평균 추정치는 보유어선 척수 방법에 의하면 $D_6 = E_6 / A_6$ 가 되며, 보유어선 총 톤수 방법에 의하면 $I_6 = J_6 / F_6$ 가 된다.

〈표 5-6〉 사업체별 통계치 산출 방식

보유척수	사업체 수 (A)	응답 사업체 수 (B)	응답률 (C)	응답 사업체별 평균(D)	총계추정 (E)
1척	23(A1)	B1	C1	D1	E1
2~5척	30(A2)	B2	C2	D2	E2
6~9척	7(A3)	B3	C3	D3	E3
10~19척	6(A4)	B4	C4	D4	E4
20척 이상	2(A5)	B5	C5	D5	E5
사업체 합계	68(A6)	B6	C6	D6	E6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F)	응답 사업체 수 (G)	응답률 (H)	응답 사업체별 평균(I)	총계추정 (J)
~499	23(F1)	G1	H1	I1	J1
500~1,599	22(F2)	G2	H2	I2	J2
1,600~2,999	11(F3)	G3	H3	I3	J3
3,000~9,999	8(F4)	G4	H4	I4	J4
10,000~	4(F5)	G5	H5	I5	J5
사업체 합계	68(F6)	G6	H6	I6	J6

3) 총계추정치 추정결과의 요약 및 추정치의 정도 분석

가. 표본오차를 통한 추정치의 정도 분석 방법

원양산업 사업체의 경우 거의 모든 항목에서 응답율이 최대 75%를 넘지 않기 때문에, 표본을 통한 전체 총계 추정에 대한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총계 추정의 표준오차(SE : standard error)를 <표 5-6>처럼 집계한 값들과 각 그룹별($i=1\cdots 5$) 표본 표준편차(s_{1i} : 보유척수 그룹에서의 표본 표준편차, s_{2i} : 보유어선 총 톤수 그룹에서의 표본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다.

①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hat{\tau}_1$)에 대한 표준오차 추정식

$$\widehat{SE}(\hat{\tau}_1) = \sqrt{\sum_{i=1}^5 A_i^2 \left(\frac{A_i - B_i}{A_i} \right) \frac{s1i^2}{B_i}}$$

② 보유어선 총 톤수별 총계 추정치($\hat{\tau}_2$)에 대한 표준오차 추정식

$$\widehat{SE}(\hat{\tau}_2) = \sqrt{\sum_{i=1}^5 F_i^2 \left(\frac{F_i - G_i}{F_i} \right) \frac{s2i^2}{G_i}}$$

총계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CI : confidence interval)은 총계 추정치 $\hat{\tau}_1$, $\hat{\tau}_2$ 와 이들의 표준오차 추정치 $\widehat{SE}(\hat{\tau}_1)$, $\widehat{SE}(\hat{\tau}_2)$ 를 통해서 다음 식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①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hat{\tau}_1$)에 대한 95% CI : $\hat{\tau}_1 \pm 1.96 \times \widehat{SE}(\hat{\tau}_1)$

② 보유어선 총 톤수별 총계 추정치($\hat{\tau}_2$)에 대한 95% CI : $\hat{\tau}_2 \pm 1.96 \times \widehat{SE}(\hat{\tau}_2)$

추정치의 정도(precision)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통계치로 변동계수(CV : coefficient of variation)를 사용하며 다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①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hat{\tau}_1$)에 대한 95% CV : $\frac{\widehat{SE}(\hat{\tau}_1)}{\hat{\tau}_1} \times 100(\%)$

② 보유어선 총 톤수별 총계 추정치($\hat{\tau}_2$)에 대한 95% CV : $\frac{\widehat{SE}(\hat{\tau}_2)}{\hat{\tau}_2} \times 100(\%)$

평균 추정치에 대해서는 위 총계 추정치에 대한 추정식들에서 총계 추정에서 평균 추정치로 치환하면 같은 추정식을 얻기 때문에 생략한다. CV를 통한 추정치의 정도 평가는 캐나다 서베이 기준에 따라 CV값이 다음 각 범위에 있을 경우에 추정치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항목에서 응답률이 너무 낮고, 표준편차가 너무 커서 CV가 15% 이상이 될 경우에 비록 허용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95% 신뢰구간이 너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공표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즉, CV가 15% 미만이 되는 경우에 공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9.99% : 아주 좋음(very good)
- 10.00% ~ 14.99% : 좋음(good)
- 15.00% ~ 24.99% : 허용가능(acceptable)
- 25.00% ~ 34.99% :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가능(useful with caution)
- 35.00% ~ : 공표시 신뢰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

나. 보유척수별 및 보유어선 총 톤수별 통계치 중의 선택

본 연구에서는 보유척수 및 보유어선 총 톤수별 2가지로 각 원양산업 사업체를 분류하고 각 분류에 따라 통계치를 집계하다. 이에 따라, 두 방법으로 인한 총계 추정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 두 방법의 결과는 많게는 약 20%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두 방법 중 모두 표본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각 그룹에 소속된 업체들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 두 방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분류된 그룹 내에서 업체들의 변동이 크다면 총계 추정치의 오차가 크며, 변동이 작다면 오차가 작다. 보유어선 척수, 총 톤수 모두 각 사업체를 분류하는데,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방법이 더 정확한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데는 실제 참값이 없는 이상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원양산업협회에서는 매년 총 생산량의 전수조사 결과를 집계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두 방법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음 <표 5-7>은 2009년도 원양산업협회에서 추계하는 매년 총 생산량과 <표 5-15>에서 본 조사에 의한 총계 추정치를 서로 비교한 결과를 나타냈다. 원양산업협회는 총 생산량을 611,950톤은 집계하고 있으며, 보유척수별에 따른 총계 추정치는 634,502톤, 보유어선 척수별에 따른 총계 추정치는 666,448톤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방법 모두 총 생산량 총계를 추정할 때, 실제 원양산업협회에서 추계한 값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유척수별에 따른 총계 추정치가 실제 원양산업협회에서 추계한 값과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보유어선 척수별로 집계한 총계 추정치를 공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듯 하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에 따른 총계 추정치는 공표하지 않으며, 보유어선 총 톤수 그룹에 따른 평균 및 합계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표 5-7〉 원양산업 사업체 2009년도 총 생산량 총계 추정치 비교

방법	원양산업협회	보유척수 (〈표 5-15〉)	보유어선 총 톤수 (〈표 5-15〉)
응답률	100%	75.0%	75.0%
2009년도 총 생산량 총계(M/T)	611,950	634,502	666,448

다. 통계치 추정치의 요약 및 표본오차

다음 <표 5-9> ~ <표 5-48>에서 산출된 원양산업 사업체에 대한 각 항목별 총계 및 평균 추정치를 토대로 보유어선 척수별로 집계된 통계치에 대한 표준오차, 95% CI, CV는 <표 5-8>과 같다.

앞서 언급한 대로 총계추정치는 보유어선 척수별로 집계한 통계치를 공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이때 각 추정치의 CV가 15% 이상이면 넘으면 공표하지 않는다. <표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조사 결과 CV가 15% 이상인 통계치는 외국인 원양산업 관련 종사자 급여액, 유형자산 중 기계장치, 어망·어구비, 제조원가 및 판관비 중 용수비(수도비),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대손상각비, 광고선전비로 나타나서 이들 지표에 대한 공표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8〉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의 요약 및 표본오차 - 보유어선 척수별 집계 -

통계명(단위)		보유어선 척수별				
		통계치	SE	CV	하한	상한
종사자 수(명)	내국인 원양산업 관련 종사자 수	2,896	117.7	4.1%	2,665	3,127
	외국인 원양산업 관련 종사자 수	6,635	303.6	4.6%	6,040	7,230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	10,603	1,422.5	13.4%	7,815	13,391
연간 급여액 (백만원)	내국인 원양산업 관련 종사자 급여액	164,303	7,850.8	4.8%	148,915	179,691
	외국인 원양산업 관련 종사자 급여액	37,726	5,855.7	15.5%	26,249	49,203
	사업체 전체 종사자 급여액	264,749	38,448.0	14.5%	189,391	340,107
생산 현황	연간 총 생산량(M/T)	634,502	44,482.5	7.0%	547,316	721,688
	연간 총 생산금액(천\$)	1,408,027	66,612.4	4.7%	1,277,467	1,538,587
유형 자산 (백만원)	토지	435,471	51,716.3	11.9%	334,107	536,835
	건물	296,957	33,994.9	11.4%	230,327	363,587
	기계장치	42,259	8,634.0	20.4%	25,336	59,182
	어망·어구	24,219	13,592.0	56.1%	0	50,859
	어선	151,239	9,387.6	6.2%	132,839	169,639
	기타	17,340	1,808.7	10.4%	13,795	20,885
	합계	967,487	99,532.4	10.3%	772,403	1,162,571
제조 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백만원)	원(부·보조) 재료비	501,745	33,632.0	6.7%	435,826	567,664
	연료비	284,686	20,596.9	7.2%	244,316	325,056
	전력비	4,781	552.3	11.6%	3,698	5,864
	용수비(수도비)	7,098	1,760.7	24.8%	3,647	10,549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18,339	4,442.6	24.2%	9,632	27,046
	인건비(급여, 퇴직금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238,040	23,420.9	9.8%	192,135	283,945
	수선비(수리유지비)	52,521	4,472.2	8.5%	43,755	61,287
	감가상각비	40,200	2,475.3	6.2%	35,348	45,052
	임차료(부지·건물·토지)	11,905	213.5	1.8%	11,487	12,323
	세금과 공과	8,645	716.1	8.3%	7,241	10,049
	대손상각비	6,237	1,966.8	31.5%	2,382	10,092
	광고선전비	6,618	1,844.0	27.9%	3,004	10,232
	운반·하역·보관비	148,573	8,873.2	6.0%	131,182	165,964
	기타(보험료, 접대비 등)	381,288	37,812.0	9.9%	307,176	455,400
	합계	1,710,677	115,372.8	6.7%	1,484,546	1,936,808

통계명(단위)		보유어선 척수별				
		통계치	SE	CV	하한	상한
자산, 자본금, 매출액, 부가가치 (백만원)	자산총계	2,793,306	281,774.3	10.1%	2,241,028	3,345,584
	자본금	234,547	25,631.0	10.9%	184,310	284,784
	자본잉여금	230,507	31,850.1	13.8%	168,081	292,933
	연간 매출액(재고 제외)	2,714,226	323,708.9	11.9%	2,079,757	3,348,695
	원양어업 분야 매출액	1,229,808	118,289.7	9.6%	997,960	1,461,656
	부가가치	1,711,123	208,076.6	12.2%	1,303,293	2,118,953

4) 종사자 수 조사 및 총계 추정 결과

2009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종사자 수를 조사하였다.

가. 내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수

내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는 어선원 및 어선관리 관련 종사자 및 선원을 나타낸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조사결과 거의 미비하고 기타종사자 수는 0으로 나타나서, 대부분 상용근로자로 나타났다. 총 68개 사업체 중 45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66.2%가 된다. 내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수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2,896명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2,977명으로 추정되었다.

〈표 5-9〉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내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명)	총계추정 (명)
1척	23	18	78.3%	10.3	238
2~5척	30	18	60.0%	20.7	622
6~9척	7	5	71.4%	56.0	392
10~19척	6	2	33.3%	164.0	984
20척 이상	2	2	100.0%	330.0	660
사업체 합계	68	45	66.2%	42.6	2,896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명)	총계추정 (명)
~499	23	19	82.6%	9.8	226
500~1,599	22	14	63.6%	18.7	412
1,600~2,999	11	6	54.5%	48.3	532
3,000~9,999	8	3	37.5%	89.0	712
10,000~	4	3	75.0%	273.7	1,095
사업체 합계	68	45	66.2%	43.8	2,977

나. 외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수

외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로 어선원 및 어선관리 관련 종사자 및 선원까지 포함한다. 총 68개 사업체 중 40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58.8%가 되며, 외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수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6,710명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6,635명으로 추정되었다.

〈표 5-10〉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외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명)	총계추정 (명)
1척	23	16	69.6%	26.4	608
2~5척	30	17	56.7%	49.2	1,475
6~9척	7	3	42.9%	126.7	887
10~19척	6	2	33.3%	375.0	2,250
20척 이상	2	2	100.0%	745.0	1,490
사업체 합계	68	40	58.8%	98.7	6,710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명)	총계추정 (명)
~499	23	16	69.6%	24.5	564
500~1,599	22	14	63.6%	47.1	1,037
1,600~2,999	11	4	36.4%	86.8	954
3,000~9,999	8	3	37.5%	193.3	1,547
10,000~	4	3	75.0%	633.3	2,533
사업체 합계	68	40	58.8%	97.6	6,635

다.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

사업체(그룹) 전체 종사자 수로는 물류, 유통, 가공 등을 모두 포함한다. 총 68개 사업체 중 38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55.9%가 되며,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10,603명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2,442명으로 추정되었다.

〈표 5-11〉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사업체 전체 종사자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명)	총계추정 (명)
1척	23	15	65.2%	36.3	836
2~5척	30	16	53.3%	82.9	2,488
6~9척	7	3	42.9%	317.7	2,224
10~19척	6	2	33.3%	328.0	1,968
20척 이상	2	2	100.0%	1,544.0	3,088
사업체 합계	68	38	55.9%	155.9	10,603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명)	총계추정 (명)
~499	23	14	60.9%	33.9	779
500~1,599	22	13	59.1%	66.1	1,454
1,600~2,999	11	4	36.4%	129.5	1,425
3,000~9,999	8	5	62.5%	326.0	2,608
10,000~	4	2	50.0%	1,544.0	6,176
사업체 합계	68	38	55.9%	183.0	12,442

5) 연간급여액 조사 및 총계 추정 결과

2009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간 급여액을 조사하였다.

가. 내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의 연간 급여액

내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의 연간 급여액에 대해서는 총 68개 사업체 중 40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58.8%가 된다. 내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의 연간 급여액은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1,643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590억으로 추정되었다.

〈표 5-12〉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내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연간 급여액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백만원)
1척	23	17	73.9%	622.8	14,325
2~5척	30	16	53.3%	1,099.5	32,985
6~9척	7	4	57.1%	2,083.0	14,581
10~19척	6	2	33.3%	10,515.0	63,090
20척 이상	2	1	50.0%	19,661.0	39,322
사업체 합계	68	40	58.8%	2,416.2	164,303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백만원)
~499	23	18	78.3%	617.6	14,204
500~1,599	22	13	59.1%	986.7	21,707
1,600~2,999	11	4	36.4%	1,856.3	20,419
3,000~9,999	8	3	37.5%	5,489.3	43,915
10,000~	4	2	50.0%	14,683.5	58,734
사업체 합계	68	40	58.8%	2,337.9	158,979

나. 외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의 연간 급여액

외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의 연간급여액은 총 68개 사업체 중 36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52.9%가 된다. 외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의 연간 급여액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377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398억으로 추정되었다.

〈표 5-13〉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외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연간 급여액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백만원)
1척	23	16	69.6%	145.2	3,339
2~5척	30	13	43.3%	336.5	10,094
6~9척	7	3	42.9%	1,221.0	8,547
10~19척	6	2	33.3%	1,247.0	7,482
20척 이상	2	2	100.0%	4,132.0	8,264
사업체 합계	68	36	52.9%	554.8	37,726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백만원)
~499	23	16	69.6%	163.3	3,755
500~1,599	22	11	50.0%	257.1	5,656
1,600~2,999	11	3	27.3%	887.3	9,761
3,000~9,999	8	3	37.5%	824.0	6,592
10,000~	4	3	75.0%	3,514.7	14,059
사업체 합계	68	36	52.9%	585.6	39,823

다. 사업체 전체 종사자의 연간 급여액

사업체 전체 종사자의 연간 급여액에 대해서는 총 68개 사업체 중 35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51.5%이다. 전체 종사자의 연간 급여액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2,647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3,015억으로 추정되었다.

〈표 5-14〉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사업체 전체 종사자 연간 급여액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5	65.2%	897.5	20,643
2~5척	30	13	43.3%	1,904.9	57,148
6~9척	7	3	42.9%	9,156.7	64,097
10~19척	6	2	33.3%	8,518.0	51,108
20척 이상	2	2	100.0%	35,876.5	71,753
사업체 합계	68	35	51.5%	3,893.4	264,749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4	60.9%	982.4	22,594
500~1,599	22	11	50.0%	1,403.4	30,874
1,600~2,999	11	3	27.3%	3,037.7	33,414
3,000~9,999	8	5	62.5%	8,886.0	71,088
10,000~	4	2	50.0%	35,876.5	143,506
사업체 합계	68	35	51.5%	4,433.5	301,476

6) 연간 총 생산량 및 생산금액 조사 및 총계 추정 결과

2009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1년간 연간 총 생산량(단위 : M/T), 총 생산금액(단위 : 천\$)을 조사하였다.

가. 연간 총 생산량

연간 총 생산량 설문에서 총 68개 사업체 중 51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5.0%가 된다. 연간 총 생산량은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634,502톤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666,448톤으로 추정되었다.

〈표 5-15〉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연간 총 생산량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M/T)	총계추정 (M/T)
1척	23	20	87.0%	1,615.2	37,150
2~5척	30	21	70.0%	3,387.6	101,629
6~9척	7	5	71.4%	6,309.8	44,169
10~19척	6	3	50.0%	37,407.3	224,444
20척 이상	2	2	100.0%	113,555.5	227,111
사업체 합계	68	51	75.0%	9,330.9	634,502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M/T)	총계추정 (M/T)
~499	23	21	91.3%	1,204.6	27,705
500~1,599	22	16	72.7%	3,407.8	74,971
1,600~2,999	11	6	54.5%	4,071.2	44,783
3,000~9,999	8	5	62.5%	19,163.0	153,304
10,000~	4	3	75.0%	91,421.3	365,685
사업체 합계	68	51	75.0%	9,800.7	666,448

나. 연간 총 생산금액

연간 총 생산금액에 대해서는 총 68개 사업체 중 50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3.5%이다. 연간 총 생산금액은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14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5억\$로 추정되었다.

〈표 5-16〉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연간 총 생산금액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23	20	87.0%	3,049.2	70,130
2~5척	30	20	66.7%	9,504.9	285,146
6~9척	7	5	71.4%	22,183.4	155,284
10~19척	6	3	50.0%	75,743.3	454,460
20척 이상	2	2	100.0%	221,503.5	443,007
사업체 합계	68	50	73.5%	20,706.3	1,408,027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499	23	21	91.3%	2,874.9	66,123
500~1,599	22	14	63.6%	8,365.7	184,046
1,600~2,999	11	7	63.6%	15,477.6	170,253
3,000~9,999	8	5	62.5%	45,671.4	365,371
10,000~	4	3	75.0%	172,680.3	690,721
사업체 합계	68	50	73.5%	21,713.4	1,476,514

7) 유형자산 조사 및 총계 추정 결과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형자산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가. 토지

유형자산 조사에서는 총 68개 사업체 중 51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5.0%이다. 유형자산 중 토지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4,355억 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4,972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17> 참조).

〈표 5-17〉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토지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6	69.6%	122.7	2,822
2~5척	30	23	76.7%	2,908.5	87,256
6~9척	7	7	100.0%	13,109.6	91,767
10~19척	6	3	50.0%	12,467.0	74,802
20척 이상	2	2	100.0%	89,412.5	178,825
사업체 합계	68	51	75.0%	6,404.0	435,471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8	78.3%	109.1	2,508
500~1,599	22	15	68.2%	829.0	18,238
1,600~2,999	11	9	81.8%	6,866.8	75,535
3,000~9,999	8	6	75.0%	20,304.7	162,437
10,000~	4	3	75.0%	59,608.3	238,433
사업체 합계	68	51	75.0%	7,311.1	497,152

나. 건물

건물에 대해서는 총 68개 사업체 중 51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5.0%이다. 유형자산 중 건물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2,970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3,442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18> 참조).

〈표 5-18〉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건물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6	69.6%	64.5	1,484
2~5척	30	23	76.7%	2,759.1	82,773
6~9척	7	7	100.0%	5,072.1	35,505
10~19척	6	3	50.0%	5,561.3	33,368
20척 이상	2	2	100.0%	71,914.0	143,828
사업체 합계	68	51	75.0%	4,367.0	296,957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8	78.3%	57.3	1,319
500~1,599	22	15	68.2%	1,189.1	26,159
1,600~2,999	11	9	81.8%	5,452.6	59,978
3,000~9,999	8	6	75.0%	8,123.2	64,985
10,000~	4	3	75.0%	47,942.7	191,771
사업체 합계	68	51	75.0%	5,061.9	344,212

다. 기계장치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총 68개 사업체 중 51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5.0%이다. 유형자산 중 기계장치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423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456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19> 참조).

〈표 5-19〉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기계장치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6	69.6%	49.8	1,144
2~5척	30	23	76.7%	166.7	5,000
6~9척	7	7	100.0%	1,028.4	7,199
10~19척	6	3	50.0%	2,119.3	12,716
20척 이상	2	2	100.0%	8,100.0	16,200
사업체 합계	68	51	75.0%	621.5	42,259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8	78.3%	39.9	917
500~1,599	22	15	68.2%	58.2	1,280
1,600~2,999	11	9	81.8%	325.2	3,577
3,000~9,999	8	6	75.0%	2,278.0	18,224
10,000~	4	3	75.0%	5,400.0	21,600
사업체 합계	68	51	75.0%	670.6	45,599

라. 어망·어구

어망·어구는 총 68개 사업체 중 51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5.0%이다. 유형자산 중 어망·어구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242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90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20> 참조).

〈표 5-20〉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어망·어구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6	69.6%	16.0	368
2~5척	30	23	76.7%	36.8	1,103
6~9척	7	7	100.0%	23.6	165
10~19척	6	3	50.0%	3,203.0	19,218
20척 이상	2	2	100.0%	1,682.5	3,365
사업체 합계	68	51	75.0%	356.2	24,219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8	78.3%	23.8	547
500~1,599	22	15	68.2%	44.9	989
1,600~2,999	11	9	81.8%	16.7	183
3,000~9,999	8	6	75.0%	1,604.0	12,832
10,000~	4	3	75.0%	1,121.7	4,487
사업체 합계	68	51	75.0%	280.0	19,037

마. 어선(감가상각된 장부가액 기재)

어선에 대해서는 총 68개 사업체 중 51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5.0%이다.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1,512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760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21> 참조).

〈표 5-21〉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어선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6	69.6%	499.7	11,493
2~5척	30	23	76.7%	1,212.7	36,380
6~9척	7	7	100.0%	1,825.6	12,779
10~19척	6	3	50.0%	2,547.3	15,284
20척 이상	2	2	100.0%	37,652.0	75,304
사업체 합계	68	51	75.0%	2,224.1	151,239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8	78.3%	595.6	13,698
500~1,599	22	15	68.2%	1,362.3	29,970
1,600~2,999	11	9	81.8%	1,615.0	17,765
3,000~9,999	8	6	75.0%	1,758.5	14,068
10,000~	4	3	75.0%	25,123.7	100,495
사업체 합계	68	51	75.0%	2,588.2	175,995

바. 기타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총 68개 사업체 중 51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5.0% 이다. 유형자산 중 기타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173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219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22> 참조).

〈표 5-22〉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기타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6	69.6%	27.9	641
2~5척	30	23	76.7%	137.6	4,128
6~9척	7	7	100.0%	461.9	3,233
10~19척	6	3	50.0%	10.3	62
20척 이상	2	2	100.0%	4,638.0	9,276
사업체 합계	68	51	75.0%	255.0	17,340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8	78.3%	27.8	639
500~1,599	22	15	68.2%	200.0	4,400
1,600~2,999	11	9	81.8%	44.9	494
3,000~9,999	8	6	75.0%	495.2	3,961
10,000~	4	3	75.0%	3,092.0	12,368
사업체 합계	68	51	75.0%	321.5	21,862

사. 유형자산 합계

유형자산 합계는 총 68개 사업체 중 51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5.0%이다. 유형자산 중 전체 합계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9,675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조 104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23> 참조).

〈표 5-23〉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합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6	69.6%	780.5	17,952
2~5척	30	23	76.7%	7,221.3	216,639
6~9척	7	7	100.0%	21,521.1	150,648
10~19척	6	3	50.0%	25,908.3	155,450
20척 이상	2	2	100.0%	213,399.0	426,798
사업체 합계	68	51	75.0%	14,227.7	967,487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8	78.3%	853.4	19,628
500~1,599	22	15	68.2%	3,683.5	81,036
1,600~2,999	11	9	81.8%	14,321.1	157,532
3,000~9,999	8	6	75.0%	34,563.5	276,508
10,000~	4	3	75.0%	142,288.3	569,153
사업체 합계	68	51	75.0%	16,233.2	1,103,858

아. 유형자산 각 항목별 비중

위에서 구한 유형자산 각 항목별 총계 추정치를 토대로 유형자산의 구성비를 추정할 수 있다. 유형자산 중 토지의 비율은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를 사용할 때, 45.0%, 건물 30.7%, 기계장치 4.4%, 어망·어구 2.5%, 어선 15.6%, 기타 1.8%로 나타났다(<표 5-24> 참조).

〈표 5-24〉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보유척수별 유형자산 항목별 비중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총계 추정치(단위 : 백만원)						
		토지	건물	기계장치	어망·어구	어선	기타	합계
1척	23	2,822	1,484	1,144	368	11,493	641	17,952
2~5척	30	87,256	82,773	5,000	1,103	36,380	4,128	216,639
6~9척	7	91,767	35,505	7,199	165	12,779	3,233	150,648
10~19척	6	74,802	33,368	12,716	19,218	15,284	62	155,450
20척 이상	2	178,825	143,828	16,200	3,365	75,304	9,276	426,798
사업체 합계	68	435,471	296,957	42,259	24,219	151,239	17,340	967,487
보유척수	사업체 수	유형자산 항목별 구성비						
		토지	건물	기계장치	어망·어구	어선	기타	합계
1척	23	15.7%	8.3%	6.4%	2.0%	64.0%	3.6%	100.0%
2~5척	30	40.3%	38.2%	2.3%	0.5%	16.8%	1.9%	100.0%
6~9척	7	60.9%	23.6%	4.8%	0.1%	8.5%	2.1%	100.0%
10~19척	6	48.1%	21.5%	8.2%	12.4%	9.8%	0.0%	100.0%
20척 이상	2	41.9%	33.7%	3.8%	0.8%	17.6%	2.2%	100.0%
사업체 합계	68	45.0%	30.7%	4.4%	2.5%	15.6%	1.8%	100.0%

보유어선 총 톤수별 총계 추정치를 사용할 때, 유형자산 중 토지의 비율은 45.0%, 건물 31.2%, 기계장치 4.1%, 어망·어구 1.7%, 어선 15.9%, 기타 2.0%로 나타났다(<표 5-25> 참조).

〈표 5-25〉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보유어선 총 톤수별 유형자산 항목별 비중 -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총계 추정치(단위 : 백만원)						
		토지	건물	기계장치	어망·어구	어선	기타	합계
~499	23	2,508	1,319	917	547	13,698	639	19,628
500~1,599	22	18,238	26,159	1,280	989	29,970	4,400	81,036
1,600~2,999	11	75,535	59,978	3,577	183	17,765	494	157,532
3,000~9,999	8	162,437	64,985	18,224	12,832	14,068	3,961	276,508
10,000~	4	238,433	191,771	21,600	4,487	100,495	12,368	569,153
사업체 합계	68	497,152	344,212	45,599	19,037	175,995	21,862	1,103,858
보유어선 총 톤수 (G/T)	23	유형자산 항목별 구성비						
		토지	건물	기계장치	어망·어구	어선	기타	합계
~499	23	12.8%	6.7%	4.7%	2.8%	69.8%	3.3%	100.0%
500~1,599	22	22.5%	32.3%	1.6%	1.2%	37.0%	5.4%	100.0%
1,600~2,999	11	47.9%	38.1%	2.3%	0.1%	11.3%	0.3%	100.0%
3,000~9,999	8	58.7%	23.5%	6.6%	4.6%	5.1%	1.4%	100.0%
10,000~	4	41.9%	33.7%	3.8%	0.8%	17.7%	2.2%	100.0%
사업체 합계	68	45.0%	31.2%	4.1%	1.7%	15.9%	2.0%	100.0%

8)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조사 및 총계 추정 결과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조사하였다.

가. 원(부·보조) 재료비

원(부·보조) 재료비는 총 68개 사업체 중 48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0.6%이다. 제조원가 및 판매비 중 원 재료비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5,017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6,168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26> 참조).

〈표 5-26〉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원재료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8	78.3%	202.9	4,666
2~5척	30	19	63.3%	541.5	16,246
6~9척	7	6	85.7%	19,062.2	133,435
10~19척	6	3	50.0%	5,735.0	34,410
20척 이상	2	2	100.0%	156,494.0	312,988
사업체 합계	68	48	70.6%	7,378.6	501,745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9	82.6%	165.9	3,817
500~1,599	22	14	63.6%	224.9	4,947
1,600~2,999	11	6	54.5%	1,690.0	18,590
3,000~9,999	8	6	75.0%	20,026.5	160,212
10,000~	4	3	75.0%	107,302.3	429,209
사업체 합계	68	48	70.6%	9,070.2	616,775

나. 연료비

연료비는 총 68개 사업체 중 48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0.6%이다. 제조원가 및 판매비 중 연료비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2,847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3,247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27> 참조).

〈표 5-27〉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연료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8	78.3%	771.2	17,738
2~5척	30	19	63.3%	2,871.8	86,154
6~9척	7	6	85.7%	7,472.8	52,310
10~19척	6	3	50.0%	5,067.7	30,406
20척 이상	2	2	100.0%	49,039.0	98,078
사업체 합계	68	48	70.6%	4,186.6	284,686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9	82.6%	935.2	21,509
500~1,599	22	14	63.6%	2,258.5	49,687
1,600~2,999	11	6	54.5%	5,752.8	63,281
3,000~9,999	8	6	75.0%	7,070.3	56,563
10,000~	4	3	75.0%	33,412.7	133,651
사업체 합계	68	48	70.6%	4,774.9	324,690

다. 전력비

전력비는 총 68개 사업체 중 48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0.6%이다. 제조원가 및 판관비 중 전력비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49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57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28> 참조).

〈표 5-28〉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전력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8	78.3%	1.8	41
2~5척	30	19	63.3%	0.1	2
6~9척	7	6	85.7%	234.3	1,640
10~19척	6	3	50.0%	89.7	538
20척 이상	2	2	100.0%	1,280.0	2,560
사업체 합계	68	48	70.6%	70.3	4,781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9	82.6%	1.7	40
500~1,599	22	14	63.6%	0.0	0
1,600~2,999	11	6	54.5%	1.7	18
3,000~9,999	8	6	75.0%	277.5	2,220
10,000~	4	3	75.0%	853.3	3,413
사업체 합계	68	48	70.6%	83.7	5,692

라. 용수비(수도비)

용수비는 총 68개 사업체 중 48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0.6%이다. 제조원가 및 판관비 중 용수비(수도비)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71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83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29> 참조).

〈표 5-29〉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용수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8	78.3%	0.3	8
2~5척	30	19	63.3%	2.0	60
6~9척	7	6	85.7%	782.7	5,479
10~19척	6	3	50.0%	40.3	242
20척 이상	2	2	100.0%	655.0	1,310
사업체 합계	68	48	70.6%	104.4	7,098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9	82.6%	0.4	8
500~1,599	22	14	63.6%	1.8	39
1,600~2,999	11	6	54.5%	20.8	229
3,000~9,999	8	6	75.0%	784.0	6,272
10,000~	4	3	75.0%	436.7	1,747
사업체 합계	68	48	70.6%	122.0	8,296

마.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는 총 68개 사업체 중 48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0.6%이다. 제조원가 및 판관비 중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183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213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30> 참조).

〈표 5-30〉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외주가공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8	78.3%	16.1	369
2~5척	30	19	63.3%	0.0	0
6~9척	7	6	85.7%	2,256.7	15,797
10~19척	6	3	50.0%	0.0	0
20척 이상	2	2	100.0%	1,086.5	2,173
사업체 합계	68	48	70.6%	269.7	18,339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9	82.6%	15.2	350
500~1,599	22	14	63.6%	0.0	0
1,600~2,999	11	6	54.5%	1.7	18
3,000~9,999	8	6	75.0%	2,255.0	18,040
10,000~	4	3	75.0%	724.3	2,897
사업체 합계	68	48	70.6%	313.3	21,306

바. 인건비(급여, 퇴직금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인건비는 총 68개 사업체 중 48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0.6%이다. 제조원가 및 판매비 중 인건비(급여, 퇴직금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2,380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2,681억으로 추정되었다 (<표 5-31> 참조).

〈표 5-31〉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인건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8	78.3%	601.3	13,831
2~5척	30	19	63.3%	1,250.6	37,519
6~9척	7	6	85.7%	10,672.7	74,709
10~19척	6	3	50.0%	5,452.7	32,716
20척 이상	2	2	100.0%	39,633.0	79,266
사업체 합계	68	48	70.6%	3,500.6	238,040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9	82.6%	519.2	11,941
500~1,599	22	14	63.6%	1,158.1	25,479
1,600~2,999	11	6	54.5%	2,156.3	23,720
3,000~9,999	8	6	75.0%	12,404.3	99,235
10,000~	4	3	75.0%	26,934.7	107,739
사업체 합계	68	48	70.6%	3,942.8	268,113

사. 수선비(수리유지비)

수선비는 총 68개 사업체 중 48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0.6%이다. 제조원가 및 판관비 중 수선비(수리유지비)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525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593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32> 참조).

<표 5-32>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수선비(수리유지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8	78.3%	217.5	5,003
2~5척	30	19	63.3%	554.8	16,645
6~9척	7	6	85.7%	1,269.5	8,887
10~19척	6	3	50.0%	908.0	5,448
20척 이상	2	2	100.0%	8,269.5	16,539
사업체 합계	68	48	70.6%	772.4	52,521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9	82.6%	192.4	4,426
500~1,599	22	14	63.6%	530.3	11,666
1,600~2,999	11	6	54.5%	952.8	10,481
3,000~9,999	8	6	75.0%	1,242.3	9,939
10,000~	4	3	75.0%	5,695.3	22,781
사업체 합계	68	48	70.6%	872.0	59,293

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총 68개 사업체 중 48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0.6%이다. 제조원가 및 판관비 중 감가상각비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402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491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33> 참조).

〈표 5-33〉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감가상각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8	78.3%	28.7	661
2~5척	30	19	63.3%	142.4	4,273
6~9척	7	6	85.7%	1,251.3	8,759
10~19척	6	3	50.0%	483.0	2,898
20척 이상	2	2	100.0%	11,804.5	23,609
사업체 합계	68	48	70.6%	591.2	40,200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 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9	82.6%	66.9	1,540
500~1,599	22	14	63.6%	102.3	2,250
1,600~2,999	11	6	54.5%	408.3	4,492
3,000~9,999	8	6	75.0%	1,166.5	9,332
10,000~	4	3	75.0%	7,878.7	31,515
사업체 합계	68	48	70.6%	722.5	49,128

자. 임차료(부지·건물·토지)

임차료(부지·건물·토지)에 대해서는 총 68개 사업체 중 48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0.6%이다. 제조원가 및 판관비 중 임차료(부지·건물·토지)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105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53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34〉 참조).

〈표 5-34〉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임차료(부지·건물·토지)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8	78.3%	5.9	137
2~5척	30	19	63.3%	8.5	256
6~9척	7	6	85.7%	85.0	595
10~19척	6	3	50.0%	74.7	448
20척 이상	2	2	100.0%	5,234.5	10,469
사업체 합계	68	48	70.6%	175.1	11,905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 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9	82.6%	6.5	150
500~1,599	22	14	63.6%	8.3	182
1,600~2,999	11	6	54.5%	13.3	147
3,000~9,999	8	6	75.0%	108.3	867
10,000~	4	3	75.0%	3,500.7	14,003
사업체 합계	68	48	70.6%	225.7	15,348

차.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에 대해서는 총 68개 사업체 중 48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0.6%이다. 제조원가 및 판관비 중 세금과 공과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는 86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97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35> 참조).

<표 5-35>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세금과 공과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8	78.3%	15.3	353
2~5척	30	19	63.3%	30.9	927
6~9척	7	6	85.7%	398.8	2,792
10~19척	6	3	50.0%	247.3	1,484
20척 이상	2	2	100.0%	1,545.0	3,090
사업체 합계	68	48	70.6%	127.1	8,645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 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9	82.6%	10.7	247
500~1,599	22	14	63.6%	32.8	721
1,600~2,999	11	6	54.5%	40.8	449
3,000~9,999	8	6	75.0%	514.0	4,112
10,000~	4	3	75.0%	1,032.0	4,128
사업체 합계	68	48	70.6%	142.0	9,657

카.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는 총 68개 사업체 중 48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0.6%이다. 제조원가 및 판관비 중 대손상각비의 총계의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는 62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72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36> 참조).

〈표 5-36〉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대손상각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8	78.3%	0.0	0
2~5척	30	19	63.3%	6.2	185
6~9척	7	6	85.7%	793.3	5,553
10~19척	6	3	50.0%	13.0	78
20척 이상	2	2	100.0%	210.5	421
사업체 합계	68	48	70.6%	91.7	6,237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9	82.6%	0.0	0
500~1,599	22	14	63.6%	1.6	35
1,600~2,999	11	6	54.5%	33.2	365
3,000~9,999	8	6	75.0%	782.5	6,260
10,000~	4	3	75.0%	140.3	561
사업체 합계	68	48	70.6%	106.2	7,221

타.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는 총 68개 사업체 중 48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0.6%이다. 제조원가 및 판관비 중 광고선전비의 총계의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는 66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77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37> 참조).

〈표 5-37〉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광고선전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8	78.3%	0.2	4
2~5척	30	19	63.3%	0.4	11
6~9척	7	6	85.7%	825.5	5,779
10~19척	6	3	50.0%	0.3	2
20척 이상	2	2	100.0%	411.5	823
사업체 합계	68	48	70.6%	97.3	6,618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9	82.6%	0.2	5
500~1,599	22	14	63.6%	0.4	9
1,600~2,999	11	6	54.5%	0.2	2
3,000~9,999	8	6	75.0%	825.5	6,604
10,000~	4	3	75.0%	274.3	1,097
사업체 합계	68	48	70.6%	113.5	7,717

파. 운반·하역·보관비

운반·하역·보관비에 대해서는 총 68개 사업체 중 48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0.6%이다. 보관비 중 운반·하역·보관비의 총계의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는 1,486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751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38> 참조).

<표 5-38>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운반·하역·보관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8	78.3%	303.1	6,972
2~5척	30	19	63.3%	952.5	28,574
6~9척	7	6	85.7%	3,894.8	27,264
10~19척	6	3	50.0%	2,236.7	13,420
20척 이상	2	2	100.0%	36,171.5	72,343
사업체 합계	68	48	70.6%	2,184.9	148,573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9	82.6%	315.6	7,258
500~1,599	22	14	63.6%	836.7	18,408
1,600~2,999	11	6	54.5%	1,696.0	18,656
3,000~9,999	8	6	75.0%	4,003.8	32,031
10,000~	4	3	75.0%	24,688.7	98,755
사업체 합계	68	48	70.6%	2,575.1	175,107

가. 기타(보험료, 접대비 등)

기타(보험료, 접대비 등) 항목에 대해서는 총 68개 사업체 중 48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0.6%이다. 제조원가 및 보관비 중 기타(보험료, 접대비 등)의 총계의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는 3,813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4,328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39> 참조).

〈표 5-39〉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기타(보험료, 접대비 등)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8	78.3%	1,020.4	23,469
2~5척	30	19	63.3%	3,032.3	90,969
6~9척	7	6	85.7%	11,207.0	78,449
10~19척	6	3	50.0%	6,289.7	37,738
20척 이상	2	2	100.0%	75,331.5	150,663
사업체 합계	68	48	70.6%	5,607.2	381,288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9	82.6%	1,126.0	25,898
500~1,599	22	14	63.6%	2,683.3	59,032
1,600~2,999	11	6	54.5%	3,168.2	34,850
3,000~9,999	8	6	75.0%	13,934.5	111,476
10,000~	4	3	75.0%	50,393.0	201,572
사업체 합계	68	48	70.6%	6,365.1	432,828

나.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총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총계에 대해서는 총 68개 사업체 중 48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0.6%이다. 제조원가 및 판매비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1조 7107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2조 1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40> 참조).

〈표 5-40〉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및 판매비 총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8	78.3%	3,184.8	73,250
2~5척	30	19	63.3%	9,394.0	281,820
6~9척	7	6	85.7%	60,206.7	421,447
10~19척	6	3	50.0%	26,638.0	159,828
20척 이상	2	2	100.0%	387,166.0	774,332
사업체 합계	68	48	70.6%	25,157.0	1,710,677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9	82.6%	3,356.0	77,188
500~1,599	22	14	63.6%	7,838.9	172,456
1,600~2,999	11	6	54.5%	15,936.2	175,298
3,000~9,999	8	6	75.0%	65,395.2	523,161
10,000~	4	3	75.0%	263,267.0	1,053,068
사업체 합계	68	48	70.6%	29,429.0	2,001,172

다.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각 항목별 비중

위에서 구한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각 항목별 총계 추정치를 토대로 유형자산의 구성비를 추정할 수 있다.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를 사용할 때, 유형자산 중 원재료비의 비중은 29.3%, 연료비 16.6%, 전력비 0.3%, 용수비 0.4%, 외주가공비 1.1%, 인건비 13.9%, 수선비 2.1%, 감가상각비 2.3%, 임차료 0.7%, 세금과 공과 0.5%, 대손상각비 0.4%, 광고선전비 0.4%, 운반/하역/보관비 8.7%, 기타 22.3% 로 나타났다 (<표 5-41> 참조).

〈표 5-41〉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보유척수별 제조원가 및 판매비 항목별 비중-

보유척수	사업체 수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별 구성비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인건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1척	23	6.4%	24.2%	0.1%	0.0%	0.5%	18.9%	6.8%	0.9%
2~5척	30	5.8%	30.6%	0.0%	0.0%	0.0%	13.3%	5.9%	1.5%
6~9척	7	31.7%	12.4%	0.4%	1.3%	3.7%	17.7%	2.1%	2.1%
10~19척	6	21.5%	19.0%	0.3%	0.2%	0.0%	20.5%	3.4%	1.8%
20척 이상	2	40.4%	12.7%	0.3%	0.2%	0.3%	10.2%	2.1%	3.0%
사업체 합계	68	29.3%	16.6%	0.3%	0.4%	1.1%	13.9%	3.1%	2.3%

보유척수	사업체 수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별 구성비							합계
		임차료	세금과 공과	대손상각비	광고선전비	운반/하역/보관비	기타		
1척	23	0.2%	0.5%	0.0%	0.0%	9.5%	32.0%	100.0%	
2~5척	30	0.1%	0.3%	0.1%	0.0%	10.1%	32.3%	100.0%	
6~9척	7	0.1%	0.7%	1.3%	1.4%	6.5%	18.6%	100.0%	
10~19척	6	0.3%	0.9%	0.0%	0.0%	8.4%	23.6%	100.0%	
20척 이상	2	1.4%	0.4%	0.1%	0.1%	9.3%	19.5%	100.0%	
사업체 합계	68	0.7%	0.5%	0.4%	0.4%	8.7%	22.3%	100.0%	

보유어선 총 톤수별 총계 추정치를 사용할 때, 유형자산 중 원재료비의 비중은 30.8%, 연료비 16.2%, 전력비 0.3%, 용수비 0.4%, 외주가공비 1.1%, 인건비 13.4%, 수선비 3.0%, 감가상각비 2.5%, 임차료 0.8%, 세금과 공과 0.5%, 대손상각비 0.4%, 광고선전비 0.4%, 운반/하역/보관비 8.8%, 기타 21.6%로 나타났다(<표 5-42> 참조).

〈표 5-42〉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보유척수별 제조원가 및 판매비 항목별 비중-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별 구성비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인건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499	23	4.9%	27.9%	0.1%	0.0%	0.5%	15.5%	5.7%	2.0%
500~1,599	22	2.9%	28.8%	0.0%	0.0%	0.0%	14.8%	6.8%	1.3%
1,600~2,999	11	10.6%	36.1%	0.0%	0.1%	0.0%	13.5%	6.0%	2.6%
3,000~9,999	8	30.6%	10.8%	0.4%	1.2%	3.4%	19.0%	1.9%	1.8%
10,000~	4	40.8%	12.7%	0.3%	0.2%	0.3%	10.2%	2.2%	3.0%
사업체 합계	68	30.8%	16.2%	0.3%	0.4%	1.1%	13.4%	3.0%	2.5%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별 구성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대손상각비	광고선전비	운반/하역/보관비	기타	합계	
~499	23	0.2%	0.3%	0.0%	0.0%	9.4%	33.6%	100.0%	
500~1,599	22	0.1%	0.4%	0.0%	0.0%	10.7%	34.2%	100.0%	
1,600~2,999	11	0.1%	0.3%	0.2%	0.0%	10.6%	19.9%	100.0%	
3,000~9,999	8	0.2%	0.8%	1.2%	1.3%	6.1%	21.3%	100.0%	
10,000~	4	1.3%	0.4%	0.1%	0.1%	9.4%	19.1%	100.0%	
사업체 합계	68	0.8%	0.5%	0.4%	0.4%	8.8%	21.6%	100.0%	

9) 자산, 자본금과 매출액 조사 및 부가가치 총계 추정 결과

2009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자산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과 연간 매출액(재고 제외) 및 원양어업 분야 매출액을 조사하였다. 부가가치에 대한 산출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부가가치} = \text{연간매출액(재고제외)} - \text{원재료비} - \text{연료비} - \text{전력비} - \text{용수비} - \text{외주가공비} - \text{수선비}$$

가. 자산총계

자산은 총 68개 사업체 중 45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66.2%이다. 전체 원양사업체 자산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2조 7933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2조 9937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43> 참조).

〈표 5-43〉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자산총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8	78.3%	3,311.6	76,166
2~5척	30	17	56.7%	19,668.9	590,066
6~9척	7	5	71.4%	75,563.6	528,945
10~19척	6	3	50.0%	83,987.0	503,922
20척 이상	2	2	100.0%	547,103.5	1,094,207
사업체 합계	68	45	66.2%	41,078.0	2,793,306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9	82.6%	3,318.1	76,316
500~1,599	22	11	50.0%	7,823.8	172,124
1,600~2,999	11	6	54.5%	43,504.2	478,546
3,000~9,999	8	6	75.0%	88,082.2	704,657
10,000~	4	3	75.0%	390,505.7	1,562,023
사업체 합계	68	45	66.2%	44,024.5	2,993,667

나. 자본금

자본금은 총 68개 사업체 중 52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6.5%이다. 자본금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2,345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2,393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44> 참조).

〈표 5-44〉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자본금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8	78.3%	554.6	12,755
2~5척	30	22	73.3%	1,372.9	41,186
6~9척	7	7	100.0%	8,565.1	59,956
10~19척	6	3	50.0%	13,139.0	78,834
20척 이상	2	2	100.0%	20,908.0	41,816
사업체 합계	68	52	76.5%	3,449.2	234,547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9	82.6%	471.1	10,834
500~1,599	22	14	63.6%	877.0	19,294
1,600~2,999	11	10	90.9%	1,867.5	20,543
3,000~9,999	8	6	75.0%	16,142.5	129,140
10,000~	4	3	75.0%	14,872.0	59,488
사업체 합계	68	52	76.5%	3,519.1	239,299

다.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총 68개 사업체 중 24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35.3%이다. 자본잉여금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2,305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2,450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45> 참조).

<표 5-45>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자본잉여금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5	21.7%	821.0	18,883
2~5척	30	11	36.7%	1,998.5	59,956
6~9척	7	3	42.9%	1,037.3	7,261
10~19척	6	3	50.0%	10,302.3	61,814
20척 이상	2	2	100.0%	41,296.0	82,592
사업체 합계	68	24	35.3%	3,389.8	230,507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7	30.4%	268.7	6,180
500~1,599	22	6	27.3%	1,571.3	34,569
1,600~2,999	11	3	27.3%	3,978.3	43,762
3,000~9,999	8	5	62.5%	4,624.2	36,994
10,000~	4	3	75.0%	32,111.7	128,447
사업체 합계	68	24	35.3%	3,675.8	249,952

라. 연간 매출액(재고 제외)

연간 매출액(재고 제외)에 대해서는 총 68개 사업체 중 57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83.8%이다. 연간매출액(재고 제외)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2조 7142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3조 660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46> 참조).

〈표 5-46〉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연간매출액(재고 제외)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21	91.3%	5,345.1	122,938
2~5척	30	24	80.0%	20,971.7	629,151
6~9척	7	7	100.0%	85,630.0	599,410
10~19척	6	3	50.0%	73,118.7	438,712
20척 이상	2	2	100.0%	462,007.0	924,014
사업체 합계	68	57	83.8%	39,915.1	2,714,226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22	95.7%	5,471.4	125,841
500~1,599	22	17	77.3%	13,240.5	291,292
1,600~2,999	11	9	81.8%	35,008.4	385,093
3,000~9,999	8	6	75.0%	127,939.5	1,023,516
10,000~	4	3	75.0%	310,059.0	1,240,236
사업체 합계	68	57	83.8%	45,087.9	3,065,978

마. 원양어업 분야 매출액

원양어업 분야 매출액은 총 68개 사업체 중 54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79.4%이다. 원양어업 분야 매출액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1조 2298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조 2966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47> 참조).

〈표 5-47〉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원양어업 분야 매출액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21	91.3%	2,953.0	67,920
2~5척	30	21	70.0%	9,557.8	286,733
6~9척	7	7	100.0%	21,094.7	147,663
10~19척	6	3	50.0%	53,814.0	322,884
20척 이상	2	2	100.0%	202,304.0	404,608
사업체 합계	68	54	79.4%	18,085.4	1,229,808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21	91.3%	3,065.3	70,502
500~1,599	22	16	72.7%	8,411.6	185,056
1,600~2,999	11	8	72.7%	13,328.3	146,611
3,000~9,999	8	6	75.0%	43,347.7	346,781
10,000~	4	3	75.0%	136,923.7	547,695
사업체 합계	68	54	79.4%	19,068.3	1,296,644

바. 부가가치

부가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사업체는 총 68개 사업체 중 48개 사업체로 전체 대비 70.6%이다. 부가가치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1조 7111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조 8278억으로 추정되었다(<표 5-48> 참조).

〈표 5-48〉 원양산업 사업체 조사결과 - 부가가치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1척	23	18	78.3%	4,609.7	106,022
2~5척	30	19	63.3%	9,158.4	274,753
6~9척	7	6	85.7%	67,473.5	472,315
10~19척	6	3	50.0%	61,278.0	367,668
20척 이상	2	2	100.0%	245,183.0	490,366
사업체 합계	68	48	70.6%	25,163.6	1,711,123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백만원)	총계추정 (백만원)
~499	23	19	82.6%	4,629.8	106,485
500~1,599	22	14	63.6%	9,668.4	212,705
1,600~2,999	11	6	54.5%	8,349.2	91,841
3,000~9,999	8	6	75.0%	96,283.8	770,271
10,000~	4	3	75.0%	161,634.3	646,537
사업체 합계	68	48	70.6%	26,880.0	1,827,839

2. 원양산업 사업체 보유 어선별 생산 및 경영현황

1) 일반사항

조사시점에 원양협회에 등록된 총 68개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총 어선 수는 318척 중 각 사업체별 최소 1척 이상 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79척을 조사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중 65개 어선이 조사에 응하였다. 65개 어선의 사업체별, 어선명, 톤수, 업종, 출어해구, 출어횟수, 조업국은 다음 <표 5-49>와 같다. 단, 2009년 1월 1일~12월 31일 조업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5-49> 조사응답 원양어선의 일반 현황

사업체명	어선명	톤수	업종	조업수역	출어 횟수	조업국
경양수산 경태	제2경양호	423	참치연승	태평양	6	기리바티, 투발루, 솔로몬
	77오선호	496	원양봉수망	태평양	1	
그랜드수산	1010Y	448.83	참치연승	대서양	2	대서양
금명수산	금명 2	341	북양트롤	대서양	4	기니
금용수산	GOLD DRAGON NO.303	160	해외트롤			인도네시아
금용수산	101금용호	470	해외트롤	대서양	1	비사우 기니
금평수산	오로라9호	302	해외트롤	인도양	1	소말리아
남북수산	남북호	5549.02	북양트롤	태평양	1	러시아
대룡수산	제1 태성호	169	해외트롤	태평양	14	인도네시아
대성수산	11대성	354	해외트롤			
대양수산	601대양	380	참치연승			
대해수산	제201 대화호	416	참치연승	태평양	1	태평양
대해수산	제202 대화호	416	참치연승	태평양	1	태평양
덕우수산	오시토89호	489	참치연승	대서양	1	대서양서부 아프리카 코나크리
덕진통산	38금창호	330	해외트롤	태평양	0	인도네시아
동남	709S.E	274	해외트롤	태평양	11	뉴질랜드
동부수산	코피아우1호	152	해외트롤	태평양	3	인도네시아
동양수산	515아마폴라	235	해외트롤	대서양	1	기니 코나크리
동원산업	ocean master	1349.2	참치선망	태평양	1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기리바티, 나우루
	GRANADA	996.2	참치선망	태평양	1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기리바티, 나우루
	제211동원호	408	참치연승	태평양	1	공해
동원수산	동원620	417	참치연승	태평양		
동원수산	동원519	664.99	해외트롤	태평양	12	뉴질랜드
동희산업	세종29	64	새우트롤	중서부	0	수리남

사업체명	어선명	톤수	업종	조업수역	출어 횟수	조업국
라사교역	익투스7호	291	해외트롤	인도양	7	인도양
봉강산업	아로마폴리9호	160	해외트롤	태평양	9	인도네시아
부강인터내셔널	MARCIA777	397	원양외줄낚시	대서양	3	기니-코나크리
사조대림	제81 청용호	497	저연승	태평양	1	러시아
	제715 오룡호	416	참치연승	태평양	1	키리바시 EEZ, 공해
사조산업	Sajo Columbia	1106.04	참치선망	태평양	1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기리바티, 나우루 투발루
사조산업	제503오룡호	1554.7	북양트롤	태평양	1	러시아, 공해
사조씨에스	제325오룡호	389	참치연승	태평양	1	키리바시 EEZ, 공해
사조오양	제96오양호	393	북양트롤	태평양	2	러시아
	제77오양호	899.12	해외트롤	태평양	1	뉴질랜드
삼영수산	101삼영	661	오징어채낚기	대서양	1	포클랜드
상지수산	서진11호	449.68	오징어채낚기	대서양	1	포클랜드
서경	주피터	435	모선식외줄낚시	대서양	3	기니아, 코나크리
서동인터내셔널	608태웅	391.11	해외트롤	대서양		
서림수산	302서림	433.5	원양붕수망	태평양	1	북태평양
서해수산	압사리3호	348.39	해외트롤	대서양	6	프리티운
선민수산	9은해	498	원양붕수망	태평양	1	북태평양, 러시아, 일본
선우실업	정우1호	492	저연승	대서양	4	동남대서양
성경수산	제505성경	482	원양붕수망	태평양	1	공해, 러시아, 일본
소진해운	SOJIN 101	378	참치연승	태평양	1	키리바시
신지수산	신지호	360	저연승	태평양	16	뉴질랜드
에스엔에이치	601삼영	497.06	오징어채낚기	대서양	1	포클랜드
에스티디수산	에스티디1호	392	참치연승			
예람교역	91태백호	495	원양붕수망	태평양	1	북태평양
웨스트베이어업	WEST BAY NO.18	398	참치연승	태평양		
유신수산	제505유신호	332.03	참치연승			인도양
유앤씨	103바다호	349	원양붕수망	태평양	1	러시아, 일본, 공해
인성실업	인성호	2999.12	해외트롤	대서양	2	포클랜드
인터불고	루안다1호	225	해외트롤	대서양	5	앙골라
인터투나	에버리치636호	380	참치연승	대서양		대서양 공해
주암산업	페시누이	265	해외트롤	태평양	12	뉴질랜드
지오엠	지오엠379	232	해외트롤	태평양	1	뉴질랜드
창진교역	302창진호	427	원양붕수망	태평양		태평양
탑수산	601동삼호	532	원양붕수망	태평양	1	북태평양
태흥피쉬어리	31선	240	원양붕수망	태평양		태평양
통영산업	808통영호	303	오징어채낚기	대서양	1	포클랜드, 페루, 공해
풍림수산	풍림7호	460	해외트롤	대서양	2	기니비사우
한성기업	주성호	2866	북양트롤			
해나	COSECHA	278	해외트롤	대서양	2	포클랜드
해인수산	제21해인	808	오징어채낚기	대서양	1	포클랜드 공해
해정	해정7호	219	해외트롤	대서양		비사우기니

전체 응답한 어선 중 업종별로는 해외트롤이 22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참치연승 15척, 원양붕수망 9척, 북양트롤 5척, 오징어 채낚기 5척, 저연승 3척, 참치선망 3척, 새우트롤 1척, 원양외줄낚시 1척, 모선식외줄낚시 1척 순으로 나타났다(<표 5-50> 참조).

〈표 5-50〉 업종별 톤수별 조사응답 원양산업 어선 현황

업종	톤수					합계
	~199	200~499	500~1599	1600~2999	3000~	
참치연승	0	15	0	0	0	15
저연승	0	3	0	0	0	3
참치선망	0	0	3	0	0	3
원양붕수망	0	8	1	0	0	9
북양트롤	0	2	1	1	1	5
해외트롤	4	15	2	0	1	22
새우트롤	1	0	0	0	0	1
오징어채낚기	0	3	2	0	0	5
원양외줄낚시	0	1	0	0	0	1
모선식외줄낚시	0	1	0	0	0	1
합계	5	48	9	1	2	65

조업수역별로는 태평양이 35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서양 22척, 인도양 2척, 그리고 조업수역이 결측으로 된 어선이 6척으로 나타났다(<표 5-51> 참조).

〈표 5-51〉 업종별 조업해역별 조사응답 원양산업 어선 현황

업종	조업해역				합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결측	
참치연승	9	3	0	3	15
저연승	2	1	0	0	3
참치선망	3	0	0	0	3
원양붕수망	9	0	0	0	9
북양트롤	3	1	0	1	5
해외트롤	9	9	2	2	22
새우트롤	0	1	0	0	1
오징어채낚기	0	5	0	0	5
원양외줄낚시	0	1	0	0	1
모선식외줄낚시	0	1	0	0	1
합계	35	22	2	6	65

2) 조사결과에 대한 원양어선의 생산 및 경영현황 통계치 산출 방식

원양어선의 경우 기본적으로 업종별, 톤수별로 생산 및 경영현황에 대한 통계치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생산 및 경영지표에 대한 응답어선 수, 평균을 산출하였다. 단, 톤수규모별로 1600~2999 톤의 조사 어선 수는 1척이기 때문에 즉시 해당 선박의 정보를 알 수있기 때문에 1600~2999 톤과 3000톤 이상을 합하였다. 또한 내·외국인 선원 승선현황 및 이들의 임금은 원양산업 통계연보에 총계가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므로 통계치를 산출하지 않았다.

생산지표의 총계는 원양산업 통계연보에 수록되어 있고 또한 전체 협회에서 제공 받은 전체 어선의 업종별 현황이 본 조사에서의 업종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총계추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3) 연간 어로원가

가. 출어비

업종별 각 어로원가에 해당하는 출어비 항목별 평균은 다음 <표 5-52>와 같다. 참치연승의 경우 어선별 출어비 평균은 17억, 저연승 13억, 참치선망 61억, 원양붕수망 14억, 북양트롤 74억, 해외트롤 41억, 새우트롤 2억, 오징어채낚기 18억, 원야외줄낚시 15억, 모선식외줄낚시 89억이며, 전체 출어비 총계의 평균은 32억으로 나타났다.

〈표 5-52〉 응답 어선의 업종별 연간 출어비 항목별 평균

(단위 : 천원)

업종	응답 어선수	어구비	유류비	입어료	이료비	운반비
참치연승	12	44,444	795,001	62,748	189,220	140,778
저연승	2	64,000	450,860	37,500	52,000	306,500
참치선망	3	283,900	2,658,667	750,333	0	790,667
원양붕수망	9	30,031	382,921	61,164	12,500	173,211
북양트롤	5	202,868	2,051,564	2,497,216	0	993,167
해외트롤	17	106,850	1,292,802	653,329	0	662,199
새우트롤	1	0	1,000	0	0	0
오징어채낚기	5	70,550	458,961	36,314	0	320,170
원양외줄낚시	1	0	700,000	200,000	0	100,000
모선식외줄낚시	1	40,000	8,096,000	149,000	20,000	205,375
합계	56	89,408	1,164,130	495,584	44,770	435,048
업종	소모품비	주부식비	수리비	항만비	기타	합계
참치연승	48,148	134,584	131,276	26,217	152,660	1,725,076
저연승	59,935	92,500	145,621	16,000	59,500	1,284,415
참치선망	893,333	92,667	145,333	195,000	264,333	6,074,233
원양붕수망	147,120	51,990	172,220	54,799	302,369	1,388,325
북양트롤	384,020	173,702	296,325	68,775	694,219	7,361,856
해외트롤	343,276	96,039	273,925	39,626	641,998	4,110,045
새우트롤	1,700	38,000	170,400	900	0	212,000
오징어채낚기	155,654	75,098	153,606	37,736	476,930	1,785,019
원양외줄낚시	100,000	60,000	200,000	50,000	100,000	1,510,000
모선식외줄낚시	235,000	12,000	90,000	40,000	30,000	8,917,375
합계	242,366	98,796	200,345	48,605	399,374	3,218,426

업종별 각 출어비 항목 구성비는 다음 <표 5-53>과 같다. 전체적으로 어구비 2.8%, 유류비 36.2%, 입어료 15.4%, 이료비 1.4%, 운반비 13.5%, 주부식비 7.5%, 수리비 3.1%, 항만비 6.2%, 기타 1.5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유류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새우트롤의 경우에는 항만비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새우트롤 업체가 2009년도에는 출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3〉 응답 어선의 업종별 연간 출어비 항목별 구성비

업종	응답 어선수	어구비	유류비	입어료	이료비	운반비
참치연승	12	2.6%	46.1%	3.6%	11.0%	8.2%
저연승	2	5.0%	35.1%	2.9%	4.0%	23.9%
참치선망	3	4.7%	43.8%	12.4%	0.0%	13.0%
원양봉수망	9	2.2%	27.6%	4.4%	0.9%	12.5%
북양트롤	5	2.8%	27.9%	33.9%	0.0%	13.5%
해외트롤	17	2.6%	31.5%	15.9%	0.0%	16.1%
새우트롤	1	0.0%	0.5%	0.0%	0.0%	0.0%
오징어채낚기	5	4.0%	25.7%	2.0%	0.0%	17.9%
원양외줄낚시	1	0.0%	46.4%	13.2%	0.0%	6.6%
모선식외줄낚시	1	0.4%	90.8%	1.7%	0.2%	2.3%
합계	56	2.8%	36.2%	15.4%	1.4%	13.5%
업종	소모품비	주부식비	수리비	항만비	기타	합계
참치연승	2.8%	7.8%	7.6%	1.5%	8.8%	100.0%
저연승	4.7%	7.2%	11.3%	1.2%	4.6%	100.0%
참치선망	14.7%	1.5%	2.4%	3.2%	4.4%	100.0%
원양봉수망	10.6%	3.7%	12.4%	3.9%	21.8%	100.0%
북양트롤	5.2%	2.4%	4.0%	0.9%	9.4%	100.0%
해외트롤	8.4%	2.3%	6.7%	1.0%	15.6%	100.0%
새우트롤	0.8%	17.9%	80.4%	0.4%	0.0%	100.0%
오징어채낚기	8.7%	4.2%	8.6%	2.1%	26.7%	100.0%
원양외줄낚시	6.6%	4.0%	13.2%	3.3%	6.6%	100.0%
모선식외줄낚시	2.6%	0.1%	1.0%	0.4%	0.3%	100.0%
합계	7.5%	3.1%	6.2%	1.5%	12.4%	100.0%

톤수별 출어비 평균은 ~199톤 일때 14억, 200~499톤 26억, 500~1599톤 44억, 1600톤 이상 101억으로 어선의 톤수가 증가할수록 출어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5.54> 참조). 업종별 각 출어비 항목 구성비는 다음 <표 5-55>와 같다. 전체적으로 유류비가 높은 가운데 톤수가 증가할수록 유류비 구성비는 감소하고 입어료 및 운반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4〉 응답 어선의 톤수별 연간 출어비 항목별 평균

(단위 : 천원)

톤수	응답 어선수	어구비	유류비	입어료	이료비	운반비
~199	4	51,456	584,387	9,770	0	258,210
200~499	40	74,363	1,073,309	272,267	59,866	271,334
500~1599	9	164,512	1,535,413	1,014,250	12,500	536,780
1600~	3	115,297	2,034,214	2,564,901	0	2,548,479
합계	56	89,408	1,164,130	495,584	44,770	435,048
톤수	소모품비	주부식비	수리비	항만비	기타	합계
~199	211,456	43,102	89,547	5,820	163,266	1,417,012
200~499	166,690	96,222	203,931	36,100	367,392	2,621,475
500~1599	466,725	92,794	209,842	96,515	241,477	4,370,809
1600~	619,519	225,379	271,768	128,657	1,614,302	10,122,515
합계	242,366	98,796	200,345	48,605	399,374	3,218,426

〈표 5-55〉 응답 어선의 톤수별 연간 출어비 항목별 구성비

톤수	응답 어선수	어구비	유류비	입어료	이료비	운반비
~199	4	3.6%	41.2%	0.7%	0.0%	18.2%
200~499	40	2.8%	40.9%	10.4%	2.3%	10.4%
500~1599	9	3.8%	35.1%	23.2%	0.3%	12.3%
1600~	3	1.1%	20.1%	25.3%	0.0%	25.2%
합계	56	2.8%	36.2%	15.4%	1.4%	13.5%
톤수	소모품비	주부식비	수리비	항만비	기타	합계
~199	14.9%	3.0%	6.3%	0.4%	11.5%	100.0%
200~499	6.4%	3.7%	7.8%	1.4%	14.0%	100.0%
500~1599	10.7%	2.1%	4.8%	2.2%	5.5%	100.0%
1600~	6.1%	2.2%	2.7%	1.3%	15.9%	100.0%
합계	7.5%	3.1%	6.2%	1.5%	12.4%	100.0%

나. 임금 및 관리비

업종별 각 어로원가에 해당하는 임금 및 관리비 항목별 평균은 다음 <표 5-56>과 같다. 참치연승의 경우 어선별 임금 및 관리비 평균은 5.3억, 저연승 6.4억, 참치선망 17.0억, 원양봉수망 5.5억, 북양트롤 11.4억, 해외트롤 9.1억, 오징어채낚기 3.4억, 월야 외줄낚시 0.8억, 모선식외줄낚시 2.3억이며, 전체 임금 및 관리비의 평균은 7.4억으로 나타났다.

〈표 5-56〉 응답 어선의 업종별 연간 임금 및 관리비 항목별 평균

(단위 : 천원)

업종	응답 어선수	선원임금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기타	합계
참치연승	12	483,336	1,631	40,423	4,333	529,723
저연승	2	496,000	4,195	52,773	88,000	640,968
참치선망	3	1,475,000	4,000	218,667	0	1,697,667
원양봉수망	9	399,117	4,842	73,796	77,256	555,012
북양트롤	5	895,467	23,392	102,624	120,706	1,142,190
해외트롤	17	626,605	56,234	59,772	168,147	910,757
새우트롤	1	-	-	-	-	-
오징어채낚기	5	116,275	35,942	86,907	100,000	339,124
원양외줄낚시	1	75,000	0	0	0	75,000
모선식외줄낚시	1	137,330	0	64,583	30,000	231,913
합계	56	548,793	23,860	70,342	87,774	744,056

업종별 각 임금 및 관리비 항목 구성비는 다음 <표 5-57>과 같다. 전체적으로 선원 임금이 73.8%로 가장 높으며, 감가상각비 9.5%, 조세공과 0.3% 순이다.

〈표 5-57〉 응답 어선의 업종별 연간 임금 및 관리비 항목별 구성비

업종	응답 어선수	선원임금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기타	합계
참치연승	12	91.2%	0.3%	7.6%	0.8%	100.0%
저연승	2	77.4%	0.7%	8.2%	13.7%	100.0%
참치선망	3	86.9%	0.2%	12.9%	0.0%	100.0%
원양봉수망	9	71.9%	0.9%	13.3%	13.9%	100.0%
북양트롤	5	78.4%	2.0%	9.0%	10.6%	100.0%
해외트롤	17	68.8%	6.2%	6.6%	18.5%	100.0%
새우트롤	1	-	-	-	-	-
오징어채낚기	5	34.3%	10.6%	25.6%	29.5%	100.0%
원양외줄낚시	1	100.0%	0.0%	0.0%	0.0%	100.0%
모선식외줄낚시	1	59.2%	0.0%	27.8%	12.9%	100.0%
합계	56	73.8%	3.2%	9.5%	11.8%	100.0%

톤수별 출어비 평균은 ~199톤 일때 3.1억, 200~499톤 5.9억, 500~1599톤 11.2억, 1600톤 이상 20.9억으로 어선의 톤수가 증가할수록 출어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5-58> 참조).

업종별 각 임금 및 관리비 항목 구성비는 다음 <표 5-59>와 같다. 전체적으로 선원 임금 비율이 높은 가운데 199톤 이하 소형어선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원임금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8> 응답 어선의 톤수별 연간 임금 및 관리비 항목별 평균 (단위 : 천원)

톤수	응답 어선수	선원임금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기타	합계
~199	4	171,488	15,436	14,366	38,600	319,853
200~499	40	440,060	25,517	70,401	54,686	590,664
500~1599	9	929,573	13,977	93,778	80,067	1,117,395
1600~	3	1,359,306	42,659	73,877	617,623	2,093,465
합계	56	548,793	23,860	70,342	87,774	744,056

<표 5-59> 응답 어선의 톤수별 연간 임금 및 관리비 항목별 구성비

톤수	응답 어선수	선원임금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기타	합계
~199	4	53.6%	4.8%	4.5%	12.1%	100.0%
200~499	40	74.5%	4.3%	11.9%	9.3%	100.0%
500~1599	9	83.2%	1.3%	8.4%	7.2%	100.0%
1600~	3	64.9%	2.0%	3.5%	29.5%	100.0%
합계	56	73.8%	3.2%	9.5%	11.8%	100.0%

제2절 해외합작어업 조사결과

1. 해외합작어업 사업체별 생산 및 경영현황

1) 일반사항

조사시점에 원양협회에 등록된 국내 모기업 총 17개 사업체가 해외합작어업어업 조사대상이다. 17개 사업체의 모기업명, 사업체명, 진출국, 모기업소재지, 투자금액, 투자비율, 보유어선 척수, 보유어선 총톤수는 다음 <표 5-60>과 같다. 단, 보유어선 총 척수, 보유어선 총 톤수는 원양협회 자료를 참조로 하고, 결측이 있을 경우에는 실지 본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동남과 한성기업은 2개국에 진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15개 사업체는 1개국에 진출하여 진출현지 사업체 수는 19개가 해당되며, 진출국가별로는 결측이 5개 사업체를 제외할 때, 러시아가 9개 사업체 전체 진출국가 대비 64.3%로 아주 높았으며, 아르헨티나 2개, 멕시코, 칠레, 미국이 각 1개로 나타났다. 17개 모기업 사업체 중 서울이 8개(47.1%). 부산 9개(52.9%)이며, 총 19개 현재 사업체 중 결측 7개 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사업체의 평균 투자금액은 130천\$로 0.5천\$~640천\$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0〉 조사응답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일반 현황

모기업명	사업체명	진출국	모기업 소재지	진출 연도	투자 금액 (천\$)	투자비율		보유어선 척수	보유어선 총톤수 (G/T)
						내국인	외국인		
극동수산	-	-	서울	-	-	-	-	1	4,407
동남	폴룩스	러시아	부산	2002	3	49	51	4	7,113
	서레스테 아르젠 에스에이	아르헨티나		1992	60	100	0	2	1,007
명성피셔리	명성피셔리	러시아	부산	2002	-	-	-	1	1,457
사조대림	에카르마- 사할린	러시아	서울	2001	30	50	50	1	1,457
사조산업	오리온	러시아	서울	2010	640	49	51	2	2,753
사조오양	트랄콤	러시아	서울	2002	167	50	50	1	4,986
상일교역	달웨스트	러시아	부산	2002	40	50	50	1	4,457
성경수산	-	-	서울	-	-	-	-	2	4,911
신라교역	신라교역	-	서울	-	0.5	50	50	2	3,545
에이스수산	키마코퍼레 이션	멕시코	부산	2009	300	49	51	2	172
원경수산	원경수산	칠레	서울	2004	200	90	10	3	79
인성실업	아티카	러시아	서울	2002	1	55	45	1	3,514
조나단피셔리	조나단 피셔리	러시아	부산	2004	1	50	50	1	4,407
참한수산	-	-	부산	-	-	-	-	1	-
청빙수산	-	-	부산	-	-	-	-	1	795
코엑심	-	미국	부산	2000	-	49	51	1	1,476
한성기업	우수리사	러시아	부산	2002	-	50	50	2	7,646
	-	아르헨티나		-	121	49	51	-	-

총 19개 해외합작 사업체 중 6개의 결측을 제외하고, 진출연도별 현황은 거의 대부분이 2000년~2004년도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2년도 1개 2009년도 1개 사업체로 나타났다(<표 5-61> 참조).

〈표 5-61〉 진출연도별 조사응답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현황

진출연도	사업체 수	비율
~1999	1	7.1%
2000~2004	11	78.6%
2005~	1	7.1%
응답업체 합계	13	100.0%
결측	6	-

총 19개 해외합작 사업체 중 결측 5개 사업체를 제외하고, 내국인 투자비율 현황은 49%가 5개 사업체, 50% 6개, 55% 1개 90% 1개 100% 1개 사업체로 거의 대부분 49% 아니면 50%의 내국인 투자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62> 참조).

<표 5-62> 내국인 투자비율별 조사응답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현황

내국인 투자비율	사업체 수	비율
49%	5	35.7%
50%	6	42.9%
55%	1	7.1%
90%	1	7.1%
100%	1	7.1%
응답업체 합계	14	100.0%
결측	5	-

총 19개 해외합작 사업체 중 결측 1개 사업체를 제외하고, 사업체당 보유척수 별로는 1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수는 10개, 2~4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수는 8개 나타났으며(<표 5-63> 참조), 총 18개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총 어선 수는 29척으로 사업체당 평균은 1.61척이며, 사업체당 1척~4척 사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63> 보유척수별 조사응답 원양산업 사업체 현황

보유척수	사업체 수	비율
1척	10	55.6%
2~4척	8	44.4%
응답업체 합계	18	100.0%
결측	1	-

총 19개 해외합작 사업체 중 결측 2개 사업체를 제외하고, 사업체당 보유어선 총 톤수 현황은 2,999 이하가 8개, 3,000톤 이상이 9개 사업체로 나타났으며, 총 17개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총 어선의 톤수는 54,182톤으로 사업체당 평균은 3,187척이며, 사업체당 79~7,646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64〉 보유척수별 조사응답 원양산업 사업체 현황

보유척수	사업체 수	비율
~2,999	8	47.1%
3,000~	9	52.9%
응답업체 합계	17	100.0%
결측	2	-

2) 조사결과에 대한 사업체별 통계치 산출 방식

본 조사결과 생산 및 경영현황을 질문하는 조사항목별로 무응답 사업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총계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응답을 보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사업체 규모별로 생산 및 경영현황에 대한 확인한 구분이 발생하므로 보유어선의 척수별, 총 톤수를 다음 <표 5-65>와 같이 각 2개의 그룹에 따라 사업체를 구분하고, 앞서 원양산업체에서의 총계 추정방식을 따랐다. 이때, 참한수산은 보유척수가 1척이기 때문에 보유어선 총 톤수를 2,999톤 이하로 하고, 아르헨티나 진출 한성기업의 경우 조사에 응한 유동자산 등 경영지표를 참고로 할 때 보유척수 2~4척, 보유어선 총 톤수 3,000톤 이상으로 정하였다.

〈표 5-65〉 해외합작어업 사업체별 통계치 산출 방식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	총계추정
1척	10				
2~4척	9				
사업체 합계	19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	총계추정
~2,999	9				
3,000~	10				
사업체 합계	19				

3) 총계추정치 추정결과의 요약 및 추정치의 정도 분석

가. 표본오차를 통한 추정치의 정도 분석 방법

원양산업 합작 사업체의 경우 보유척수와 보유어선 총 톤수 그룹을 <표 5-65>와 같이 2개로 나누어서 총계를 추정하였다. 따라서 앞서 5.1절에서 논의한 원양산업 사업체에서 산출한 표준오차 추정 공식을 2개 그룹에 따라 산출하면 된다. 추정치의 정도(precision)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통계치로 변동계수(CV : coefficient of variation)를 사용하며 원양산업 사업체에서 산출한 공식과 마찬가지로 다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extcircled{1} \text{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hat{\tau}_1) \text{에 대한 95\% CV : } \frac{SE(\hat{\tau}_1)}{\hat{\tau}_1} \times 100(\%)$$

$$\textcircled{2} \text{ 보유어선 총 톤수별 총계 추정치}(\hat{\tau}_2) \text{에 대한 95\% CV : } \frac{SE(\hat{\tau}_2)}{\hat{\tau}_2} \times 100(\%)$$

원양산업 사업체에서 집계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보유척수별로 산출한 총계를 공표 통계치로 사용하며, CV가 15% 이내에 경우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통계치 추정치의 요약 및 표본오차

다음 <표 5-67>~<표 5-98>에서 산출된 원양산업 합작 사업체에 대한 각 항목별 총계 및 평균 추정치를 토대로 보유어선 척수별로 집계된 통계치에 대한 표준오차, 95% CI, CV는 <표 5-66>과 같다. 모든 총계치에 대한 CV는 15%를 초과하기 때문에 공표하기에는 신뢰성이 아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6〉 원양산업 합작 사업체 조사결과의 요약 및 표본오차 - 보유어선 척수별 집계 -

통계명(단위)		보유어선 척수별				
		통계치	SE	CV	하한	상한
종사자 수 (명)	내국인 원양산업 관련 종사자 수	100	43.9	43.9%	14	186
	외국인 원양산업 관련 종사자 수	1,079	402.6	37.3%	290	1,868
연간 급여액 (천\$)	내국인 원양산업 관련 종사자 급여액	4,228	2,142.5	50.7%	29	8,427
	외국인 원양산업 관련 종사자 급여액	16,487	6,794.4	41.2%	3,170	29,804
생산 현황	연간 총 생산량(M/T)	114,040	49,781.3	43.7%	16,469	211,611
	연간 총 생산금액(천\$)	98,193	61,001.9	62.1%	0	217,757
유형자산 (천\$)	토지	5	6.5	130.0%	0	18
	건물	225	326.2	145.0%	0	864
	기계장치	0	-	-	-	-
	어망·어구	113	163.1	144.3%	0	433
	어선	8,763	9,499.4	108.4%	0	27,382
	기타	313	344.4	110.0%	0	988
	합계	9,418	9,716.3	103.2%	0	28,462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천\$)	원(부·보조) 재료비	51,334	74,372.2	144.9%	0	197,104
	연료비	34,432	18,062.1	52.5%	0	69,834
	전력비	1,107	1,596.7	144.2%	0	4,237
	용수비(수도비)	2	3.3	165.0%	0	8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0	-	-	-	-
	인건비(급여, 퇴직금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25,099	8,482.1	33.8%	8,474	41,724
	수선비(수리유지비)	21,777	8,019.7	36.8%	6,058	37,496
	감가상각비	2,583	3,059.8	118.5%	0	8,580
	임차료(부지·건물·토지)	1,074	830.9	77.4%	0	2,703
	세금과 공과	3,596	1,415.3	39.4%	822	6,370
	대손상각비	0	-	-	-	-
	광고선전비	0	-	-	-	-
	운반·하역·보관비	20,359	5,485.5	26.9%	9,607	31,111
	기타(보험료, 접대비 등)	93,229	27,017.7	29.0%	40,274	146,184
합계	254,600	108,233.3	42.5%	42,463	466,737	
자산, 자본금, 매출액, 부가가치 (천\$)	연간 매출액(재고 제외)	157,343	43,550.7	27.7%	71,984	242,702
	원양어업 분야 매출액	130,688	44,599.8	34.1%	43,272	218,104
	부가가치	84,979	43,150.6	50.8%	404	169,554

3) 종사자 수 조사 및 총계 추정 결과

2009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종사자 수를 조사하였다. 해외합작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 총계는 조사된 업체 모두 내국인과 외국인의 합계로 표기되어 있어, 총계를 추정할 수 내국인 외국인 총계 추정치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가. 내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수

내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수는 총 19개 사업체 중 6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31.6%이다.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는 100명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21명으로 내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수의 총계가 추정되었다(<표 5-67> 참조).

<표 5-67>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내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명)	총계추정 (명)
1척	10	2	20.0%	3.0	30
2~4척	9	4	44.4%	7.8	70
사업체 합계	19	6	31.6%	5.3	100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명)	총계추정 (명)
~2,999	9	3	33.3%	2.7	24
3,000~	10	3	30.0%	9.7	97
사업체 합계	19	6	31.6%	6.4	121

나. 외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수

외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수는 총 19개 사업체 중 6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31.6%이다.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는 1,079명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156명으로 외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수의 총계가 추정되었다(<표 5-68> 참조).

〈표 5-68〉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외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명)	총계추정 (명)
1척	10	2	20.0%	51.0	510
2~4척	9	4	44.4%	63.3	569
사업체 합계	19	6	31.6%	56.8	1,079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명)	총계추정 (명)
~2,999	9	3	33.3%	27.3	246
3,000~	10	3	30.0%	91.0	910
사업체 합계	19	6	31.6%	60.8	1,156

4) 연간급여액 조사 및 총계 추정 결과

2009년 1월 1일~12월 31일 1년간 기준으로 연간 급여액 총액을 조사하였다. 해외 합작 사업체 전체 연간 급여액 총계는 조사된 업체 모두 내국인과 외국인급여의 합계로 표기되어 있어, 총계를 추정할 수 내국인 외국인 총계 추정치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가. 내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의 연간 급여액

내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의 연간 급여액에 대해서는 총 19개 사업체 중 5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26.3%이다. 내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의 연간 급여액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4,228천\$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4,173천\$로 추정되었다(<표 5-69> 참조).

〈표 5-69〉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내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연간 급여액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명)	총계추정 (천\$)
1척	10	2	20.0%	160.0	1,600
2~4척	9	3	33.3%	292.0	2,628
사업체 합계	19	5	26.3%	222.5	4,228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명)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80.0	720
3,000~	10	3	30.0%	345.3	3,453
사업체 합계	19	5	26.3%	219.6	4,173

나. 외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의 연간 급여액

외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의 연간급여액에 대해서는 총 19개 사업체 중 5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26.3%이다. 외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의 연간 급여액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16,487천\$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6,364천\$로 추정되었다(<표 5-70> 참조).

<표 5-70>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외국인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연간 급여액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명)	총계추정 (천\$)
1척	10	2	20.0%	704.0	7,040
2~4척	9	3	33.3%	1,049.7	9,447
사업체 합계	19	5	26.3%	867.7	16,487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명)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503.0	4,527
3,000~	10	3	30.0%	1,183.7	11,837
사업체 합계	19	5	26.3%	861.2	16,364

5) 연간 총 생산량 및 생산금액 조사 및 총계 추정 결과

2009년 1월 1일~12월 31일 1년간 기준으로 연간 총 생산량(단위 : M/T), 총 생산금액(단위 : 천\$)을 조사하였다.

가. 연간 총 생산량

연간 총 생산량은 총 19개 사업체 중 8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42.1%이다. 연간 총 생산량은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114,040톤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20,808톤으로 추정되었다(<표 5-71> 참조).

〈표 5-71〉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연간 총 생산량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M/T)	총계추정 (M/T)
1척	10	4	40.0%	4,726.3	47,263
2~4척	9	4	44.4%	7,419.8	66,778
사업체 합계	19	8	42.1%	6,002.1	114,040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M/T)	총계추정 (M/T)
~2,999	9	4	44.4%	651.8	5,866
3,000~	10	4	40.0%	11,494.3	114,943
사업체 합계	19	8	42.1%	6,358.3	120,808

나. 연간 총 생산금액

연간 총 생산금액은 총 19개 사업체 중 7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36.8%이다. 연간 총 생산금액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0.98억\$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07억\$로 추정되었다(<표 5-72> 참조).

〈표 5-72〉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연간 총 생산금액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3	30.0%	868.9	8,689
2~4척	9	4	44.4%	9,944.9	89,504
사업체 합계	19	7	36.8%	5,168.1	98,193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3	33.3%	883.9	7,955
3,000~	10	4	40.0%	9,933.7	99,337
사업체 합계	19	7	36.8%	5,646.9	107,292

6) 유형자산 조사 및 총계 추정 결과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형자산을 조사하였다.

가. 토지

토지에 대해서는 총 19개 사업체 중 5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26.3%이다. 유형자산 중 토지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5천\$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7천\$로 추정되었다(<표 5-73> 참조).

〈표 5-73〉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토지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0.0	0
2~4척	9	4	44.4%	0.5	5
사업체 합계	19	5	26.3%	0.2	5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0.0	0
3,000~	10	3	30.0%	0.7	7
사업체 합계	19	5	26.3%	0.4	7

나. 건물

건물에 대해서는 총 19개 사업체 중 5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26.3%이다. 유형자산 중 건물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225천\$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450천\$로 추정되었다(<표 5-74> 참조).

〈표 5-74〉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건물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0.0	0
2~4척	9	4	44.4%	25.0	225
사업체 합계	19	5	26.3%	11.8	225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50.0	450
3,000~	10	3	30.0%	0.0	0
사업체 합계	19	5	26.3%	23.7	450

다. 기계장치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총 19개 사업체 중 5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26.3%이다.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는 0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0으로 유형자산 중 기계장치의 총계가 추정되었다(<표 5-75> 참조).

〈표 5-75〉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기계장치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0.0	0
2~4척	9	4	44.4%	0.0	0
사업체 합계	19	5	26.3%	0.0	0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0.0	0
3,000~	10	3	30.0%	0.0	0
사업체 합계	19	5	26.3%	0.0	0

라. 어망·어구

어망·어구에 대해서는 총 19개 사업체 중 5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26.3%이다. 유형자산 중 어망·어구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113천\$ 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225천\$로 추정되었다(<표 5-76> 참조).

〈표 5-76〉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어망·어구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0.0	0
2~4척	9	4	44.4%	12.5	113
사업체 합계	19	5	26.3%	5.9	113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25.0	225
3,000~	10	3	30.0%	0.0	0
사업체 합계	19	5	26.3%	11.8	225

마. 어선(감가상각된 장부가액 기재)

어선에 대해서는 총 19개 사업체 중 5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26.3%이다. 유형자산 중 어선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8,763천\$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2,822천\$로 추정되었다(<표 5-77> 참조).

<표 5-77>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어선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67.0	670
2~4척	9	4	44.4%	899.3	8,093
사업체 합계	19	5	26.3%	461.2	8,763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261.0	2,349
3,000~	10	3	30.0%	1,047.3	10,473
사업체 합계	19	5	26.3%	674.9	12,822

바. 기타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총 19개 사업체 중 5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26.3%이다. 유형자산 중 기타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313천\$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498천\$로 추정되었다(<표 5-78> 참조).

<표 5-78>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중 기타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0.0	0
2~4척	9	4	44.4%	34.8	313
사업체 합계	19	5	26.3%	16.5	313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15.0	135
3,000~	10	3	30.0%	36.3	363
사업체 합계	19	5	26.3%	26.2	498

사. 유형자산 합계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총 19개 사업체 중 5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 26.3%이다. 유형자산 중 전체 합계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9,418천\$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4,002천\$로 추정되었다(<표 5-79> 참조).

〈표 5-79〉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합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67.0	670
2~4척	9	4	44.4%	972.0	8,748
사업체 합계	19	5	26.3%	495.7	9,418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351.0	3,159
3,000~	10	3	30.0%	1,084.3	10,843
사업체 합계	19	5	26.3%	737.0	14,002

아. 유형자산 각 항목별 비중

위에서 구한 유형자산 각 항목별 총계 추정치를 토대로 유형자산의 구성비를 추정할 수 있다. 보유척수별, 보유어선 총 톤수별 총계 추정치 모두 해외합작어업 사업체는 유형자산 중 어선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표 5-80> 참조).

〈표 5-80〉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유형자산 항목별 비중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유형자산 항목별 구성비						
		토지	건물	기계장치	어망어구	어선	기타	합계
1척	10	0.0%	0.0%	0.0%	0.0%	100.0%	0.0%	100.0%
2~4척	9	0.1%	2.6%	0.0%	1.3%	92.5%	3.6%	100.0%
사업체 합계	19	0.1%	2.4%	0.0%	1.2%	93.0%	3.3%	100.0%
보유어선 총 톤수(G/T)	사업체 수	유형자산 항목별 구성비						
		토지	건물	기계장치	어망어구	어선	기타	합계
~2,999	9	0.0%	14.2%	0.0%	7.1%	74.4%	4.3%	100.0%
3,000~	10	0.1%	0.0%	0.0%	0.0%	96.6%	3.3%	100.0%
사업체 합계	19	0.0%	3.2%	0.0%	1.6%	91.6%	3.6%	100.0%

7)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조사 및 총계 추정 결과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조사하였다. 총 19개 사업체 중 5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26.3%이다.

가. 원(부·보조) 재료비

제조원가 및 판매비 중 원 재료비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51,334천\$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76,035천\$로 추정되었다(<표 5-81> 참조).

〈표 5-81〉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원재료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3.0	30
2~4척	9	4	44.4%	5,701.5	51,314
사업체 합계	19	5	26.3%	2,702.3	51,344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2.0	18
3,000~	10	3	30.0%	7,601.7	76,017
사업체 합계	19	5	26.3%	4,001.8	76,035

나. 연료비

제조원가 및 판매비 중 연료비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34,432천\$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26,240천\$로 추정되었다(<표 5-82> 참조).

〈표 5-82〉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연료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2,160.0	21,600
2~4척	9	4	44.4%	1,425.8	12,832
사업체 합계	19	5	26.3%	1,812.2	34,432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13.0	117
3,000~	10	3	30.0%	2,612.3	26,123
사업체 합계	19	5	26.3%	1,381.1	26,240

다. 전력비

제조원가 및 판관비 중 전력비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1,107천\$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2,214천\$로 추정되었다(<표 5-83> 참조).

〈표 5-83〉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전력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0.0	0
2~4척	9	4	44.4%	123.0	1,107
사업체 합계	19	5	26.3%	58.3	1,107
보유어선 총 톤수(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246.0	2,214
3,000~	10	3	30.0%	0.0	0
사업체 합계	19	5	26.3%	116.5	2,214

라. 용수비(수도비)

제조원가 및 판관비 중 용수비(수도비)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2천\$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5천\$로 추정되었다(<표 5-84> 참조).

〈표 5-84〉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용수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0.0	0
2~4척	9	4	44.4%	0.3	2
사업체 합계	19	5	26.3%	0.1	2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0.5	5
3,000~	10	3	30.0%	0.0	0
사업체 합계	19	5	26.3%	0.2	5

마.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제조원가 및 판관비 중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는 0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0으로 추정되었다(<표 5-85> 참조).

〈표 5-85〉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외주가공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0.0	0
2~4척	9	4	44.4%	0.0	0
사업체 합계	19	5	26.3%	0.0	0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0.0	0
3,000~	10	3	30.0%	0.0	0
사업체 합계	19	5	26.3%	0.0	0

바. 인건비(급여, 퇴직금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및 판관비 중 인건비(급여, 퇴직금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25,099천\$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20,150천\$로 추정되었다(<표 5-86> 참조).

〈표 5-86〉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인건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1,602.0	16,020
2~4척	9	4	44.4%	1,008.8	9,079
사업체 합계	19	5	26.3%	1,321.0	25,099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583.0	5,247
3,000~	10	3	30.0%	1,490.3	14,903
사업체 합계	19	5	26.3%	1,060.5	20,150

사. 수선비(수리유지비)

제조원가 및 판관비 중 수선비(수리유지비)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21,777천\$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5,260천\$로 추정되었다(<표 5-87> 참조).

<표 5-87>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수선비(수리유지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1,522.0	15,220
2~4척	9	4	44.4%	728.5	6,557
사업체 합계	19	5	26.3%	1,146.1	21,777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203.0	1,827
3,000~	10	3	30.0%	1,343.3	13,433
사업체 합계	19	5	26.3%	803.2	15,260

아. 감가상각비

제조원가 및 판관비 중 감가상각비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는 2,583천\$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3,596천\$로 추정되었다(<표 5-88> 참조).

<표 5-88>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감가상각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27.0	270
2~4척	9	4	44.4%	257.0	2,313
사업체 합계	19	5	26.3%	135.9	2,583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34.0	306
3,000~	10	3	30.0%	329.0	3,290
사업체 합계	19	5	26.3%	189.3	3,596

자. 임차료(부지·건물·토지)

제조원가 및 판관비 중 임차료(부지·건물·토지)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는 1,074천\$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293천\$로 추정되었다(<표 5-89> 참조).

<표 5-89>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임차료(부지·건물·토지)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32.0	320
2~4척	9	4	44.4%	83.8	754
사업체 합계	19	5	26.3%	56.5	1,074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30.0	270
3,000~	10	3	30.0%	102.3	1,023
사업체 합계	19	5	26.3%	68.1	1,293

차. 세금과 공과

제조원가 및 판관비 중 세금과 공과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는 3,596천\$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2,615천\$로 추정되었다(<표 5-90> 참조).

<표 5-90>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세금과 공과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243.0	2,430
2~4척	9	4	44.4%	129.5	1,166
사업체 합계	19	5	26.3%	189.2	3,596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33.5	302
3,000~	10	3	30.0%	231.3	2,313
사업체 합계	19	5	26.3%	137.6	2,615

카. 대손상각비

제조원가 및 판관비 중 대손상각비의 총계는가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0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0으로 추정되었다(<표 5-91> 참조).

〈표 5-91〉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대손상각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0.0	0
2~4척	9	4	44.4%	0.0	0
사업체 합계	19	5	26.3%	0.0	0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0.0	0
3,000~	10	3	30.0%	0.0	0
사업체 합계	19	5	26.3%	0.0	0

타. 광고선전비

제조원가 및 판관비 중 광고선전비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는 0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0으로 추정되었다(<표 5-92> 참조).

〈표 5-92〉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광고선전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0.0	0
2~4척	9	4	44.4%	0.0	0
사업체 합계	19	5	26.3%	0.0	0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0.0	0
3,000~	10	3	30.0%	0.0	0
사업체 합계	19	5	26.3%	0.0	0

13) 운반·하역·보관비

제조원가 및 판관비 중 운반·하역·보관비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17,220천\$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0,776천\$로 추정되었다(<표 5-93> 참조).

<표 5-93>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운반·하역·보관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1,722.0	17,220
2~4척	9	4	44.4%	348.8	3,139
사업체 합계	19	5	26.3%	1,071.5	20,359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165.5	1,490
3,000~	10	3	30.0%	928.7	9,287
사업체 합계	19	5	26.3%	567.2	10,776

14) 기타(보험료, 접대비 등)

제조원가 및 판관비 중 기타(보험료, 접대비 등)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93,229천\$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46,979천\$로 추정되었다(<표 5-94> 참조).

<표 5-94>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중 기타(보험료, 접대비 등)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7,988.0	79,880
2~4척	9	4	44.4%	1,483.3	13,349
사업체 합계	19	5	26.3%	4,906.8	93,229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246.5	2,219
3,000~	10	3	30.0%	4,476.0	44,760
사업체 합계	19	5	26.3%	2,472.6	46,979

15)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총계

제조원가 및 판매비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는 254,600천\$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205,163천\$로 추정되었다(<표 5-95> 참조).

〈표 5-95〉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제조원가 및 판매비 총계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15,299.0	152,990
2~4척	9	4	44.4%	11,290.0	101,610
사업체 합계	19	5	26.3%	13,400.0	254,600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2	22.2%	1,557.0	14,013
3,000~	10	3	30.0%	19,115.0	191,150
사업체 합계	19	5	26.3%	10,798.1	205,163

16)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각 항목별 비중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를 사용할 때, 유형자산 중 원재료비의 비중은 20.2%, 연료비 13.5%, 전력비 0.4%, 용수비 0.0%, 외주가공비 0.0%, 인건비 9.9%, 수선비 8.6%, 감가상각비 1.0%, 임차료 0.4%, 세금과 공과 1.4%, 대손상각비 0.0%, 광고선전비 0.0%, 운반/하역/보관비 8.0%, 기타 36.6% 로 나타났다(<표 5-96> 참조).

〈표 5-96〉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보유척수별 제조원가 및 판매비 항목별 비중-

보유척수	사업체 수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별 구성비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 가공비	인건비	수선비	감가 상각비
1척	10	0.0%	14.1%	0.0%	0.0%	0.0%	10.5%	9.9%	0.2%
2~4척	9	50.5%	12.6%	1.1%	0.0%	0.0%	8.9%	6.5%	2.3%
사업체 합계	19	20.2%	13.5%	0.4%	0.0%	0.0%	9.9%	8.6%	1.0%

보유척수	사업체 수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별 구성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대손 상각비	광고 선전비	운반/하역 /보관비	기타	합계	
1척	10	0.2%	1.6%	0.0%	0.0%	11.3%	52.2%	100.0%	
2~4척	9	0.7%	1.1%	0.0%	0.0%	3.1%	13.1%	100.0%	
사업체 합계	19	0.4%	1.4%	0.0%	0.0%	8.0%	36.6%	100.0%	

보유어선 총 톤수별 총계 추정치를 사용할 때, 유형자산 중 원재료비의 비중은 37.1%, 연료비 12.8%, 전력비 1.1%, 용수비 0.0%, 외주가공비 0.0%, 인건비 9.8%, 수선비 7.4%, 감가상각비 1.8%, 임차료 0.6%, 세금과 공과 1.3%, 대손상각비 0.0%, 광고선전비 0.0%, 운반/하역/보관비 5.3%, 기타 22.9% 로 나타났다(<표 5-97> 참조).

〈표 5-97〉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보유어선 총 톤수별 제조원가 및 판매비 항목별 비중

보유어선 총 톤 수(G/T)	사업체 수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별 구성비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 가공비	인건비	수선비	감가 상각비
~2,999	9	0.1%	0.8%	15.8%	0.0%	0.0%	37.4%	13.0%	2.2%
3,000~	10	39.8%	13.7%	0.0%	0.0%	0.0%	7.8%	7.0%	1.7%
사업체 합계	19	37.1%	12.8%	1.1%	0.0%	0.0%	9.8%	7.4%	1.8%

보유어선 총 톤 수(G/T)	사업체 수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별 구성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대손 상각비	광고 선전비	운반/하역 /보관비	기타	합계	
~2,999	9	1.9%	2.2%	0.0%	0.0%	10.6%	15.8%	100.0%	
3,000~	10	0.5%	1.2%	0.0%	0.0%	4.9%	23.4%	100.0%	
사업체 합계	19	0.6%	1.3%	0.0%	0.0%	5.3%	22.9%	100.0%	

8) 매출액 조사 및 부가가치 총계 추정 결과

2009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재고 제외) 및 원양어업 분야 매출액을 조사하였다. 부가가치 산출 산식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연간매출액(재고제외)-원재료비-연료비-전력비-용수비-외주가공비-수선비

1) 연간 매출액(재고 제외)

연간 매출액에 대해서는 총 19개 사업체 중 8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이 42.1%이다. 연간매출액(재고 제외)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1.57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81억\$로 추정되었다(<표 5-98> 참조).

〈표 5-98〉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연간매출액(재고 제외)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3	30.0%	5,097.0	50,970
2~4척	9	5	55.6%	11,819.2	106,373
사업체 합계	19	8	42.1%	8,281.2	157,343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4	44.4%	5,187.5	46,688
3,000~	10	4	40.0%	13,409.3	134,093
사업체 합계	19	8	42.1%	9,514.7	180,780

2) 원양어업 분야 매출액

원양어업 분야 매출액은 총 19개 사업체 중 8개 사업체가 응답을 하여 응답률이 42.1%이다. 원양어업 분야 매출액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1.31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47억\$로 추정되었다(<표 5-99> 참조).

〈표 5-99〉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원양어업 분야 매출액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3	30.0%	5,088.7	50,887
2~4척	9	5	55.6%	8,866.8	79,801
사업체 합계	19	8	42.1%	6,878.3	130,688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9	4	44.4%	1,530.8	13,777
3,000~	10	4	40.0%	13,369.3	133,693
사업체 합계	19	8	42.1%	7,761.5	147,469

3) 부가가치

부가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사업체는 총 19개 사업체 중 5개 사업체로 전체 대비 26.3%이다. 부가가치의 총계는 보유척수별 총계 추정치가 0.85억\$이며, 보유어선 총 톤수별로는 1.18억\$로 추정되었다(<표 5-100> 참조).

〈표 5-100〉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부가가치 -

보유척수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1척	10	1	10.0%	2,478.0	24,780
2~4척	9	4	44.4%	6,688.8	60,199
사업체 합계	19	5	26.3%	4,472.6	84,979
보유어선 총 톤수 (G/T)	사업체 수	응답 사업체 수	응답률	응답 사업체별 평균(천\$)	총계추정 (천\$)
~2,999	23	2	22.2%	8,739.5	78,656
3,000~	22	3	30.0%	3,918.0	39,180
사업체 합계	68	5	26.3%	6,201.9	117,836

2.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보유 어선별 생산 및 경영현황

1) 일반사항

조사시점에 원양협회에 등록된 총 모기업 17개 사업체가 현지에 진출한 19개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총 어선 수는 29척 중 각 사업체별 최소 1척 이상 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18척을 조사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중 10개 어선이 조사에 응하였다. 10개 어선의 모기업별, 어선명, 톤수, 진출국, 업종, 진수년도, 출어해역은 다음 <표 5-101>과 같다.

<표 5-101> 해외합작어업 사업체 조사결과 - 일반현황 -

모기업명	선명	톤수	조업국	업종	진수년도	조역해역
사조대립	MYS YEKATERINY	3,206	러시아	북양트롤	1983	-
사조산업	YANTAR-1	2,146	러시아	북양트롤	1972	태평양 북서부
사조오양	ZALIV ZABYAKA	4,986	러시아	북양트롤	1947	태평양 북서부
신라교역	Proliv Longa	1,337	러시아	북양트롤	1971	태평양 북서부
에이스수산	ANTONIA ALEXA	172	멕시코	기타	2005	태평양 중동부
원경수산	MAR DE ROSS	25	칠레	저연승	2004	태평양 동남부
인성실업	MASTER	3,514	러시아	북양트롤	1968	태평양 북서부
조나단피셔리(주)	베레지나 BEREZINA	4,407	러시아	-	1988	태평양 북서부
코엑심	mys rubikon	1,476	-	북양트롤	1990	태평양 북서부
한성기업	S/T (PROLIV STARKA)	3,918	러시아	-	-	-

조사에 응한 어선의 톤수별 분포는 2,999톤 이하가 5척, 3,000톤 이상이 5척 (한성기업의 S/T (PROLIV STARKA)호는 앞서 가정한 데로 3,000톤 이상 그룹으로 정함)으로 평균 톤수는 2,363톤이다.

조업국별로는 러시아가 7개 어선으로 가장 많았고 멕시코, 칠레 각 1개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북양트롤이 6개로 가장 많았고, 저연승 1개, 기타 1개로 나타났다. 조역해역별로는 모두 태평양 지역인 가운데 러시아 인근 지역인 태평양 북서부 지역이 6개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 중등부 1개, 태평양 동남부 1개로 나타났다.

2) 조사결과에 대한 해외합작 원양어선의 생산 및 경영현황 통계치 산출 방식

원양어선의 경우 톤수별 2,999톤 이하, 3,000톤 이상으로 구분하여 생산 및 경영현황에 대한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각 생산 및 경영지표에 대한 응답어선 수, 평균을 산출하였다.

3) 연간 어로원가

1) 출어비

보유어선 총 톤수별 각 어로원가에 해당하는 출어비 항목별 평균은 다음 <표 5-102>와 같다.

<표 5-102> 응답 해외합작 어선의 톤수별 연간 출어비 항목별 평균

(단위 : \$)

보유어선 총 톤수 (G/T)	응답 어선수	어구비	유류비	입어료	이료비	운반비
~2,999	3	51,289	1,422,987	2,435,432	22,000	793,435
3,000~	4	250,832	2,046,716	3,527,938	0	1,415,850
합계	7	165,313	1,779,404	3,059,721	9,429	1,149,100
보유어선 총 톤수 (G/T)	소모품비	주부식비	수리비	항만비	기타	합계
~2,999	177,950	126,888	213,283	103,841	942,308	6,289,414
3,000~	331,385	179,440	519,710	29,356	3,181,446	11,482,672
합계	265,627	156,918	388,384	61,278	2,221,815	9,256,990

보유어선 총 톤수별 각 출어비 항목 구성비는 다음 <표 5-103>과 같다.

〈표 5-103〉 응답 해외합작 어선의 톤수별 연간 출어비 항목별 구성비

보유어선 총 톤수 (G/T)	응답 어선수	어구비	유류비	입어료	이료비	운반비
~2,999	3	0.8%	22.6%	38.7%	0.3%	12.6%
3,000~	4	2.2%	17.8%	30.7%	0.0%	12.3%
합계	7	1.8%	19.2%	33.1%	0.1%	12.4%
보유어선 총 톤수 (G/T)	소모품비	주부식비	수리비	항만비	기타	합계
~2,999	2.8%	2.0%	3.4%	1.7%	15.0%	100.0%
3,000~	2.9%	1.6%	4.5%	0.3%	27.7%	100.0%
합계	2.9%	1.7%	4.2%	0.7%	24.0%	100.0%

2) 임금 및 관리비

보유어선 총 톤수별 각 어로원가에 해당하는 임금 및 관리비 항목별 평균은 다음 <표 5-104>와 같다.

〈표 5-104〉 응답 해외합작 어선의 톤수별 연간 임금 및 관리비 항목별 평균

(단위 : \$)

보유어선 총 톤수 (G/T)	응답 어선수	선원임금	조세공과	감가 상각비	기타	합계
~2,999	3	928,054	96,047	78,938	1,104,723	2,207,763
3,000~	4	1,226,757	92,609	201,461	241,459	1,762,287
합계	7	1,098,742	94,083	148,951	611,429	1,953,205

보유어선 총 톤수별 각 임금 및 관리비 항목 구성비는 다음 <표 5-105>와 같다.

〈표 5-105〉 응답 해외합작 어선의 톤수별 연간 임금 및 관리비 항목별 구성비

보유어선 총 톤수 (G/T)	응답 어선수	선원임금	조세공과	감가 상각비	기타	합계
~2,999	3	42.0%	4.4%	3.6%	50.0%	100.0%
3,000~	4	69.6%	5.3%	11.4%	13.7%	100.0%
합계	7	56.3%	4.8%	7.6%	31.3%	100.0%

4) 생산 및 판매현황

해외 합작어업은 생산량 및 판매금액의 90% 이상이 명태이며, 응답 어선의 총 생산량 49,493톤 중 국내에 판매된 양이 46,923톤으로 약 95%가 국내에 판매된다. 나머지 5%만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표 5-106〉 응답 해외합작 어선의 톤수별 어종별 생산량 및 구성비

(단위 : 톤)

보유어선 총톤수 (G/T)	응답 어선수	명태	대구	기타 어류	청어	홍어	가자미류	총합계
~2,999	5	17,477	734	152	149	89	83	18,684
3,000~	3	30,809	0	0	0	0	0	30,809
합계	2	48,286	734	152	149	89	83	49,493

보유어선 총톤수 (G/T)	응답 어선수	명태	대구	기타 어류	청어	홍어	가자미류	총합계
~2,999	5	93.5%	3.9%	0.8%	0.8%	0.5%	0.4%	100.0%
3,000~	3	100.0%	0.0%	0.0%	0.0%	0.0%	0.0%	100.0%
합계	2	97.6%	1.5%	0.3%	0.3%	0.2%	0.2%	100.0%

〈표 5-107〉 응답 해외합작 어선의 톤수별 어종별 판매금액 및 구성비

(단위 : \$)

보유어선 총톤수 (G/T)	응답 어선수	명태	대구	기타 어류	청어	홍어	가자미류	총합계
~2,999	5	27,664	1,750	1,400	230	111	111	31,266
3,000~	3	35,816						35,816
합계	2	63,480	1,750	1,400	230	111	111	67,082
보유어선 총톤수 (G/T)	응답 어선수	명태	대구	기타 어류	청어	홍어	가자미류	총합계
~2,999	5	88.5%	5.6%	4.5%	0.7%	0.4%	0.4%	100.0%
3,000~	3	100.0%	0.0%	0.0%	0.0%	0.0%	0.0%	100.0%
합계	2	94.6%	2.6%	2.1%	0.3%	0.2%	0.2%	100.0%

제3절 원양어업관련 사업체 조사결과

1. 해외 양식업체의 생산 및 경영현황

(1) 일반사항

<표 5-108>과 같이 인도네시아와 중국에 진출한 양식업체 각 1곳으로 2개의 업체가 설문에 응하였다. 두 업체 모두 한국이 투자비율이 아주 높으며, 투자금액 1,800천\$과 5,550천\$로 나타났다.

〈표 5-108〉 응답 해외양식 업체의 현황

사업체명	진출국가	진출년월	양식장면적 (ha)	총 투자금액 (천\$)	투자비율(%)	
					한국인	현지인
아쿠아수립프	인도네시아	2003	-	5,550	95	5
연운항 평균수산양식유한공사	중국	2002	10	1,800	100	0

(2)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표 5-109>와 같이 평균 종사자 수는 36.5명이며 평균 연간 총 급여액은 66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9〉 응답 해외양식 업체의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의 평균

	한국인(명)	현지인 종사자		계	연간 급여액 (천\$)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평균	2	13	21.5	36.5	66

(3) 유형자산

유형자산 항목별 평균 및 구성비는 다음 <표 5-110>과 같다.

〈표 5-110〉 응답 해외양식 업체의 유형자산의 평균

(단위 : 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차량 운반구	기타	건설중인 자산	합계
평균	0	23	2,600	2	18	9	0	2,650
구성비	0.0%	0.0%	0.8%	98.1%	0.1%	0.7%	0.3%	0.0%

(4)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별 평균 및 구성비는 다음 <표 5-111>과 같다.

〈표 5-111〉 응답 해외양식 업체의 제조원가 및 판매비의 평균

(단위 : 천\$)

	원재료 비	전력·바 가스 수도비	외주 가공비	인건비	수선비	감가 상각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대손 상각비	광고 선전비	운반 하역 보관비	기타	합계
평균	1,719	0	0	100	0	753	17	1	0	0	76	8	2,672
구성비	64.3%	0.0%	0.0%	3.7%	0.0%	28.2%	0.6%	0.0%	0.0%	0.0%	2.8%	0.3%	100.0%

(5) 연간 매출액 및 생산량과 생산금액

연간 매출액 및 생산량과 생산금액의 평균은 다음 <표 5-112>와 같다.

〈표 5-112〉 응답 해외양식 업체의 매출액 및 생산량, 생산금액의 평균

	연간 매출액(천\$)	생산량(톤)	생산금액(천\$)
평균	3,680	550	228.8

(6) 연간 양식 월가

연간 양식원가 항목별 평균과 구성비는 다음 <표 5-113>과 같다.

〈표 5-113〉 응답 해외양식 업체의 양식원가 항목별 평균 및 구성비

(단위 : \$)

	사료비	치어/치패 구입비	전기비 (유류비)	운반비	기타	합계
평균	191,440	417,001	13,594	42,167	93,274	757,476
구성비	25.3%	55.1%	1.8%	5.6%	12.3%	100.0%

(7) 생산 및 판매현황

생산 및 판매현황은 다음 <표 5-114>과 같다.

〈표 5-114〉 응답 해외양식 업체의 생산 및 판매현황 평균

양식품종	총 생산량 (\$)	총 현지 판매량 (톤)	해외 판매 합계 (톤)	판매금액 (천\$)
기타어류	550	50	500	2,080

2. 해외 제조업체의 생산 및 경영현황

1) 일반사항

<표 5-115>와 같이 베트남에 진출한 1개, 뉴질랜드 1개, 중국 1개, 페루 2개 사업체로 총 5개 사업체가 조사에 응하였다. 2개 업체는 한국인 투자 비율이 50%이며, 나머지 3개 업체는 100%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개 업체의 총 투자금액은 45,085천\$로 업체당 평균 9,017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5〉 응답 해외제조 사업체의 현황

사업체명	사업체명 (영문)	진출국가	공장 면적 (m ²)	진출년	총 투자금 액(천\$)	투자비율(%)	
							현지인
CJ비나	CJ Vina Agri Co.,Ltd.	베트남	-	1999	15,000	100	0
산원	SANWON	뉴질랜드	6,798	1996	1,085	50	50
위해동원식품 유한공사	WEIHAI DONG WON FOOD CO., LTD	중국	18,698	1995	10,000	50	50
-	INVERSIONES HOLDING PERU S.A.C	페루	7,737	2002	4,000	100	0
-	CNC S.A.C.	페루	60,000	2000	15,000	100	0

2)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표 5-116>과 같이, 평균 종사자 수는 444.8명이며 평균 연간 총 급여액은 1,709.5천\$로 조사되었다.

〈표 5-116〉 응답 해외제조 사업체의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의 평균

응답업체수	한국국적 종사자	현지인 종사자		계	연간 급여액 (천\$)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4	3.8	152.5	288.5	444.8	1,709.5

3) 유형자산

응답한 사업체 수는 4개였으며, 유형자산 항목별 평균 및 구성비는 다음 <표 5-117>과 같다.

〈표 5-117〉 응답 해외제조 사업체의 유형자산의 평균

(단위 : 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차량 운반구	기타	건설중인 자산	합계
평균	977	2,957	564	3,537	252	214	1,250	9,751
구성비	10.0%	30.3%	5.8%	36.3%	2.6%	2.2%	12.8%	100.0%

4)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응답한 사업체 수는 4개였으며,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별 평균 및 구성비는 다음 <표 5-118>와 같다.

<표 5-118> 응답 해외제조 사업체의 제조원가 및 판매비의 평균

(단위 : 천\$)

	원 재료비	전력· 가스 수도비	외주 가공비	인건비	수선비	감가 상각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대손 상각비	광고 선전비	운반· 하역· 보관비	기타	합계
평균	3,216	478	0	829	53	422	17	96	0	0	378	137	5,625
구성비	57.2%	8.5%	0.0%	14.7%	0.9%	7.5%	0.3%	1.7%	0.0%	0.0%	6.7%	2.4%	100.0%

5) 연간 매출액 및 생산량과 생산금액

연간 매출액 및 생산량과 생산금액의 평균은 다음 <표 5-119>와 같다.

<표 5-119> 응답 해외제조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 및 생산량과 생산금액의 평균

	연간 매출액(천\$)	생산량(톤)	생산금액(천\$)
응답업체수	5	3	3
평균	26,326	9,671	10,247

3. 수출입 및 도소매 사업체의 생산 및 경영현황

1) 일반사항

수출입 및 도소매 사업체 중 <표 5-120>과 같이 총 4개 사업체가 조사에 응하였다.

<표 5-120> 응답 수출입 및 도소매 사업체의 현황

사업체명	진출국가	진출년	사업소재지	주요사업 분야	총 투자금액 (천\$)	투자비율(%)	
						한국인	현지인
(주)라사교역			부산	해외진출 수출입업			
(주)사조대림	미국, 호주, 중국, 필리핀	2004	LA, 연태, 마닐라	해외진출 도소매업			
농수산물유통공사	러시아		서울	해외진출 도소매업			
C.A.C	필리핀	1990	필리핀	해외진출 도소매업	500	40	60

2)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종사자 수에 대해서는 2개 업체가 응답하였으며, 급여는 1개 업체만 응답을 하였다. 종사자 수 및 평균 급여액 현황은 다음 <표 5-121>과 같다.

<표 5-121> 응답 수출입 및 도소매 사업체의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의 평균

	한국국적 종사자	현지인 종사자		계	연간 급여액 (천\$)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평균	13.5	3	0	22	60

3) 유형자산

응답한 사업체 수는 1개였으며, 1개 사업체의 유형자산 값과 및 구성비는 다음 <표 5-122>와 같다.

〈표 5-122〉 응답 수출입 및 도소매 사업체의 유형자산의 평균

(단위 : 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차량 운반구	기타	건설 중인 자산	합계
평균	81	64	0	0	1,592	28	0	1,765
구성비	4.6%	3.6%	0.0%	0.0%	90.2%	1.6%	0.0%	100.0%

4)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응답한 사업체 수는 1개였으며, 1개 사업체의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값과 및 구성비는 다음 <표 5-123>과 같다.

〈표 5-123〉 응답 수출입 및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의 평균

(단위 : 천불)

	원 재료비	전력· 가스 수도비	외주 가공비	인건비	수선비	감가 상각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대손 상각비	광고 선전비	운반· 하역· 보관비	기타	합계
평균	0	6,184	0	1,232	997	43	16	39	5	0	737	5,661	14,914
구성비	0.0%	41.5%	0.0%	8.3%	6.7%	0.3%	0.1%	0.3%	0.0%	0.0%	4.9%	38.0%	100.0%

5) 연간 매출액 및 생산량과 생산금액

연간 매출액 및 생산량과 생산금액의 평균은 다음 <표 5-124>와 같다.

〈표 5-124〉 응답 해외제조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 및 생산량과 생산금액의 평균

	연간 매출액(천\$)	생산량(톤)	생산금액(천\$)
응답업체수	3	1	1
평균	6,633	1,165	3,800

제6장 원양산업 총조사 실시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원양산업 총조사 세부절차

제3절 실시방안

제4절 제도개선 방향

제5절 응답률 제고 방안

제6장 원양산업 총조사 실시방안

제1절 개요

「원양산업 총조사」 사업은 우리나라 원양산업에 대한 기초 조사를 통해 동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원양산업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초통계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업 목적을 극대화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원양산업 총조사」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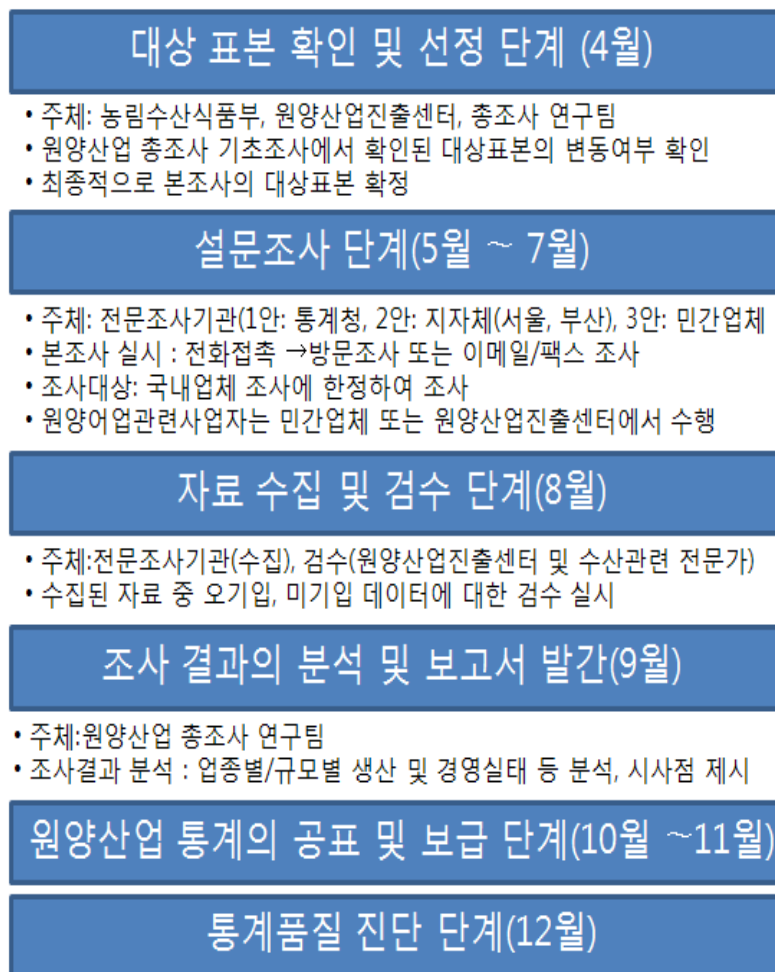
〈표 6-1〉 원양산업 총조사의 국가승인 요건 개요

항목명	국가승인통계 요건상의 내용	원양산업 총조사 사업 실시 방안
통계명칭 및 종류	(지정·일반, 조사·가공·보고)	원양산업 총조사(일반통계, 조사통계)
법적근거	승인번호, 승인일자	국가승인통계시 통계청 승인 필수(「통계법」), 기타 「원양산업발전법」상 근거 조항 마련
조사목적	조사의 필요성 및 활용처	원양산업 경영 및 생산실태 통계 작성 1)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 2) 원양산업자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조사주기	연·분기·월·부정기 등	1년
조사체계	예)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 → 통계청	조사 담당 기관 → 조사 주관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통계청
적용분류	조사에 사용된 표준분류 등	전국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어업총조사, 원양산업 총조사연보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대상기간 예)매년 12월말 기준 또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간 기간 : 조사시점 전년도 1월 1일 ~12월 31일 시점 : 12월31일 기준
	조사실시기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실시기간 참조) 사업체 조사 : 5월 ~ 9월 (6월 조사(案)이 적정)
	실제 준비조사기간	구체적 준비조사 기간 예) 2004.10.30 ~10.31 조사표를 각 사업체에 배부 및 설명. 5월 1일 ~ 5월 31일

제2절 원양산업 총조사 세부절차

원양산업 총조사는 대상 표본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대상 표본을 선정하는 단계를 거친 뒤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설문조사는 통계청의 조사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원양산업체가 서울과 부산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자체 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전년도 회계처리가 마무리되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양어업관련회사에 대해서는 통계청 및 지자체 조사 서비스가 힘든 지역이므로 민간업체 또는 원양산업진출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그림 6-1〉 원양산업 총조사 세부절차



설문조사 이후에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원양산업진출센터 및 수산관련 전문가들의 검수 절차를 거쳐서 수집된 자료의 오기입, 미기업 데이터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데이터가 완비된 이후에는 총조사 연구팀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업종별·규모별로 생산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후에는 통계청 승인 이후 단계로 10월~11월 기간에 통계의 공표 및 보급단계를 거쳐 통계품질 진단을 실시한다.

단계별 소요인원을 살펴보면 대상 표본 확인 및 선정 단계에서는 최소 4명이 각 대상별 사업체의 영업 여부 및 대상 자격의 변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농식품부, 원양산업진출센터, 총조사 연구팀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또한 설문조사 단계에서의 최소 조사 인원은 부산 5명과 서울 3명을 배치하여 조사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자료수집 및 검수단계는 농림수산식품부 2명, 학계 2명, 업계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검수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 분석은 총조사 연구팀에서 수행하고, 공표 및 보급과 진단은 통계청에서 실시한다.

제3절 실시방안

1. 통계의 명칭·종류·산업분류

본 사업의 통계 명칭은 「원양산업 총조사」라 한다. 그리고 통계의 종류는 ‘일반통계’⁸⁾이자, ‘조사통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원양산업 총조사」 대상업종은 「원양산업발전법」 상의 ‘원양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표준산업분류와 대비시키면 일부 수산가공업 및 수산도소매업 등은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일부 중복되는 업종이 있다. 그러나 원양산업총조사 대상 업종은 국내업체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되지만, 현지 외국법인 형태로 진출해 있는 경우는 국내 표준산업분류와 관련이 없다. 법적으로는 「통계법」 상의 국가승인통계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승인번호와 승인일자를 취득해야 하므로 통계청 승인 요건을 먼저 구비해 가야 할 것이다.

통계 명칭(종류) : 「원양산업총조사」(일반 조사통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원양어업(03112),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032),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102), 수산물도매업(46313), 수산물소매업(47213), 수산물가공식품도매업(46322), 해상운송업(501), 냉장및냉동창고업(52102), 수산화물취급업(52942), 음식점업(561)

그리고 이번 총조사 대상 사업체 중에는 대한민국 국적기업, 현지 외국기업, 그리고 합작기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원양산업총조사 대상업체 중에서 실제 통계조사가 가능한 범위는 대한민국 국적기업 및 적어도 49% 이상(해외합작어업의 경

8) ‘지정통계’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로서 그 지정을 고시해야 한다(통계법 제 17조). 이때 ‘지정통계’의 지정고시 사항으로는 1. 지정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 4. 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5. 지정통계의 작성 목적, 6. 지정통계의 작성 대상, 7. 지정통계의 작성 주기, 8. 지정통계의 작성 방법 등이 포함된다.(동법 시행령 22조 4항)

우)의 의결권을 국적이인 보유 한 업체에 해당하는 'A' 범주의 표본들이며, 현행법상⁹⁾으로도 유효한 '원양산업자'에 속한다.

〈표 6-2〉 원양산업총조사 대상 업종의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법」)		구 분					
		원양산업 (「원양산업발전법」)	표본의 국적 ²⁾				
			A	B			
031 / 03111	원양 어업 Ocean Fishing	원양어업 해외합작어업 ¹⁾	국적 합작	합작 현지			
0321	양식 어업Aquaculture	해외양식어업 - 원양어업관련사업 (운반, 가공, 유통, 판매, 해외 양식 및 부대사업)	합작	현지			
03213	수산물 부화 종묘 생산업 Hatching and Seeding of Aquatic Animals and Seaweeds						
0322	어업 관련 서비스업Services Incidental to Fishing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Processing and Preserving of Fishes and Edible Seaweeds	해외수산가공업 - 원양어업관련사업	합작	현지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Processing and Preserving of Fishes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Manufacture of Smoked and Similar Prepared Fish Products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Manufacture of Fishes and Fish Products-Dried, Salted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Manufacture of Fish and Fish Products- Frozen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Processing and Preserving of Other Fishes and Fish Products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Processing and reserving of Edible Seaweeds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ProcessingandPreservingof Edible Seaweeds						
47213	수산물 소매업Retail Sale of Fish and Marine Products				해외수산물유통수출입업 - 원양어업관련사업	합작	현지
46313	수산물 도매업Wholesale of Fishes						
4632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Wholesale of Fishery Products						
501	해상 운송업Sea and Coastal Water Transport	해외수산물류업 - 원양어업관련사업	합작	현지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Refrigerated Warehousing	해외수산냉동창고업	합작	현지			
52942	수상 화물 취급업Water Freight Handling	해외수상화물취급업 - 원양어업관련사업	합작	현지			
561	음식점업Restaurants, Bars and Canteens	- 해외수산식품소매점		현지			

주 1) : '해외합작'은 의결권이 49% 이상, 나머지는 50%를 초과하는 일반적인 합작기업을 말함

2) : A 및 B는 이번 원양총조사대상 표본의 범위이며, A는 그 중에서 국적이 대한민국이거나 국적인 의결권이 49% 이상(해외합작어업), 혹은 50%초과(원양어업관련사업)되는 합작기업을 말함.

9)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4항의 '원양산업자' 정의에 따르면, 원양어업 및 합작어업자를 포함하여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을 망라하여 '원양산업자'라 규정하고 있다.

현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우선 ‘해외합작어업’의 경우 그 사업 추진 체계가 수산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현지국가에 등록된 사업체가 실제 자원개발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현지법인’에 대해 투자하는 한국측 사업자는 단지 투자지분(의결권 49% 이상)만 보유하고 있는 방식으로 합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원양산업 총조사』시 ‘해외합작어업’ 조사대상 업체는 한국측 합작투자자를 통해 사업체 현황 및 생산과 경영자료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 단계를 경유하여 간접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실제로 조사대상 사업자는 현지 외국사업체이므로 원천자료 자체도 회계처리 기준이나 자료의 공포 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효성있는 통계조사가 곤란하다는 한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외합작어업 통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격한 통계품질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원양어업관련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제 현장조사 결과, 상당수가 현지 외국국적의 우리 교민이 운영하는 현지법인이라서 실제 국가통계로서 의미있는 A범주의 표본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해외양식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 사업자가 현지 법인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의 국적’상 외국법인이라는 점에서 현지 조사에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원양어업관련사업자’가 50% 이상의 의결권 하에서 경영되고 해외 수산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한 이에 대한 통계 조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번 현지 출장조사 등을 통해 해외에서 확보한 현지 사업체들로는 ‘해외수산물유통수출입업’, ‘해외수상화물취급업’, ‘해외음식점업’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중 해외 수산개발의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현지화한 사업체들도 의결권의 50% 이상이 한국국적인에게 있을 경우 ‘원양어업관련사업자’의 범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A범주의 표본들 중에서 원양어업관련사업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원양어업관련사업통계’로 집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의결권이 그보다 낮거나 교민 자체가 한국국적을 포기한 경우, 그리고 사업 자체가 한국 입장에서의 수산자원 개발과 무관한 사업일 경우 이들은 실질적으로 ‘원양어업관련사업자’로 분류하기 곤란하다. 특히 ‘해외음식점업’ 등은 해외수산자원 개발과 무관하여 원양어업관련사업 범주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대부분 해외 현지국적의 사업체로서 우리나라 통계 조사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통계조사 대상 사업체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거나 혹은 합작법인도 아

년 B그룹의 표본들은 엄격한 법적 의미에서는 ‘원양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체도 한국 국적인 혹은 교민이 운영하는 주변 사업자이거나 향후 잠재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외 수산자원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주변 사업체라는 점에서 경제적 의미에서는 ‘원양어업관련 사업자’의 역할을 향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B그룹의 표본들에 대해서도 「해외교민수산통계」 형태로 총조사시 이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원양산업 총조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하위 통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원양어업자 및 해외합작어업자에 대해서는 「원양어업통계」를, 국적인인 50%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한 합작 이상의 수산기업으로서 해외양식, 수산물 운반, 가공, 유통 및 판매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원양어업관련사업통계」를, 그리고 50% 이하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기업이거나 현지국적 교민기업에 대해서는 「해외교민수산통계」를 각각 작성하도록 한다.

「원양산업총조사」의 구성: 「원양어업통계」, 원양어업관련사업통계」, 「해외교민수산통계」

〈표 6-3〉 원양산업 총조사 통계의 구성

조사대상	하위통계 명칭	주요내용	비고
원양 산업자	「원양어업통계」	원양어업통계, 해외합작어업통계	국가승인통계 추진 대상
	「원양어업관련사업통계」	해외양식, 수산물 운반, 가공, 유통, 판매 등	국적사업체 혹은 합작사업체(50% 초과)
해외 교민	「해외교민수산통계」	해외양식, 수산물 운반, 가공, 유통, 판매, 음식점업, 수산물취급업 등	50%미만 합작 혹은 현지국적의 사업체

2. 통계 작성의 목적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은 「원양산업 총조사」 사업은 해당 통계 조사 및 작성을 통해 원양산업의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원양산업자의 효율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의 「원양산업 총조사」 사업 중 「원양어업통계」 분야는 특히 원양어업사업자의 생산 및 경영실태 통계 작성을 통해 원양어업 분야의 생산 및 시장 등에

대한 원양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통계작성의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원양어업관련사업통계」는 원양어업관련사업자의 기초적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사업 분야의 잠재적 역할 제고 및 원양산업 발전 정책 마련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그리고 「해외교민수산통계」는 해외교민 수산분야 사업자에 대한 기초적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해외 수산자원 개발 및 해외 시장개척 등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각각 통계작성의 목적으로 한다.

〈표 6-4〉 원양산업 총조사의 통계작성 목적

구분	통계작성의 목적
「원양산업총조사」	원양산업의 경영 및 생산실태 통계 작성을 통해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원양산업자의 효율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 「원양어업통계」	원양어업사업자의 생산 및 경영실태 통계 작성을 통해 원양어업 분야의 생산 및 시장 등에 대한 원양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원양어업관련사업통계」	원양어업관련사업자의 기초적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사업 분야의 잠재적 역할 제고 및 원양산업 발전 정책 마련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해외교민수산통계」	해외교민 수산분야 사업자에 대한 기초적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해외 수산자원 개발 및 해외 시장개척 등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 하는데 기여한다.

3. 조사 대상 및 조사 항목

「원양산업 총조사」는 기본적으로 ‘원양산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원양산업자’의 개념을 충족하는 모집단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다만, 국내 기존의 원양어업분야에서 ‘허가’를 얻고 조업하고 있는 원양어업사업자는 유한모집단이므로 대상 모집단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 사항이 아니거나, ‘신고’ 사항이더라도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상 모집단이 유한하더라도 해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집단 규모 자체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매년 실시되는 「원양산업 총조사」의 결과를 축적하여 단계적으로 모집단을 추정해가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향후 「원양산업 총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

사 대상의 범주를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특히 불특정 모집단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원양어업관련사업통계」와 「해외교민수산통계」는 단계적으로 총조사 결과를 축적하여 지속적으로 모집단 규모를 확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사 대상의 특징에 따라 조사 가능한 항목도 달라진다. 앞서 실시된 시험조사에서는 모든 표본에 대해 「생산통계」항목과 「경영통계」 항목을 망라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원양어업관련사업통계」와 「해외교민수산통계」 분야에서 이들 항목의 응답률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이는 해외 소재 현지법인이라는 한계, 국내 원양산업과의 연계성 부족, 규모의 영세성에 따른 사업기반의 미비, 그리고 조세 제도의 특성에 따른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필요성 등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통계 분야에 대해서는 업종별 혹은 지역별로 사업체명칭과 종사업종, 소재지, 인원수 등의 ‘일반사항’에 국한하여 조사항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표 6-5〉 원양산업 총조사의 조사대상

구분	조사 대상	주요 조사 항목
- 「원양산업총조사」	유한 모집단 + 불특정 모집단 혼재	- 생산통계, 경영통계, 일반사항으로 구분 조사
- 「원양어업통계」	원양어업 사업자(국내 및 합작사 모집단 유한) ※ 원양어업 68개사, 합작어업자 17개사, 미신고·미허가원양어업자 8개사 등	- 생산통계 항목 - 경영통계 항목
- 「원양어업관련사업통계」	원양어업관련사업 종사자(모집단 불특정 규모, 지속 발굴) ※ 현행 수산가공사업자 37개사, 양식사업자 2개사, 도소매수출입업자 9개사, 운반사업자 3개사 등 포함	- 업종별 일반사항
- 「해외교민수산통계」	해외교민사업 종사자(모집단 불특정 규모, 지속 발굴) ※ 현행 214개 포함	- 지역별·업종별 일반 사항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부록]에 각 통계 부문별로 「조사표」 형식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4. 통계 작성의 기준시점, 작성 주기 및 작성 기간

조사주기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조사 시점은 매년 5월~9월까지로 하고, 실제 준비 조사기간은 조사표를 각 사업체에 배부하고 설명하는 기간으로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한다. 그리고 주요 연혁은 통계청 승인 일시와 조사기간 등을 명시한다. 현재 국가 승인통계 대부분은 작성주기를 1년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는 년 주기로 조사되고 있다.

〈표 6-6〉 국가 승인통계의 통계작성 주기

작성주기	구분	조사 통계명칭
1년	전수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전수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전수조사	농어업법인조사
	전수조사	기업활동조사
	전수조사	건설업조사
2년	전수조사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
5년	전수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	경제총조사
	전수조사	농림어업총조사
1년	표본조사	사회조사
	표본조사	운수업조사
	표본조사	도소매업조사
	표본조사	서비스업조사
	표본조사	농가경제조사
	표본조사	농축산물 생산비조사
	표본조사	어가경제조사
	표본조사	농업조사
	표본조사	어업조사
	표본조사	양곡소비량조사
	표본조사	농작물생산조사
	표본조사	농업면적조사
	표본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표 6-7〉 통계청 통계 이외의 통계 작성 주기

작성주기	기관	조사 통계명칭
1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실태조사
1년	산림청	임업경영실태조사
1년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조사
1년	산림청	임산물 생산비조사
1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영어자금소요액조사
1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업경영조사
1년	농림수산식품부	등록어선통계
1년	농림수산식품부	천해양식어업권통계
2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2년	중소기업청	장애인기업실태조사
3년	중소기업청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3년	환경부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3년	지식경제부	에너지총조사
4년	환경부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5년	환경부	전국폐기물통계조사

또한 원양산업 총조사의 조사주기와 관련하여 현재 원양산업협회는 원양어업체(단독, 합작)의 생산통계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병행하여 경영통계도 매년 실시하여 조사의 연속성을 높이고, 생산통계와 경영통계의 상호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양어업(합작)의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법의 법적 대상이지만 외국기업으로서 「경영통계」상의 기밀사항에 대한 조사요구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응답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총조사 대상으로 했을 경우 통계청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통계」는 분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양어업관련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총조사 사업」을 통해 모집단 리스트 작성을 위한 지역별·업종별 DB화를 위한 기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기본적으로 지역별 DB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원양총조사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원양어업관련사업자 DB화 기초조사는 향후 5년간 계속 추진하여 5년 이후에 「총조사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 6-8〉 원양총조사 조사 대상별 조사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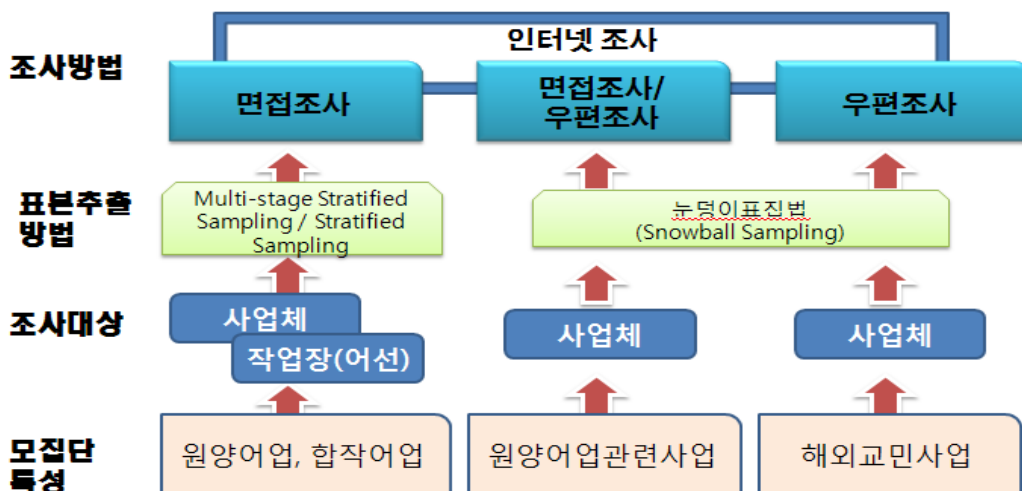
업종	생산통계	경영통계
원양어업(단독)	1년	1년
원양어업(합작)	1년	보류
원양어업관련사업	보류(DB화 이후 실시)	보류(DB화 이후 실시)

5. 통계작성의 방법 및 분류

그리고 조사범위는 시간적으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 결과에 대해 실시하며, 장소적으로는 사업체 소재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조사단위는 조사표가 작성되는 단위로 사업체 및 어선단위이며, 조사지역은 국내 사업체 소재지(해외합작어업사업체의 경우 국내 공동 출자 사업자가 된다).

조사방법은 원양어업(단독, 합작) 사업체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어선별 생산통계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실제 조사 시에는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대 1일 대인면접을 통한 자계식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원양어업관련사업체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우편을 통한 자계식 조사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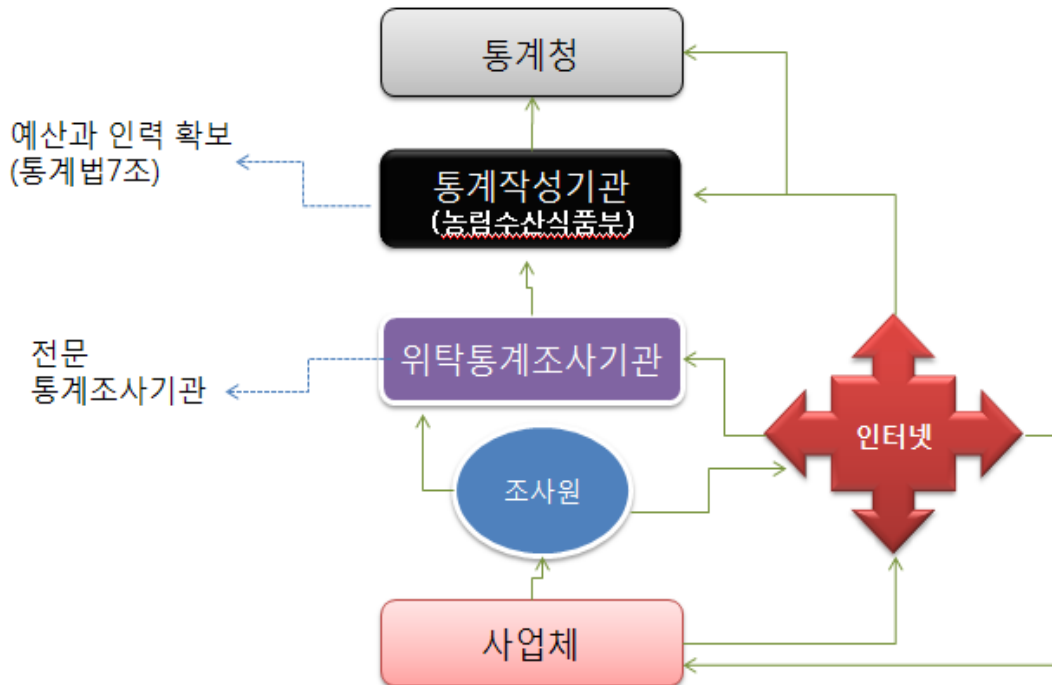
〈그림 6-2〉 원양산업 총조사 통계조사의 방법



6. 통계작성기관 및 자료수집 체계

조사체계는 조사 담당기관이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주관기관이 이를 취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통계청에 제출하는 체계를 갖도록 한다.

〈그림 6-3〉 원양산업 총조사 자료수집 체계



제4절 제도개선 방향

1. 개요

원양산업 총조사의 제도적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법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원양산업 총조사제도 개선의 핵심은 법적 기반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표 6-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양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법적 기반 부재로 인한 기초통계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

<표 6-9> 원양산업 총조사제도의 개선방향

문제점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양산업 총조사구축의 법적 기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안 1 : 통계법에 근거해 지정통계 지정 및 관리 (예, 농림어업 총조사 등) 방안 2 : 통계법에 근거해 일반통계로 관리 방안 3 : 원양산업발전법에 근거해 통계 구축 및 관리 (예,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양산업의 범위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 현지수산물 활용한 해외 수산사업 포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양산업의 범위 확대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연 확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양산업 포괄적 통계구축 기반 미흡(제도적 공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수의 개별법에 의해 허가, 신고, 등록 일부 원양산업 관련 정보의 누락 불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양산업 기초통계 확보 시스템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법상 통계 공백 최소화 원양어업관련 통계 확보 시스템 구축 경영통계 확보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양어업관련사업 통계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양산업 경영통계 확보기반 부재 	

2. 원양총조사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원양산업 총조사 구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i) 통계법에 근거해 지정통계화 하는 방안, (ii) 통계법을 토대로 승인통계화 하는 방안, (iii) 원양산업 발전법에 기초해 일반통계로서 통계작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① 통계법에 근거한 지정통계 지정(방안 1)

현행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¹⁰⁾는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된다. 우선 지정통계란 통계청장이 별도의 지정 및 고시절차를 거친 통계를 의미하며, 현재 농림어업총조사, 농업통계조사, 경제총조사 등이 지정통계로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원양산업통계의 경우에도 통계법에 근거해 지정통계로서 지정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통계법 제17조에 따르면,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의 <표 6-7>에서 적시한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통계로서 지정이 가능하다.

〈표 6-10〉 지정통계 지정요건

지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작성 통계 •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에 해당하는 경우

일단 지정통계로 지정되면, 통계법 제25조가 규정한 지정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명령권을 활용할 수 있어 통계작성에 대한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용이해진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

10) 통계법 제3조에 따르면,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함

우에 통계청장이 직접 지정통계 작성을 위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자료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명령권은 지정통계 작성 시, 관련 기관 및 개인 또는 단체의 협조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결정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과 관련한 기초 통계가 여러 개별법에 의해 복수의 기관에 의해 분산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원양산업 총조사 구축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 및 단체의 협조가 절실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통계로 지정해 자료제출 명령권을 활용할 수 있다면 기초통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양산업 총조사가 지정통계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표 2-7>에 적시된 바의 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원양산업 총조사가 지정통계로서 지정 가능한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통계법에 근거한 일반통계화(대안 2)

다른 한편으로 통계법에 기초해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일반통계로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통계란 통계청의 승인 혹은 통계청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작성된 통계를 지칭하는데, 통계법에 근거해 작성되는 통계는 반드시 <표 6-8>에 나열한 사항에 대하여 통계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5조).

<표 6-11> 통계작성의 승인사항

승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의 명칭 및 종류 • 통계의 작성 목적 • 통계작성의 사항(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 • 통계작성의 대상(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 • 통계작성의 기준시점, 기간 및 주기(다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조사기간 기입) • 통계작성의 방법 • 자료수집 체계 •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기준) •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그러나 통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이미 승인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혹은 보고의 대상이나 목적, 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둘째,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않아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셋째,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이나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원양어업과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부 기업만을 원양산업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규모가 작다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검증된 통계작성 기법을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사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통계법에 근거해 통계청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경우, 지정통계인 경우에 갖게 되는 자료제출 명령권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지정통계에 비해서는 기초통계 확보의 편의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통계의 경우에도 통계법 제23조에 근거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동 법 제24조는 통계작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 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및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침대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이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중앙부처 장관이나 지자체 장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양총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탁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협조가 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원양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기반 구축(대안 3)

마지막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토대로 통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통계법 제20조는 다른 법률에 근거해 작성되는 통계의 경우, <표 2-8>에 명시된 승인사항 중에서 해당 법률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청과의 사전협

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통계청과의 사전 협의를 거칠 경우에 원양산업발전법과 같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통계 작성이 가능하되, 해당 법률에서 <표 2-8>에 적시된 승인요청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도 통계법에 근거해 승인을 받은 일반통계와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 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는 있다.

한편 원양산업발전법에 원양산업 총조사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원양산업발전법 상에 별도의 원양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에 관련한 조항을 두는 방법이다. 둘째, 현행 원양산업발전법 제4조에 총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지 원양산업발전법에 총조사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제19조에 근거한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조항을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조사내용으로서 (i) 원양어업의 실태, (ii)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실태, (iii) 원양어업자 및 관련사업자의 경영상태, (iv)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것이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¹¹⁾ 이 입법예고안은 어업 종류별 실태 및 경영상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되, 5년마다 기본계획(농림수산식품부) 및 시행계획(시·도지사)을 수립해 체계적인 어업구조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입법예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기존 수산업법 제75조 규정 내용을 대신하게 될 전망이다. 입법예고안 제5조는 근해어업에 대한 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를,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를 조사주체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어업의 실태, 어업경영자의 경영상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11) 법률안은 다음달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요컨대, 현재 연근해 어업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수산업법 및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법률(안)은 연근해 어업실태 조사 및 수산정보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원양산업의 범위 확대 고려

현재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 상으로는 원양산업의 범주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업체와 관련이 있는 원양어획물을 생산하거나 운반, 유통 등을 행하는 업체만이 포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현지수산물을 이용해 수산사업을 하는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사업이 수산통계의 범주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 원양총조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계법에 근거한 지정통계 지정 혹은 통계청장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의 규모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양산업의 전체 모집단의 규모는 매우 작기 때문에 현재의 소규모 모집단으로는 지정통계 혹은 일반통계화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원양산업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과 원양산업 총조사의 모집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원양산업의 범위를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원양산업 기초통계 확보 시스템 보완

기본적으로 원양산업과 관련된 기초적인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법체계 내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원양산업과 관련한 기초통계는 매우 다양한 개별법에 의해 확보 및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원양산업 관련 통계를 원양산업발전법으로 일원화시키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어선 관련 통계는 어선법이, 선원 관련 통계는 선원법이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양산업과 관련된 이들 개별

법이 대체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관부처 측면에서 보면, 관리의 편의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원양산업 관련 통계를 원양산업발전법과 같이 특정 법령으로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자체에서 원양산업의 기초통계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시스템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예컨대, 어선법에 의해 관리되는 원양어선 통계,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원양선상수상가공업(국적선) 통계, 선원법에 기초한 어선원 통계 등을 각 관리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양산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계적 공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와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관련법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도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초통계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이 단독으로 원양어업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합작 원양어업자에 대해서는 생산실적이나 양륙 및 국내 반입 현황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원양 합작어업자에 대해서도 생산실적 및 반입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문제점에서 지적되었듯이 원양산업이 다양한 개별법에 의해 규제됨으로써 동일한 사업 행위에 대해 각기 다른 법이 관련되는 사례가 있다. 원양산업발전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원양어업 허가어선에서의 수산물 냉동냉장업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개별법에 의해 관리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통일성을 확보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통계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원양어업관련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종류, 투자규모, 투자비율 등 일반 사항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통해 통계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원양어업이 향후 원양산업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원양어업관련사업의 비중이 확대될 여지가 높다. 따라서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 현황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원양산업 생산 및 사업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일부 통계가 확보되고 있으나 경영과 관련된 통계 기반은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향후 관련 법령을 보완함에 있어서 경영과 관련된 통계 구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양산업과 관련한 통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통계 조사내용으로서 다음의 사항들을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12〉 원양통계 조사내용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어업 실태 • 원양어업자 및 관련사업자의 경영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어업관련사업 생산 실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절 응답률 제고 방안

1. 응답률 현황

원양산업 총조사 기초조사의 결과 설문조사에서 대체적으로 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인 원양어업(단독), 원양어업(합작), 원양어업관련사업 등 조사대상별로 항목별 응답률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원양어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조업하는 업체들로서 일정 수준 설문조사의 구속성이 있어 통계조사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가입 데이터에 대한 추정을 통해 총계 추정치에 대한 변동계수(CV)가 15% 내에 포함되는 항목이 대부분이므로 현재의 조사표로 본조사를 실시해도 유의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원양어업(합작)과 원양어업관련사업은 전반적인 응답률이 50%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원양어업관련사업자는 일반현황 정도의 설문에만 응답하고, 구체적인 경영현황에 대해서는 응답을 기피하였다. 따라서 원양총조사 본조사에 앞서서 응답률 제고방안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3〉 원양어업(단독)의 설문조사 항목별 응답률

통계명		응답률(%)
종사자수	내국인	66.2
	외국인	58.8
	사업체 전체	55.9
연간 급여액	내국인	58.8
	외국인	52.9
	사업체 전체	51.5
생산	생산량	75.0
	생산금액	73.5
유형자산		75.0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70.6
자산, 자본금, 매출액, 부가가치	자산	66.2
	자본금	76.5
	자본잉여금	35.3
	연간매출액(재고 제외)	83.8
	원양어업 분야 매출액	79.4
	부가가치	70.6

〈표 6-14〉 원양어업(합작)의 설문조사 항목별 응답률

통계명		응답률(%)
종사자수	내국인	31.6
	외국인	31.6
연간 급여액	내국인	26.3
	외국인	26.3
생산	생산량	42.1
	생산금액	36.8
유형자산		26.3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26.3
자산, 자본금, 매출액, 부가가치	연간매출액(재고 제외)	42.1
	원양어업 분야 매출액	42.1
	부가가치	26.3

2. 응답률 제고 방안

원양산업 총조사 기초조사에서 설문 응답률이 낮은 것은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의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다음의 몇 가지 응답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원양산업 총조사를 지정통계화하여 응답 구속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 승인 통계에서 통계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되면 응답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고, 응답 거부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지정통계화를 통한 응답 구속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조사대상 표본에 대해서 사전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원양산업 총조사 기초조사 실시 결과, 사전홍보의 미비에 의한 응답률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업계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 가능 범위로 조사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원양산업 총조사 기초조사에서는 기초조사의 성격상 가능한 많은 항목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여 응답항목 별로 응답률이 낮은 항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영업기밀에 관련된 항목에서 응답률이 극도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이들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조사 가능한 범위로 조사항목을 조정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터넷 조사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원양산업협회의 통계시스템에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생산통계를 입력하고 있어 통계가 원활하게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경영통계의 경우에도 인터넷 상에서 입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에 대한 홍보만 뒷받침 된다면, 업체의 조사 응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해외 원양어업관련업(자)에 대해서는 명예수산물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원양산업 총조사 기초조사에서 해외에 있는 업체들에게 전화 및 팩스에 의존하여 조사하는데는 무리가 있었으므로 현재 원양산업진출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명예수산물관의 업무에 총조사 업무를 부여하고 이들이 조사원이 되어 조사한다면, 응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응답기념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원양산업 총조사 기초조사에서 기념품을 증정하여 응답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응답기념품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 승인통계의 조사시에는 기념품 증정이 제한되므로 승인통계 이후에도 응답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7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7장 결 론

제1절 요약

원양산업 통계는 기존의 원양어업의 생산통계 조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양어업과 관련된 국가승인 통계가 있다하더라도 어업생산동향조사, 수산물가공업 통계조사, 수출입수산물검사통계 등 3종에 불과하며, 통계가 제공하는 범위도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어종이 생산되는 생산해역 구분이 매우 광역적이고, 국내반입, 수출 등 판매경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양식, 해외수산물 가공 자료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동일한 사업행위를 각기 다른 개별법으로 정하여 중복규제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양산업의 전반적인 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에 대한 기초통계 확보 및 활용을 위한 명시적 법조항이 없으며, 원양업체의 어업경영과 관련된 통계확보를 위한 사전조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원양산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존의 원양어업통계도 현재까지 통계청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은 통계로서 통계의 품질 및 신뢰도가 저하되어 있다. 여기에 기존의 해외직접투자통계, 원양산업 관련 국가승인통계만으로는 원양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본통계정보로서 원양산업의 해외투자 및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외사업의 해외투자 가능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출한 한국수산기업의 투자규모, 생산량, 수출량 등의 종합적인 통계자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양어업의 자생력 배양과 글로벌화를 통한 적극적인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고, 글로벌화하는 원양산업계의 총체적 산업경쟁력을 보유하여 선진적인 산업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원양산업의 외연 확대에 따른 다양한 통계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기존의 ‘생산통계’를 뛰어넘는 ‘경영통계’의 확보를 위하여 2010년 원양산업 총조사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본격적인 총조사 본사업(2011년)을 추진하기 위해 기초적 연구 및 시험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해 본사업(2011년) 추진시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원양산업 통계는 단순한 생산통계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에 대비한 기초통계 체제로는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원양산업발전법에 맞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기초통계의 작성이 요구되었다. 또한 원양산업발전법이 생긴 이후에 모집단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는바 이번 조사에서는 시험적 총조사를 위한 모집단별 표본을 수집하고 조사대상업체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원양어업 단독과 합작 등 유한 모집단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무한모집단은 표본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대상업체를 선정하였다.

원양산업총조사를 시험적 기초조사결과, 각 대상별로 애로사항이 상존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원양어업(합작어업) 분야는 생산 및 경영조사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양어업관련사업 분야는 통계조사의 한계가 많아 일반적 사항 조사를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기타 해외교민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DB화 하기 위한 일반적 사항의 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양산업 총조사의 시험적 기초조사를 통해 첫째, 원양산업 총조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승인 통계화를 추진하였다. 원양산업의 총조사 대상은 원양산업발전법의 범주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1단계로 통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 통계화를 추진하면서 원양산업발전법에 총조사 조항을 명시하고, 2단계로 통계법에 근거한 지정통계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특히 2011년 본조사 사업 이전에 원양산업 총조사의 대상 중 원양어업(단독)의 경영통계와 생산통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승인통계의 요건을 구비하여 국가승인 통계화하고, 이를 통해 원양산업통계의 품질 개선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승인통계화를 추진하고, 통계의 표준화를 통하여 통계자료의 비교 가능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원양산업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원양산업 통계를 생성하도록 하였다. 원양산업통계는 개인, 정부, 기업 등 원양산업 활성화를 고려하는 국가 구성원의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에 필수적인 기본정보로서 원양산업의 생산구조, 해외기업경영실태 및 그 변화추이 등을 파악하여 원양산업의 정책수립 및 연구분석·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WTO/DDA, FTA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해외수산업 환경변화를 포착하고 시장분석 및 기업전략의 수립 등을 위한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현재 포괄적인 통계구축 기반이 미흡하여 통계적 공백 혹은 중복규제의 문제와 경영통계 확보기반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였다.

제2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원양산업 총조사를 통해서 원양산업의 각 대상별 생산통계와 경영통계가 확보된다면, 정부의 정책결정, 기업의 의사결정, 연구자의 심층연구, 일반국민에게 기초 경제 통계의 제공 및 투자결정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토대로 원양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원양산업 총조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원양산업 총조사를 통한 원양산업의 대상별 통계의 정비로 농림수산물부뿐만 아니라 원양업계, 수산관련 연구원 등 산·학·관 모두 정책입안과 연구에서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양산업통계 전체에 대한 통계정비로 전체 국민 또는 원양어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기초 경제통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국민적 편익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WTO/DDA 및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및 피해대책 수립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는 대외개방에 따른 원양산업의 피해대책은 통계청에서 승인되지 않은 생산통계에만 기반을 두고 있어 생산감소에 따른 피해액 산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원양산업의 구체적인 업종별·어종별 생산통계와 경영통계의 구비를 통해 업종별·어종별 피해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최근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 수산업의 투자진출이 장려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수산업 진출은 원양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중요한 산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투자컨설팅 및 투자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8년에 추진되었던 해외수산자원펀드의 도입에 있어서도 원양산업의 업종별 투자수익성 및 위험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의 미비로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펀드사업의 투자자금 확보가 어려웠다. 그러나 해외진출 기업의 실태 분석 및 경영분석을 통해 원양산업으로의 자금유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견된다.

넷째, 과학적인 원양산업 통계에 기초한 경영전략 수립을 통해 원양산업자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범위한 산업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경영전략을 마련한다면, 경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원양산업의 관련업종 및 글로벌화 촉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및 수산자원 개발 잠재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양어업관련사업, 현지교민사업자 등의 네트워크 확대와 관련 업종간 수직적 연계 확보를 통해 경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양총조사의 데이터는 기초통계 자료로서 몇 가지 중요한 활용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기초통계의 분석을 통한 2차 가공통계의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원양어업(합작어업)의 경우 규모별·업종별·해역별 생산량 및 경영실적 분포를 산출할 수 있으며, 원양어업관련사업은 지역별·업종별 사업체 분포, 자원 및 시장 분포를 산출할 수 있다. 또한 해외교민사업의 지역별·업종별 사업체 분포도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조사결과의 DB 구축 및 원활한 정보 제공체제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이용자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각종 국제협상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제기구 및 경쟁국과의 협상시 해역별·품목별 생산량, 경영실태 등 과학적인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및 부록

참 고 문 헌

- 국토해양부,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09.
- 국회예산정책처, 국가통계사업 평가, 2010.
- 디오피니언, 중앙일보 창간 43주년 조사 조사지침서, 2009.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정보시스템(<http://www.ois.go.kr>)
- 대한상공회의소, 2010 중국한국상회 회원명부, 2011.
- 대한상공회의소, 2010 베트남한국상회 회원명부, 2011.
- 대한상공회의소, 해외관련기업 정보(http://www.korchambiz.net/company/company_kotraList.jsp)
- 부산복지개발원·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설문조사 지침서, 2010.
- 통계청, 200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표, 2010.
- 통계청, 2010 농림어업총조사 해수면어가 조사표, 2010.
- 통계청, 조사·보고통계 품질관리 안내서, 2010.
- 통계청, 표본 품질관리 매뉴얼, 2007.
- 통계청, 통계자료 공표 매뉴얼, 2007.
- 통계청, 국가통계 실무지침(조사통계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2009.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목록, 2010.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진출기업리스트, 2010.
-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팀, 미디어 기업의 윤리경영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2009.

부록1. 설문조사표(기초조사)

2010년 기준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



· 이 조사의 목적은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해 우리나라 전체 원양산업의 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원양어업 사업체별 조사표]

1. 사업체명		2. 사업자 등록번호		□□□□ - □□ - □□□□□□																																															
3. 대표자명		① 남 ② 여		4. 창설연월		□□□□년 □□월																																													
5. 소재지		(광역)시·도		구		읍·면·(법정)동		리		번지		호		통		반																																			
		빌딩·시장·상가		동		층		호																																											
6. 조직형태		① 개인사업체 : 재무제표 작성여부 ① 작성 ② 미작성		법인등록번호		□□□□□□□□ - □□□□□□□□		구분		① 단독사업체		② 본사, 본점 등		③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		: 본사소재지 _____ 시도 _____ 구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조</th> <th>천억</th> <th>백억</th> <th>십억</th> <th>억</th> <th>천만</th> <th>백만원</th> </tr> </thead> <tbody> <tr> <td>자산총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자본금</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자본잉여금</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자산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구분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자산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7. 종사자수 및 급여액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어선원 및 어선관리 관련 종사자 기재)		내국인		① 상용근로자(선원포함)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③ 기타종사자		소계 (①+②+③)		외국인(선원포함)		사업체(그룹) 전체 종사자 (물류, 유통, 가공 등 모두 포함)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종사자 수(2009년 12월 31일 기준)</th> <th colspan="7">연간급여액(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th> </tr> <tr> <th>남</th> <th>여</th> <th>계</th> <th>조</th> <th>천억</th> <th>백억</th> <th>십억</th> <th>억</th> <th>천만</th> <th>백만원</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종사자 수(2009년 12월 31일 기준)			연간급여액(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남	여	계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종사자 수(2009년 12월 31일 기준)			연간급여액(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남	여	계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8.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		어선척수(2009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어선 총 척수		보유 어선 총 톤수		연간생산량(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기준)		연간 총 생산량		연간 총 생산금액		척		G/T		M/T		백만 원																															
9. 어선 현황		(2009년 12월 31일 기준)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부원																																					
				선장		1항사		2항사		3항사		기관장		1기사		2기사		3기사		갑판부		기관부		조리부																											
내국인 선원 승선원		총 승선원수																																																	
		월평균임금 (천원)																																																	
외국인 선원 승선원		총 승선원수																																																	
		월평균임금 (천원)																																																	

10. 유형자산	2009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체 전체							11. 제조월가 및 판매와리비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체 전체						
	구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구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토지							원(부·보조)재료비							
	건물							연료비							
	기계장치							전력비							
	어망·어구							용수비(수도비)							
	어선 (감가상각된 장부가액 기재)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기타 (차량·공구·가구·비품)							인건비 (급여, 퇴직금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합계							수선비(수리유지비)							
								감가상각비							
								임차료(부지·건물·기계)							
								세금과 공과							
								대손상각비							
								광고선전비							
								운반·하역·보관비							
								기타 (보험료, 접대비 등)							
								합계							
12. 연매출액 (재고제외)	연간매출액(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기준)							13. 원양어업 매출액	원양어업분야 매출(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기준)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참고자료> 원양어업 업종, 조업수역 및 해구, 원양어획품종 부호
-보유 원양어선별 생산 및 경영현황 기재시 참조

업종별 부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참치연승	101	새우트롤	107
저연승	102	오징어채낚기	108
참치선망	103	원양외줄낚시	109
원양봉수망	104	모선식외줄낚시	110
북양트롤	105	기타	111
해외트롤	106		

조업수역 및 해구번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대서양	북서부	21	대서양	동남부	47	태평양	북서부	61
	북동부	27		서부	58		중북부	67
	중서부	31		중부	88		중서부	71
	중동부	34	동부	48	중동부		77	
	동북부	37	인도양	서부	51		서남부	81
	서남부	41		동부	57		동남부	87

원양 어획품종 부호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가오리류	101	가다랑어	108	달고기	115	셋돔	122	새꼬리민태	129	줄삼치	136	황새치	143	정어리	150	게류	161	갑오징어	171				
가자미류	102	날개다랑어	109	대구	116	통돔	123	붉은메기	130	통치(은삼치)	137	흑새치	144	전갱이류	151	남빙양새우	162	문어류	172				
갈치	103	남부다랑어	110	민대구	117	하스돔	124	방어류	131	상어류	138	기타다랑어	145	조기류	152	기타새우	163	오징어류	173				
고등어	104	눈다랑어	111	붉은대구	118	명태	125	복어류	132	녹새치	139	기타새치	146	청어	153	기타갑각류	164	한치류	174				
꽁치	105	농어류	112	기타대구	119	메로(이빨고기)	126	볼락류	133	돗새치	140	서대류	147	홍어	154			기타연체동물	175				
넙치류	106	참다랑어	113	기타돔	120	민어류	127	붕장어류	134	백새치	141	성대류	148	기타어류	155								
능성어	107	황다랑어	114	금눈돔	121	꼬리민태	128	삼치류	135	청새치	142	적어	149										

[원양어업 어선별 조사표]

1. 보 어선현황	선 명	톤 수 (G/T)	천	백	십	일	단위미만	진수년월	()년 ()월 ()일					
								업 종	(예: 참치연승이면 101)					
2. 출 어 선 승 원 별 현황	해구번호		출어횟수		실조업일수		조업국			기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부원				
			선장	1항사	2항사	3항사	기관장	1기사	2기사	3기사	갑판부	기관부	조리부	
내국인 선원 승선원 현황	승선원수													
	월평균임금 (천원)													
외국인 선원 승선원 현황	승선원수													
	월평균임금 (천원)													
3. 연 어 로 월 가 (천 원)	출어비	어구비	유류비	입어로	이료비	운반비	소모품비	주부식비						
		수리비	항만비	기타	임금 및 관리비	선원임금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기타					
	<p>* 어획품종이 7종 이상인 경우, 생산량이 많은 어획품종 순으로 6종까지 생산량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하고, 나머지 어획품종은 '⑦ 기타 어획 품종'에 생산량과 판매량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p> <p>* 해외판매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판매량이 많은 국가순으로 2개국까지 국가명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하고 나머지 국가는 '기타국가'란에 판매량만 합산하여 기재합니다.</p>													
4. 생 산 및 판 매 현 황	어획품종 번호	해구번호	생산량(톤)	국내 판매 (톤)	판매현황					판매금액(원)				
					해외판매 합계 (톤)	국가1		국가2		기타국가	천억	백억	십억	억
	국가명	판매량(톤)	국가명	판매량(톤)		판매량(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어획 품종													
합계														
응 답 자	부 서				성 명				전 화					
	FAX				이 메 일									
조사담당자	성 명				전 화									

2010년 기준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



· 이 조사의 목적은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해 우리나라 전체 원양산업의 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합작어업 사업체별 조사표]

1. 사업체명	국문 :	2. 사업자 등록번호	진출국가 :														
	영문 :		해당국 사업자 등록번호 :														
3. 대표자명	① 남 ② 여					4. 창설연월	□ □ □ □ 년 □ □ 월										
5. 소재지 (주소)																	
6. 모기업	모기업명 : 모기업 주소 :																
7. 투자금액 (\$)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8. 투자비율	내국인					외국인				
								%					%				
9. 종사자수 및 연급액						종사자 수(2009년 12월 31일 기준)			연간급여액(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남	여	계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어선원 및 어선관리 관련 종사자 기재)	내국인	① 상용근로자(선원포함)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③ 기타종사자														
소계 (①+②+③)																	
외국인(선원포함)																	
사업체(그룹) 전체 종사자 (물류, 유통, 가공 등 모두 포함)																	
10.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	어선척수(2009년 12월 31일 기준)					연간생산량(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어선 총 척수			보유 어선 총 톤수		연간 총 생산량				연간 총 생산금액							
	척			G/T		M/T				만\$							
11. 어선원 현황	(2009년 12월 31일 기준)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부원			
						선장	1항사	2항사	3항사	기관장	1기사	2기사	3기사		갑판부	기관부	조리부
	내국인 선원 승선원	총 승선원수															
		월평균임금(\$)															
	외국인 선원 승선원	총 승선원수															
월평균임금(\$)																	

12. 유형자산	2009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체 전체							13. 제조월가 및 판매와리비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체 전체						
	구분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구분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토지								원(부·보조)재료비						
	건물						연료비								
	기계장치						전력비								
	어망·어구						용수비(수도비)								
	어선 (감가상각된 장부가액)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기타 (차량·공구·가구·비품)						인건비 (급여, 퇴직금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합계						수선비(수리유지비)								
	연간매출액(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기준)								원양어업분야 매출(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기준)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참고자료> 원양어업 업종, 조업수역 및 해구, 원양어획품종 부호
-보유 원양어선별 생산 및 경영현황 기재시 참조

업종별 부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참치연승	101	새우트롤	107
저연승	102	오징어채낚기	108
참치선망	103	원양외줄낚시	109
원양봉수망	104	모선식외줄낚시	110
북양트롤	105	기타	111
해외트롤	106		

조업수역 및 해구번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대서양	북서부	21	대서양	동남부	47	태평양	북서부	61
	북동부	27		서부	58		중북부	67
	중서부	31		남빙양	중부		88	중서부
	중동부	34	동부	48	중동부		77	
	동북부	37	인도양	서부	51		서남부	81
	서남부	41		동부	57		동남부	87

원양 어획품종 부호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가오리류	101	가다랑어	108	달고기	115	셋돔	122	새꼬리민태	129	줄삼치	136	황새치	143	정어리	150	게류	161	갑오징어	171				
가자미류	102	날개다랑어	109	대구	116	통돔	123	붉은메기	130	통치(은삼치)	137	흑새치	144	전갱이류	151	남빙양새우	162	문어류	172				
갈치	103	남부다랑어	110	민대구	117	하스돔	124	방어류	131	상어류	138	기타다랑어	145	조기류	152	기타새우	163	오징어류	173				
고등어	104	눈다랑어	111	붉은대구	118	명태	125	복어류	132	녹새치	139	기타새치	146	청어	153	기타갑각류	164	한치류	174				
꽁치	105	농어류	112	기타대구	119	메로(이빨고기)	126	볼락류	133	돗새치	140	서대류	147	홍어	154			기타연체동물	175				
넙치류	106	참다랑어	113	기타돔	120	민어류	127	붕장어류	134	백새치	141	성대류	148	기타어류	155								
능성어	107	황다랑어	114	금눈돔	121	꼬리민태	128	삼치류	135	청새치	142	적어	149										

[합작어업 어선별 조사표]

1. 보 어선현황	선 명	톤 수 (G/T)	천 백 십 일 단위미만				진수년월	()년 ()월 ()일							
			천	백	십	일		업 종	(예: 참치연승이면 101)						
2. 출선원 승선현황	해구번호	출어횟수	실조업일수			조업국			기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부원						
		선장	1항사	2항사	3항사	기관장	1기사		2기사	3기사	갑판부	기관부	조리부		
내국인 선원 승선원 현황	승선원수														
	월평균임금 (\$)														
외국인 선원 승선원 현황	승선원수														
	월평균임금 (\$)														
3. 연 어로월가 (\$)	출어비	어구비	유류비	입어로	이료비	운반비	소모품비	주부식비							
		수리비	항만비	기타	임금 및 관리비	선원임금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기타						
4. 생산 및 판매현황	<p>* 어획품종이 7종 이상인 경우, 생산량이 많은 어획품종 순으로 6종까지 생산량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하고, 나머지 어획품종은 '⑦ 기타 어획 품종'에 생산량과 판매량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p> <p>* 해외판매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판매량이 많은 국가순으로 2개국까지 국가명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하고 나머지 국가는 '기타국가'란에 판매량만 합산하여 기재합니다.</p>														
	어획품종 번호	해구번호	생산량(톤)	국내 판매 (톤)	판매현황					판매금액(\$)					
					해외판매 합계 (톤)	국가1		국가2		기타국가 판매량(톤)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국가명	판매량(톤)	국가명	판매량(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어획 품종															
합계															
응답자	부서				성명				전화						
	FAX				이메일										
조사담당자	성명				전화										

2010년 기준 원양산업(해외양식업) 사업체 총조사 예비조사 조사표



· 이 조사의 목적은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해 우리나라 전체 원양산업의 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 총괄 -

1. 사업체명	국문 :	2. 사업자 등록번호	진출국가 :											
	영문 :		해당국 사업자 등록번호 :											
3. 대표자명	① 남 ② 여	4. 진출년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5. 소재지 (주소)	관계기업 소재지 : 진출국 양식장 소재지 :													
6. 총 투자액 (\$)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7. 투자비율	한국 국적인(Korean)		현지인(Domestic)				
								%	%					
8. 종사자수 및 급여액			종사자 수(2009년 12월 31일 기준)			연간급여액(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남	여	계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한국 국적 종사자													
	현지인 종사자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합계													
9. 유형자산	2009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체 전체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체 전체						
	구분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구분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토지							원(부·보조)재료비						
	건물							전력비·가스수도비 (연료비, 유류비 포함)						
	구축물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기계장치							인건비 (급여, 퇴직금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선박/차량운반구							수선비(수리유지비)						
	기타 (차량·공구·가구·비품)							감가상각비						
	건설중인 자산							임차료(부지·건물·기계)						
	합계							세금과 공과						
11. 연 매출액 (재고제외)	연간매출액(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기준)							연간생산량 및 생산금액(2009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생산량			생산금액			
								톤			천불			
12. 생산량 및 생산금액														

2010년 기준 원양산업(해외 수산물 제조업) 사업체 총조사 예비조사 조사표



· 이 조사의 목적은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해 우리나라 전체 원양산업의 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 총괄 -

1. 사업체명	국문 :	2. 사업자 등록번호	진출국가 :											
	영문 :		해당국 사업자 등록번호 :											
3. 대표자명	① 남 ② 여	4. 진출년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5. 소재지 (주소)	관계기업 소재지 :													
	제조공장 소재지 :													
6. 총 투자액 (\$)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7. 투자비율	한국국적(Korean)			현지인(Domestic)			
								%	%					
8. 종사자수 및 급여액			종사자 수(2009년 12월 31일 기준)			연간급여액(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남	여	계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한국 국적 종사자													
	현지인 종사자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합계													
9. 유형자산	2009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체 전체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체 전체							
	구분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구분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토지							원(부·보조)재료비						
	건물							전력비·가스수도비 (연료비, 유류비 포함)						
	구조물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기계장치							인건비 (급여, 퇴직금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선박/차량운반구							수선비(수리유지비)						
	기타 (차량·공구·가구·비품)							감가상각비						
	건설중인 자산							임차료(부지·건물·기계)						
	합계							세금과 공과						
11. 연 매출액 (재고제외)	연간매출액(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기준)						연간생산량 및 생산금액(2009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생산량			생산금액			
								톤			천불			
12. 생산량 및 생산금액														

- 해외진출 수산제조업 생산 및 경영현황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기준

13. 제조공장현황	공면장적 (㎡)	십만 만 천 백 십 일					제조종사자 및 월평균액	한국 국적(Korean)		현지인 종사자(Domestic)				
								종사자수	월평균임금(\$)	종사자수	월평균임금(\$)			
<p>* 제조품목이 7종 이상인 경우, 생산량이 많은 제조품목 순으로 6종까지 생산량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하고, 나머지 제조품목은 '⑦ 기타 품종'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p> <p>* 제조품목의 부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 함량이 높은 부재료 1종만 기재합니다.</p> <p>* 해외판매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판매량이 많은 국가순으로 2개국까지 국가명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하고 나머지 국가는 '기타국가'란에 판매량만 합산하여 기재합니다.</p> <p>* 생산현황은 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하한 경우입니다.</p>														
14. 생산 및 판매현황	제조품목 부호	투입재료		산출물 생산량 (톤)	판매 현황				판매금액(\$)					
		수산물 주재료 부호	수산물 부재료 부호		현지 판매 (톤)	해외 판매			기타국가 판매량(톤)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해외판매 합계 (톤)		국가1		국가2						
						국가명	판매량(톤)	국가명	판매량(톤)					

<참고자료> 수산물 생산품목 및 수산물 재료(원양 수산물, 양식 수산물 구분 작성) 부호
- 해외진출 수산 제조업 공장별 생산 및 경영현황 기재시 참조

수산물 제조 품목 부호									
생산품목	부호	생산품목	부호	생산품목	부호	생산품목	부호	생산품목	부호
소건품	101	염장품	104	냉동품	107	연제품	110	수산피혁품	113
연건품	102	염식품	105	해조제품	108	조미가공품	111	기타	114
자건품	103	통조림	106	한천	109	어유분	112		

수산물 재료 부호 - 원양 수산물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가오리류	101	가다랑어	108	달고기	115	셋돔	122	새꼬리민태	129	줄삼치	136	황새치	143	정어리	150	게류	161	
가자미류	102	날개다랑어	109	대구	116	통돔	123	붉은메기	130	통치(은삼치)	137	흑새치	144	전쟁어류	151	남빙양새우	162	
갈치	103	남부다랑어	110	민대구	117	하스돔	124	방어류	131	상어류	138	기타다랑어	145	조기류	152	기타새우	163	
고등어	104	눈다랑어	111	붉은대구	118	명태	125	복어류	132	녹새치	139	기타새치	146	청어	153	기타갑각류	164	
공치	105	농어류	112	기타대구	119	메로(이빨고기)	126	볼락류	133	돛새치	140	서대류	147	홍어	154		기타연체동물	175
넙치류	106	참다랑어	113	기타돔	120	민어류	127	붕장어류	134	백새치	141	성대류	148	기타어류	155			
능성어	107	황다랑어	114	금눈돔	121	꼬리민태	128	삼치류	135	청새치	142	적어	149					

수산물 재료 부호 - 양식 수산물																	
어류				갑각류				패류				기타 수산동물		해조류		종묘생산	
양식품종	부호	양식품종	부호	양식품종	부호	양식품종	부호	양식품종	부호	양식품종	부호	양식품종	부호	양식품종	부호	양식품종	부호
넙치류(광어)	181	기타돔류	188	복어류	195	대하	201	굴류	211	가무락	218	우렁쉥이(멍게)	231	김	241	어류종묘	251
조피볼락(우럭)	182	능성어	189	기타어류	196	기타갑각류	202	홍합류	212	백합류	219	미더덕	232	미역	242	패류종묘	252
농어	183	송어류	190					피조개	213	기타패류	220	기타 수산동물	233	다시마류	243	해조류종묘	253
방어	184	기타볼락	191					전복류	214					툰	244	기타종묘	254
참돔	185	민어	192					바지락	215					매생이	245		
감성돔	186	쥐치류	193					꼬막류	216					파래	246		
돌돔	187	전어	194					가리비	217					기타해조류	247		

현지 한인 업체 (회사명, 업종, 연락처)	* 귀사 이외에 현지에서 알고 있는 한인업체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 ,), (, ,), (, ,)					
응답자	부서		성명		전화	
	FAX		이메일			
조사담당자	성명		전화			

2010년 기준 원양산업(기타 해외진출 수출입, 도소매업) 사업체 총조사 예비조사 조사표



· 이 조사의 목적은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해 우리나라 전체 원양산업의 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 총괄 -

1. 사업체명	국문 : 영문 :	2. 사업자 등록번호	진출국가 : 해당국 사업자 등록번호 :												
3. 대표자명	① 남 ② 여	4. 진출년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5. 소재지 (주소)	관계기업 소재지 : 사업체 소재지 :														
6. 주요 사업분야	① 해외진출 수출입업 ② 해외진출 도소매업														
7. 총 투자액 (\$)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8. 투자비율	한국 국적인(Korean) 현지인(Domestic) % %												
9. 종사자 수 및 급여액			종사자 수(2009년 12월 31일 기준) 연간급여액(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남 여 계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한국 국적 종사자														
	현지인 종사자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10. 유형자산	2009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체 전체						11. 제조원가 및 판매와리비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체 전체							
	구분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구분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토지								원(부·보조)재료비						
	건물								전력비·가스수도비 (연료비, 유류비 포함)						
	구조물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기계장치								인건비 (급여, 퇴직금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선박/차량운반구								수선비(수리유지비)						
	기타 (차량·공구·가구·비품)								감가상각비						
	건설중인 자산								임차료(부지·건물·기계)						
	합계								세금과 공과						
							대손상각비								
							광고선전비								
							운반·하역·보관비								
							기타 (보험료, 접대비 등)								
							합계								

- 해외진출 수출입, 도소매 생산 및 경영현황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기준

12. 연매출액 (재고제외)	연간매출액(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기준)							13. 거래량 및 거래금액	연간 거래량 및 거래금액(2009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거래량					거래금액							
									톤					천불							
14. 원료구매 및 수입현황	* 원료 구매 및 수입 품목이 4종 이상인 경우, 구매 및 수입량이 많은 품목 순으로 3종까지 구매 및 수입량을 각각 기재하고, 나머지 구매 및 수입 품목은 '④ 기타 구매 및 수입 품목'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수출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판매량이 많은 국가순으로 2개국까지 국가명과 수출입 량을 각각 기재하고 나머지 국가는 '기타국가'란에 수입량만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원료를 현지에서 구매하거나 수입한 경우입니다.																				
	구매 및 수입 품목 부호	수산물 재료 부호	현지 구매 및 수입량					구매 금액													
			현지구매 (톤)	국가1		국가2		기타국가		현지(\$)					수입(\$)						
					국가명	수입량(톤)	국가명	수입량(톤)	수입량(톤)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①																				
	②																				
③																					
④ 기타 구매 및 수입 품목																					
	합계																				

15. 제품판매 및 수출현황	연간매출액(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기준)							13. 거래량 및 거래금액	연간 거래량 및 거래금액(2009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거래량					거래금액							
									톤					천불							
15. 제품판매 및 수출현황	* 제품판매 및 수출 품목이 4종 이상인 경우, 제품 판매 및 수출량이 많은 품목 순으로 3종까지 판매 및 수출량을 각각 기재하고, 나머지 판매 및 수출품목은 '④ 기타 판매 및 수출 품목'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수출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수출량이 많은 국가순으로 2개국까지 국가명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하고 나머지 국가는 '기타국가'란에 수출량만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품을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입니다.																				
	판매 및 수출 품목 부호	수산물 재료 부호	현지 판매 및 수출량					판매 금액(\$)													
			현지판매 (톤)	국가1		국가2		기타국가		현지(\$)					수출(\$)						
					국가명	수출량(톤)	국가명	수출량(톤)	수출량(톤)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①																				
	②																				
③																					
④ 기타 판매 및 수출 품목																					
	합계																				

<참고자료> 수출입 및 도소매 취급품목 및 취급품목 재료(원양 수산물, 양식 수산물 구분 작성) 부호
 - 해외진출 수출입, 도소매 생산 및 경영현황 기재시 참조

구매 및 수입, 판매 및 수출 품목 부호									
생산품목	부호	생산품목	부호	생산품목	부호	생산품목	부호	생산품목	부호
소건품	101	염장품	104	냉동품	107	연제품	110	수산피혁품	113
연건품	102	염신품	105	해조제품	108	조미가공품	111	기타	114
자건품	103	통조림	106	한천	109	어유분	112		

수산물 재료 부호 - 원양 수산물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가오리류	101	가디랑어	108	달고기	115	셋돔	122	새꼬리민태	129	줄삼치	136	황새치	143	정어리	150	게류	161	갑오징어	171
가자미류	102	날개다랑어	109	대구	116	통돔	123	붉은메기	130	통치(은삼치)	137	흑새치	144	전쟁이류	151	남빙양새우	162	문어류	172
갈치	103	남부다랑어	110	민대구	117	하스돔	124	방어류	131	상어류	138	기타다랑어	145	조기류	152	기타새우	163	오징어류	173
고등어	104	눈다랑어	111	붉은대구	118	명태	125	복어류	132	녹새치	139	기타새치	146	청어	153	기타갑각류	164	한치류	174
꽂치	105	농어류	112	기타대구	119	메로(이빨고기)	126	볼락류	133	돛새치	140	서대류	147	홍어	154			기타연체동물	175
넙치류	106	참다랑어	113	기타돔	120	민어류	127	붕장어류	134	백새치	141	성대류	148	기타어류	155				
능성어	107	황다랑어	114	금눈돔	121	꼬리민태	128	삼치류	135	청새치	142	적어	149						

수산물 재료 부호 - 양식 수산물																	
어류						갑각류		패류				기타 수산동물		해조류		중요생산	
양식품종	부호	양식품종	부호	양식품종	부호	양식품종	부호	양식품종	부호	양식품종	부호	양식품종	부호	양식품종	부호	양식품종	부호
넙치류(광어)	181	기타돔류	188	복어류	195	대하	201	굴류	211	가무락	218	우렁쉥이(멍게)	231	김	241	어류종묘	251
조피볼락(우럭)	182	능성어	189	기타어류	196	기타갑각류	202	홍합류	212	백합류	219	미더덕	232	미역	242	패류종묘	252
농어	183	송어류	190					피조개	213	기타패류	220	기타 수산동물	233	다시마류	243	해조류종묘	253
방어	184	기타볼락	191					전복류	214					톳	244	기타종묘	254
참돔	185	민어	192					바지락	215					매생이	245		
갑성돔	186	쥐치류	193					꼬막류	216					파래	246		
돌돔	187	전어	194					가리비	217					기타해조류	247		

현지 한인 업체 (회사명, 업종, 연락처)	* 귀사 이외에 현지에서 알고 있는 한인업체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 ,), (, ,), (, ,)		
응답자	부서	성명	전화
	FAX	이메일	
조사담당자	성명	전화	

부록2. 수정 설문조사표

2011년 기준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



승인(협의)번호

원양어업 사업체용 조사표

· 이 조사는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해 우리나라 전체 원양산업의 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I. 원양어업(단독) 사업체 전체 현황 조사

□ 조사대상 기간은 2010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09년 사업체 현황을 작성해주십시오.

1. 사업체명			2. 사업자 등록번호	-		-								
3. 대표자명	① 남 ② 여		4. 창설연월	년		월								
5. 소재지	(통반까지 기재, 빌딩 소재 사무소의 경우 호수까지 기재)													
6. 자산 (백만원)	자산총계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7. 조직형태 ① 개인사업체 () ② 회사법인 () ③ 회사이외법인 ()				
	자본금													
	자기자본													
8. 종사자수 및 급여액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종사자수 (명)			연간급여액 합계 (백만원)								
			한국인		남	여	계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상용근로자 (선원포함)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③ 기타종사자											
		외국인(선원포함)												
		전체 사업체 종사자												
9.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	보유 어선 총 척수		보유 어선 총 톤수			연간 총 생산량			연간 총 생산금액					
	척		G/T			M/T			백만원					
10. 사업체 전 어선 현황	한국인선원 승선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부원		
			선장	1항사	2항사	3항사	기관장	1기사	2기사	3기사		갑판부	기관부	조리부
	총 승선원수													
	1인당 월평균임금 (천원)													
	외국인선원 승선원		총 승선원수											
1인당 월평균임금 (천원)														

□ 조사대상 기간은 2010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10년 사업체 현황을 작성해주시오.

구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구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11. 유형자산	토지						14.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원(부보조)재료비						
	건물							연료비						
	기계장치							전력비						
	어망어구							용수비 (수도비)						
	어선 (감가상각된 장부 가액 기재)							외주가공비 (위탁생산비)						
	기타 (차량공구 가구비품)							인건비(급여퇴직금퇴직 급여복리후생비)						
	합계							수선비 (수리유지비)						
								감가상각비						
12. 연 간 매 출 액 (재고제외)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임차료 (부지건물기계)					
								세금과 공과						
13. 원양어업 분 야 매 출 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대손상각비					
								광고선전비						
						운반하역보관비								
						기타 (보험료, 접대비 등)								
						합계								

□ <참고자료> 원양어업 업종, 조업수역 및 해구, 원양어획품종 부호
- 보유 원양어선별 생산 및 경영현황 작성시 참조하십시오.

업종별 부호				조업수역 및 해구번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참치연승	101	새우트롤	107	대서양	북서부	21	대서양	동남부	47	태평양	북서부	61
저연승	102	오징어채낚기	108		북동부	27	남빙양	서부	58		중북부	67
참치선망	103	원양외줄낚시	109		중서부	31		중부	88		중서부	71
원양봉수망	104	모선식외줄낚시	110		중동부	34	동부	48	중동부		77	
북양트롤	105	기타	111		동북부	37	인도양	서부	51		서남부	81
해위트롤	106				서남부	41		동부	57		동남부	87

원양 어획품종 부호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가오리류	101	눈다랑어	111	금눈돔	121	방어류	131	백새치	141	전갱이류	151	게류	161	갑오징어	171
가자미류	102	농어류	112	셋돔	122	복어류	132	청새치	142	조기류	152	남빙양새우	162	문어류	172
갈치	103	참다랑어	113	통돔	123	볼락류	133	황새치	143	청어	153	기타새우	163	오징어류	173
고등어	104	황다랑어	114	하스돔	124	붕장어류	134	흑새치	144	홍어	154	기타갑각류	164	한치류	174
공치	105	달고기	115	명태	125	삼치류	135	기타다랑어	145	기타어류	155			기타연체동물	175
넙치류	106	대구	116	메로(이빨고기)	126	줄삼치	136	기타새치	146						
능성어	107	민대구	117	민어류	127	통치(은삼치)	137	서대류	147						
가다랑어	108	붉은대구	118	꼬리민태	128	상어류	138	성대류	148						
날개다랑어	109	기타대구	119	새꼬리민태	129	녹새치	139	적어	149						
남부다랑어	110	기타돔	120	붉은메기	130	돛새치	140	정어리	150						

II. 원양어업(단독) 어선별 현황 조사

□ 조사대상 기간은 2009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정해드린 원양어선의 2010년 생산현황을 작성해주십시오.

1. 보 유 어선현황	선 명	톤 수 (G/T)	천 백 십 일				단위미만	진수년월	()년 ()월 ()일											
									업종	(예: 참치연승이면 101)										
2. 출 어 별 선원승선현황	해구번호		출어횟수		실조업일수		조업국			기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부원							
			선장		1항사	2항사	3항사	기관장	1기사	2기사	3기사	갑판부	기관부	조리부						
한국인 선원 승선원 현황	총 승선원수																			
	1인당 월평균임금 (천원)																			
외국인 선원 승선원 현황	총 승선원수																			
	1인당 월평균임금 (천원)																			
3. 연 간 어로원가(천 원)	출어비		어구비	유류비	입어료	이료비	운반비	소모품비	주부식비											
	수리비		항만비	기타	임금 및 관리비	선원임금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기타											
4. 생 산 및 판매현황	* 어획품종이 7종 이상인 경우, 생산량이 많은 어획품종 순으로 6종까지 생산량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하고, 나머지 어획품종은 '⑦ 기타 어획 품종'에 생산량과 판매량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해외판매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판매량이 많은 국가순으로 2개국까지 국가명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하고 나머지 국가는 '기타국가'란에 판매량만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어획품종 번호	해구번호	생산량 (톤)	국내 판매 (톤)	판매현황						판매금액(원)									
					해외판매 합계(톤)	국가1			국가2			기타국가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국가명	판매량(톤)	국가명	판매량(톤)	판매량(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어획품종																				
합계																				

응답자	부서		성명		전화	
	FAX		이메일			
조사담당자	성명		전화			

2011년 기준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



합작어업 사업체용 조사표

- 이 조사는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해 우리나라 전체 원양산업의 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I. 원양어업(합작) 사업체 전체 현황 조사

□ 조사대상 기간은 2010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10년 사업체 현황을 작성해주시요.

1. 사업체명	국문 :	2. 사업자 등록번호	진출국가 :												
	영문 :		해당국 사업자 등록번호 :												
3. 대표자명	① 남 ② 여		4. 창설연월	년 월											
5. 소재지 (주소)															
6. 모기업	모기업명 :														
	모기업 주소 :														
7. 투자금액 (천\$)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9. 연간 매출액 (천\$)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8. 투자비율	한국인			현지인(외국인 포함)											
10.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종사자수(명)			연간급여액 합계(천\$)									
			남	여	계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한국인	육상근로자													
		어선원													
현지인 (외국인 포함)	육상근로자														
	어선원														
11.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	보유 어선 총 척수		보유 어선 총 톤수			연간 총 생산량			연간 총 생산금액						
	척		G/T			한M/T			만\$						

□ <참고자료> 원양어업 업종, 조업수역 및 해구, 원양어획품종 부호
- 보유 원양어선별 생산 및 경영현황 작성시 참조하십시오.

업종별 부호				조업수역 및 해구번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참치연승	101	새우트롤	107	대서양	북서부	21	대서양	동남부	47	태평양	북서부	61
저연승	102	오징어채낚기	108		북동부	27		서부	58		중북부	67
참치선망	103	원양외줄낚시	109		중서부	31		남빙양	중부		88	중서부
원양봉수망	104	모선식외줄낚시	110		중동부	34	동부	48	중동부		77	
북양트롤	105	기타	111		동북부	37	인도양	서부	51		서남부	81
해이트롤	106				서남부	41		동부	57		동남부	87

원양 어획품종 부호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어획품종	부호
가오리류	101	눈다랑어	111	금눈돔	121	방어류	131	백새치	141	전갱이류	151	게류	161	갑오징어	171
가자미류	102	농어류	112	셋돔	122	복어류	132	청새치	142	조기류	152	남빙양새우	162	문어류	172
갈치	103	참다랑어	113	통돔	123	볼락류	133	황새치	143	청어	153	기타새우	163	오징어류	173
고등어	104	황다랑어	114	하스돔	124	붕장어류	134	흑새치	144	홍어	154	기타갑각류	164	한치류	174
공치	105	달고기	115	명태	125	삼치류	135	기타다랑어	145	기타어류	155			기타연체동물	175
넙치류	106	대구	116	메로(이빨고기)	126	줄삼치	136	기타새치	146						
능성어	107	민대구	117	민어류	127	통치(은삼치)	137	서대류	147						
가다랑어	108	붉은대구	118	꼬리민태	128	상어류	138	성대류	148						
날개다랑어	109	기타대구	119	새꼬리민태	129	녹새치	139	적어	149						
남부다랑어	110	기타돔	120	붉은메기	130	돛새치	140	정어리	150						

II. 원양어업(합작) 어선별 현황 조사

□ 조사대상 기간은 2010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정해드린 어선의 2010년 생산현황을 작성해주시오.

1. 보 유 어선현황	선 명	톤 수 (G/T)	천 백 십 일				단위미만		진수년월		()년 ()월 ()일						
									업종		(예: 참치연승이면 101)						
2. 출 어 별 선원승선현황	해구번호		출어횟수		실조업일수		조업국				기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부원				
			선장		1항사	2항사	3항사	기관장	1기사	2기사	3기사	갑판부	기관부	조리부			
한국인 선원 승선원	총 승선원수																
	1인당 월평균임금 (\$)																
현지인외 국인선원 승선원	총 승선원수																
	1인당 월평균임금 (\$)																
3. 연 간 어로원가 (\$)	출어비		어구비		유류비		입어료		이료비		운반비		소모품비		주부식비		
	수리비		항만비		기타		임금 및 관리비		선원임금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기타		
4. 생 산 및 판매현황	* 어획품종이 7종 이상인 경우, 생산량이 많은 어획품종 순으로 6종까지 생산량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하고, 나머지 어획품종은 '⑦ 기타 어획 품종'에 생산량과 판매량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현지'판매는 진출국가 현지에 판매한 것이며, '한국'판매는 해외판매에 포함됩니다. * 해외판매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판매량이 많은 국가순으로 2개국까지 국가명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하고 나머지 국가는 '기타국가'란에 판매량만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어획품종 번호		해구번호	생산량 (톤)	판매현황						판매금액(\$)					
					현지 판매 (톤)	해외판매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국가1		국가2		기타국가							
						국가명	판매량(톤)	국가명	판매량(톤)	판매량(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어획품종																
	합계																

응답자	부서		성명		전화	
	FAX		이메일			
조사담당자	성명		전화			

2011년 기준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



승인(협의)번호

원양어업 관련사업 업체 조사표

· 이 조사는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해 우리나라 전체 원양산업의 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 원양어업관련사업 현황 조사

□ 조사대상 기간은 2010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10년 사업체 현황을 작성해주십시오.

1. 사업체명	국문 :	2. 진출국가								
	영문 :		3. 진출연월	년		월				
4. 대표자명							성별	국적		
							① 남 ② 여	① 대한민국 ② 기타()		
5. 업종비중	① 가공업(%) ② 양식업(%) ③ 유통판매업(%) ④ 운반업(%) ⑤ 원양업종 외 기타(%)									
6. 투자금액 (천\$)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7. 투자비율	한국인	현지인(외국인 포함)	
								%	%	
8. 연 간 매 출 액 (천\$)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9. 종사자수	한국인	현지인(외국인 포함)
							명		명	
10. 생산 및 판매현황	연간생산량		연간생산금액		11. 생 산 및 취급품목 (상위3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톤		\$			생산 및 취급품목				
						비율	%	%	%	
	※ 유통판매업은 판매량 및 금액				※ 가공업은 가공품목, 양식 및 유통판매업은 어종을 기입(운반업은 작성하지마시오)					
현지 관련 사업체	* 현지에 알고 있는 현지 원양어업관련사업체가 있으면 회사명, 업종, 연락처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 ,)									
응답자	부서					성명			전화	
	FAX					이메일				
조사담당자	성명					전화				

2011년 기준 원양산업 총조사 조사표



승인(협의)번호

해외교민 사업자 조사표	이 조사는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해 우리나라 전체 원양산업의 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	---

□ 해외교민사업 현황 조사

- 조사대상 기간은 2010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10년 사업 현황을 작성해주십시오.

1. 사업체명	국문 :	2. 진출국가								
	영문 :		3. 진출연월	년	월					
4. 대표자명				성별	국적					
			① 남 ② 여	① 대한민국 ② 기타()						
5. 업종비중	① 가공업(%) ② 양식업(%) ③ 유통판매업(%) ④ 운반업(%) ⑤ 원양업종 외 기타(%)									
6. 투자금액 (천\$)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7. 투자비율	한국인	현지인(외국인 포함)	
								%	%	
8. 연 간 매 출 액 (천\$)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불	9. 종사자수	한국인	현지인(외국인 포함)
									명	명
10. 생 산 및 판매현황	연간생산량	연간생산금액			11. 생 산 및 취급품목 (상위3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톤	\$				생산 및 취급품목				
						비율	%	%	%	
	* 유통판매업은 판매량 및 금액		*가공업은 가공품목, 양식 및 유통판매업은 어종을 기입(운반업은 작성하지마시오)							

현지 관련 사업체	* 현지에 알고 있는 현지 원양어업관련사업체가 있으면 회사명, 업종, 연락처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 (, ,)					
응답자	부서		성명		전화	
	FAX		이메일			
조사담당자	성명		전화			

부록3. 조사지침서

1. 조사 개요

1. 조사의 이해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의 개발 및 이용, 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여 정부의 해양·수산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1997년에 설립된 이래 국내외 해양수산정책과 수산업 종사자 등과 관련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해양수산관련 사업의 동향과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전문기관과 해양수산 관련 학술 및 정보교류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조사배경

2008년 2월 원양산업법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원양산업은 원양어업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양식, 가공, 유통 등을 포함하는 관련사업까지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현재의 원양산업 총조사는 단순 원양어업의 생산 부분에만 머물러 있어, 원양관련사업을 포함한 통계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원양산업 총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원양산업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를 선행할 필요가 있어, 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 조사의 의의

기존 원양어업 통계에서 조사하지 않은 원양어업 경영통계, 원양관련사업 생산통계 및 경영통계를 조사합니다. 원양어업 사업체 전체가 조사표본이 되는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응답거부 업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조사 참여진

주관기관 : 농림수산물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합니다.

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경대학교에서 연구합니다.

조사기관 : 디오피니언의 연구진과 실사진이 조사를 수행합니다.

협조기관 : 농림수산물부와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사업체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2. 조사 설계

1) 조사 목적

원양어업, 해외합작어업, 원양관련사업(해외양식, 제조업, 수출입/도소매)에 대한 생산 및 경영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원양산업에 대한 기초통계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정부가 원양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조사의 활용

원양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생산 및 경영실태와 관련한 종합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합니다. 향후 진행될 원양산업 총조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축적합니다. 기존 원양산업 생산 실태 통계를 보완하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원양산업 총조사의 결과자료는 글로벌 수산자원의 효율적 확보 및 다양한 맞춤형 원양산업 정책 수립, 시책의 실적평가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 진출한 원양어업자와 원양관련사업자에게 통계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들 기업의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이용이 가능합니다.

3) 조사대상

원양어업 사업체, 원양관련사업체(해외양식, 제조업, 수출입/도소매), 해외합작어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각 사업체에서 회사임원(대표, 이사 등), 생산현황과 경영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부서장급 이상을 응답자로 선정합니다.

4) 조사규모 : 약 212여개 업체

- ① 원양어업 사업체 : 70개
- ② 합작어업 사업체 : 23개 업체
- ③ 원양관련사업체 : 119여개 업체

5) 조사방법

- ① 국내소재 업체 : 조사원이 전화를 통해 사전 접촉을 시행한 후, 방문/이메일/팩스를 활용하여 조사표를 배부하고 담당자가 직접 기록하게 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② 국외소재 업체 :

- 페루, 인도네시아, 가나, 남아공, 피지, 솔로몬, 우루과이 소재 업체 : 현지 명예수 산관을 통해 면접조사방법(Face to Face Interview)으로 실사를 진행합니다.
- 그 외 국가 : 전화를 통해 사전 접촉을 시행한 후 이메일과 팩스를 활용하여 조사표와 응답지침서를 송부하고 담당자가 직접 기록하게 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조사표 수령 후 조사표 기입요령에 따라 자료를 검토합니다.

6) 조사문항

업종	항목수	조사항목
원양어업	35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5) : 사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등 - 조직형태(6) : 업체구분, 재무제표 작성 여부, 법인등록번호, 자산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 - 생산현황(4) : 보유어선 총 척수와 톤수, 연간 총생산량과 총생산금액 - 종사자 및 급여액(4) : 종사자수(내국인/외국인), 연간급여액(내국인/외국인), 어선원 현황(내국인/외국인) 등 - 경영현황(4) : 유형자산,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연간매출액, 원양어업 연간매출액 등 - 보유원양어선별 생산 및 경영현황(10) : 선명, 톤수, 진수년월, 해구별 출어 횟수와 조업일수, 승선원현황, 연간어로원가, 생산량 및 판매현황 등 - 응답자 및 조사자 인적사항(2)
합작어업	34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8) : 사업체명, 진출국가,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모기업명, 모기업주소 등 - 투자현황(2) : 투자금액, 투자비율 - 생산현황(4) : 보유어선 총 척수와 톤수, 연간 총생산량과 총생산금액 - 종사자 및 급여액(4) : 종사자수(내국인/외국인), 연간급여액(내국인/외국인), 어선원 현황(내국인/외국인) 등 - 경영현황(4) : 유형자산,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연간매출액, 원양어업 연간매출액 등 - 보유원양어선별 생산 및 경영현황(10) : 선명, 톤수, 진수년월, 해구별 출어 횟수와 조업일수, 승선원현황, 연간어로원가, 생산량 및 판매현황 등 - 응답자 및 조사자 인적사항(2)

업종	항목수	조사항목
관련 사업	양식 25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7) : 사업체명, 진출국가,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지명, 창설연월, 양식장 소재지, 관계기업 소재지 등 - 투자현황(2) : 투자금액, 투자비율 - 종사자 및 급여액(2) : 종사자수(한국인/현지인), 연간급여액(한국인/현지인) 등 - 경영현황(5) : 유형자산,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연간매출액, 생산량 및 생산금액 등 - 생산현황(6) : 양식장 면적, 종사자 및 급여액, 양식원가, 생산량 및 판매현황 등 - 기타(3) : 응답자 및 조사자 인적사항, 현지한인업체 정보 등
	제조업 24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7) : 사업체명, 진출국가,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지명, 진출연월, 제조공장 소재지, 관계기업 소재지 등 - 투자현황(2) : 투자금액, 투자비율 - 종사자 및 급여액(2) : 종사자수(한국인/현지인), 연간급여액(한국인/현지인) 등 - 경영현황(5) : 유형자산,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연간매출액, 생산량 및 생산금액 등 - 생산현황(5) : 제조공장 면적, 종사자 및 급여액, 생산량 및 판매현황 등 - 기타(3) : 응답자 및 조사자 인적사항, 현지한인업체 정보 등
	도소매/ 수출입 24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7) : 사업체명, 진출국가,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지명, 진출연월, 사업체 소재지, 관계기업 소재지 등 - 주요사업분야 및 투자현황(3) : 주요사업분야, 투자금액, 투자비율 - 종사자 및 급여액(2) : 종사자수(한국인/현지인), 연간급여액(한국인/현지인) 등 - 경영현황(5) : 유형자산,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연간매출액, 거래량 및 거래금액 등 - 생산현황(4) : 원료 현지구매/수입현황, 제품 현지판매/수출현황 등 - 기타(3) : 응답자 및 조사자 인적사항, 현지한인업체 정보 등

7) 조사일정

- ① 예비조사 실시 : 2010년 8월 25일~8월 27일
- ② 본조사 준비(조사표 최종수정, 인쇄, 공문 발송 등) : 2010년 8월 30일~9월 7일
- ③ 본조사 면접원 교육 : 2010년 9월 3일
- ④ 본조사 실시 : 2010년 9월 8일~(마감시)

3. 조사의 특성과 요령

1) 조사사업체 명부의 이해와 응답자 선정

- ① 조사사업체 명부는 원양어업/합작어업 사업체와 원양관련사업체의 2종이 있습니다.
- ② 조사사업체 명부 구성
 - 원양어업/합작어업 사업체 명부 : 사업체의 분류, 회사명, 대표자 이름, 주소, 대표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원양선박샘플, 합작선박샘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원양관련사업체 명부 : 사업체의 분류, 진출국가, 회사명, 대표자 이름, 주소, 대표전화번호와 이메일, 모기업명과 주소, 모기업 대표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 ③ 응답자 선정 기준
 -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응답자를 찾아 접촉해야 합니다.
 - 각 사업체에서 회사임원(대표, 이사 등) 또는 생산현황과 경영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수산물관리, 회계팀 등)의 부서장급 이상을 응답자로 선정합니다. 이때 생산현황과 경영현황을 관리하는 부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응답자가 1명이지만, 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응답자가 2명이 됩니다.
 - 명부에 모기업이 있는 경우 모기업에서 응답자를 선정하여 접촉합니다. 모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사업체에 연락하여 모기업을 문의한 후, 모기업이 없으면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모기업이 있으면 모기업에서 응답자를 찾아 접촉합니다.
- ④ 사업체 접촉시 사업체 분류와 법인수 확인
 - 조사사업체 전화접촉시 회사분류(원양어업, 합작어업, 원양관련사업), 주소, 연락처를 재확인합니다.
 - 회사분류 확인시 조사사업체 명부에 기재된 분류가 맞는지, 2종 이상(예. 원양어업과 해외합작어업을 동시에 운영)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회사분류에 따라 전달해야 할 조사표 종류와 수량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원양관련사업체 명부’의 사업체 분류는 ‘해외양식’, ‘제조업’, ‘도소매/수출입’, ‘분류없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분류없음’에 원양관련사업체 이외에 원양어업 사업체와 합작어업 사업체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 합작어업 사업체와 원양관련사업체는 모기업 접촉시 진출국가와 투자법인수를 확인합니다. 진출국가와 투자법인수에 따라 배부할 조사표 수량이 달라집니다.

2) 접촉일지의 이해와 작성

- ① 조사사업체에 접촉을 할 때는 접촉일지를 작성합니다.
- ② 접촉일지란 해당 조사사업체에 접촉한 과정에 대해 기록하는 기록지로, 접촉일자, 접촉시간, 접촉방법, 접촉 대상자의 이름과 부서/직급/근무지, 접촉결과, 접촉시 이슈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 ③ 진행과정을 담당 수퍼바이저에게 보고하고 조사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후 최종 접촉일지를 제출합니다.
- ④ 접촉일지 기재요령
 - 명부번호, 회사명, 분류, 소재지 : 조사사업체 명부를 기준으로 재확인 후 작성합니다.
 - 접촉 대상자의 이름과 부서/직급/근무지 : 방문/팩스/이메일 조사를 위해 재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접촉결과 보기
 - ▶ 방문거절 : 전화접촉시 3회 이상 거절한 경우입니다.
 - ▶ 부재 : 사전 약속 후 방문하였으나 3회 이상 부재한 경우입니다.
 - ▶ 응답거절 : 사전 약속 후 방문하였으나 3회 이상 응답을 거절한 경우입니다.
 - 접촉시 이슈 : 전화접촉 또는 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 연구원이나 수퍼바이저에게 보고하여 해결한 후, 특이사항과 해결과정을 작성합니다.

4. 조사표 선택과 배부

1) 조사표 선택 및 배부요령

- ① 사전조사에서 검증한 사업체 분류와 진출국가, 투자법인수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조사표를 선택합니다.
- ② 사업체가 2개의 다른 업종(예. 양식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
 - 2종의 조사표를 함께 배부하여 각 사업별로 조사표 응답을 받습니다.
- ③ 사업체의 모기업이 1개이며 진출국이 2개국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 각 국가별로 다른 법인명으로 해외에 진출한 경우입니다.
 - 각 국가별로 다른 법인명으로 진출했는지를 확인하신 후, 법인수에 맞춰 조사표를 배부합니다. 실사는 모기업에서 진행하지만 조사응답은 해외법인별로 받으셔야 합니다.

- ④ 사업체의 모기업과 진출국이 1개이며 2개 이상 법인이 있는 경우
 - 1개의 진출국에 다수의 법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수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조사표는 법인수에 맞춰 배부합니다.

2) 원양어업, 합작어업 사업체 조사표 배부 요령

- ① 원양어업사업체 조사표와 합작어업 사업체 조사표는 각각 3쪽입니다.
 - 1~2쪽은 사업체 총괄, 3쪽은 사업체 보유 어선별 생산 및 경영현황을 작성합니다.
- ② 조사표 수량 추가 여부
 - 원양어업/합작어업 사업체 명부에서 ‘원양선박샘플’과 ‘합작선박샘플’의 숫자를 확인하여 별도로 드린 ‘보유 원양어선별 생산 및 경영현황’ 조사표의 수량을 추가로 선택합니다.
- ④ 조사표 3쪽 ‘보유 원양어선별 생산 및 경영현황’과 추가선택한 별도 조사표의 상단에 ‘원양선박샘플’ 또는 ‘합작선박샘플’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명부 제시내용		조사표 선택/추가 및 기재내용	
		원양선박샘플	합작선박샘플
	척	샘플링 선박 업종, 톤	척
		척	샘플링 선박명
㉑	1	저연승 톤200~499	1
			MYS YEKATERINY
			- 원양어업사업체 조사표 1매, 합작어업사업체 조사표 1매 선택 - 원양어업사업체 조사표 3쪽 상단에 ‘저연승 200~499톤’ 기재 - 합작어업사업체 조사표 3쪽 상단에 선박명 ‘MYS YEKATERINY’ 기재
㉒	2	저연승 톤200~499 참치연승 톤200~499	
			- 원양어업사업체 조사표 1매, 별도 조사표 1매 추가 선택 - 원양어업사업체 조사표 3쪽 상단에 ‘저연승 200~499톤’ 기재 - 별도조사표 상단에 ‘참치연승 200~499톤’ 기재
㉓			2
			yugo vostock yugo vostock3
			- 합작어업사업체 조사표 1매, 별도 조사표 1매 추가 선택 - 합작어업사업체 조사표 3쪽 상단에 선박명 ‘yugo vostock’ 기재 - 별도 조사표 상단에 선박명 ‘yugo vostock3’ 기재

- ⑤ 샘플링 된 선박업종/톤, 선박명칭을 확인한 후 조사표를 배부합니다.
 - 이때 3쪽 ‘보유 어선별 생산 및 경영현황’과 별도조사표의 쪽수를 합산했을 때, 샘플링 된 선박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⑥ 응답자에게 ‘보유 어선별 생산 및 경영현황’ 상단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 샘플링 된 선박에 대한 생산 및 경영현황이 정확하게 기재되도록 합니다.
- ⑦ 원양어업/합작어업 사업체 중 선박샘플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2009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생산 활동을 하였으며 사업체를 대표하는 선박 1척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응답자에게 설명드립니다.

5. 조사 준비물

1) 전화접촉시 준비물

- ① 조사대상사업체 명부
- ② 전화접촉 시나리오
- ③ 조사표
- ④ 조사지침서/연락처
- ⑤ 필기구
- ⑥ 접촉일지
- ⑦ 농림수산식품부 협조공문(인쇄물, 이미지 파일로 2종 준비)

2) 방문조사시 준비물

- ① 조사표
- ② 조사지침서/연락처
- ③ 조사대상사업체 명부
- ④ 필기구
- ⑤ 접촉일지
- ⑥ 응답자 선물
- ⑦ 면접원 신분증/명함
- ⑧ 농림수산식품부 협조공문

3) 이메일/팩스 조사시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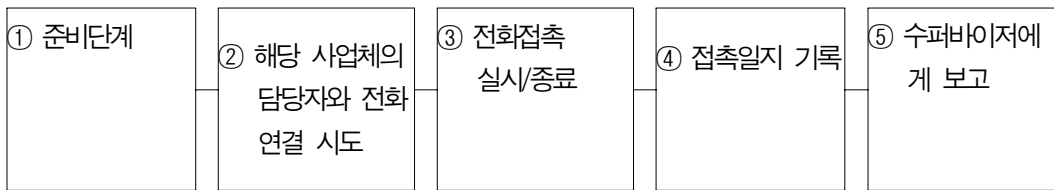
- ① 조사표
- ② 조사지침서/연락처
- ③ 조사대상사업체 명부
- ④ 필기구
- ⑤ 접촉일지
- ⑥ 농림수산식품부 협조공문

II. 조사의 일반적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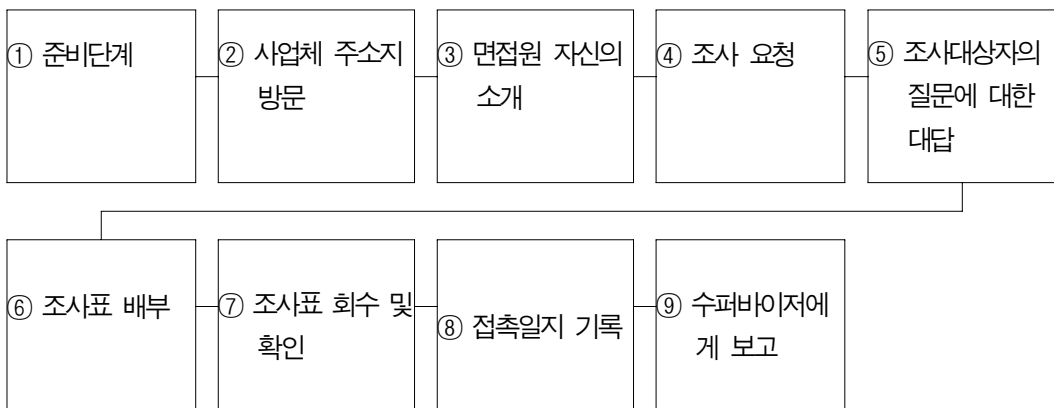
1. 조사절차 및 진행요령

1) 조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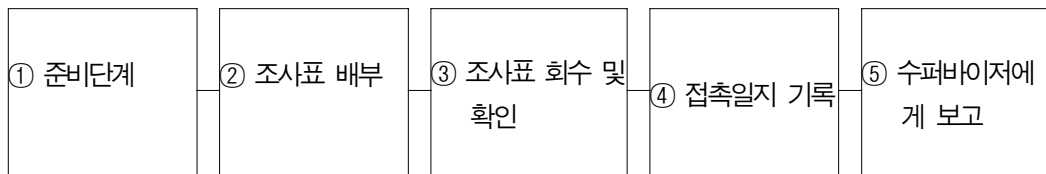
▶ 전화접촉



▶ 방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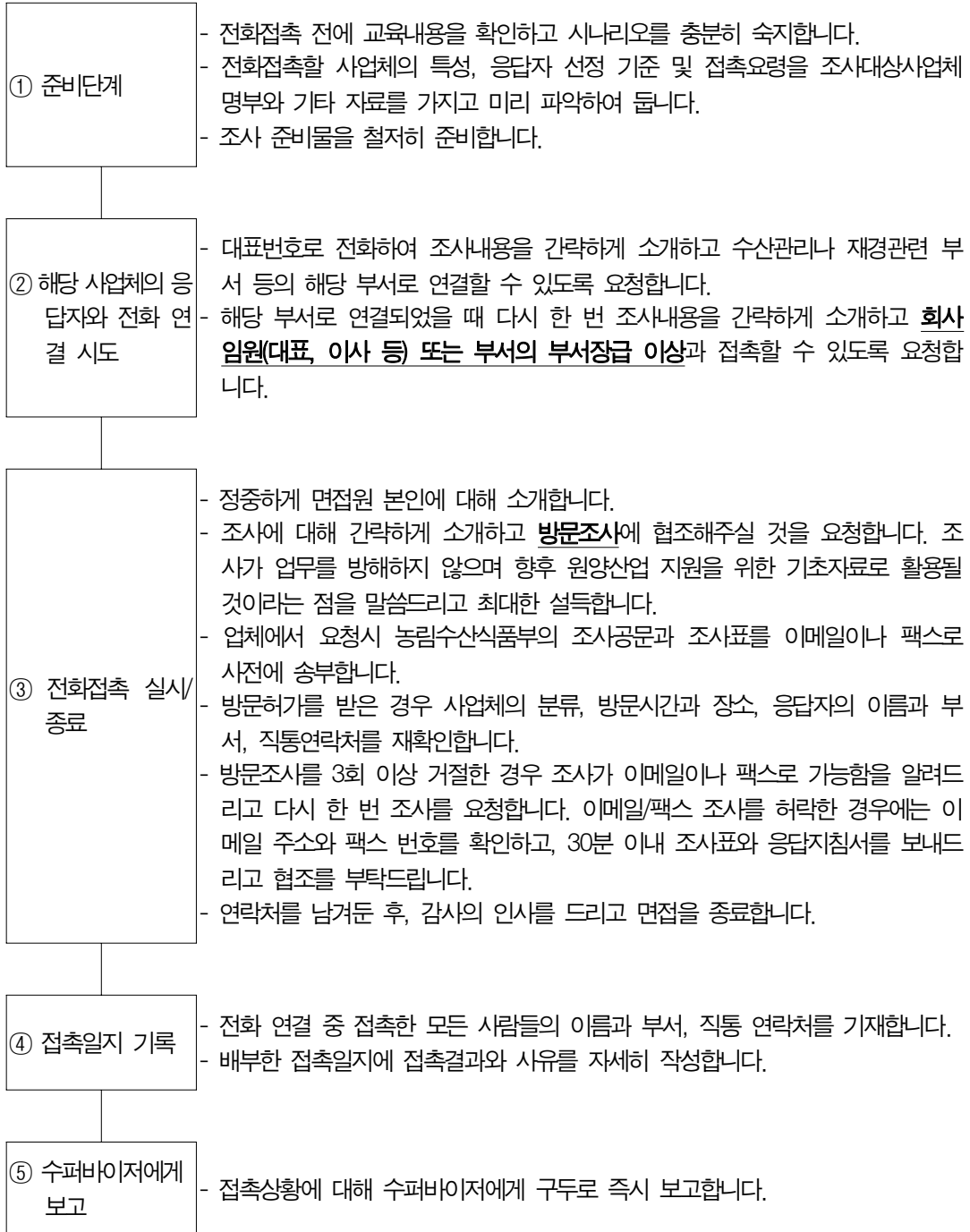


▶ 이메일/팩스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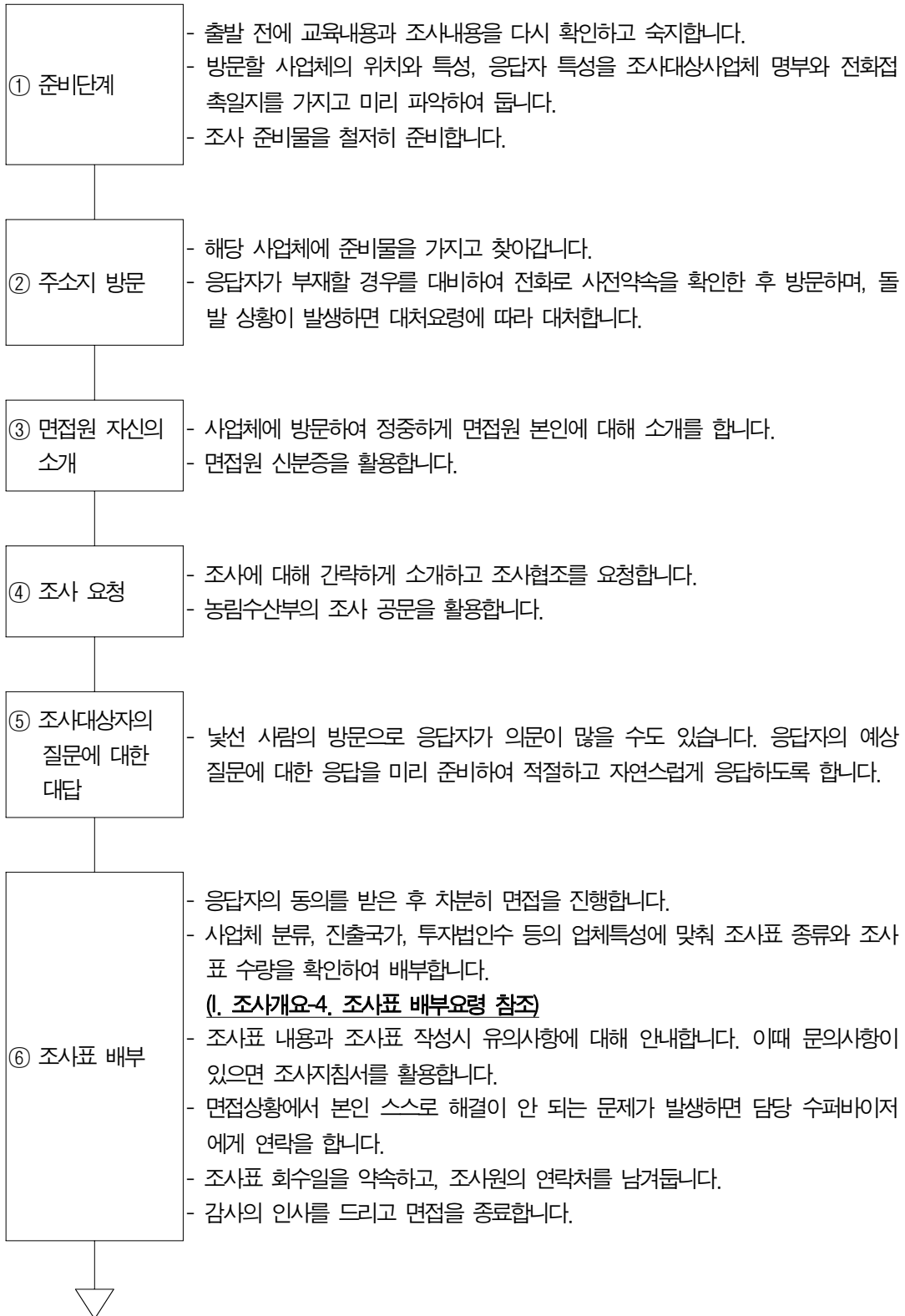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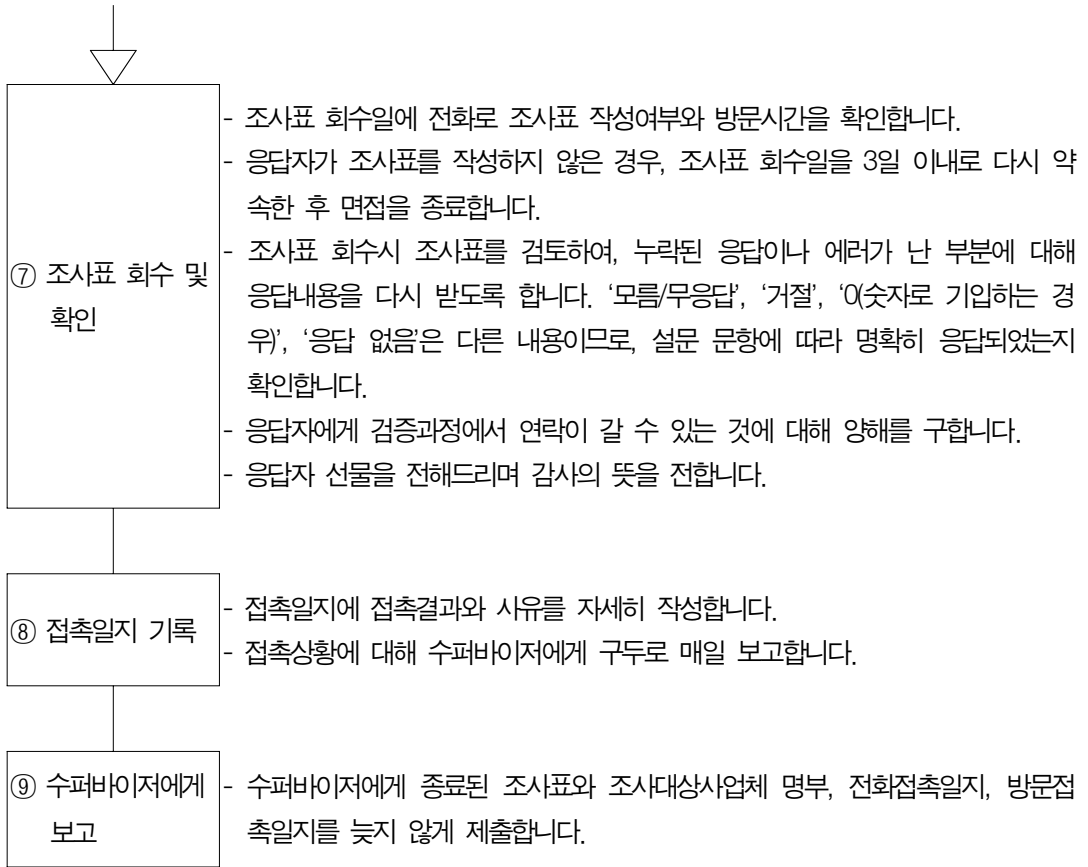
2) 조사절차별 진행요령

▶ 전화접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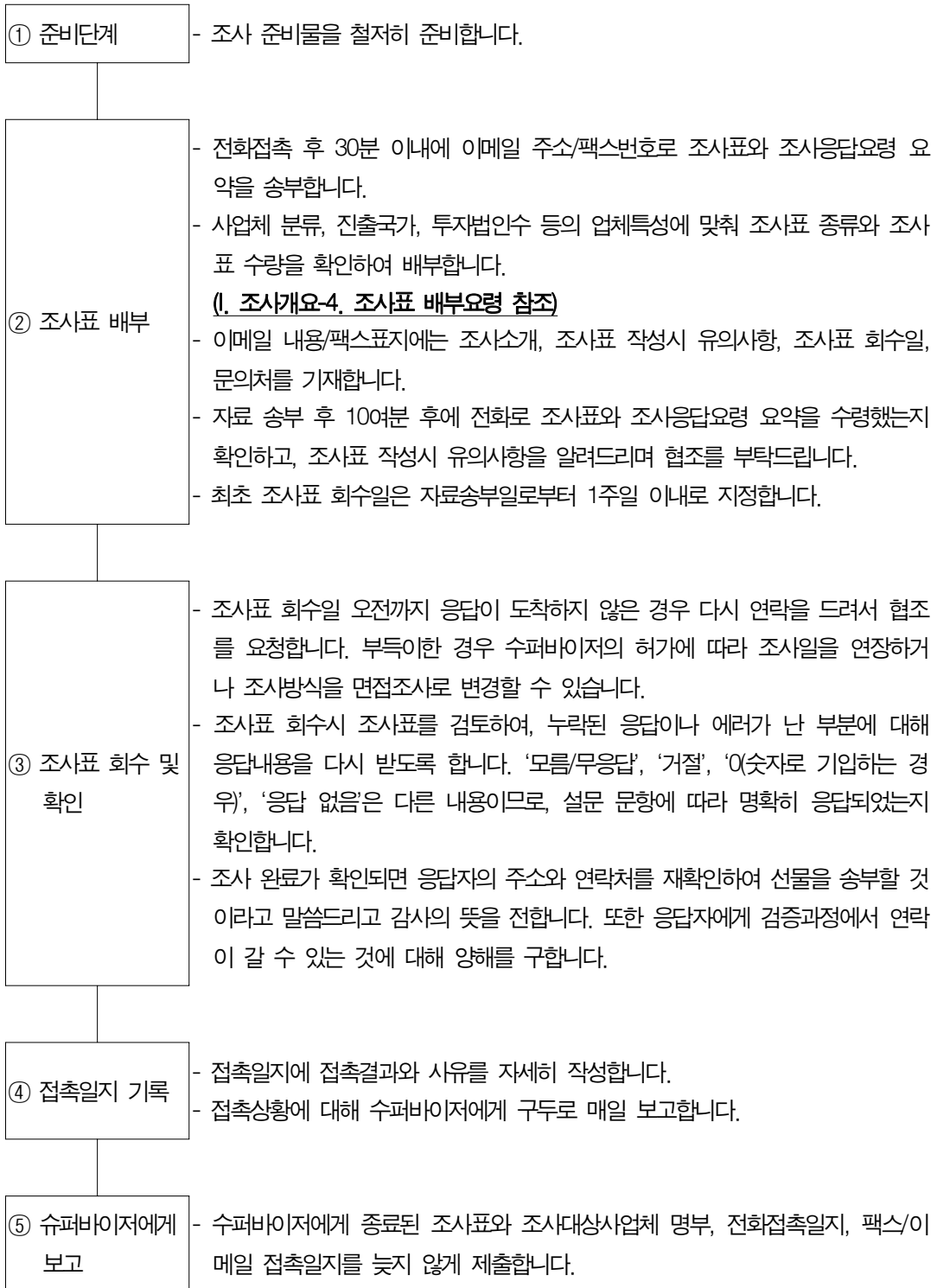


▶ 방문조사





▶ 이메일/팩스 조사



2. 조사거절과 조사변수에 대한 대처

1) 조사에 대한 예상 질문 및 응답요령

- ① 이 조사는 어디서 하는가?
 -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디오피니언이 자료 수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② 이 조사는 왜 하는가?
 - 원양산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양산업 생산과 경영실태를 알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 ③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해양의 개발 및 이용, 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여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④ 어떻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가?
 -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면접원의 신분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원하신다면 전화로 해당 면접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⑤ 우리 사업체에 대하여 어떻게 알았는가?
 -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를 제공하였습니다.
- ⑥ 우리 사업체가 어떻게 대상으로 선정되었나?
 - 귀 사가 원양어업/원양관련사업/해외합작어업(중 택 1)에 종사하고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⑦ 조사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
 - 원양산업에 대한 생산 및 경영실태 통계 작성을 통해 원양산업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원양어업, 원양관련사업자 및 해외합작어업자 등의 산업 활동에 필요한 기초정보도 제공합니다.
- ⑧ 조사내용의 비밀은 보장되는가?
 - 조사된 업체정보는 통계법 제13조에 따라 통계적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응답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실사기관인 디오피니언만 알게 되며 철저히 보호됩니다.

2) 조사대상 사업체 응답자 부재 및 거절시 대처방법

- ① 사전 전화접촉 시 응답자가 부재인 경우
 - 접촉가능시간을 확인하고 재접촉 의사를 밝힌 후 마무리합니다. 이때 접촉일지에 재접촉가능 시간과 응답자의 이름/직급을 기재합니다.
- ② 전화접촉 시 응답자가 방문을 3회 이상 거절한 경우
 - 연구원의 허가와 지시에 따라 응답자를 대체
 - 해당 응답자에게 대체 응답자를 추천받아 재접촉을 시도
 - 연구원의 허가에 따라 조사방식을 팩스/이메일로 변경하여 제안
 - 이 경우에도 3회 이상 거절한 경우에는 접촉일지에 ‘방문/응답거절’이라고 작성합니다.
- ③ 방문조사를 허락한 응답자가 방문시 부재일 경우
 - 연락처를 남겨두고 추후에 다시 연락을 취해서 재방문 약속을 잡습니다.
 - 3회 이상 재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연구원/담당 수퍼바이저의 허가에 따라 응답자를 대체하거나 조사방식을 변경하여 제안합니다. 만약 대체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거나 조사방식 변경을 거부하면 접촉일지에 ‘방문/응답거절’이라고 작성합니다.
- ④ 방문시 응답을 거절한 경우
 - 부재시와 같은 방식으로 3회 방문을 시도한 후 담당 수퍼바이저에게 보고합니다. 접촉일지에는 ‘응답거절’이라고 작성합니다.
- ⑤ 각 거절사유에 대한 대처
 - ▷ ‘바쁘다’, ‘귀찮다’ 등의 이유로 조사 거절시
 - 조사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편한 시간이 언제인지 물어봅니다.
 - ▷ ‘내가 어떻게 믿고 조사에 응해줄 수 있느냐’, ‘업체정보가 누출되는 것 아니냐’ 등 면접원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조사 거절시
 - 조사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공문, 신분증 등을 제시합니다. 또한 조사 기관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가르쳐주어 조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 조사내용이 너무 많아서 바로 응답해줄 수 없다며 조사 거절시
 - 2~3일 정도 응답할 시간을 드린 후 회수하러 온다고 말씀드립니다. 응답 완료 조사표를 수령할 수 있는 시간을 물어보고 차후에 방문할 시간과 연락처를 메모로 남겨놓습니다.
- ⑥ 조사대상 사업체/응답자 접촉시 주의할 점

- 조사를 진행하시면서 면접원의 연락처를 사업체/응답자에게 남겨둡니다.
- 응답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는 시간을 선택하여 사업체로 방문하도록 합니다.
- 공문을 요구할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한 후 재접촉합니다.

3) 조사변수에 대한 대처상황

- ① 조사사업체 명부에 명시된 회사 분류가 다른 경우
 - 담당연구원과 수퍼바이저에게 사유를 정리하여 보고합니다.
 - 담당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방문조사시 사업체측에서 응답한 분류에 따라 조사표를 전달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 ② 사업체가 폐업, 업종변경, 휴업을 한 경우
 - 수퍼바이저에게 사유를 정리하여 보고한 후, 접촉일지에 사유를 기재합니다.
- ③ 1개의 사업체가 사업부 형식으로 2종 이상의 분류에 종사하는 경우
 - 조사사업체에서 각 사업부의 생산 및 경영실태를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는지, 각각의 사업부에서 생산 및 경영실태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조사사업체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응답대상자를 응답자로 선정하여 방문약속을 잡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 각각의 사업부에서 각 업종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부별 책임자 개개인과 방문약속을 잡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업부별로 경영 및 생산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변수사유에 대해 담당연구원과 수퍼바이저에게 보고합니다.

4. 조사원 일반적인 유의사항

1) 조사원의 역할과 의무

- ① 면접원은 조사대상자를 확인하고 접촉합니다.
- ② 면접원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를 요청하고 면접을 실시합니다.
- ③ 면접원은 면접의 결과를 수퍼바이저에게 매일 보고합니다.
- ④ 접촉일지 작성을 통해 배정된 업체 조사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⑤ 회수한 조사표를 제때에 제출합니다.
- ⑥ 조사과정에서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2) 조사시 태도

- ① 단정한 복장과 바른 언행으로 응답자가 조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해야 합니다.
- ② 과격한 어투나 협박조의 언행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 ③ 조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사에 진지하게 임합니다.

3) 조사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

- ① 조사기간 중, 판매 등 영업활동은 절대 금지됩니다.
- ② 조사는 반드시 교육받은 당사자가 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대리 조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③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업체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통계법(제33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④ 조사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조사표를 꾸며서는 안 됩니다. 검증과정을 통해 밝혀질 경우 해당 조사원의 조사표는 전량 폐기됩니다.

4) 조사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

- ①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수퍼바이저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 ② 담당 수퍼바이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매일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 해야 합니다.
- ③ 종료된 조사표는 바로 제출하여 담당 수퍼바이저에게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III. 조사표 작성요령

1. 일반적인 유의사항

1) 응답자 기입원칙

- ① 조사표는 반드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합니다.
- ②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합니다.
- ③ 칼럼란 숫자기입시 끝자리를 맞추고 숫자 앞의 공란은 공백 처리합니다.
- ④ 선택형 질문항목은 별도 설명이 없는 한 반드시 해당 번호 하나에만 ○표시합니다.
- ⑤ 틀렸을 경우에는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다시 옆의 빈 칸에다 또렷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 ⑥ 응답란에 다음 질문 순위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중간의 항목은 질문을 생략하고 사선 【\】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조사사항 전체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 항목을 하나의 사선 【\】으로 처리합니다.

2) 리뷰과정 수정원칙

- ① 1차 리뷰를 볼 때 글씨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며, 최종 리뷰를 볼 때의 글씨 색깔은 빨강색입니다.
- ② 조사표에는 수정액(화이트) 또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어떤 내용들이 수정되었는지도 모두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 ③ 부득이하게 기입된 응답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지워야 할 응답을 두 줄로 그어서 지우고, 그 옆자리에 새로운 응답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X표나 새카맣게 칠하는 등으로 응답 내용을 지우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④ 여러 차례 수정을 하여서, 어떤 것이 최종인지 불명확할 때에는 붉은색 형광펜을 이용하여 최종 응답에 네모/동그라미를 그려 표시하여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응답확인 원칙

- ① 응답확인 은 설문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바를 응답자가 정확하게 응답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 ② 확인의 방법
 - 설문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여 설문구조상 응답하여야 할 문항과 건너 뛴 문항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설문의 흐름이 명확한지 검토합니다.
 - 주요 문항간의 교차확인을 통해 검토합니다.
 - 상식선에서 가능한 응답을 했는지에 대해 검토합니다.

2.1. 조사항목 - 원양어업 조사표 : 총괄

1) 사업체명

-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 이름을 기입
- 이름은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
-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 대표자 이름을 기입

2) 사업자 등록번호

- 해당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번호를 기입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리를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를 기입

3) 대표자명 : 대표자명은 1명만 기입하고 ①남 ②녀 중에 √표시

4) 창설연월

- 현행 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연월
- 창설연월 변경여부의 판단기준

창설연월 변경한 때를 기입	① 주요업종(산업대분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조직형태가 변경 되었을 경우(예: 개인사업체⇒회사법인) ③ 대표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지만 창설연월을 변경하지 않음	① 법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② 상속으로 인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5) 소재지

- 법정동명과 번지 호수까지 기입
- 아파트식 공장, 빌딩에 있는 사업체의 경우 층, 호까지 정확하게 기입

6) 조직형태

① 개인사업체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도 포함)
② 회사 법인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조직체
③ 회사 이외의 법인	상법외 민법에 의한 재단·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

6.1) 재무제표 (조직형태가 '① 개인사업체'인 사업체만 기입)

- 재무제표 작성여부에 따라 '①작성 ②미작성' 중에 √표시

- 6.2) 법인등록번호 (조직형태가 ‘② 회사법인, ③ 회사 이외의 법인’인 사업체만 기입)
 ○ 법인설립을 위해 법원 등기소에 처음 등록할 당시 법원으로부터 부여 받은 번호
 (조직형태가 변하면 법인등록번호도 변함)

- 6.3) 단독사업체 여부 (조직형태가 ‘② 회사법인, ③ 회사 이외의 법인’인 사업체만 기입)

① 단독사업체	- 다른 장소에 본사(점) 또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없이 한 장소에 하나의 사업체만 있는 경우
② 본사, 본점 등	- 동일한 경영 하에 있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공장 등을 1개 이상 거느리며 사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체
③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	- 동일 경영을 총괄하는 본사 등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본사 등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있는 사업체 - 이 경우 본사소재지를 시도, 구군 단위까지 기입

- 6.3.1) 자산과 자본 (사업체가 ‘① 단독사업체, ② 본사, 본점 등’인 경우만 기입)
 ○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 자본금(출자금)과 자본잉여금을 각각 기입

7)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7.1) 종사자 수 (2009년 12월 31일 기준 종사자수를 기입)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	어선원과 어선관리 관련 업무의 종사자 수를 기재하며, 사업체 내의 유통업이나 가공업 등 원양어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 기재함. 기재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작성함.		
	내국인	① 상용근로자	한국국적이며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선원을 포함)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한국국적이며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③ 기타종사자	한국국적이며 기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음.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경우 등)
외국인	한국 이외의 국적이며 육상근로자 및 선원을 포함하여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기재		
사업체 전체 종사자	조사대상 기업이 원양어업 이외에 유통업, 가공업 등을 경영하는 경우에 회사의 종업원을 모두 합산하여 기입(ex: 그룹은 그룹 전체 종사자 기입)		

7.2) 연간 급여액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연간 급여액을 합계하여 기입
- 퇴직금,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
-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은 포함하며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액
- 2008년 이전의 체불급여를 2009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2009년 중에 지불해야 할 급여액을 지불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액은 포함
- 외국인 종사자는 별도 구분 없이 총합계만을 기입

8)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

- 2009년 12월 31일 기준의 보유 어선 척수를 기입
- 2009년 12월 31일 기준의 보유 어선 총톤수를 기입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총 생산량을 기입(단위: M/T)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총 생산금액을 기입(단위: 백만원)

9) 어선원 현황

-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을 구분
- 직급별(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부원) 총 승선원수와 1인당 월평균임금(단위: 천원)을 기입

10) 유형자산

- 유형자산은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및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건설중인 자산 등을 말함
- 해당사업체에서 생산활동과 관련 있는 자산만을 기입
 - 동일 기업내 타 사업체의 유형자산은 포함하지 않음(임차사용 자산은 미포함)
 - 재무상태표를 참조하여 작성시 해당 사업체 부분만큼 분리하여 기입 (원양어업 사업체와 합작어업 사업체가 동시운영되는 경우, 조사표 종류에 따라 분리 기입)

※ 해당업체의 “유형자산명세서”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기입

①토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와 운동장, 기숙사, 사택 등의 대지
②건물	공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 및 승강기·냉방·통풍장치 등 이들의 부속시설
③기계장치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 각종 기계류 및 기계장치 부설 설치물, 시설장치, 요(窯), 로(爐) 등 포함
④어망·어구	원양어선의 조업에 사용되는 전체 어구와 어망
⑤어선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어선의 장부가격(감가상각된 가격 반영)
⑥기타(차량·공구·기구·비품 등)	1년 이상 내구성이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 등으로 ①~⑥까지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유형자산을 포함함

11)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 확인하여 작성

① 원부·보조·포장 재료비	-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주요재료, 보조재료, 부속품 등의 사용 금액 - 당해연도 제품생산에 실제로 투입된 원재료비만 기입하며, 구입한 원재료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나 연말재고액이 포함되지 않음(미사용분 제외)
② 연료비	- 가열료(난방포함), 동력 및 자기발전용 등으로 사용한 석탄류, 유류 등 모든 연료비 금액
③ 전력비	- 구입 사용한 전력요금
④ 용수비(수도비)	- 생산에 사용된 것은 물론 사무실용, 종사자의 음료용 등을 포함한 모든 용수의 요금
⑤ 외주가공비 (위탁생산비)	- 제품생산을 위해 타 사업체(수탁사업체)와 기사노동자에게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여 가공시키고 반제품, 부분품 또는 완제품형태로 그것을 인수할 경우 외주작업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
⑥ 인건비	-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작성 - 복리후생비 : 종사자의 복지 및 후생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 (구내식당 운영보조비, 치료보조비, 장학금, 경조비, 체육행사비, 복리후생시설, 직원 신체검사비, 피복비 등) - 퇴직금 및 퇴직급여 : 장부기장 사업체에서는 당해연도 퇴직급여를 기입하며 미기장 사업체는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을 기입
⑦ 수선비 (수리유지비)	- 건물 또는 기계장치의 현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선한 비용 지출을 기입
⑧ 감가상각비	-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의 대상임(예외: 토지,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⑨ 임차료(부지·건물·기계장비 등)	-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을 임차한 경우에 연간 지급되는 임차료
⑩ 세금과 공과 (내국소비세 제외)	- 세금과공과란 영업과 관계되는 조세 및 공과금으로 세금은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등의 세부담액(개인사업체의 소득세, 법인세는 세금과 공과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과금은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과 같이 영업과 관계되는 공공적 지출로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⑪ 대손상각비	-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⑫ 광고선전비	- 기업이 상품, 제품, 용역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선전효과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
⑬ 운반·하역·보관비	- 운반비 : 물자를 물류거점관 및 소비자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 하역비 : 물자의 운송과 보관활동에 있어서 동일 시설 내에서 물자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 보관비 : 물자를 창고(물류센터)등에 보관하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⑭ 기타(감가상각비, 보험료, 접대비 등)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중 “①원재료비~⑬운반·하역·보관비”외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비의 합계

12) 연간매출액(재고 제외)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
- 총출하액 중 재고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

13) 원양어업 분야 매출액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 중에서 원양어업과 관련된 매출액만 기입

2.2. 조사항목 - 원양어업 조사표 : 보유 원양어선별 생산 및 경영현황

- ※ 보유어선현황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로 배정된 샘플 어선당 1페이지씩 작성함
- ※ 총괄조사표 2쪽 하단의 ‘원양어업 업종, 조업수역 및 해구, 원양어획품종 부호’를 참조하여 작성

1) 보유 어선 현황

- 현재 보유 중인 선명과 톤수, 진수년월을 기입
- 업종은 아래의 업종 코드를 확인하여 기입

업종별 부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참치연승	101	원양붕수망	104	새우트롤	107	모선식외줄낚시	110
저연승	102	북양트롤	105	오징어채낚기	108	기타	111
참치선망	103	해외트롤	106	원양외줄낚시	109		

2) 출어별 선원승선 현황

해구번호	조사대상 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조업수역을 확인하여 아래의 해구번호를 참조하여 기입								
	조업수역 및 해구번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대서양	북서부	21	대서양	동남부	47	태평양	북서부	61
		북동부	27		서부	58		중북부	67
		중서부	31	남빙양	중부	88		중서부	71
		중동부	34		동부	48		중동부	77
		동북부	37	인도양	서부	51		서남부	81
서남부		41	동부		57	동남부		87	
출어횟수	어로작업을 위하여 근거지항을 출항한 후 귀항한 횟수								
실조업일수	출어 후 어장까지의 항해일수, 탐어, 집어 및 어로일수 등을 합한 귀항일까지의 일수로서 연간 총일수를 기입								
조업국	해구별로 조업하는 조업국을 모두 기입								
기지	출어해서 귀항하는 기지를 기입								
승선원수 및 임금	- 조사대상 어선에 승선한 내국인, 외국인 선원을 구분하여 기입 - 직급별(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부원) 승선원수와 월평균임금(단위: 천원)을 기입								

3) 연간 어로원가

- 연간어로원가는 출어비와 임금 및 관리비로 구분하여 작성
- 어로원가 작성단위는 ‘천원’임

출어비	어구비	조사대상 어선의 어구의 신규구입, 망지, 로프, 부자, 침자, 보망사, 콜탈 등 어구소모품 구입비
	유류비	조사대상 어선이 중유, 경유, B/A유, 윤활유 등 어선 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 취사 및 난방용 유류나 가스구입비
	입어료	조사대상 어선이 조업국에 입어를 위해 지불하는 금액으로 작성하는 보유선박 한 척에 대한 입어료만 계산하여 기입(여러 척이 공동의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는 경우 척수로 입어료를 나누어 계산)
	이료비	조사대상 어선이 수산물 어획을 위해 사용하는 미끼 구입 비용
	운반비	조사대상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을 양륙하기 위해 사용되는 총 운반 비용
	소모품비	전구, 청소용구, 붓, 식도 등 선박 소모품, 장갑, 휴지 등 선원소모품, 어구비, 수리비, 주부식비에 포함되지 않은 제물품 구입비
	주부식비	쌀, 쇠고기, 김치, 양채, 조미료, 식수 등을 포함한 주부식 구입비
	수리비	선체, 기관, 선박기기 관리 및 수리를 위한 부품 및 재료구입비, 선체수선 임부임, 상가비, 기관수리비 등 외부 수리대금
	항만비	기지의 어항이용료 등
임금 및 관리비	기타	출어비 중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비용(저장대, 용기대, 후생비 등 포함) ※ 저장대는 조사대상 어선이 연간 사용하는 얼음, 소금 구입대금 및 냉동 및 냉장료임 ※ 후생비는 선원주대, 치료비 및 약품대, 담배대 등 선원 후생관련 비용
	선원임금	고정급, 짓가림액, 상여금, 퇴직금, 특별수당 등 선원에게 지급한 임금
	조세공과	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어선 입출항수수비, 조합비 등 공과금
	감가상각비	어선에 대한 감가상각비만 기입
	기타	임금 및 관리비에서 선원임금, 조세공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공제료 및 보험료, 판매비 등을 기입

4) 생산 및 판매현황

- 어획품종 및 해구번호를 확인해서 기입하고 각 어획품종 당 생산량과 판매금액을 기입
 - 어획품종이 7종 이상인 경우, 생산량이 많은 어획품종 순으로 6종까지 생산량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한 후, 나머지 어획품종은 ‘⑦ 기타어획품종’란에 생산량과 판매량을 합산하여 기재
- 판매량은 국내판매량과 해외판매량을 나누어서 기입하고, 국가명과 국가당 판매량을 기입
 - 국내판매와 해외판매를 합산한 값이 생산량과 일치해야 함.
 - 해외판매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판매량이 많은 국가 순으로 2개국까지 국가명과 판매량을 기재한 후, 나머지 국가는 ‘기타국가’란에 판매량만 합산하여 기재. 이때 각 국가별 판매량을 합산한 값이 ‘해외판매 합계’와 일치해야 함.

3.1. 조사항목 - 합작어업 조사표 : 총괄

1) 사업체명

- 실제 해외에 진출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 이름을 기입
- 이름은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
-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 대표자 이름을 기입
- 국문, 영문 이름을 기입

2) 사업자 등록번호

- 진출국가 : 해외에 실제 진출한 국가명을 기입
- 해당국 사업자 등록번호 : 진출한 국가에서 부여받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

3) 대표자명 : 대표자명은 1명만 기입하고 ①남 ②녀 중에 √표시

4) 창설연월

- 현행 합작어업을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연월
- 창설연월 변경여부의 판단기준

창설연월 변경한 때를 기입	① 주요업종(산업대분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을 경우(예: 개인사업체⇒회사법인) ③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지만 창설연월을 변경하지 않음	① 법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② 상속으로 인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5) 소재지

- 진출한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주소를 영문으로 기입

6) 모기업

- 모기업명 : 합작을 통해 진출한 사업체의 국내 모기업 정식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
- 모기업 주소 : 모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국내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입

7) 투자금액(\$)

- 합작시 모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로 기입

8) 투자비율

- 합작시 투자금액 중 내국인 및 외국인 비율을 %로 기입, 합계는 100%이어야 함.
- ※ 내국인이 100%인 경우 단독을 나타내므로 ‘합작’으로 볼 수 없음.
- ※ ‘합작’은 내국인의 투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이므로, 49%미만인 경우는 주의.

9)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9.1) 종사자 수 (2009년 12월 31일 기준 종사자수를 기입)

원양어업관련 종사자	어선원과 어선관리 관련 업무의 종사자 수 를 기재하며, 사업체 내의 유통업이나 가공업 등 원양어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 기재함. 기재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작성함.	
	내국인	① 상용근로자 한국국적이며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선원을 포함)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한국국적이며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③ 기타종사자 한국국적이며 기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음.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경우 등)
외국인	한국 이외의 국적이며 원양어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육상근로자 및 선원을 포함하여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기재	
사업체 전체 종사자	조사대상 기업이 원양어업 이외에 유통업, 가공업 등을 경영하는 경우에 회사의 종업원을 모두 합산하여 기입(ex. 그룹은 그룹 전체 종사자 기입)	

9.2) 연간 급여액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연간 급여액을 합계하여 기입
- 퇴직금,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
-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은 포함하며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액
- 2008년 이전의 체불급여를 2009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2009년 중에 지불해야 할 급여액을 지불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액은 포함
- 외국인 종사자는 별도 구분 없이 총합계만을 기입

10) 어선척수 및 생산현황

- 2009년 12월 31일 기준의 보유 어선 척수를 기입
- 2009년 12월 31일 기준의 보유 어선 총톤수를 기입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총 생산량을 기입(단위: M/T)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총 생산금액을 기입(단위: 백만원)

11) 어선원 현황

-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을 구분하여 총 승선인원수 및 1인당 월평균임금(단위: 천원)을 기입

12) 유형자산

- 유형자산은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및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건설중인 자산 등을 말함
- 해당사업체에서 생산활동과 관련 있는 자산만을 기입
 - 동일 기업내 타 사업체의 유형자산은 포함하지 않음(임차사용 자산은 미포함)
 - 재무상태표를 참조하여 작성시 해당 사업체 부분만큼 분리하여 기입 (원양어업 사업체와 합작어업 사업체가 동시운영되는 경우, 조사표 종류에 따라 분리 기입)

※ 해당업체의 “유형자산명세서”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기입

①토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와 운동장, 기숙사, 사택 등의 대지
②건물	공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 및 승강기·냉방·통풍장치 등 이들의 부속시설
③기계장치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 각종 기계류 및 기계장치 부설 설치물, 시설장치, 요(窯), 로(爐) 등 포함
④어망·어구	원양어선의 조업에 사용되는 전체 어구와 어망
⑤어선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어선의 장부가액(감가상각된 가격 반영)
⑥기타(차량·공구·기구, 비품 등)	1년 이상 내구성이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 등으로 ①~⑤까지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유형자산을 포함함

13)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 확인하여 작성

① 원(부·보조·포장) 재료비	-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주요재료, 보조재료, 부속품 등의 사용 금액 - 당해연도 제품생산에 실제로 투입된 원재료비만 기입하며, 구입한 원재료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나 연말재고액이 포함되지 않음(미사용분 제외)
② 연료비	- 가열료(난방포함), 동력 및 자기발전용 등으로 사용한 석탄류, 유류 등 모든 연료비 금액

③ 전력비	- 구입 사용한 전력요금
④ 용수비(수도비)	- 생산에 사용된 것은 물론 사무실용, 종사자의 음료용 등을 포함한 모든 용수의 요금
⑤ 외주가공비 (위탁생산비)	- 제품생산을 위해 타 사업체(수탁사업체)와 가사노동자에게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여 가공시키고 반제품, 부분품 또는 완제품형태로 그것을 인수할 경우 외주작업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
⑥ 인건비	-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작성 - 복리후생비 : 종사자의 복지 및 후생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 (구내식당 운영보조비, 치료보조비, 장학금, 경조비, 체육행사비, 복리후생시설, 직원 신체검사비, 피복비 등) - 퇴직금 및 퇴직급여 : 장부기장 사업체에서는 당해연도 퇴직급여를 기입하며 미기장 사업체는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을 기입
⑦ 수선비 (수리유지비)	- 건물 또는 기계장치의 현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선한 비용 지출을 기입
⑧ 감가상각비	-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의 대상임(예외: 토지,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⑨ 임차료(부지·건물·기계장비 등)	-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을 임차한 경우에 연간 지급되는 임차료
⑩ 세금과 공과 (내국소비세 제외)	- 세금과공과란 영업과 관계되는 조세 및 공과금으로 세금은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등의 세부담액(개인사업체의 소득세, 법인세는 세금과 공과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과금은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과 같이 영업과 관계되는 공공적 지출로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⑪ 대손상각비	-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⑫ 광고선전비	- 기업이 상품, 제품, 용역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선전효과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
⑬ 운반·하역·보관비	- 운반비 : 물자를 물류거점관 및 소비자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 하역비 : 물자의 운송과 보관활동에 있어서 동일 시설 내에서 물자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 보관비 : 물자를 창고(물류센터)등에 보관하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⑭ 기타(감가상각비, 보험료, 접대비 등)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중 “①원재료비~⑬운반·하역·보관비”외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비의 합계

14) 연간매출액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
- 총출하액 중 재고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

15) 원양어업 분야 매출액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 중에서 원양어업과 관련된 매출액만 기입

3.2. 조사항목 - 합작어업 조사표 : 보유 원양어선별 생산 및 경영현황

- ※ 보유어선현황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로 배정된 샘플 어선당 1페이지씩 작성함
- ※ 총괄조사표 2쪽 하단의 ‘원양어업 업종, 조업수역 및 해구, 원양어획품종 부호’를 참조하여 작성

1) 보유 어선 현황

- 현재 보유 중인 선명과 톤수, 진수년월을 기입
- 업종은 아래의 업종 코드를 확인하여 기입

업종별 부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업종	부호
참치연승	101	원양붕수망	104	새우트롤	107	모선식외줄낙시	110
저연승	102	북양트롤	105	오징어채낙기	108	기타	111
참치선망	103	해외트롤	106	원양외줄낙시	109		

2) 출어별 선원승선 현황

해구번호	조사대상 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조업수역을 확인하여 아래의 해구번호를 참조하여 기입								
	조업수역 및 해구번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조업수역	해구	부호
	대서양	북서부	21	대서양	동남부	47	태평양	북서부	61
		북동부	27		서부	58		중북부	67
		중서부	31	남빙양	중부	88		중서부	71
		중동부	34		동부	48		중동부	77
		동북부	37	인도양	서부	51		서남부	81
		서남부	41		동부	57		동남부	87
	출어횟수	어로작업을 위하여 근거지항을 출항한 후 귀항한 횟수							
실조업일수	출어 후 어장까지의 항해일수, 탐어, 집어 및 어로일수 등을 합한 귀항일까지의 일수로서 연간 총일수를 기입								
조업국	해구별로 조업하는 조업국을 모두 기입								
기지	출어해서 귀항하는 기지를 기입								
승선원수 및 임금	- 조사대상 어선에 승선한 내국인, 외국인 선원을 구분하여 기입 - 직급별(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부원) 승선원수와 월평균임금(단위: 천원)을 기입								

3) 연간 어로원가

- 연간어로원가는 출어비와 임금 및 관리비로 구분하여 작성
- 어로원가 작성단위는 ‘천원’임

출어비	어구비	조사대상 어선의 어구의 신규구입, 망지, 로프, 부자, 침자, 보망사, 콜탈 등 어구소모품 구입비
	유류비	조사대상 어선이 중유, 경유, B/A유, 윤활유 등 어선 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 취사 및 난방용 유류나 가스구입비
	입어료	조사대상 어선이 조업국에 입어를 위해 지불하는 금액으로 작성하는 보유선박 한척에 대한 입어료만 계산하여 기입(여러 척이 공동의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는 경우 척수로 입어료를 나누어 계산)
	이료비	조사대상 어선이 수산물 어획을 위해 사용하는 미끼 구입 비용
	운반비	조사대상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을 양륙하기 위해 사용되는 총 운반 비용
	소모품비	전구, 청소용구, 못, 식도 등 선박 소모품, 장갑, 휴지 등 선원소모품, 어구비, 수리비, 주부식비에 포함되지 않은 제물품 구입비
	주부식비	쌀, 쇠고기, 김치, 양채, 조미료, 식수 등을 포함한 주부식 구입비
	수리비	선체, 기관, 선박기기 관리 및 수리를 위한 부품 및 재료구입비, 선체수선 임부임, 상가비, 기관수리비 등 외부 수리대금
	항만비	기지의 어항이용료 등
	기타	출어비 중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비용(저장대, 용기대, 후생비 등 포함) ※ 저장대는 조사대상 어선이 연간 사용하는 얼음, 소금 구입대금 및 냉동 및 냉장료임 ※ 후생비는 선원주대, 치료비 및 약품대, 담배대 등 선원 후생관련 비용
임금 및 관리비	선원임금	고정급, 짓가림액, 상여금, 퇴직금, 특별수당 등 선원에게 지급한 임금
	조세공과	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어선 입출항수속비, 조합비 등 공과금
	감가상각비	어선에 대한 감가상각비만 기입
	기타	임금 및 관리비에서 선원임금, 조세공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공제료 및 보험료, 판매비 등을 기입

4) 생산 및 판매현황

- 어획품종 및 해구번호를 확인해서 기입하고 각 어획품종 당 생산량과 판매금액을 기입
 - 어획품종이 7종 이상인 경우, 생산량이 많은 어획품종 순으로 6종까지 생산량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한 후, 나머지 어획품종은 ‘⑦ 기타어획 종’란에 생산량과 판매량을 합산하여 기재
- 판매량은 국내판매량과 해외판매량을 나누어서 기입하고, 국가명과 국가당 판매량을 기입
 - 국내판매와 해외판매를 합산한 값이 생산량과 일치해야 함.
 - 해외판매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판매량이 많은 국가 순으로 2개국까지 국가명과 판매량을 기재한 후, 나머지 국가는 ‘기타국가’란에 판매량만 합산하여 기재. 이때 각 국가별 판매량을 합산한 값이 ‘해외판매 합계’와 일치해야 함.

4.1. 조사항목 - 관련사업 조사표 : 해외양식업

1) 사업체명

- 실제 해외에 진출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 이름을 기입
- 이름은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
-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 대표자 이름을 기입
- 국문, 영문 이름을 기입

2) 사업자 등록번호

- 진출국가 : 해외에 실제 진출한 국가명을 기입
- 해당국 사업자 등록번호 : 진출한 국가에서 부여받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

3) 대표자명 : 대표자명은 1명만 기입하고 ①남 ②녀 중에 √표시

4) 진출년월

- 현행 양식업을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연월
- 진출년월 변경여부의 판단기준

진출년월 변경한 때를 기입	① 주요업종(산업대분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을 경우(예: 개인사업체⇒회사법인) ③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지만 진출년월을 변경하지 않음	① 법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② 상속으로 인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5) 소재지

- 관계기업 소재지 : 모기업 또는 투자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입
- 진출국 양식장 소재지: 진출한 국가에서 수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양식장 주소를 영문으로 기입

6) 총 투자금액(\$)

- 사업체가 관련 사업에 투자한 금액을 \$로 기입

7) 투자비율

- 합작시 투자금액 중 한국국적인 및 현지인 비율을 %로 기입, 합계는 100%이어야 함.
- ※ 한국국적인이 100%인 경우 단독을 나타내므로 ‘합작’으로 볼 수 없음.
- ※ ‘합작’은 한국 국적인의 투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이므로, 49%미만인 경우는 주의.

8)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8.1) 종사자 수 (2009년 12월 31일 기준 종사자수를 기입)

한국 국적 종사자	조사대상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기재	
현지인 종사자 (Domestic)	조사대상 기업이 진출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다음 분류기준에 의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기입.	
	①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8.2) 연간 급여액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연간 급여액을 합계하여 기입
- 퇴직금,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
-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은 포함하며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액
- 2008년 이전의 체불급여를 2009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2009년 중에 지불해야 할 급여액을 지불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액은 포함

9) 유형자산

- 유형자산은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및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건설중인 자산 등을 말함
- 해당사업체에서 생산활동과 관련 있는 자산만을 기입
 - 동일 기업내 타 사업체의 유형자산은 포함하지 않음(임차사용 자산은 미포함)
 - 재무상태표를 참조하여 작성시 해당 사업체 부분만큼 분리하여 기입 (원양어업 사업체와 해외양식업 사업체가 동시운영되는 경우, 조사표 종류에 따라 분리 기입)

※ 해당업체의 “유형자산명세서”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기입

① 토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와 운동장, 기숙사, 사택 등의 대지
② 건물	공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 및 승강기·냉방·통풍장치 등 이들의 부속시설
③ 구축물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속시설
④ 기계장치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 각종 기계류 및 기계장치 부설 설치물, 시설장치, 요(窯), 로(爐) 등 포함
⑤ 선박/차량운반구	양식업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차량
⑥ 기타(공구·기구, 비품 등)	1년 이상 내구성이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 등으로 ①~⑤까지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유형자산을 포함함
⑦ 건설 중인 자산	현재 건설하고 있는 양식장과 관련 시설 등

10)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 확인하여 작성

① 원(부·보조·포장)재료비	-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주요재료, 보조재료, 부속품 등의 사용 금액 - 당해연도 제품생산에 실제로 투입된 원재료비만 기입하며, 구입한 원재료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나 연말재고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미사용분 제외)
② 전력비·가스수도비	- 구입 사용한 전력요금, 생산에 사용된 것은 물론 사무실용, 종사자의 음료용 등을 포함한 모든 용수의 요금, 가열료(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발전용 등으로 사용한 석탄류, 유류 등 모든 연료비 금액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
③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 제품생산을 위해 타 사업체(수탁사업체)와 가사노동자에게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여 가공시키고 반제품, 부분품 또는 완제품형태로 그것을 인수할 경우 외주작업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
④ 인건비	-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작성 - 복리후생비 : 종사자의 복지 및 후생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 (구내식당 운영보조비, 치료보조비, 장학금, 경조비, 체육행사비, 복리후생시설, 직원 신체검사비, 피복비 등) - 퇴직금 및 퇴직급여 : 장부기장 사업체에서는 당해연도 퇴직급여를 기입하며 미기장 사업체는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을 기입
⑤ 수선비(수리유지비)	- 건물 또는 기계장치의 현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선한 비용 지출을 기입
⑥ 감가상각비	-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의 대상임(예외: 토지,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⑦ 임차료(부지·건물·기계장비 등)	-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을 임차한 경우에 연간 지급되는 임차료
⑧ 세금과 공과(내국소비세 제외)	- 세금과공과란 영업과 관계되는 조세 및 공과금으로 세금은 사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등의 세부담액(개인사업체의 소득세, 법인세는 세금과 공과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과금은 조합비, 협회비, 적십사회비 등과 같이 영업과 관계되는 공공적 지출로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⑨ 대손상각비	-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⑩ 광고선전비	- 기업이 상품, 제품, 용역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선전효과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
⑪ 운반·하역·보관비	- 운반비 : 물자를 물류거점관 및 소비자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 하역비 : 물자의 운송과 보관활동에 있어서 동일 시설 내에서 물자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 보관비 : 물자를 창고(물류센터)등에 보관하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⑫ 기타(보험료, 접대비 등)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중 “①원재료비 ~ ⑪운반·하역·보관비” 이외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비의 합계

11) 연간매출액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
- 총출하액 중 재고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

12) 생산량 및 생산금액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양식으로 생산한 총 출하량과 그 금액만 기입.

13) 양식장 현황

양식장 면적	- 현재 양식품종을 생산 및 출하하고 있는, 조사대상 양식장의 면적을 ha 단위로 기재
양식종사자	- 조사대상 양식장에서 양식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를 합산한 후, 한국국적과 현지인으로 나누어 기재
월평균임금(\$)	- 조사대상 양식장에서 양식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을 합산한 후, 한국국적과 현지인으로 나누어 기재함. - 고정급, 상여금, 퇴직금, 특별수당 등을 포함하여 종사자에게 지급한 임금이며, 임금단위는 달러(\$)임.

14) 연간 양식 원가

사료비	조사대상 양식장에서 양식을 위해 사용하는 사료 구입 비용
치어/치패 구입비	조사대상 양식장에서 양식을 위해 사용하는 치어/치패 구입 비용
전기비(유류비)	조사대상 양식장이 양식장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전기료, 중유, 경유, B/A유, 윤활유 등의 유류구입비, 취사 및 난방용 유류나 가스구입비
운반비	조사대상 양식장으로 치어/치패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과 출하한 수산물을 양륙하기 위해 사용되는 총 운반 비용
기타	양식 관련하여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비용(저장대, 용기대, 후생비 등 포함) ※ 저장대는 조사대상 양식장에서 수산물 운반을 위해 사용하는 얼음, 소금 구입대금 및 냉동 및 냉장료임 ※ 후생비는 치료비 및약품대, 담배대 등 양식업 종사자의 후생관련 비용

15) 생산 및 판매현황

- 조사표 하단의 ‘양식방법 및 양식품 번호’를 참조하여 작성함.
- 양식품종 및 양식방법을 확인해서 기입하고, 각 양식품종 당 생산량과 판매금액을 기입
 - 양식품종이 7종 이상인 경우, 생산량이 많은 양식품종 순으로 6종까지 생산량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한 후, 나머지 양식품종은 ‘⑦ 기타 양식 품종’란에 생산량과 판매량을 합산하여 기재
- 판매량은 현지판매량과 해외판매량을 나누어서 기입하고, 국가명과 국가당 판매량을 기입
 - 현지판매는 양식장이 소재한 국가 내에서 판매하는 것이며, 해외판매는 양식장이 소재한 국가를 제외한 국가(한국 포함)임.
 - 현지판매와 해외판매를 합산한 값이 생산량과 일치해야 함.
 - 해외판매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판매량이 많은 국가 순으로 2개국까지 국가명과 판매량을 기재한 후, 나머지 국가는 ‘기타국가’란에 판매량만 합산하여 기재. 이때 각 국가별 판매량을 합산한 값이 ‘해외판매 합계’와 일치해야 함.

4.2. 조사항목 - 관련사업 조사표 : 해외수산물 제조업

1) 사업체명

- 실제 해외에 진출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 이름을 기입
- 이름은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
-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 대표자 이름을 기입
- 국문, 영문 이름을 기입

2) 사업자 등록번호

- 진출국가 : 해외에 실제 진출한 국가명을 기입
- 해당국 사업자 등록번호 : 진출한 국가에서 부여받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

3) 대표자명 : 대표자명은 1명만 기입하고 ①남 ②녀 중에 √표시

4) 진출년월

- 현행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연월
- 진출년월 변경여부의 판단기준

진출년월 변경한 때를 기입	① 주요업종(산업대분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을 경우(예: 개인사업체⇒회사법인) ③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지만 진출년월을 변경하지 않음	① 법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② 상속으로 인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5) 소재지

- 관계기업 소재지 : 모기업 또는 투자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입
- 진출국 공장 소재지 : 진출한 국가에서 수산가공 제품을 출하하고 있는 공장 주소를 영문으로 기입

6) 총 투자금액(\$)

- 사업체가 관련 사업에 투자한 금액을 \$로 기입

7) 투자비율

- 합작시 투자금액 중 한국국적인 및 현지인 비율을 %로 기입, 합계는 100%이어야 함.
- ※ 한국국적인이 100%인 경우 단독을 나타내므로 ‘합작’으로 볼 수 없음.
- ※ ‘합작’은 한국 국적인의 투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이므로, 49%미만인 경우는 주의.

8)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8.1) 종사자 수 (2009년 12월 31일 기준 종사자수를 기입)

한국 국적 종사자	조사대상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기재	
현지인 종사자 (Domestic)	조사대상 기업이 진출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다음 분류기준에 의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기입.	
	①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8.2) 연간 급여액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연간 급여액을 합계하여 기입
- 퇴직금,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
-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은 포함하며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액
- 2008년 이전의 체불급여를 2009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2009년 중에 지불해야 할 급여액을 지불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액은 포함

9) 유형자산

- 유형자산은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및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건설중인 자산 등을 말함
- 해당사업체에서 생산활동과 관련 있는 자산만을 기입
 - 동일 기업내 타 사업체의 유형자산은 포함하지 않음(임차사용 자산은 미포함)
 - 재무상태표를 참조하여 작성시 해당 사업체 부분만큼 분리하여 기입 (원양어업 사업체와 해외제조업 사업체가 동시운영되는 경우, 조사표 종류에 따라 분리 기입)

※ 해당업체의 “유형자산명세서”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기입

① 토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와 운동장, 기숙사, 사택 등의 대지
② 건물	공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 및 승강기·냉방·통풍장치 등 이들의 부속시설
③ 구축물	수산물 가공에 사용되는 부속시설
④ 기계장치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 각종 기계류 및 기계장치 부설 설비물, 시설장치, 요(窯), 로(爐) 등 포함
⑤ 선박/차량운반구	가공 및 제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차량
⑥ 기타(공구·기구, 비품 등)	1년 이상 내구성이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 등으로 ①-⑤까지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유형자산을 포함함
⑦ 건설 중인 자산	현재 건설하고 있는 공장과 관련 시설 등

10)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 확인하여 작성

① 원(부·보조·포장)재료비	-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공공을 위하여 투입한 주요재료, 보조재료, 부속품 등의 사용 금액 - 당해연도 제품생산에 실제로 투입된 원재료비만 기입하며, 구입한 원재료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나 연말재고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미사용분 제외)
② 전력비·가스수도비	- 구입 사용한 전력요금, 생산에 사용된 것은 물론 사무실용, 종사자의 음료용 등을 포함한 모든 용수의 요금, 가열료(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발전용 등으로 사용한 석탄류, 유류 등 모든 연료비 금액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
③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 제품생산을 위해 타 사업체(수탁사업체)와 가사노동자에게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여 가공시키고 반제품, 부분품 또는 완제품형태로 그것을 인수할 경우 외주작업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
④ 인건비	-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작성 - 복리후생비 : 종사자의 복지 및 후생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 (구내식당 운영보조비, 치료보조비, 장학금, 경조비, 체육행사비, 복리후생시설, 직원 신체검사비, 피복비 등) - 퇴직금 및 퇴직급여 : 장부기장 사업체에서는 당해연도 퇴직급여를 기입하며 미기장 사업체는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을 기입
⑤ 수선비(수리유지비)	- 건물 또는 기계장치의 현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선한 비용 지출을 기입
⑥ 감가상각비	-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의 대상임(예외: 토지,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⑦ 임차료(부지·건물·기계장비 등)	-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을 임차한 경우에 연간 지급되는 임차료
⑧ 세금과 공과(내국소비세 제외)	- 세금과공과란 영업과 관계되는 조세 및 공과금으로 세금은 사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등의 세부담액(개인사업체의 소득세, 법인세는 세금과 공과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과금은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과 같이 영업과 관계되는 공공적 지출로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⑨ 대손상각비	-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⑩ 광고선전비	- 기업이 상품, 제품, 용역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선전효과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
⑪ 운반·하역·보관비	- 운반비 : 물자를 물류거점관 및 소비자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 하역비 : 물자의 운송과 보관활동에 있어서 동일 시설 내에서 물자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 보관비 : 물자를 창고(물류센터)등에 보관하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⑫ 기타(보험료, 접대비 등)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중 “①원재료비 ~ ⑪운반·하역·보관비” 이외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비의 합계

11) 연간매출액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
- 총 출하액 중 재고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

12) 생산량 및 생산금액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수산물 가공/제조 등으로 생산한 총 출하량과 그 금액만 기입.

13) 제조공장 현황

공장 면적	- 현재 수산물 제조품종을 생산 및 출하하고 있는, 조사대상 공장의 면적을 m ² 단위로 기재
제조종사자	- 조사대상 공장에서 제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를 합산한 후, 한국국적과 현지인으로 나누어 기재
월평균임금(\$)	- 조사대상 공장에서 제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을 합산한 후, 한국국적과 현지인으로 나누어 기재함. - 고정급, 상여금, 퇴직금, 특별수당 등을 포함하여 종사자에게 지급한 임금이며, 임금단위는 달러(\$)임.

14) 생산 및 판매현황

- 조사표 하단의 ‘수산물 생산품목 및 수산물 재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 제조품목 및 투입재료를 확인해서, 각 제조품목 당 생산량과 판매량을 기입
 - 제조품목이 7종 이상인 경우, 생산량이 많은 제조품목 순으로 6종까지 생산량과 판매량을 각각 기재한 후, 나머지 제조품목은 ‘⑦ 기타 제조 품목’란에 생산량과 판매량을 합산하여 기재
 - 제조품목의 ‘투입재료’를 작성할 때 원양수산물과 양식수산물을 구분해야 하며, 부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 함량이 높은 부재료 1종만 기재함.
- 판매량은 현지판매량과 해외판매량을 나누어서 기입하고, 국가명과 국가당 판매량을 기입
 - 현지판매는 제조공장이 소재한 국가 내에서 판매하는 것이며, 해외판매는 제조공장이 소재한 국가를 제외한 국가(한국 포함)임.
 - 현지판매와 해외판매를 합산한 값이 생산량과 일치해야 함.
 - 해외판매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판매량이 많은 국가 순으로 2개국까지 국가명과 판매량을 기재한 후, 나머지 국가는 ‘기타국가’란에 판매량만 합산하여 기재. 이때 각 국가별 판매량을 합산한 값이 ‘해외판매 합계’와 일치해야 함.

4.3. 조사항목 - 관련사업 조사표 : 해외진출 수출입/도소매업

1) 사업체명

- 실제 해외에 진출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 이름을 기입
- 이름은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
-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 대표자 이름을 기입
- 국문, 영문 이름을 기입

2) 사업자 등록번호

- 진출국가 : 해외에 실제 진출한 국가명을 기입
- 해당국 사업자 등록번호 : 진출한 국가에서 부여받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

3) 대표자명 : 대표자명은 1명만 기입하고 ①남 ②녀 중에 √표시

4) 진출년월

- 현행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연월
- 진출년월 변경여부의 판단기준

진출년월 변경한 때를 기입	① 주요업종(산업대분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을 경우(예: 개인사업체⇒회사법인) ③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지만 진출년월을 변경하지 않음	① 법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② 상속으로 인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5) 소재지

- 관계기업 소재지 : 모기업 또는 투자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입
- 진출국 사업체 : 진출국에서 수출입/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입

6) 주요사업분야

- 수출입 또는 도소매 중 조사대상 업체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분야에 √표시

7) 총 투자금액(\$)

- 사업체가 관련 사업에 투자한 금액을 \$로 기입

8) 투자비율

- 합작시 투자금액 중 한국국적인 및 현지인 비율을 %로 기입, 합계는 100%이어야 함.
- ※ 한국국적인이 100%인 경우 단독을 나타내므로 ‘합작’으로 볼 수 없음.
- ※ ‘합작’은 한국 국적인의 투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이므로, 49%미만인 경우는 주의.

9)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9.1) 종사자 수 (2009년 12월 31일 기준 종사자수를 기입)

한국 국적 종사자	조사대상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기재	
현지인 종사자 (Domestic)	조사대상 기업이 진출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다음 분류기준에 의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기입.	
	①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9.2) 연간 급여액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연간 급여액을 합계하여 기입
- 퇴직금,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액
-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은 포함하며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액
- 2008년 이전의 체불급여를 2009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2009년 중에 지불해야 할 급여액을 지불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액은 포함

10) 유형자산

- 유형자산은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및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건설중인 자산 등을 말함
- 해당사업체에서 생산활동과 관련 있는 자산만을 기입
 - 동일 기업내 타 사업체의 유형자산은 포함하지 않음(임차사용 자산은 미포함)
 - 재무상태표를 참조하여 작성시 해당 사업체 부분만큼 분리하여 기입 (원양어업 사업체와 해외제조업 사업체가 동시운영되는 경우, 조사표 종류에 따라 분리 기입)

※ 해당업체의 “유형자산명세서”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기입

① 토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와 운동장, 기숙사, 사택 등의 대지
② 건물	공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 및 승강기·냉방·통풍장치 등 이들의 부속시설
③ 구축물	수산물 가공에 사용되는 부속시설
④ 기계장치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 각종 기계류 및 기계장치 부설 설치물, 시설장치, 요(窯), 로(爐) 등 포함
⑤ 선박/차량운반구	가공 및 제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차량
⑥ 기타(공구·기구, 비품 등)	1년 이상 내구성이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 등으로 ①~⑤까지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유형자산을 포함함
⑦ 건설 중인 자산	현재 건설하고 있는 관련 시설 등

11)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 확인하여 작성

① 원(부·보조·포장)재료비	-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주요재료, 보조재료, 부속품 등의 사용 금액 - 당해연도 제품생산에 실제로 투입된 원재료비만 기입하며, 구입한 원재료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나 연말재고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미사용분 제외)
② 전력비·가스수도비	- 구입 사용한 전력요금, 생산에 사용된 것은 물론 사무실용, 종사자의 음료용 등을 포함한 모든 용수의 요금, 가열료(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발전용 등으로 사용한 석탄류, 유류 등 모든 연료비 금액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
③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 제품생산을 위해 타 사업체(수탁사업체)와 가사노동자에게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여 가공시키고 반제품, 부분품 또는 완제품형태로 그것을 인수할 경우 외주작업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
④ 인건비	-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작성 - 복리후생비 : 종사자의 복지 및 후생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 (구내식당 운영보조비, 치료보조비, 장학금, 경조비, 체육행사비, 복리후생시설, 직원 신체검사비, 피복비 등) - 퇴직금 및 퇴직급여 : 장부기장 사업체에서는 당해연도 퇴직급여를 기입하며 미기장 사업체는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을 기입
⑤ 수선비(수리유지비)	- 건물 또는 기계장치의 현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선한 비용 지출을 기입
⑥ 감가상각비	-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의 대상임(예외: 토지,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⑦ 임차료(부지·건물·기계장비 등)	-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을 임차한 경우에 연간 지급되는 임차료
⑧ 세금과 공과(내국소비세 제외)	- 세금과공과란 영업과 관계되는 조세 및 공과금으로 세금은 사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등의 세부담액(개인사업체의 소득세, 법인세는 세금과 공과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과금은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과 같이 영업과 관계되는 공공적 지출로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⑨ 대손상각비	-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⑩ 광고선전비	- 기업이 상품, 제품, 용역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선전효과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
⑪ 운반·하역·보관비	- 운반비 : 물자를 물류거점관 및 소비자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 하역비 : 물자의 운송과 보관활동에 있어서 동일 시설 내에서 물자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 보관비 : 물자를 창고(물류센터)등에 보관하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⑫ 기타(보험료, 접대비 등)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중 “①원재료비 ~ ⑪운반·하역·보관비” 이외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비의 합계

12) **연간매출액**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 총 출하액 중 재고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

13) **거래량 및 거래금액**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사업체에서 수산물 수출입/도소매 방식으로 거래한 거래량과 그 금액만 기입

14) 원료 현지구매 및 수입현황

○ 조사표 하단의 ‘수출입 및 도소매 취급품목 및 취급품목 재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 원료 현지구매 및 수입품목과 수산물 주재료를 확인해서 기입

- 원료 현지구매 및 수입품목이 4종 이상인 경우, 취급량이 많은 품목 순으로 3종까지 현지구매 및 수입현황을 기재하고 나머지 품목은 ‘④ 기타 품목’란에 합산하여 기재

- ‘수산물 주재료’를 작성할 때 원양수산물과 양식수산물을 구분해야 하며, 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 함량이 높은 재료 1종만 기재함.

○ 각 품목별로 현지구매현황과 수입현황을 나누어서 기재함.

- 현지구매는 조사대상 수출입/도소매 업체가 소재한 현지국가 내에서 수산물 원료를 구매한 것이며 구매량은 ‘톤’단위로, 구매금액은 달러(\$)단위로 작성함.

- 수입은 조사대상 수출입/도소매 업체가 소재한 국가 외의 국가(한국 포함)에서 업체가 소재한 현지로 원료를 수입한 것이며, 국가명과 국가당 수입량을 나누어 기입함. 수입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수입량이 많은 국가순으로 2개국까지 국가명과 수입량을 기재하고 나머지 국가는 ‘기타국가’란에 수입량만 합산하여 기재함. 이때 각 국가별 수입량을 합산한 값이 ‘수입현황 합계’와 일치해야 함.

15) 제품 현지판매 및 수출현황

○ 조사표 하단의 ‘수출입 및 도소매 취급품목 및 취급품목 재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 현지판매 및 수출품목과 수산물 주재료를 확인해서 기입

- 현지판매 및 수출품목이 4종 이상인 경우, 취급량이 많은 품목 순으로 3종까지 현지판매 및 수출현황을 기재하고 나머지 품목은 ‘④ 기타 품목’란에 합산하여 기재

- ‘수산물 주재료’를 작성할 때 원양수산물과 양식수산물을 구분해야 하며, 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 함량이 높은 재료 1종만 기재함.

○ 각 품목별로 현지판매현황과 수출현황을 나누어서 기재함.

- 현지판매는 조사대상 수출입/도소매 업체가 소재한 국가 내에서 수산물 제품을 판매한 것이며, 판매량은 ‘톤’단위로, 판매금액은 달러(\$)단위로 작성함.

- 수출은 조사대상 수출입/도소매 업체가 소재한 국가 외의 국가(한국 포함)에서 업체가 소재한 현지로 수산물 제품을 수입한 것이며, 국가명과 국가당 수입량을 나누어 기입함.

수출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수출량이 많은 국가 순으로 2개국까지 국가명과 수출량을 기재하고 나머지 국가는 ‘기타국가’란에 수출량만 합산하여 기재함. 이때 각 국가별 수출량을 합산한 값이 ‘수출현황 합계’와 일치해야 함.

부록4. 조사대상 사업체 현황표

3.1. 원양어업(68개사)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1	원양어업	경양수산(주)	박길주 고원수	부산 서구 압남동 620-29 원양프라자 507호	051-256-07120 51-256-0713	051-256-0714
2	원양어업	경태	최우순	부산 사하구 신평동 554 동일시장내 3층	051-292-20810 51-292-2082	051-292-2080
3	원양어업	그랜드수산(주)	김영범	부산 중구 중앙동4가25-4 동방빌딩 10층	051-465-1923	051-465-1925
4	원양어업	극동수산(주)	유기언	서울 송파구 오금동 45번지 르네상스빌딩 3층	02-3402-09190 2-3402-0920	02-3402-0966
5	원양어업	금명수산(주)	김명환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601호	051-257-3035	051-257-3038
6	원양어업	금융수산(주)	김용길	부산 서구 남부민동 523-29 희창물산빌딩 별관 501호	051-243-3840	051-243-3841
7	원양어업	금융수산(주)	김학률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605호	051-248-0321	051-248-0302
8	원양어업	금평수산(주)	김학률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605호	051-244-8583	051-248-0302
9	원양어업	대룡수산(주)	노인환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99-3 제일오피스텔 12층 1201호	02-401-7155 02-401-7156	02-401-7157
10	원양어업	대성수산(주)	김영범	부산 중구 중앙동4가25-4 동방빌딩 10층	051-442-1731	051-465-1925
11	원양어업	대양수산(주)	김영범	부산 중구 중앙동4가25-4 동방빌딩 10층	051-465-1924	051-465-1925
12	원양어업	대해수산(주)	왕돈명	부산 서구 충무동1가 34-3	051-253-07780 51-253-0779	051-241-7242
13	원양어업	대현수산	김소형	서울 강남구 삼성동 78-3 원일빌딩 511호	02-518-316402- 518-3165	02-518-3166
14	원양어업	덕우수산(주)	최정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9-11 리더스빌딩 908호	02-522-101102- 522-1013	02-522-1014
15	원양어업	덕진통상(주)	배중혜	부산 서구 충무동1가39-45 창성빌딩 805호	051-246-10410 51-246-1042	051-246-1052
16	원양어업	동부수산(주)	최용태	부산 중구 동광동3가15-5 삼성빌딩 603호	051-243-3811	051-243-4211
17	원양어업	동양수산(주)	차상구	부산 중구 중앙동2가15-4 창성빌딩 2층	051-412-5401	051-412-2623
18	원양어업	동원산업	박부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7층	02-589-4077	02-589-3289 02-589-4397
19	원양어업	동원수산(주)	왕기철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4 동주빌딩 6층	02-528-8000	02-564-1300 02-564-1301
20	원양어업	동희산업	정영호	부산 중구 중앙동4가23-1 노블리안오피스텔 1414호	051-465-2140	051-465-2142
21	원양어업	봉강산업(주)	이수원	부산 서구 남부민1동 69	051-247-9172	051-246-4198
22	원양어업	부강인터내셔널(주)	김용철	부산 수영구 광안동 118-8 부일빌딩 3층	051-758-6456	051-758-6459

원양산업의 총조사를 위한 기초조사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23	원양어업	사조산업(주)	이갑숙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번지 사조빌딩 5층	02-3277-1600	02-313-8079
24	원양어업	사조씨에스(주)	김정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번지 사조빌딩 5층	02-721-6555	02-721-6565
25	원양어업	상지수산업(주)	장지선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414-2호	051-255-7307	051-255-7288
26	원양어업	서림수산업(주)	하을수	부산 중구 남포동1가 35 흥아빌딩 502호	051-248-9515	051-248-8487
27	원양어업	서해수산업(주)	남상태	부산 서구 남부민동 689-4 우양냉장빌딩 202-1호	051-247-0522	051-257-2798
28	원양어업	선민수산업(주)	민일기	부산 중구 남포동6가 113-1 허버타워 805호	051-245-35260 51-245-3528	051-245-3546
29	원양어업	선우실업	정시택	경기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624-5	031-946-3967	031-946-3965
30	원양어업	선해수산	김미자	부산 서구 남부민동 643 충무쇼핑 2층 230호	051-245-93000 51-245-9301	051-245-9302
31	원양어업	성경수산업(주)	박희섭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빌리24 동관 1601호	02-2183-0033	02-2183-0030
32	원양어업	소진해운(주)	이용전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5-1 소진빌딩 6층	051-468-8620	051-468-8622
33	원양어업	신라교역	박준형 배삼철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백제고분로 362번지 신라빌딩	02-3434-9900	02-417-9360
34	원양어업	신지수산업(주)	최진석	부산 연제구 연산1동958-6 동서무지개타운 상가 101호	051-816-6400	051-816-6401
35	원양어업	아그네스수산	허옥희 박희웅	서울 종로구 도림동 60 도림빌딩 706호	02-732-6241 02-732-6244	02-732-3998
36	원양어업	에스티디수산업(주)	리차드 시	부산 중구 남포동6가113-1 허버타워 1002호	051-241-7788	051-241-5522
37	원양어업	웨스트베이어업(주)	김의배	부산 중구 중앙동4가 25-4 동방빌딩 10층	051-710-9877	051-441-3791
38	원양어업	유신수산업(주)	송진호	부산 서구 남부동 654번지 LG마린타워 318호	051-241-5655	051-241-5677
39	원양어업	인성식품	박철민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3-2 인성빌딩	02-790-8877	02-792-3098
40	원양어업	인성실업(주)	박인성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3-2 인성빌딩	02-749-0291 02-749-0292	02-749-4949
41	원양어업	(주)남북수산	이택근	부산 중구 동광동3가15-5 삼성빌딩 602호	051-242-1521	051-243-4211
42	원양어업	(주)동남	윤명길	부산 서구 암남동 739번지 (주)참손푸드빌딩	051-250-7030 051-250-7032	051-250-7026
43	원양어업	(주)동방수산	윤학수	부산 중구 동광동1가 2번지 조흥은행 6층	051-246-93500 51-246-9351	051-243-4532
44	원양어업	(주)라사교역	김점배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603호	051-245-1894	051-245-1897
45	원양어업	(주)사조대림	이인우	서울 서초구 방배3동482-2 대림빌딩	02-3470-6000	02-523-8900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46	원양어업	(주)소오양	김정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번지 사조빌딩 신관 5층 501호	02-721-6500	02-721-6510
47	원양어업	(주)삼영수산	홍일섭	부산 사하구 하단1동589-8 삼영빌딩 9층 902호	051-202-7637	051-202-7638
48	원양어업	(주)서경	박덕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508호	051-255-85610 51-255-8562	051-256-8562
49	원양어업	(주)서동인터내셔널	이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3 가든빌딩 505호	02-780-6510	02-780-6520
50	원양어업	주암산업(주)	김강태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64번지 대창빌딩 6층	051-413-0600	051-414-7181
51	원양어업	(주)에스엔에이치	서의현	부산 사하구 하단1동589-8 삼영빌딩 9층	051-202-9501	051-202-7638
52	원양어업	(주)예람교역	김치영	부산 서구 암남동 721 사조물류센터 1508호	051-242-0391	051-242-0392
53	원양어업	(주)유앤씨	김광식 김정규	부산 사하구 감천동 763-20 703호	051-710-8035	051-710-8038
54	원양어업	(주)인터볼고	안영권	서울 송파구 삼전동 130-5 인터볼고빌딩 8층	02-413-3481	02-413-3581
55	원양어업	(주)인터투나	최은주	부산 중구 남포동6가25-1 302호	051-243-0221	051-243-0231
56	원양어업	(주)태영교역	이경일	부산 서구 남부민동 652-2 강성빌딩 303호	051-231-22600 51-231-2261	051-231-2259
57	원양어업	(주)통영산업	장창익	부산 사하구 감천1동 763-20	051-291-5101	051-291-9343
58	원양어업	(주)해나	이영산	부산 중구 남포동6가113-1 허버타워 1206호	051-244-6656	051-244-6632
59	원양어업	(주)해인수산	황창동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607-1호	051-242-7400	051-242-7402
60	원양어업	(주)해정	김태정	부산 서구 충무동1가34-4 성해빌딩 701호	051-256-15970 51-256-1598	051-256-1599
61	원양어업	지오엠(주)	김영도	부산 영도구 대교동2가 64번지 대창빌딩 6층	051-417-06030 51-417-0604	051-417-0662
62	원양어업	창진교역	남문성	부산 서구 남부민동 652-2 강성빌딩 202호	051-255-93560 51-255-9358	051-254-5768
63	원양어업	코삭교역(주)	신재완	부산 중구 동광동2가 4번지 동양빌딩 506호	051-241-6050	051-241-7557
64	원양어업	탑수산(주)	안전광웅	부산 서구 암남동 620-29 원양프라자 901호	051-208-6961	051-208-6960
65	원양어업	태진수산(주)	허경남	부산 서구 남부민동 689-4 우양냉장빌딩 203호	051-257-83720 51-257-8332	051-257-8373
66	원양어업	태흥피쉬어리(주)	박성용	부산 중구 남포동1가 35 흥아빌딩 502호	051-245-1710	051-246-8265
67	원양어업	풍림수산(주)	임이근	부산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410호	051-245-56210 51-245-5622	051-242-5102
68	원양어업	한성기업(주)	박명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71 한성빌딩	051-410-7100	051-410-7101 051-410-7102

3.2. 해외합작어업(17개사)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	합작어업	극동수산				
		극동수산	유기언	서울 송파구 오금동 45번지 르네상스빌딩 3층	02-3402-09190 2-3402-0920	02-3402-0966
2	합작어업	달웨스트 DALWEST Co., Ltd	POPOV, A. V.	VLADIVOSTOK, UL ALEUTSKATA, STR. 11 RUSSIA		
	러시아	상일교역(주)	정필문	부산 중구 보수동3가 62-1	051-462-8049	051-462-8001
3	합작어업	Dong Nam Co.,Ltd. Timaru Branch		PO Box 264, Ritchie Street, Timaru	64-3-684-6226	(64-3)684-6988
	뉴질랜드	동남		부산시 서구 암남동 739	051-250-7080	
4	합작어업	성경수산(주)			02-2183-0033	02-2183-0030
		성경수산(주)	박희섭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 1601호	02-2183-0033	02-2183-0030
5	합작어업	신라교역	박준형 배삼철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백제고분로 362번지 신라빌딩	02-3434-9900	02-417-9360
	러시아	신라교역	박준형, 배삼철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백제고분로 362번지 신라빌딩	02-3434-9900	02-417-9360
6	합작어업	아티카 ATICA CO., Ltd	Mr. TOLOSHNYJ	231-A St. Komсомolskaya, Yuzhno-Sakhalinsk, Russia		
	러시아	인성실업(주)	박인성 박철웅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3-2 인성빌딩	02-749-0291 02-749-0292	02-749-4949
7	합작어업	에카르마사할린 ECARMA -SAKHALIN	I. V. Kornegruksa	Russia, Yuzhno-Sakhalinsk City, Str. Komsomolskaya 231-a		
	러시아	(주)사조대림	이인우	서울 서초구 방배3동 482-2 대림빌딩	02-3470-6000	02-523-8900
8	합작어업	오리온 ORION CO., Ltd	KIM EVGENY	Russia, 680000, Khabarovsk city, str. Dzerzhinskogo 39, ofc No.7		
	러시아	사조산업(주)	이갑숙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번지 사조빌딩 5층	02-3277-1600	02-313-8079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9	합작어업	우수리사 USSURI Co., Ltd		Russia, Vladivostok, st. Svetlachaya 51- 508		
	러시아	한성기업(주)	임우근박명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71 한성빌 딩	051-410-7100	051-410-71010 51-410-7102
10	합작어업	원경수산(주) WONKYUNG FISHERIES CO.,Ltd	최경락			
	칠레	원경수산(주)	최경락	서울 서초구 신원동 496-8	02-571-3020	02-578-6242
11	합작어업	조나단피셔리(주) JONATHAN FISHERIES CO., LTD	정한섭			
	러시아	조나단피셔리(주)	정한섭	부산 동구 초량동 1204-12 한창빌 딩 602호	051-442-5665	051-442-5885
12	합작어업	(주)명성피셔리Myung Sung Fishery Co., Ltd	이종원	부산 중구 동광동2가 1번지 삼호빌 딩 801호	051-244-3773	051-244-3883
	러시아	(주)명성피셔리	이종원	부산 중구 동광동2가 1번지 삼호빌 딩 801호	051-244-3773	051-244-3883
13	합작어업	키마코퍼레이션 KIMA CORPORATION, SA. DE. C.U	TAE HWA, KIM	CALLE8 MZ 3, FRACCION A, EL SAUZAL ENSENADA, BAJA, CALIFORNIA, 22760, MEXICO		
	멕시코	에이스수산		부산 서구 임남동 620-29 원양프라 자 705호	051-254-5544	051-254-5589
14	합작어업	트랄콤 TRALKOM CO., Ltd	Karachun S. M.	Russia, Magadan, Parkovaya st., 3/2		
	러시아	사조오양(주)	김정수	서울 서대문구 총정로2가 157번지 사조빌딩 신관 5층 501호	02-721-6500	02-721-6510
15	합작어업	폴룩스 POLLUKS CO., Ltd	LIFANOV GERIMAN	682880, 7 MORSKAYA STR, SOVETSKAYA GAVAN, KHBROVSK, Russia		
	러시아	(주)동남	윤명길	부산 서구 임남동 739번지 (주)참손 푸드빌딩	051-250-70300 51-250-703205 1-250-7043	051-250-7026
16	합작어업	한성기업(주) HANSUNG AR S.A	김준환	AV. CORDOBA 1233 PISO 4, 1055, BUENOSAIRES, ARGENTINA	54-11-4811-539 0/6557	54-11-4816-202 2
	아르헨티 나	한성기업(주)	임우근 박명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1가 71번지 한성빌딩	051-410-71000 51-410-7112	051-410-71010 51-410-7102
17	합작어업	Darana R. Fishing Co.	James, A. Ruhle	101 South king street Hovuptcn Virginia 23669 USA		
	USA	(주)코엑심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387-19 고려수산 2층 2-6	051-202-7989	051-468-7980

3.3.1. 원양어업관련사업(가공_37개사)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	가공	KY LAN SEAFOOD J.S.C	유형택	Lot A12, Section A, seafood processing zone, Southern Fisherey Port, Phan thiet, Binh Thuan, Viet Nam	84-62-3500 636	84-62-3818-508
	베트남					
2	가공	SEONGJIN VINA	한권영	Cang Ca Lagi-p. Phuoc loc thi xa Lagi-binh Thuan-viet Nam	84-62-3841-460 /1	84-62-3841-462
	베트남					
3	가공	Bada vina	김명수	Lot 52, My Tho I,P, Tien Giang Prov.	073-385-3777	385-3699
	베트남					
4	가공	GOLDEN-TECH INTERNATIONAL, INC	김정식	309-311, Hoang Dieu St., Ward 6, Dist 4, HCMC	08-3943-4295	3943-4296
	베트남					
5	가공	GWA KYUNG VINA BINH CHAU SEAFOOD	윤성업	Thanh Binh St, Commune 4, Binh Chau Ward, Xuyen Moc Dist., Ba Ria-Vung Tau	064-387-1174	387-0734
	베트남					
6	가공	SUN JIN VINA	백경환	IOT11-11, Ho Nai I,Z, Trang Bom Dist., Dong Nai Prov.	061-398-5995	398-5990
	베트남					
7	제조	CJ비나CJ Vina Agri Co., Ltd	손병두	National Road 1A, My Yen Village, Ben Luc Dist., Long An Prov.	84-72-870-363, 890-106	(84-72)870-363, 890-106
	베트남	CJ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500	(02)726-8368	
8	가공	위해동원식품유한공사	왕기철	중국 산둥성 위해시 경제기술개발구 해남로 15번지	0631-592-8402	0592-8404
	중국					
9	가공	영성금진수산유한공사	이수천	중국 산둥성 위해시	0631-765-0999	765-0688
	중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0	가공	위해남일수산유한공사	남창용	중국 산둥성 위해시	0631-765-1588	765-1289
	중국					
11	가공	나진수산유한공사	정재성	중국 산둥성 위해시 석도	0631-728-8109	728-8109
	중국					
12	가공	Ocean Corporation Co., Ltd		천진	022-6620-4795	
	중국					
13	가공	Namil Co., Ltd.		영성시	0631-766-7440	
	중국					
14	가공	Shanghai Tectyl Oil & Chemicals Co.,Ltd.		상해시	021-5354-3466	
	중국					
15	가공	LIANYUNGANG FEEDIA AGRICULTURAL CO., LTD		연운항시	0518-8641-7871	
	중국					
16	가공	대련영상해산양식유한공사		대련	0411-8278-0635	
	중국					
17	가공	청도해지사덕무역유한공사		중국 산둥성 청도시	0532-8965-7980	8607-7300
	중국					
18	가공	청도해다미식품유한공사	권효민	중국 산둥성 청도시	0532-8793-3830	8793-3832
	중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9	가공	Qingdao Hodong Food Co.,Ltd		칭도	0532-8417-744 4	
	중국					
20	가공	LIANYUNGANG MINGJUN FOOD CO.,LTD		연운항시	0518-8641-51	
	중국					
21	가공	HANYOU TRADING CO.,LTD		연운항시	0518-8505-020 9	
	중국					
22	가공	단동원일해산정제품 유한공사 丹東元一海產精制品有限公司		遼寧省 丹東市 延江開發區 G區 46號	86-415-314-367 8	86-415-314-368 7
	중국	태화물산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550-1번지 원동물산 인터넷 사업부	055-642-3470	
23	가공	서해수산	주봉수	중국 산둥성 위해시	0631-512-7478	0631-5834
	중국					
24	가공	CNC SAC	정석준	Av. TACNA #910, Castilla, Peru	51-73-28-4370	51-52-34-5059
	페루					
25	가공	Coinrefri S.R.L	이동익	Paita, Piura, Peru		
	페루					
26	가공	DAEWON SUSAN E.I.R.L.	김백윤	Av.Camino Real 1225 Of.401 San Isidro-Lima	51-1-442-2222 ~6	51-1-442-2227
	페루	대원수산(주)		부산광역시 중구 대창동 1-51, 중앙빌딩 702호	051-441-6933	
27	가공	FREEKO PERU S.A.	안덕진	Carretera Paita-Sullana s/n Km 3. Paita, Piura	51-73-61-1835	51-52-51-1874
	페루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28	가공	Inversiones Holding Peru SAC(Inhope SAC)	이종민	ZONA INDUSTRIAL II MZ. "V" LT. 1-D, PAITA-PERU	51-73-51-1858	51-52-51-1869
	페루					
29	가공	MIK Carpe SAC	김태호	Zona Industrial Mz.V,Lf 1 Sublote I-A-I, Paíta	51-73-51-1836	51-73-21-2063
	페루					
30	가공	Pacifico Sur S.A. BLUE Pacifico SACGRAN S.A.	남병준	Av. Circunvalacion M-A, L-2	51-52-24-4167	51-52-42-8048
	페루					
31	가공	PERUKO SA	서병규	Av. Callao 108-110, Urb. Benjamin Doug, La Perla, Callao, Perú.	51-1-420-4200/ 457-5522	(51-1)420-4820
	페루					
32	가공	Pesco Marine S.A.C.	김두삼	Parcela G. Lote C Zona Industrial -Talara	51-73-38-3468	51-73-38-5455
	페루					
33	가공	Pesquera C.S SAC	장한성	AV, San Judas Tadeo A-03, Talara	51-73-38-3400	51-73-38-3400
	페루					
34	가공	Pesqueria Producto del Kope E.I.R.L.	홍선배	C. Alfonso Ugarte 248. Islay. Arequipa	51-54-55-7128	51-54-55-7128
	페루					
35	가공	Ultra Frio SAC	이현수	C. Punta Pescadores 1-2. Lotizacin Sto. Domingo. Callao	51-1577-0795	51-1-577-0937
	페루					
36	가공	Insung Uruguay	이상용		598-2916-0102/ 0103	598-2916-0104
	우루과이					
37	가공	Sanwon Ltd.	ERIC FRANCIS BARRATT	P.O. BOX 553, 90 FITCHE STREET, No.1 WHARF, TIMARU, NEW ZEALAND	64-3-688-3172	(64-3)688-9086
	뉴질랜드	동원수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24	02-528-8000	

3.3.2 원양어업관련사업(양식_2개사)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	양식	아쿠아수림프 PT. AQUARIUM SHRIMP	박시우	JL. Khatulistiwa Km,6,6 Batu Layang-Pontianak-Kaliiman tan Barat - Indo		
	인도네시아	씨애포아쿠아			02-6002-6200 02-6002-6218	
2	양식	연운항 명균수산양식 유한공사 Lianyungang mingjun aquaculture co.,ltd	조형무	xuzhuang, dunshang town ganyu county, Lianyungang city, Jiangsu Province, CHINA.	86-518-8641 -5133	86-518-8641 -5770
	중국					

3.3.3. 원양어업관련사업(수출입/도소매_9개사)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	수출입 도소매	HANYOU TRADING CO.,LTD		중국 연운항시	0518-8505-020 9	
	중국					
2	수출입 도소매	BLUE-IS. INC	김재호	Room A3, ETown Bld, 364 Cong Hoa St., Tan Binh Dist., HCMC	08-3812-0525	3812-0526
	베트남					
3	수출입 도소매	대림칠레	임쌍규	Vina del Mar, Chile	56-32-221-3203	56-32-225-5591
	칠레					
4	수출입 도소매	Buma International Trading Corp		9595 Kamagong St., S.A.V. Makati City	63-2-896-2116	(63-2)897-1055
	필리핀					
5	수출입 도소매	Creative Action Corporation	한창순	#17, 21 St. Avenue, B0., Tagumpay, Cubao, Quezon City	63-2-911-0993/ 6893	(63-2)911-6923
	필리핀					
6	수출입 도소매	Mirae Commercial Corp		G-06 Antel Seaview Tower, 2626 Roxas Blvd, Pasay City	63-2-834-6566	(63-2)834-6625
	필리핀	미래통상(주)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LG마린타워 425호	(051)466-3433	
7	도소매	RASA TRADING		P.O.BOX1821, RUMI,P.C NO.112, SULTANATE OF OMAN	968-2447-8861	968-2447-8286
	오만	㈜라사교역	김점배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5가 92번 지 신동아빌딩 603호	051-245-1894	
8	도소매	SAJODAERIM CORPORATION	이인우	LA, 연태, 마닐라		
	미국, 호 주, 중국, 필리핀	㈜사조대림	이인우			
9	도소매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Krasnopresnensraya Nab. 12, Ent. 6, Office 1002, Moscow	495-258-1397	(495)764-8184
	러시아	농수산물유통공사	윤장배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 Center	(02)6300-1494	

3.3.4. 원양어업관련사업(운반업_3개사)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	운반업	시랜드 트레이딩 서비스 코퍼레이션				
	파나마	동원산업	박부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7층	02-589-4077	02-589-3289 02-589-4397
2	운반업	지성해운	성창훈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02-734-8455	
	한국					
3	운반업	영덕해운	김덕진	부산시 중앙동 4가 79-1	051-466-6841	
	한국					

3.4. 미신고·미허가 원양어업자(7개사)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	원양어업	ALUNAMAR S.A.	김상권		54-11-4382-384 5	54-11-4382-419 4
	아르헨티나					
2	원양어업	ARPEPA S.A.	이범식 황순중	MAIPU 497 PISO 3B, CAP-FED (C.P : C1006ACC)	54-11-4328-189 6	54-11-4328-148 2
	아르헨티나					
3	원양어업	TAERIM CORPORATION LTD.		C/,JUAN REJON 64-3, 35008 LSA PALMAS ED G,C,SPAIN	34-928-466637	34-928-467154
	스페인 (라스)					
4	원양어업	ESCORIM TRADE CO., LTD		C/ LUIS MORTE 6, PISO 5, OFI-1 LSA PALMAS ED G,C SPEAIN	928-2777353	928-2777390
	스페인 (라스)					
5	원양어업	MIRAE FISHEREIS S,A		C/PROFESOR LOZANO 23, 1-DCHA 35008 LSA PALMAS DE G,C	928-46-3518	928-46-0095
	스페인 (라스)					
6	원양어업	LUCKY TRADING CO. LTD		C/D. JUAN DOMINGUEZ PEREZ 18 P-3	928-47-5542	928-47-5543
	스페인 (라스)					
7	원양어업	AFKO Fisheries Co. LTD		P.O Box 868 Tema, Ghana	233-22-202541	233-22-206398
	가나					

3.5. 해외교민사업자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	선원 관리사	DETISOL S.A.	황인동	Piedras 676(C.P. 11000), Montevideo, Uruguay	598-2-916-3536	598-2-915-3607
	우루과이					
2	선원 관리사	Escena S.A.	고상권	Yi 1864, Montevideo, Uruguay	598-2-929-1001 ~2	598-2-929-1003
	우루과이					
3	수출입 도소매	-	박장예	circunvalacion81 Puerto Montt	65-266011	65-263611
	칠레					
4	수출입 도소매	-	장인모	EL Teniente 201 Puerto Montt	56-65-255333	56-65-311493
	칠레					
5	도소매	WEST SIDE FISH	고준혁	774 AMSTERDAM AVE, NEW YORK, NY 10025	212-932-2942	
	미국					
6	도소매	I,S PARK FISH MARKET	박병선	76 SHERMAN AVE, NEW YORK, NY 10040	212-569-7685	
	미국					
7	도소매	D S SEAFOOD	김동수	480 LENOX AVE, NEW YORK, NY 10037	212-862-25270	
	미국					
8	도소매	NEW STAR FISH MARKET	서재덕	120A ESSEX ST, NEW YORK, NY 1002	212-475-8365	
	미국					
9	도소매	K & M FISH MARKET	명노해	2055 2ND AVE, NEW YORK, NY 10029	212-831-4040	
	미국					
10	도소매	S,K,W. SEAFOOD INC.	신군우	60 WEST 116 ST, NEW YORK, NY 10026	212-828-0851	
	미국					
11	도소매	LEX FISH & FOOD MKT	박대순	149 E. 103 ST, NEW YORK, NY 10029	212-860-3189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2	도소매	NEWARK FISH & SEAFOOD INC.	변의동	1011 BROAD STREET NEWARK, NJ 07102	973-623-7550	
	미국					
13	도소매	SEOUL SHIK POOM,INC	유재상	40-50 MONTGOMERY ST. HILLSIDE, NJ 07205	908-810-7230	
	미국					
14	도소매	APPLE FD INC.	신상훈	78 SUSSEX ST. HAKENSACK, NJ 07601	201-343-8810	
	미국					
15	도소매	KOREANA TRADING USA INC.	이인구	209 SIP AVE.2F JERSEY CITY, NJ 07306	646-529-4878	
	미국					
16	도소매	GOOD FISH MARKET, LLC	여상용	30 LAFAYETTE AVE. MORRISTOWN, NJ 07963	201-936-5607	
	미국					
17	도소매	O'S FISH MARKET	오성근	41 N.CENTURY RD. PARAMUS, NJ 07652	201-321-6005	
	미국					
18	도소매	JERSEY FARMER MARKET	이윤재	23-10 BROADWAY FAIR LAWN, NJ 07410	201-991-9333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9	도소매	ACP SEAFOOD CORP.	신단우	2391 ADAMCLAYTON POWELL BLVD. NY, NY 10030	212-862-6390	
	미국					
20	도소매	IMPERIAL SEA & SEA INC.	신만우	310 SAINT NICHOLAS AVE NEW YORK, NY 10027	646-698-6101	
	미국					
21	도소매	YOUNG FISH MARKET	김성호	2004 3 AVE. NEW YORK, NY 10029	212-876-3427	
	미국					
22	도소매	NEW O.K. FISH MAET	신재철	ST. NICH BT.1574 NEW YORK, NY 10040	212-923-2220	
	미국					
23	도소매	FIRST AVE FISHERY	김기정	141 FIRT AVE. NEW YORK, NY 10003	212-254-9147	
	미국					
24	도소매	SEVENAV FISH MARKET	최원철	2487 7소 AVE. NEW YORK, NY 10030	212-926-5661	
	미국					
25	도소매	DEL MAR INC.	엄흥철	77 PEARL ST. NEW YORK, NY 10004		
	미국					
26	도소매	MIRACLE TWO FISH PLAZA	유지형	2169 3RD AVE. NEW YORK, NY 10035	212-348-8490	
	미국					
27	도소매	C7K FISH MARKET CORP.	정연승	1352 STNICHOLAS AVE. NEW YORK, NY 10033	212-928-4022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28	도소매	BO SEA WORLD	강성호	93 ROCKAWAY PKWAY, BROOKLYN,NY 11212	718-778-8071	
	미국					
29	도소매	GONG'S FISH MARKET	공명걸	951 PENNSYLVANIA AVE, BROOKLYN, NY 11207	718-287-1310	
	미국					
30	도소매	JIN'S FISH MARKET	김수남	747 NOSTRAND AVE,BROOKLYN, NY 11216	718-221-0355	
	미국					
31	도소매	UTICA FISH MARKET	공영표	246 UTICA AVE, BROOKLYN, NY 11213	718-771-6494	
	미국					
32	도소매	NAVY BLUE FISH MARKET	김용철	5101 CHURCH AVE, BROOKLYN, NY 11203	718-345-2833	
	미국					
33	도소매	Y2 FISH MARKET	김광태	491 MYRTLE AVE, BROOKLYN, NY 11204	718-622-1236	
	미국					
34	도소매	OCEAN FISH MARKET	김종범	203 7 AVE, BROOKLYN, NY 11215	718-499-1454	
	미국					
35	도소매	ANGEL FISH MARKET	김치구	1255 BROADWAY BROOKLYN, NY 11221	718-452-3527	
	미국					
36	도소매	PARK SLOPE SEAFOOD	서상기	215 7AVE,(BETW,3&4 ST) BROOKLYN, NY 11215	718-832-7061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37	도소매	DOLPHIN FISH MARKET	나광식	796 BROADWAY BROOKLYN, NY 11206	718-384-9898	
	미국					
38	도소매	SNS FISH MARKET	신용우	1380 PENNSYLVANA AVE. BROOKLYN, NY 11207	718-657-9762	
	미국					
39	도소매	MIN'S FISH CORP.	민창기	316 AVE,U BROOKLYN, NY 11223	718-373-5169	
	미국					
40	도소매	P,K.FISH MARKET	박정기	7412 NEW CITY AVE. BROOKLYN, NY 11207	718-927-1218	
	미국					
41	도소매	KING FISH MARKET	윤창호	13-15 FULTON ST. BROOKLYN, NY 11216	718-638-6703	
	미국					
42	도소매	DANY'S	백명선	302 KICKER BOCKER AVE,BROOKLYN, NY11237	718-456-3754	
	미국					
43	도소매	BAY 77	이덕원	1538 FLATBUSH AVE. BROOKLYN, NY 11210	718-421-6836	
	미국					
44	도소매	THE WEALTH ON THE SEAS	이덕주	378 UTICA AVE. BROOKLYN, NY 11213	718-953-2336	
	미국					
45	도소매	IM MONDELLO INC.	이상호	6824 18TH AVE. BROOKLYN, NY 11204	718-236-3930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46	도소매	378 GASTON SEAFOOD MARKET CORP.	이민춘	378 MOTHER GASTON BLVD. BROOKLYN, NY 11212	718-498-9100	
	미국					
47	도소매	KING FISH	안 정	1513 FULTON ST. BROOKLYN, NY 11216	718-493-0636	
	미국					
48	도소매	PEAS N. PICKLES	이민기	79 HENRY ST. BROOKLYN, NY 11201	718-596-8219	
	미국					
49	도소매	ANGELA FISH	이성노	896 UTICA AVE. BROOKLYN, NY 11203	718-287-9813	
	미국					
50	도소매	HOSANNA FISH MARKET	이봉구	8018 5 AVE. BROOKLYN, NY 11209	718-491-0492	
	미국					
51	도소매	RACPH AVE FRESH FARM	이의택	2 PACPH AVE. BROOKLYN, NY 11281	718-573-9159	
	미국					
52	도소매	ANDREW FISH MARKET INC.	이상욱	1228 FULTON ST. BROOKLYN, NY 11216	718-623-6774	
	미국					
53	도소매	IM MONDELLO AVE	임정섭	6824 18TH AVE. BROOKLYN, NY 11204	718-236-3930	
	미국					
54	도소매	J-TWO FISH MARKET	정재혁	1435 FULTON ST. BROOKLYN, NY 11216	718-399-9829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55	도소매	HONG'S FISH MARKET	홍득표	324 UTISA AVE, BROOKLYN, NY 11213	718-604-9285	
	미국					
56	도소매	CHON FAMILY FISH MARKET	전무승	184 AVE,U BROOKLYN, NY 11223	718-449-3322	
	미국					
57	도소매	SUN FISH	홍학표	1128 FLATBUSH AVE, BROOKLYN, NY 11226	718-856-2373	
	미국					
58	도소매	C&C FISH MARKET	최성호	5812 GLENWOOD RD. BROOKLYN, NY 11234	718-209-5555	
	미국					
59	도소매	PETER FISH MARKET	박춘호	1444 NOSTRAND AVE, BROOKLYN, NY 11226	718-469-2779	
	미국					
60	도소매	CHANG FISH MARKET	최창래	70 WILLOUGBY ST. BROOKLYN, NY 11201	718-596-0720	
	미국					
61	도소매		이침주	951 PENNSYLVANIA AVE, BROOKLYN, NY 11207	646-379-1440	
	미국					
62	도소매	KEY FOOD FISH MARKET	추광호	20-20 NEW HEAVEN AVE, BROOKLYN, NY	718-327-1085	
	미국					
63	도소매	BOSTON FISH MARKET	주명덕	216 NORSTRAND AVE, BROOKLYN, NY 11210	718-434-0424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64	도소매	STAR FISH MARKET	김용균	1913 CHURCH AVE, BROOKLYN, NY 11216	718-826-2664	
	미국					
65	도소매	KS FISH MARKET	배관섭	950 BROADWAY BROOKLYN, NY 11221	718-573-9466	
	미국					
66	도소매	KIM'S FRESH FISH MARKET	김남일	1196 PRESIDENT ST, BROOKLYN, NY 11225	646-267-9284	
	미국					
67	도소매	Y+S FISH	조응선	1818 CHURCH AVE, BROOKLYN, NY 11216	718-282-5655	
	미국					
68	도소매	JUN FISH CO.	송광석	1369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02	718-815-9589	
	미국					
69	도소매	ISLAND FISH	천병용	1755 RICHMOND RD, STATEN ISLAND, NY 10306	718-667-0883	
	미국					
70	도소매	LEE'S FISH MARKET	이중하	425 BAY ST, STATEN ISLAND, NY 10304	718-816-8563	
	미국					
71	도소매	CHUNG'S FISH MARKET	류형찬	240 KELLY BLVD, STATEN ISLAND, NY 10314	917-520-6891	
	미국					
72	도소매		정동균	481 WINDHAM LOOP STATEN ISLAND, NY 10314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73	도소매	REHOBOTH FISH MARKET INC.	김경수	104E BURNSIDE AVE. BRONX, NY 10453	718-901-5070	
	미국					
74	도소매	MIN'S FISH MARKET	민관홍	221E. TREMONT AVE. BRONX, NY 10457	718-299-8634	
	미국					
75	도소매	KINSBRIDGE FRESH FISH MARKET	김 훈	67 E. KINGSBRIDGE RD. BRONX, NY 10468	718-367-6014	
	미국					
76	도소매	GRAND SEAFOOD	박영오	214E. 167TH ST. BRONX, NY 10456	718-681-9756	
	미국					
77	도소매	831 ROSEDALE FOOD CORP.	노승균	831 ROSEDALE AVE. BRONX, NY 10473	718-861-7413	
	미국					
78	도소매	SOUTHERN FISH MARKET	박인양	1037 E. 163RD ST. BRONX, NY 10459	718-842-3040	
	미국					
79	도소매	JAY FISH MARKET, INC.	박재용	422 WESTCHESTER AVE. BRONX, NY 10455	718-665-9767	
	미국					
80	도소매	WEBSTER SEAFOOD INC.	송성현	2500 WEBSTER AVE. BRONX, NY 10458	718-220-1588	
	미국					
81	도소매	FORDHAM FISH MARKET	박종천	155 E 188 ST. BRONX, NY 10468	718-329-5532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82	도소매	OH & SON PRODUCE CORP.	오기만	1054 SOUTHERN BLVD. BRONX, NY 10459	718-617-3656	
	미국					
83	도소매	K,H MORRISON FISH MARKET CORP.	박창두	1181 MORRISON FISH MARKET CORP.	718-842-2690	
	미국					
84	도소매	LEE MARKET	이기인	44 E. 167 ST. BRONX, NY 10452	718-293-4152	
	미국					
85	도소매	PAK FISH MARKET	박하집	28 W. BURNSIDE AVE. BRONX, NY 10453	718-901-0290	
	미국					
86	도소매	ZINNA FIS	이부성	4164 WHITE PLAINS RD. BRONX, NY 10466	718-656-2973	
	미국					
87	도소매	JMS SEAFOOD INC.	손재인	3413 JEROME AVE. BRONX, NY 10467	718-655-3700	
	미국					
88	도소매	ANGEL FISH MARKET	이숙희	3214 3RD AVE. BRONX, NY 10451	718-402-9273	
	미국					
89	도소매	YOON FISH MARKET	이윤범	79W KINGSBRIDGE RD. BRONX, NY 10468	718-796-9319	
	미국					
90	도소매	77 SEAFOOD PLAZA	정태식	223 ST. ANN'S AVE. BRONX, NY 10454	718-710-6087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91	도소매	J AND L FISH MARKET	이종욱	3706 3RD AVE 170 ST. BRONX, NY 10456	718-293-9777	
	미국					
92	도소매	TREMONT FISH CORP.	정효식	723 E TREMONT AVE. BRONX, NY 10457	718-299-2832	
	미국					
93	도소매	RIVERDALE FISH	이해철	550W. 235 ST. BRONX, NY 10463	718-548-4442	
	미국					
94	도소매	YKO FISH CORP.	조가인	2211 WESTCHESTER BRONX, NY 10462	718-892-9521	
	미국					
95	도소매	LONGWOOD FISH MARKET	이현배	838 WESTCHESTER AVE. BRONX, NY 10455	718-620-8850	
	미국					
96	도소매	L&L FARM FISH DPT.	최원철	37-17 BOSTON RD. BRONX, NY 10466	718-231-7208	
	미국					
97	도소매	S.Y.GRACE, CORP.	정세영	4018 B BOSTON RD. BRONX, NY 10475	718-671-5544	
	미국					
98	도소매	JIMMY'S FISH MARKET	최정국	732 ASTOR AVE. BRONX, NY 10467	718-881-5251	
	미국					
99	도소매	ANGELO FISH MARKET	홍성표	4378 WHITEPLAINS RD. BRONX, NY 10466	718-324-8722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00	도소매	WILLETS POINT FISH MARKET	박병일	2724 E. TREMONT AVE. BRONX, NY 10461	718-792-3920	
	미국					
101	도소매	SKH FISH CORP.	황규만	14 E 170 ST. BRONX, NY 10452	718-293-0868	
	미국					
102	도소매	KP FISH MARKET, INC	박찬영	80-A HUGH J. GRANT CIRCLE BRONX, NY 10472	718-822-1940	
	미국					
103	도소매	AN & BROS	강명기	217-20 LINDEN BLVD. CAMBRIA HTS, NY 11411	718-723-6913	
	미국					
104	도소매	KIM'S FISH	김동열	42-13 QUEENS BLVD. SUNNYSIDE, NY 11104	718-392-3316	
	미국					
105	도소매	KEW GARDEN FISH MARKET	곽호수	81-18A LEFFERTS BLVD. KEW GARDEN, NY 11415	718-805-6640	
	미국					
106	도소매	Y.M.K	김영목	118-18 LIBERTY AVE. RICHMOND, NY 11419	718-848-3671	
	미국					
107	도소매	YURAKU RESTAURANT	김태은	192-2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718-357-4309	
	미국					
108	도소매	SUN FISH	문영만	34-49 59 ST. 1 FLOOR WOODSIDE, NY 11377	718-458-2222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09	도소매	NHK SUPERMARKET	김화룡	40-08 NATIONAL ST. CORONA, NY 11368	718-397-0009	
	미국					
110	도소매	PARK'S SEAFOOD CENTER	박희돈	24-22 149TH ST. WHITESTONE, NY 11357	718-961-2536	
	미국					
111	도소매	CENTRAL SHOPPING	김정환	1733 BROADWAY HEWLETT, NY 11557	718-471-7316	
	미국					
112	도소매	KING FISH & SEAFOOD INC.	성헌준	91-04 SUTPHIN BLVD. JAMAICA, NY 11435	718-523-3444	
	미국					
113	도소매	SEAFOOD	김종복	10-05 166TH ST. WHITESTONE, NY 11357	718-746-7405	
	미국					
114	도소매	GOLD FISH MARKET	송광진	143-59 243 ST. ROSEDALE, NY 11422	347-244-9296	
	미국					
115	도소매	BROTHER FISH MARKET	라성윤	47-05 METROPOLITAN AVE. RIDGEWOOD, NY 11385	718-821-2133	
	미국					
116	도소매	RNJ FOOD STORE, INC.	오광균	272-72 GRANDCENTRAL PKWY, FLORAL PARK, NY 11005	718-225-4498	
	미국					
117	도소매	FOREST HILLS FISH MARKET	오충환	64-09 108 ST. FOREST HILLS, NY 11375	718-830-9070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18	도소매	MET FOOD FISH DEPT.	이병윤	79-15 ELIOT AVE. MIIDDLE VILLAGE, NY 11379	718-426-0271	
	미국					
119	도소매	EAST SEAFOOD INC.	유형찬	150-6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60-1044	
	미국					
120	도소매	TONY & SON	이세훈	134-01 33 AVE. FLUSHING, NY 11354	718-961-4456	
	미국					
121	도소매	SUNG YU CORP. DBA KING'S FISH	유호상	89-01 165 ST. JAMAICA, NY 11432	718-291-5357	
	미국					
122	도소매	ROCKAWAY FISH MARKET	전재식	131-27 ROCKAWAY BLVD. S.OZONE PARK, NY 11420	718-322-7370	
	미국					
123	도소매	HAN YANG SUPERMARKET	윤노석	150-51 NORTHERN BLVD.FLUSHING, NY 11354	718-461-1911	
	미국					
124	도소매	CHUNG'S FISH MARKET	정하석	35-08 30 AVE. ASTORIA, NY 11103	718-721-2391	
	미국					
125	도소매	90ST FISH MARKET	윤원석	90-06 ROCKAWAY BEACH BLVD. ROCKAWAY PARK, NY 11693	718-474-6900	
	미국					
126	도소매	JOHN'S WHITE FISH MKT,INC	차종환	72-15 KISSENA BLVD. FLUSHING, NY 11367	718-380-7719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27	도소매	KING FISH & SEAFOOD INC.	최성욱	91-04 SUTPHINE BLVD. JAMAICA, NY 11435	718-523-3444	
	미국					
128	도소매	SUPER FISH MARKET	김인식	105-35 64TH ROAD FOREST HILLS, NY 11375	718-275-0332	
	미국					
129	도소매	GRAND FISH MARKET	표윤식	66-30 GRAND AVE, MASPETH, NY 11378	718-507-4066	
	미국					
130	도소매	DELITE FISH CORP.	서창선	96-02 ROOSEVELT AVE. CORONA, NY 11368	718-457-1502	
	미국					
131	도소매	UNI FISH WORLD	함재균	62-24 ROOSEVELT AVE. WOODSIDE, NY 11377	718-426-2835	
	미국					
132	도소매	MR.FISH MARKET	김영한	169-41 137AVE, JAMAICA, NY 11434	718-978-7227	
	미국					
133	도소매	ACE FISH	김용태	46-07 76 ST. 3 FL. ELMHURST, NY 11373	917-807-5676	
	미국					
134	도소매	HAN YANG SUPERMARKET	손삼묵	150-5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61-1911	
	미국					
135	도소매	UNI FISH WORLD	강일성	62-24 ROOSEVELT AVE. WOODSIDE, NY 11377	718-426-2835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36	도소매	BEST FROZEN SEAFOOD	신승우	57-02 37TH AVE. WOODSIDE, NY 11377	718-651-4774	
	미국					
137	도소매	JS MARATHON FISH MARKET	윤 형	56-09 MARATHON PKY. LITTLENECK, NY 11362	718-352-0764	
	미국					
138	도소매	NORTHERN FRESH FISH	이영철	153-1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미국					
139	도소매	ANGEL FISH MARKET	강병옥	440 NORTH AVE. BEW ROCHELLE, NY 10801	914-636-1045	
	미국					
140	도소매	ANGEL FISH MARKET	박두현	413 RTE. 376 HOPEWELL JCT., NY 12533	845-223-6345	
	미국					
141	도소매	HARTSDALE FISH MARKET	김경설	214 E HARTSDALE AVE. HARTSDALE, NY 10530	917-843-3865	
	미국					
142	도소매	BROADWAY FARM OF NEWBURGH	박인식	151 BROADWAY NEWBURGH NEW BURG, NY 12550	845-661-3413	
	미국					
143	도소매	C-TOWN SUPERMARKET	남종찬	88 CROTON AVE. OSSINING, NY 10583	914-923-2395	
	미국					
144	도소매	FAMILY FISH	박종삼	323 WINDSOR HWY. NEW WINDSOR, NY 12553	845-569-2132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45	도소매	WHITE PLAINS FISH MARKET	서원득	37 TERRY TOWN RD, WHITE PLAINS, NY 10607	914-686-1766	
	미국					
146	도소매	FOOD WORLD FISH	홍성호	345 HUNTINGTON TPK, BRIDGEPORT, CT 06610	203-373-9986	
	미국					
147	도소매	NEW SEAFOOD GALAXY	오명호	727-R FRANKLYN AVE, FRANKLIN SQUARE, NY 11010		
	미국					
148	도소매	CARIBBEAN SUPERMARKET	황범연	223 W 1 ST, MOUNT RERNON, NY 10550	914-665-3737	
	미국					
149	도소매	SEAFOOD EMPORIUM	윤부국	734 MCLEAN AVE, YONKERS, NY 10704	914-968-0692	
	미국					
150	도소매	D.J.FISH	박동주	1575 CENTRAL PARK AVE, YONKERS, NY	914-961-4060	
	미국					
151	도소매		전영덕	399 CLARK LN, ORANGE, CT 06477	203-785-8480	
	미국					
152	도소매	HIGHBRIDGE	이준승	1791 CENTRAL PARK AVE, YONKERS, NY 11357	914-337-3775	
	미국					
153	도소매	OCEAN FISH MARKET	현금래	5 NORTH BROADWAY YONKERS, NY 10701	914-476-3177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54	도소매	HAPPY FISH & SUSHI INC.	권석상	53 ROUTE 111 SMITHTOWN, NY 11787	631-265-6481	
	미국					
155	도소매	COHPARE FISH	노기형	725 COMMACK ROAD BRENTWOOD, NY 11717	631-968-5610	
	미국					
156	도소매	SEA 2 U FISH MARKET	권준호	1955 FRONT ST. EAST MEADOW, NY 11554	516-794-1592	
	미국					
157	도소매	THE FISH PLACE	손영준	1500 SUNRISE HIGHWAY COPIAGUE, NY 11726	631-842-0257	
	미국					
158	도소매	RIGHT HOUSE SEAFOOD	김용호	35 COVERT AVE. FLORAL PARK, NY 11001	516-488-8841	
	미국					
159	도소매	NEW SEAFOOD GALAXY	오명호	727-R FRANKLIN AVE. FRANKLIN SQUARE, NY 11010		
	미국					
160	도소매	J&C FISH MARKET	김진만	1308 HEMPSTEAD TURN PKY. ELMONT, NY 11003	516-328-0226	
	미국					
161	도소매	FOOD GALLERIA FISH DEPT.	오성진	4007 MERRICK RD. SEAFOOD, NY 11783	516-679-9299	
	미국					
162	도소매	LEE'S FISH	이광우	565 UNIONDALE AVE. UNIONDALE, NY 11553	516-565-4934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63	도소매	MAIN FISH	박찬우	71 MAIN ST. HEMSTEAD, NY 11550	516-483-2334	
	미국					
164	도소매	CENTRAL FISH	이석우	32 WHEELER ROAD CENTRAL ISLIP, NY 11722	631-582-2194	
	미국					
165	도소매	GRAND FISH MARKET	엄진국	1197 GRAND AVE. N,BALDWIN, NY 11510	516-292-0120	
	미국					
166	도소매	BROADWAY FISH MARKET	최정배	HICKSVILLE, NY 11801	516-932-0209	
	미국					
167	도소매	ABC GREEN FARM SEAFOOD	김문수	1285 HEMPSTEAD TPKE. ELMONT, NY 11003	516-775-1113	
	미국					
168	도소매	HEMPSTEAD KING FISH	황정호	265 GREEN WICH ST. HEMPSTEAD, NY 11550	516-538-7201	
	미국					
169	도소매	GOLDEN CRAB & FISH HOUSE	강신희	257 MONMOUTH ST. JERSEY CITY, NJ 07302	201-432-6886	
	미국					
170	도소매	7TH AVE HOUSE OF CRAB	김기우	155 7TH AVE, NEWARK, NJ 07104	973-484-7777	
	미국					
171	도소매	C&H SEAFOOD CORP.	권순천	370 WEST MARKET ST. NEWARK, NJ 07107	973-643-6810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72	도소매	SEA TO YOU FISH MARKET	김대원	573 MARTIN LUTHER KING DR. JERSEY CITY, NJ 07304	201-434-6646	
	미국					
173	도소매	RED CRAB & FISH	권오용	1 PARK ST. ORANGE, NJ 07050	973-677-2125	
	미국					
174	도소매	117 MAIN ST FISH MARKET	김덕근	177 MAIN ST. ORANGE, NJ 07050	973-673-7087	
	미국					
175	도소매	KIM'S MULBERRY FISH MKT.	김광선	129-145 MULBERRY ST. NEWARK, NJ 07102	973-643-5330	
	미국					
176	도소매	BOGOPA	김명식	57-01 BROADWAY WEST NEWYORK, NJ 07093	201-863-2826	
	미국					
177	도소매	SEONG FISH MARKET	김성관	1A NEW TOWN ST. EAST ORANGE, NJ 07018	973-676-2433	
	미국					
178	도소매	SUN FISH MARKET	박원식	83 MOUNT VERNON PL. NEWARK, NJ 07106	973-375-4221	
	미국					
179	도소매	KIM'S WEST SIDE FISH MARKET	김영현	769 WEST SIDE AVE. JERSEY CITY, NJ 07306	201-451-9738	
	미국					
180	도소매	BOGOPA WEAT NY INC.	박정호	57-01 BROADWAY WEST NEWYORK, NJ 07093	201-863-2826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81	도소매	AUGUSTINE SEAFOOD INC.	김이기	600 PARK AVE. PLAINFIELD, NJ 07060	908-791-9992	
	미국					
182	도소매	NEW ENGLEWOOD FISH MARKET	신세균	54 W. PALISIDES AVE. ENGLEWOOD, NJ 07631		
	미국					
183	도소매	SEALAND FISH & CRAB HOUSE	서진산	303 MATINLUTHER KING DR. JERSEY CITY, NJ 07304	201-432-3917	
	미국					
184	도소매	PACIFIC FISH MARKET	양영식	495 CENTRAL AVE. EAST ORANGE, NJ 07018	973-672-1495	
	미국					
185	도소매	PATERSON SEAFOOD & FISH CENTER	김흥태	7-11 FAIR ST. PATERSON, NJ 07505	973-279-7069	
	미국					
186	도소매	MIDDLESEX FARM MARKET	엄기형	80 FULTON ST. RT 1 EDISON, NJ 08817	732-572-7999	
	미국					
187	도소매	SMILE FISH MARKET	김갑중	260 S'SUMMIT AVE. HACKENSACK, NJ 07016	201-343-0477	
	미국					
188	도소매	SNAG'S FISH MARKET	이상운	2000 WEST LAKE AVE. NEPTUNE, NJ 07753	732-775-2007	
	미국					
189	도소매	OCEAN FISH	육근식	488 MAIN ST. ORANGE, NJ 07050	973-676-1100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90	도소매	SEOUL SHIK POOM INC.	이영수	40-50 MONTGOMERY ST. HILLSIDE, NJ 07205	908-810-7230	
	미국					
191	도소매	SUN FISH MARKET	윤선주	120 1ST STREET ELIZABETH, NJ 07206	908-352-6969	
	미국					
192	도소매	LEE FISH HOUSE	이이호	523 JERSEY AVE. JERSEY CITY, NJ 07302	201-860-0095	
	미국					
193	도소매	MARTIN FISH MARKET	이광영	888 18TH AVE. IRVINGTON, NJ 07111	973-339-5477	
	미국					
194	도소매	GIMIS FISH MARKET	이재섭	577 N BLOOD ST. ELIZABETH, NJ 07208	908-351-0883	
	미국					
195	도소매	NEWARK FISH MARKET	이상용	203 MARKET ST. NEWARK, NJ 07102	973-623-2588	
	미국					
196	도소매	BAYONNE FISH MARKET	이학우	1347 KENNEDY BLVD. BAYONNE, NJ 07072	201-436-0533	
	미국					
197	도소매	BERGEN FISH MARKET	이한태	735 BERGEN AVE. JERSEY CITY, NJ 07306	201-433-3488	
	미국					
198	도소매	CHU'S FISH MARKET	조기수	303 W.FRONT ST. PLAINFIELD, NJ 07060	908-753-3778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199	도소매	H.S.SEAFOOD & FISH	이해성	1875 SPRINGFIELD AVE. MAPLEWOOD, NJ 07040	973-763-1518	
	미국					
200	도소매	WASHINGTON FISH MARKET	조영춘	59 WASHINGTON ST. PATERSON, NJ 07501	973-684-4858	
	미국					
201	도소매	MAMA & PAPA JOHN FISH	임승묵	1364 TEANECK ROAD. TEANECK, NJ 07666	201-837-0043	
	미국					
202	도소매	ROYAL SEAFOOD	편재경	979 S.ORANGE AVE. EAST ORANGE, NJ 07018	973-673-9296	
	미국					
203	도소매	BERGEN SEAFOOD	임중우	1071 BERGEN ST. NEWARK, NJ 07112	973-923-0656	
	미국					
204	도소매	APPLE FULTON DOCK, INC.	홍기원	78 SUSSEX ST. HACKENSACK, NJ 07601	201-343-8810	
	미국					
205	도소매	LINDY'S SEAFOOD & MARYLAND CRAB	전규철	1601 EAST ELIZABETH AVE. LINDEN, NJ 07036	908-925-3533	
	미국					
206	도소매	GIANT FISH MARKET	황규만	324 MAIN STREET HACKENSACK, NJ 07651	201-498-0488	
	미국					
207	도소매	SARAH'S SEAFOOD	황규삼	317 E. RAILWAY AVE. PATERSON, NJ 07503	973-742-0303	
	미국					

	업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진출국가	모기업명	모기업대표	모기업주소	모기업전화번호	모기업팩스번호
208	도소매		이경업	286 COUNTY RD. TENAFLY, NJ 07670	201-481-3425	
	미국					
209	도소매	PACIFIC FISH & CRAB HOUSE	황규환	125 AVON AVE. NEWARK, NJ 07108	973-621-1888	
	미국					
210	도소매	BOGOPA	김태명	57-01 BROADWAY, WEST NEWYORK, NJ 07093	201-863-2826	
	미국					
211	도소매	WORLD FISH MARKET	최 준	2925 BERGEBLINE AVENUE UNION CITY, NJ 07087	201-864-6647	
	미국					
212	도소매	MIDDLESEX FARM MARKET	남기찬	80 FULTON ST. RT 1 EDISON, NJ 08817	732-572-7999	
	미국					
213	도소매		이동적	888 18TH AVE. IRVINGTON, NJ 07111	973-399-5477	
	미국					
214	도소매	BERGEN LINE FISH MARKET	심유석	2020 BERGEN LINE AVE, UNION CITY, NJ 07087	201-617-7532	
	미국					

부록5.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작성 서류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통 계 작 성 기 관 명

처리기간
10일/7일

수신자 통계청장
(경유)

제목: 통계작성 □ 승인신청서,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합니다. 처리기간은 조사·가공통계는 10일 이내, 보고통계는 7일 이내입니다.			
① 통계의 명칭		② 통계의 종류	□ 일반통계 □ 지정통계
③ 통계작성 목적 (근거 법률)			
④ 통계작성 사항			
⑤ 통계작성 대상	대 상	□ 개인 □ 가구 □ 사업체 □ 그 밖의 대상()	
	모 집 단		
	대상 범위 및 규모		
	대상 지역		
⑥ 통계작성 기준 시점(기간)		⑦ 조사(보 고) 기간	⑧ 작성 주기
⑨ 통계작성 방법	작 성 형 태	□ 조사 □ 보고(업무) □ 가 공	
	조사(보고)대상 선정	□ 전수 □ 확률표본 □ 유의표본 □ 기타()	
	자 료 수 집 방 법	□ 면접조사 □ 전화조사 □ 우편조사(팩스) □ 배포(유치)조사 □ 집합조사 □ 그 밖의 방법()	
⑩ 통계작성 체계	⑪ 통계작성 분류체계		
⑫ 통계결과의 공표			
첨부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뒤 쪽)

처 리 절 차	
통계작성 승인(협의) 신청 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 통계협력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통계작성 승인 (협의) 신청</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보완 요구의 이행</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통계작성 승인 통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접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요건 검토</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승인(협의) 여부 결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결재</div>
<p>근 거 법 령</p> <p>이 신청서의 근거 법령은 통계작성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고, 협의요청의 경우에는 「통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입니다.</p>	
<p>전 자 신 청</p> <p>이 신청서는 http://codi.stat.go.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p>	
<p>작 성 요 령</p> <p>① 통계의 명칭: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작성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p> <p>③ 통계작성 목적(근거 법률): 협의요청인 경우 통계작성의 근거 법률을 함께 적습니다.</p> <p>④ 통계작성 사항: 조사 또는 보고 항목 등을 주요 부문별로 구분하여 항목별 항목 수를 적습니다. (예: 사업체 일반사항 ○개 항목, 고용 관련 ○개 항목, 급여 관련 ○개 항목 등)</p> <p>⑤ 통계작성 대상 ○ 모 집 단: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 모집단명을 적습니다. (예: 20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05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 등)</p>	

- 대상 범위 및 규모: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되는 응답자의 속성과 범위(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F 건설업에 해당하고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 전국의 84개 도시의 근로자 가구 등)를 적고, 규모는 조사에 의하여 작성되는 통계의 경우 조사대상이 되는 개인·가구·사업체 등의 수를 적으며, 보고에 의하여 작성되는 통계의 경우 최초로 보고 서식을 작성하는 기관 수를 적습니다.
 - 대상 지역: 조사 또는 보고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전국,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명을 적습니다.
 - ⑩ 통계작성 체계: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입니다.
(예: 읍·면·동 → 시·군·구(..과/팀) → 시·도(..과/팀) → 행정자치부(..과/팀))
 - ⑪ 통계의 작성에 사용하는 분류로 「통계법」 제22조의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적습니다.
 - ⑫ 통계작성결과의 공표예정일과 공표방법(「통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언론보도자료·통계간행물·전자매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 ※ 첨부서류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에는 조사 대상이나 항목이 자연인인 경우 성별 구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